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 II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 ▶ 책임연구원 : 이유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윤옥경(경기대학교 교정보호학과·교수)
조윤오(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교수)
- ▶ 보조연구원 : 이상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보조원)

발 간 사 ■ ■ ■

이 연구는 2개년에 걸쳐 기획된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의 2차년도 연구입니다. 1차년도에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를 실시하였고, 2차년도인 금년도에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 사용 증가로 아동·청소년들이 점점 더 용이하게 성매매를 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가출청소년에게는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성매매 유입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경우 우리 사회에서 보호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문제집단으로 왜곡되게 인식하고 있지만 자발적인 성매매라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를 경험한 경우에는 그 연령대에 당연히 받아야할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피해자로 간주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가출 및 성매매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환경과 그들의 욕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 방지 대책과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 인프라의 차별화 및 위기청소년 지원 인프라와의 연계방안 마련을 통한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 성매매수자의 재범방지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수자 대책 등을 모색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연구가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연구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성가족부의 관계자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에 근무하고 계신 현장전문가, 공동연구자로 수고해 주신 윤옥경 교수님, 조운오 교수님과 그 외 자문위원 및 집필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연구를 담당한 이유진 박사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2013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원장 이 재 연

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가출 및 성매매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환경과 그들의 욕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 방지 대책과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 인프라의 차별화 및 위기청소년 지원 인프라와의 연계방안 마련을 통한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 성매매수자의 재범방지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수자 대책 등을 모색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을 제안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방법으로써 전문가 의견조사(예비조사 9명, 설문조사 505명)와 면접조사(심층면접 40명, 집단면접 14명)를 실시했다.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경험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와 관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런 경험을 가진 아동·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자존감이 낮고 치료도 오래 걸리며 사회복귀를 위한 지지체계가 더 열악하다. 가출 후 생존을 위해 학교를 그만두고 성매매로 유입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이고,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한 조건만남이 많아지고 있다. 성매매의 변화된 특성은 성매매 청소년의 저연령화, 죄의식의 약화, 성매매의 조직화 경향, 가출팸, 또래포주의 등장을 들 수 있다. 또한 성매매수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 교육강화와 지속적인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면접조사 결과, 아동·청소년 성매매 동기는 가출로 인한 빈곤과 생계비 마련이 가장 큰 요인이고, 성매매 유입 경로는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한 조건만남이 가장 많았다. 성매매 결정은 가출 후 또래 포주나 성인 남성이 피해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협박하고 폭행하여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지만, 성매매 결정이 외부의 강제나 폭력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돈을 벌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출 후 먹고 마실 것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생계형 성매매'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비록 스스로 자발적인 성매매라고 인식하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비자발적인' 성매매인 경우가 많았다. 성매매 이후의 신체적·심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임신이나 성병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이 제안되었다. 첫째,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 방지 대책으로 성매매 원인별 유입방지전략 차별화, 가정폭력 방지교육 등 부모교육 실시, 성교육 및 성평등교육 확대, 스마트폰 성매매 대책 수립,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제고, 학교내 상담사 및 복지사 역할 활성화, 가출팸 감독 및 관리 강화, 성매매 이전의 1차 예방: 초기 가출 예방 및 왜곡된 성인식 개선, 성매매 이전/이후의 2차 예방 강화: 초기 성매매 선별·평가 작업 강화, 성매매 이후의 3차 예방: 성매매 재유입 억제방안 강화 등이 필요하다.

둘째, 아동·청소년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으로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피해지원 시스템 구축,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위한 취업·인문교육 활성화, 성매매 청소년을 피해자로 보는 인식도 제고, 범죄피해자로서의 가출청소년 보호방안 마련, 사례별 조사분석과 지원, 가출청소년 이용업소와의 협력활동 강화, 가출청소년쉼터의 다양화,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아동·청소년보호 정책으로서의 정체성강화, 아동·청소년 성매매 업무 체계 일원화, 인터넷 성매매과약을 위한 전담형사 사범수사팀의 구축, 아동청소년 성매매 통계자료 구축, 체계적인 사례관리 등이 필요하다.

셋째,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자 대책으로 성매매 예방교육의 강화, 비자발적 성매매 아동·청소년 성구매자의 신고유인책 마련, 비자발적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구매자의 처벌강화, 특정 사회봉사명령의 부과, 성매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단속 등이 필요하다.

1. 연구목적

- 이 연구는 2개년에 걸쳐 기획된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의 일환으로, 1차년도인 2012년에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대책을 수립하였고, 2차년도인 2013년에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대책을 수립할 계획임. 이러한 계획에 따라 금년도에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를 실시하고자 함. 1차년도에 성폭력에 관해 연구한 결과, 가정폭력 및 성매매와의 중첩성 문제가 제기됨.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피해 가출한 아동·청소년들은 성매매 피해의 경계 선상에서 살아가게 됨. 따라서 성매매 대책은 이러한 성폭력 피해대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음.
- 인터넷의 발달과 아동·청소년의 모바일 기기 사용 증가로 아동·청소년들이 점점 더 용이하게 성매매를 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가출청소년에게는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성매매 유입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인터넷 환경을 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성매매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군과 그들을 둘러싼 환경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어떤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로 유입되고 재유입되는지를 파악해 그 과정에 대한 개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경우 우리 사회에서 보호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문제집단, 방탕함 등으로 왜곡되게 인식하고 있어 노출된 위험도에 비하여 보호대책 마련 및 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하지만 자발적인 성매매라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를 경험한 경우에는 그 연령대에 당연히 받아야할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피해자로 간주해야 함. 그렇지만 성매매에 관한 피해자 관점의 선행연구는 주로 여성학적인 관점에서 수행된 연구가 많았는데, 성매매를 성인지적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연령인지적인 측면은 충분히 고려하기 어렵게 됨.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성인여성 성매매와는 구별되는 연령 및 발달과정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원 인프라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아동·청소년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또한 청소년가출과 성매매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 정책은 위기청소년 지원정책과 아동·청소년 성매매 정책이 분리되어 있고 인프라 역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이들 정책과 인프라가 상호 연계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될 필요가 있음.

- 한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사후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는 사후적인 조치일 뿐 사전예방과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 그 동안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왔고, 특히 2010년부터는 청소년 대상 성매수자의 유인행위를 처벌해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경찰청의 안전드림사이트를 통한 신고프로그램도 운영해 왔으므로 이제는 이러한 정책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파악하여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할 시점임.
- 이 연구에서는 가출 및 성매매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환경과 그들의 욕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 방지 대책과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 인프라의 차별화 및 위기청소년 지원 인프라와의 연계방안 마련을 통한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 성매수자의 재범방지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자 대책 등을 모색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을 제안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함.

2. 연구방법

1) 전문가 의견조사

- 전문가 의견조사의 조사대상은 성매매 관련 시설 종사자임. 성매매 관련 시설은 성매매상담소, 성매매 피해여성 일반지원시설,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시설, 성매매 피해여성 그룹홈,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센터, 성매매 피해여성 대안교육 위탁기관 등이고, 성매매를 전담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유관기관으로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포함했음.

- 전문가 의견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나누어 2차에 걸쳐 진행되었음. 먼저 예비조사는 9개 유형의 시설별로 각 1명씩 전문가를 선정해 의견을 수렴하였음. 조사기간은 2012년 4월 22일부터 5월 8일까지였고, 조사방법은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음.
- 본 조사는 9개 유형의 시설 종사자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이 중 505명의 조사지가 회수(회수율 16.3%)되었음. 조사기간은 2013년 7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 2주간 진행되었고, 조사방법은 이메일 또는 우편조사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설문을 통해 진행하였음.

2) 면접조사

- 면접조사의 대상자는 성매매 및 가출 경험 아동·청소년으로 성매매 관련기관이나 청소년쉼터 종사자의 도움을 받거나 거리에서 섭외하였음.
- 구체적인 조사대상자는 심층면접의 경우 성매매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으로 표본수는 40명(길거리 섭외 21명, 성매매 피해자 쉼터 18명, 가출청소년쉼터 1명)임. 집단면접의 경우에는 성매매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으로 표본수는 2그룹(쉼터 거주자 1그룹, 길거리 섭외 1그룹으로 총 14명)임. 조사기간은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30일임.

3. 주요결과

1) 전문가 의견조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회의 책임에 대한 현장전문가들의 생각은 그 상대적 중요도에 있어서 재원조달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이 첫 번째로 꼽혔음 그 다음이 모든 국민의 아동청소년 보호, 선도, 교육을 위한 노력, 모든 국민의 사회환경 정비노력의 순으로 나타남.
- 성매매기관 및 청소년보호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활동들을 열거한 후 실효성의 측면에서 평가를 하도록 요청한 결과,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평가된 활동은 피해자지원 중에서 상담 및 심리치료, 법률지원, 의료지원 등인데 반해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 활동은 성매수자 재범방지 교육, 피해자 조기발견 체계구축, 피해자 학업서비스, 피해자 직업교육 등으로 나타남.

- 성매매유입대책과 관련한 활동가들의 의견에서 성매매피해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특성들이 나타났음. 우선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경험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데 현장활동가의 약 68%가 동의하고 있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경험을 가진 아동 청소년들은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가출청소년들보다 훨씬 자존감이 낮고 치료도 오래 걸리며 가족 등 사회복귀를 위한 지지체계가 더 열악한 것으로 보고 있음.
- 가출 후 생존을 위해 학교를 그만두고 성매매로 유입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라고 할 수 있지만, 가출을 하지 않고 가정에 머무르고 학교생활을 하면서 친구나 선배의 강요에 의해 성매매를 하게 되는 유형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성매매로 이르는 경로 및 수단을 보면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한 조건만남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장종사자들이 언급한 최근 성매매의 변화된 특성을 보면 성매매 청소년의 저연령화와 죄의식의 약화, 성매매의 조직화 경향, 가출팸, 또래포주의 등장으로 요약됨. 현장 종사자들에 의하면, 이러한 성매매 경향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 현상들에 대한 대책은 매우 지체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최근에 오피스텔과 원룸에 가출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보증금없는 월세제도는 큰 목돈 없이, 하루하루 성매매 등을 통해 돈을 벌어 살아가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지하철역이나 길거리 아웃리치(outreach)만이 아니라 가출청소년들이 모여 있을만한 원룸이나 오피스텔도 아웃리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동시에 사이버 아웃리치도 병행하여야 함.
- 성매수자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서는 거의 모든 응답자들이 성매수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교육강화와 지속적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전자발찌나 화학적 거세 등의 방안에 대해서는 그 효과성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는 반응이 더 많았고, 이러한 기술적인 대처방안보다는 왜곡된 성문화 개선과 성매매도 성폭력으로 인정하는 인식변화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음.

2) 면접조사

- 아동·청소년 성매매 동기는 가출로 인한 빈곤과 생계비 마련이 가장 큰 요인이 된다고 나타났다. 개별 심층면접 결과, 1순위가 '가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숙식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를 시작', 2순위 '주변 친구들의 권유나 부탁', 3순위 '가정형편이 어려워 부모님 몰래 성매매'로 나타났다.
- 성매매 유입 경로를 보면 가장 많은 경우가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한 조건만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주변의 친구나 선배 권유로 아는 사람을 통해 성매매 남성을 소개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성매매 결정이 아동·청소년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22.5%(9명)가 강요와 협박에 의한 "타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응답했음. 즉, 가출 후 또래 포주나 성인 남성이 피해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협박하고 폭행하여 어쩔 수 없이 여자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를 하게 된 것임. 무엇보다도 함께 가출 생활을 하던 청소년들이 폭력을 행사하며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여 또래 성매매 포주에 대한 처벌 및 재범 억제 방안이 가장 시급한 문제의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응답자의 72.5%(29명)가 성매매 행위를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응답했는데 주변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협박은 없었기에 아동·청소년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결정한 행동이라고 인식한 것이나 심층면접 결과, 대다수의 응답자가 가출 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최초 성매매 결정이 외부의 강제나 폭력에 의한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돈을 벌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출 후 먹고 마실 것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생계형 성매매'라고 볼 수 있는 것임. 심층면접 결과, 본 연구에서 여자 아동·청소년은 가출 후 돈을 벌기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고, 비록 스스로 자발적인 성매매라고 인식하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비자발적인' 성매매인 경우가 많아 가출 후 선택의 여지가 없어 택하게 된 성매매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성매매 이후의 신체적·심리적 문제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0%(28명)가 성매매 이후 신체적으로 임신이나 성병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관계를 자동차 안에서 하거나 모텔에서 강제로 하게 되면서,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여자 아동·청소년이 질염이나 성병으로 병원 진료를 받거나 큰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심지어 응답자의 22.5%(9명)는 성매매 남성의 폭력 및 가학행위로 성매매 이후에도 심각한 신체적·심리적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 관계 시 강제적으로 기계를 사용하여 신체적인 고통을 가하기도 하고, 칼과 같은 흉기를 사용하여 폭력행위를 가하기도 하며, 아동·청소년의 성행위 모습을 촬영하여 성매매 이후에도 협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심리적으로 성매매 아동·청소년들이 성매매 남성들이 사후에 자신을 협박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경찰에 신고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신의 성매매 사실이 가족이나 주변 친구들에게 알려질까 심각한 불안감을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모든 남성들에 대한 불신과 성인들에 혐오 등이 심각한 대인기피증으로 이어지고, 결국 자살 충동이나 우울증 등의 문제를 겪게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의 22.5%(9명)가 성매매를 중단하기 위해 스스로 강한 결심을 한 것으로 나타났음. 외부의 특별한 도움 없이 스스로 결심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의 성병이나 친구의 성병 감염을 보고 건강상 이유로 그만두기로 결심’, ‘그냥 그만 두어야한다는 의지가 생겨 결심’, ‘성매매를 권유하던 친구들과 헤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도 성매매를 그만 두게 됨’,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하면서 성매매를 하지 않게 됨’으로 나타났음. 다음으로 전체의 10%(4명)는 평범한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하면서 성매매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응답했음.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의 도움으로 성매매를 그만 두게 된 경우는 전체의 10%(4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4. 정책제언

1)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 방지 대책

- 성매매 청소년의 다양화에 따라 그들의 성매매 유입방지를 위한 전략도 차별화 되어야 함: 저연령화,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경험, 학교폭력으로서의 성매매 강요 등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함.

- 부모교육과 가정폭력 방지교육 등 적극적으로 부모역할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 가출의 가장 큰 원인은 가정, 특히 부모의 역할과 양육태도에 기인하므로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와의 의사소통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 광범위한 대상에 대한 성교육과 성평등교육이 필요함. 청소년성매매의 저연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 콘텐츠 개발이 중요함.
-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무차별적으로 청소년들의 성매매를 조장하고 매수자와 매매자를 연결시키는 통로가 되고 있음. 우선 시급한 것이 성매매를 위한 채팅앱에 청소년들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임. 가출청소년을 위한 아웃리치도 사이버 아웃리치 중심으로 재편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아동착취, 또는 폭력이라는 강력한 인식전환이 필요함. 대부분의 일반 대중들도 아직까지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이러한 인식이 변화하지 않는 한 성매매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것에 성폭력 뿐 아니라 성매매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인식전환 노력이 매우 필요함.
- 성매매가 학교폭력의 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음. 친구나 선배의 강요에 의해 원치 않는 성매매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자들을 초기에 찾아내고 이들에게 심리적, 의료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학교내 상담사 및 복지사 역할이 활성화되어야 함.
- 보증금 없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함께 기거하면서 성매매 조직처럼 움직이는 가출패들이 있다고 함. 이들에 대한 단속과 감시를 위해서는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에 대한 집중적인 감독과 관리가 필요함.
- 성매매 이전의 1차 예방활동으로 아동·청소년의 가출을 방지하고, 가출 이후의 상황에 대해 아동·청소년에게 미리 명확히 알리는 계몽활동이 필요함. 또한 일반 성인 남성 및 청소년 또래 집단에 대한 건전한 성인식 및 성역할 교육에 대한 캠페인이 필요함.
- 2차 예방이란 어느 정도 성매매 위험성이 인지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방활동을 말함. 과학적인 사전 스크리닝 도구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성매매 고위험 아동·청소년을 선별해 낼 수 있다면, 제한된 범죄예방 자원을 고위험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는 의의가 있음.
- 3차 예방은 이미 성매매를 저지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재유입 방지활동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음. 여기에서는 핵심적으로 성매매 여자 아동·청소년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심리적·신체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줄 필요가 있음.

2)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

- 현장전문가 중 약 67.3%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경험과 성매매의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함. 이들 청소년들은 가족지지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려워 성매매 유입과 재유입의 악순환에 내몰리게 되기도 함. 애정결핍, 행동장애, 인격장애 등으로 고통 받으며 사회성이 떨어지는 특징도 보인다고 함. 따라서 피해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등 개별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
- 장기기출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위한 취업교육과 인문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함.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수입이 좋은 직종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과 노동의 중요성, 일을 통한 자기성취의 중요성, 노동의 신성함에 대한 가치 등을 일깨우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직업훈련의 다변화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성매매청소년을 “피해자”로 보는 인식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위해 법적 규정의 명확화와 실무관행상 변화가 요구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폭력이라는 인식이 확고해야 이들을 온전히 피해자로서 간주할 수가 있게 됨.
- 거리청소년들이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는 것도 예방해야 하지만 이들이 잠재적으로 범죄 피해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이러한 업무를 해줄 수 있는 기관-경찰, 쉼터, 청소년상담센터 등- 들이 지역사회와의 치안 확보와 범죄예방을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함.
-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성매매피해청소년의 교육현황을 통해서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형사사법기관 인지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매매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형사사법기관의 인지비율이 늘어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따로 이루어져야함.
- 가출청소년들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업소와의 연계를 통해 잠재적 피해자를 찾아내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활동이 필요함.
- 가출아동·청소년의 욕구와 피해정도, 성매매기간 등이 모두 다양하므로 특화된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학업, 취업, 약물, 임신 등 개별적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시설의 설치도 필요하며, 이렇게 되면 모든 시설에서 모든 욕구를 제공해야 하는 어려움에서 보다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임. 성매매 피해청소년과 일반가출청소년이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점임.

-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기관의 통합과 지역단위의 원활한 소통과 연계가 필요함. 정책의 통합과 법의 일원화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지역단위에서 사례회의와 워크숍 등을 통해 소통과 연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함.
- 집창촌의 성매매피해자를 대상으로 시작한 ‘시설입소와 직업교육’이라는 성매매피해자지원 및 보호정책의 기본 틀은 아동·청소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아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예방 및 피해지원 정책으로 적합하지 않은 실정임.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매매피해자에 대해서는 단 한 명이 형사사법기관에 인지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시스템은 존재해야하고 운영되어야할 것임.
- 성매매를 한 대상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구매한 아동·청소년 모두 다양한 부처의 개입을 필요로 함. 아동·청소년성매매관련 업무는 성매매예방 및 대책의 주제 범주에서 다루기 보다는 ‘아동·청소년’이라는 인적 자원을 관장하는 타워기관에서 개입의 정도와 단계를 조율할 필요성이 대두됨.
-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성매매의 비율을 감안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임. 성매매 아동청소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여성가족부의 몫이지만 성매매수자에 대한 처벌은 법무부와 경찰청의 몫일 것임. 따라서 인터넷 성매매를 파악하는 것은 형사사법기관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적합할 것임.
- 청소년성매매 유인과 같이 최근에 법제화된 정책은 우선 순위로 통계데이터의 정리 및 구축을 통해 정책평가가 이루어져야함.
-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대책은 지역사회 내 청소년서비스 기관 간의 협조를 통한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바탕으로 해야 함. 성매매에 이르게 된 유입 경로가 결코 아동·청소년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출 이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거나, 또래 포주들에 의한 폭력과 강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들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직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것임.

3)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수자 대책

- 현재 각 기관을 통해서 성매매예방교육을 하고 있으나 실직 또는 자영업자의 경우 성매매예방 교육을 받을 기회는 없음. 대표적인 성구매자인 남성에 대한 집합교육이 가장

효율적인 기관은 국방부임. 따라서 성구매 주요 연령이 밀집될 수 있는 ‘현역군, 예비군, 민방위’에 대한 성매매 예방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음.

- 성구매자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비자발적 성매매아동·청소년을 찾아서 건전한 성인으로 육성하는 것이 더 중요함. 비자발적 성매매아동·청소년에 대한 성구매자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이 마련되어야함.
- 성매매강요뿐만 아니라 포주, 보도방을 통한 비자발적 성매매아동·청소년을 접할 시 신고의무를 법적으로 부과하고 성매매대상아동·청소년이 비자발적임을 인지 시 가중 처벌함.
-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성매매아동·청소년에 대한 성구매자에게 성매매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매매예방 글을 보내도록 하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 심층면접 결과, 성매매 아동·청소년 대다수가 남성 성매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단속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성매매 이후 남성이 다시 자신을 협박하거나 자신의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까봐 두렵다고 말한 아동·청소년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나 무엇보다도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이 제대로 알려져야 할 필요가 있음.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추진체계	4
3. 연구내용	6
4. 연구방법	6
II. 이론적 배경	9
1.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및 현황	11
1)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11
2)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현황	12
2.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5
1)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유입요인	15
2)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피해유형과 정도	18
3)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22
III. 정책 현황과 외국사례	25
1. 현행 정책 및 법령	27
1) 현행 정책	27
2) 현행 법령	49
2. 주요 국가의 관련 정책 및 입법례	66
1) 독일	66
2) 일본	80
3) 미국	98
4) 영국	121
5) 캐나다	136

IV.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사	153
1. 조사개요	155
1) 전문가 의견조사	155
2) 면접조사	159
2.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분석	162
1) 관련 정책과 업무	162
2)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 대책	168
3)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 대책	205
4)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자 대책	212
5) 종합적인 의견	220
6) 요약 및 시사점	223
3. 면접조사 결과분석	226
1)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 관련 질문	226
2)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 관련 질문	255
3)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자 관련 질문	266
4) 종합적인 의견	269
5) 집단면접 조사결과	272
6) 요약 및 시사점	273
V.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279
1.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 방지 대책	281
1)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 방지 일반대책	281
2)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 단계별 예방대책	286
2.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	291
1)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서비스 강화방안	291
2)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인프라 강화방안	297

3.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자 대책	302
1) 성매매 예방교육의 강화	303
2) 성매수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및 처벌강화	304
4. 정책방안 추진계획(안)	307
참고문헌	311
부 록	319
1. 현장전문가 의견조사지(예비조사)	321
2. 현장전문가 의견조사지(설문조사)	325
3. 피해 아동·청소년 면접조사지	338
4. 집단면접 녹취록	343

표 목 차

〈표 II-1-1〉 성매매사범 단속 현황	12
〈표 II-1-2〉 직업별 성매매사범	13
〈표 II-1-3〉 2008년~2013년 8월까지 성매매 사범 연령별 현황	13
〈표 II-1-4〉 청소년 대상 성매매 단속현황	14
〈표 II-1-5〉 청소년 대상 성매매사범 중 인터넷 이용자 적발 현황	14
〈표 II-2-1〉 탈성매매와 재유입에 대한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16
〈표 II-2-2〉 청소년 성매매의 성격과 맥락	19
〈표 III-1-1〉 성매매 피해자 지원체계	34
〈표 III-1-2〉 성매매피해자 지원 시설별 현황	34
〈표 III-1-3〉 성매매 청소년 피해자지원시설의 지역별 현황	35
〈표 III-1-4〉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입소·이용현황	35
〈표 III-1-5〉 성매매 피해청소년 교육 실적	36
〈표 III-1-6〉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최초경로	36
〈표 III-1-7〉 성매매 피해청소년성장캠프(교육) 위탁기관	37
〈표 III-1-8〉 청소년쉼터 운영 실적	38
〈표 III-1-9〉 유형 및 기능별 청소년쉼터 현황	39
〈표 III-1-10〉 지역별 운영 현황	40
〈표 III-1-11〉 서비스별 제공 내용	40
〈표 III-1-12〉 청소년 동반자 지원 사례 유형	41
〈표 III-2-1〉 성매매 중단을 위한 각 주의 지원프로그램	71
〈표 III-2-2〉 네트워크이용범죄의 검거건수의 추이	81
〈표 III-2-3〉 이성소개사이트 및 커뮤니티사이트의 이용에 기인하는 검거건수 및 아동피해의 추이	82
〈표 III-2-4〉 「이성소개사이트」 이외의 인터넷사이트에 관계된 사건의 검거상황 등	88
〈표 III-2-5〉 연도별 가출소년의 추이	92

〈표 Ⅲ-2-6〉 아동매춘에 관계되는 피해아동의 갱생지원의 기준	93
〈표 Ⅲ-2-7〉 성매매 피해아동 체크리스트	110
〈표 Ⅲ-2-8〉 성매매 피해자 선별도구 문항 예	111
〈표 Ⅲ-2-9〉 일리노이즈주 사례관리 클라이언트 Intake 체크리스트	114
〈표 Ⅲ-2-10〉 성매매 가능성 지표	129
〈표 Ⅳ-1-1〉 조사대상시설의 전국분포 현황	156
〈표 Ⅳ-1-2〉 전문가 의견조사 대상자의 특성	158
〈표 Ⅳ-1-3〉 심층면접조사 대상자의 특성	159
〈표 Ⅳ-1-4〉 집단면접조사 대상자의 특성	161
〈표 Ⅳ-2-1〉 예방 및 피해지원 정책	163
〈표 Ⅳ-2-2〉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업무의 실효성	165
〈표 Ⅳ-2-3〉 가정폭력, 성폭력과 성매매 관련성 현장 체감 정도	169
〈표 Ⅳ-2-4〉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인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방지 대책의 중요도	176
〈표 Ⅳ-2-5〉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원인 우선순위	180
〈표 Ⅳ-2-6〉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방법 우선순위	181
〈표 Ⅳ-2-7〉 최근 성매매 현상에 변화된 특성	183
〈표 Ⅳ-2-8〉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예방 대책 중요도	187
〈표 Ⅳ-2-9〉 장소적 특성에 대한 대책	194
〈표 Ⅳ-2-10〉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차원에서의 대책	198
〈표 Ⅳ-2-11〉 위기청소년 정책간의 연계방안	203
〈표 Ⅳ-2-12〉 아동·청소년 피해자 전문기관 필요 여부	206
〈표 Ⅳ-2-13〉 최근 낮아지는 성매매 연령에 대한 현장 체감정도	206
〈표 Ⅳ-2-14〉 성매매의 저연령화 현상에 대한 대책	208
〈표 Ⅳ-2-15〉 남자 아동·청소년의 ‘역 원조교제’에 대한 현장 체감 정도	210
〈표 Ⅳ-2-16〉 하나의 법률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211
〈표 Ⅳ-2-17〉 성매수자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 및 치료 등의 성매매 예방대책 효과정도	213
〈표 Ⅳ-2-18〉 성매수자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 및 치료 등의 성매매 예방대책 중요정도	216
〈표 Ⅳ-2-19〉 처벌제도와 신고시스템의 성매매 예방대책의 효과정도	220
〈표 Ⅴ-4-1〉 정책방안 추진계획(안)	308

그림 목 차

【그림 Ⅰ-2-1】 연구수행 단계별 추진 체계 및 내용	5
【그림 Ⅲ-2-1】 아동·청소년 성매매 개입 다이어그램	127
【그림 Ⅳ-2-1】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업무의 실효성	168
【그림 Ⅳ-2-2】 가정폭력, 성폭력과의 성매매 관련성 현장 체감 정도	169
【그림 Ⅳ-2-3】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인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방지 대책의 중요도	178
【그림 Ⅳ-2-4】 최근 성매매 현상에 변화된 특성	183
【그림 Ⅳ-2-5】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예방 대책 중요도	190
【그림 Ⅳ-2-6】 장소적 특성에 대한 대책	196
【그림 Ⅳ-2-7】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차원에서의 대책	201
【그림 Ⅳ-2-8】 위기청소년 정책간의 연계방안	205
【그림 Ⅳ-2-9】 성매매의 저연령화 현상에 대한 대책	209
【그림 Ⅳ-2-10】 성매매수자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 및 치료 등의 성매매 예방대책 중요정도	218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추진체계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제 1 장
서 론¹⁾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이 연구는 2개년에 걸쳐 기획된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의 일환으로, 1차년도인 2012년에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대책을 수립하였고, 2차년도인 2013년에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금년도에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1차년도에 성폭력에 관해 연구한 결과, 가정폭력 및 성매매와의 중첩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피해 가출한 아동·청소년들은 성매매 피해의 경계 선상에서 살아가게 된다. 따라서 성매매 대책은 이러한 성폭력 피해대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이유진, 강지명, 윤옥경, 조운오, 2012: 274).

인터넷의 발달과 아동·청소년의 모바일 기기 사용 증가로 아동·청소년들이 점점 더 용이하게 성매매를 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가출청소년에게는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성매매 유입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환경을 통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성매매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군과 그들을 둘러싼 환경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어떤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로 유입되고 재유입 되는지를 파악해 그 과정에 대한 개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정혜원, 박운환, 2012: 4).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경우 우리 사회에서 보호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문제집단, 방탕함 등으로 부정적, 왜곡되게 인식하고 있어 노출된 위험도에 비하여 보호대책 마련 및 제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자발적인 성매매라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를 경험한 경우에는 그 연령대에 당연히 받아야할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피해자로 간주해야 한다. 그렇지만 성매매에 관한 피해자 관점의 선행연구는 주로 여성학적인

1) 이 부분은 이유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측면에서 수행된 연구가 많았는데, 성매매를 성인지적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연령인지적인 측면은 소홀히 다루어질 수도 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경우, 성인여성 성매매와는 구별되는 연령 및 발달과정상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원 인프라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아동·청소년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소년가출과 성매매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 정책은 위기청소년 지원정책과 아동·청소년 성매매 정책이 분리되어 있고 인프라 역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정책과 인프라가 상호 연계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될 필요가 있다.

한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사후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는 사후적인 조치일 뿐 사전예방과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 동안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왔고, 특히 2010년부터는 청소년 대상 성매수자의 유인행위를 처벌해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경찰청의 안전드림사이트를 통한 신고프로그램도 운영해 왔으므로 이제는 이러한 정책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파악하여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할 시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가출 및 성매매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환경과 그들의 욕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 방지 대책과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 인프라의 차별화 및 위기청소년 지원 인프라와의 연계방안 마련을 통한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 성매수자의 재범방지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자 대책 등을 모색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을 제안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2. 연구추진체계

연구수행 단계별 추진 체계 및 내용은 다음 그림과 같다.

1단계 실행계획	자료수집 분석	1-2월	○ 선행연구 자료수집 및 분석
	정책협의회 개최	2월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에 관한 모색
	실행계획 수립 및 계획서 제출	2월	○ 실행계획 수립 ○ 실행계획서 제출
	문헌연구	3-4월	○ 이론적 배경 ○ 정책현황 ○ 외국사례
	예비조사 실시	4-5월	○ 현장전문가 의견조사를 위한 예비조사 실시
	조사계획 수립	6월	○ 조사계획 수립



2단계 중간보고 및 조사연구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6월	○ 중간보고서 작성 ○ 중간보고서 제출
	조사도구 개발	4-6월	○ 조사도구 개발 ○ 연구진 회의(수시)
	현장전문가 의견조사 실시	6-7월	○ 성매매 관련 시설 종사자 의견조사 실시
	면접조사 실시	7월	○ 피해 아동·청소년 심층면담조사 실시



3단계 최종보고 및 인쇄	조사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	8-10월	○ 현장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분석 ○ 성매매 청소년 면접조사 결과 분석
	최종보고서 제출	10월	○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예방대책 수립 ○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피해자 지원대책 수립 ○ 최종보고서 제출
	정책협의회 및 워크숍 개최	12월	○ 연구결과 발표 및 정책대안 모색
	최종보고서 인쇄	12월	○ 보완 및 최종보고서 인쇄

【그림 1-2-1】 연구수행 단계별 추진 체계 및 내용

3. 연구내용

첫째,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개념과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을 검토하고,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발생 및 피해 현황을 분석한다.

둘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의 관련 법령과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관련부처의 관련 정책현황 등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및 가출 등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령과 정책을 분석한다.

셋째,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가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대책 및 피해자 지원방안과 관련된 입법례와 정책사례를 수집해 분석한다.

넷째,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현장전문가 및 피해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 방지 대책,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자 대책 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다섯째,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으로써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 방지 대책,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자 대책을 제안한다.

4. 연구방법

첫째, 문헌연구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 및 공식 통계자료 등을 분석한다. 또한 외국의 관련 정책과 입법례 등에 관한 문헌자료를 살펴본다.

둘째, 조사연구²⁾로서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사용한다. 먼저 양적 방법으로는 성매매 관련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한다. 질적 방법으로는 성매매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해 욕구를 파악한다.

2) 구체적인 조사방법은 제4장 제1절 조사개요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셋째, 자문회의를 통해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협의회를 통해 정부의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워크숍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넷째, 국외출장을 실시해 정책현황과 입법례를 살펴보고, 주요 국가의 관련 정책 및 입법례로써 소개한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및 현황
2.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 2 장

이론적 배경

1.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및 현황³⁾

1)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매매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에 의하면,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성매매의 피해자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고,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성매매라는 용어 대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

3) 이 부분은 이유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아동·청소년이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말하고, 대상아동·청소년이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2)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현황

성매매사범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검거인원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에는 전년대비 검거인원이 급감하여 그 이후부터는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2006년 1월 법원의 불구속 수사 강화방침에 따라 성매매 사범의 구속률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성매매사범은 성매수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1-1 성매매사범 단속 현황 (단위 : 명)

구 분	검거인원	조 치		성매매 사범		
		구 속	불구속	업주·관련자	성매수자	성매매여성
2004년	16,947	1,606	15,341	2,824 (17%)	10,180 (60%)	3,943 (23%)
2005년	18,508	829	17,679	4,071 (22%)	11,474 (62%)	2,963 (16%)
2006년	34,795	569	34,226	3,653 (10%)	27,488 (79%)	3,654 (11%)
2007년	39,236	526	38,710	4,359 (11%)	29,991 (76%)	4,886 (13%)
2008년	51,575	544	51,031	6,032	39,071	6,472
2009년	73,008	633	72,375	9,501	54,405	9,102
2010년	31,247	575	30,672	4,437	21,436	5,374
2011년	26,136	228	25,908	5,142	16,025	4,969
2012년	21,123	235	20,888	-	-	-

* 2006년 1월 법원의 불구속 수사 강화방침에 따라 성매매 사범 구속률 감소

* 출처 : 경찰청 내부자료.

직업별 성매매사범 현황을 보면 피고용자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자영업자, 전문직, 공무원의 순으로 나타난다.

표 II-1-2 직업별 성매매사범 (단위 : 명, %)

구분	계	피고용자	전문직	공무원	자영업자	기타
2007년	39,236	21,358	903	223	7,848	8,904
2008년	51,575	25,042	827	229	10,537	14,940
2009년	73,008	40,269	1,837	266	15,044	15,592
2010년	31,247	15,733	758	175	6,240	8,341
2011년	26,136	12,808	531	90	5,132	7,575
2012년	21,123	8,866	342	84	4,276	7,555

* 출처 : 경찰청 내부자료.

성매매 사범의 연령대별 현황을 살펴보면 31~40세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대체로 21~30세, 41~50세, 51~60세, 18세 이하, 61~70세, 19~20세, 71세 이상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12년에는 19~20세의 수가 61~70세의 수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II-1-3 2008년~2013년 8월까지 성매매 사범 연령별 현황⁴⁾ (단위 : 명)

구분	계	18세 이하	19~20세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70세	71세 이상	미상
2008년	47,869	388	483	14,650	18,859	9,461	2,786	596	284	362
	100%	0.8	1.0	30.6	39.4	19.8	5.8	1.2	0.6	0.8
2009년	69,280	386	588	20,957	28,823	13,135	3,983	812	224	372
	100%	0.6	0.8	30.2	41.6	19.0	5.7	1.2	0.3	0.5
2010년	28,239	412	343	7,678	11,092	5,739	2,068	493	123	291
	100%	1.5	1.2	27.2	39.3	20.3	7.3	1.7	0.4	1.0
2011년	25,947	557	404	6,390	9,577	5,576	2,356	561	188	338
	100%	2.1	1.6	24.6	36.9	21.5	9.1	2.2	0.7	1.3
2012년	20,903	541	553	5,912	7,002	4,046	2,005	481	111	252
	100%	2.6	2.6	28.3	33.5	19.4	9.6	2.3	0.5	1.2
2013년 8월말	13,922	322	460	4,403	4,470	2,436	1,271	275	50	235
	100%	2.3	3.3	31.6	32.1	17.5	9.1	2.0	0.4	1.7

4) 유승희 국회의원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보도자료(2013.10.11)

청소년 대상 성매매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검거인원은 2007년에서 2010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부터는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검거대상별로는 성매수자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검찰송치청소년, 업주 등 관련자 순으로 나타난다.

표 II-1-4 청소년 대상 성매매 단속현황(총괄) (단위 : 명)

구 분	검거 인원	검 거 대 상 별			조 치	
		성매수자	업주등 관련자	검찰송치 청소년	구속	불구속
2007년	2,582	1,835	242	505	126	2,456
2008년	2,112	1,464	196	452	81	2,031
2009년	2,182	1,543	264	375	125	2,057
2010년	1,345	972	164	209	56	1,289
2011년	2,006	1,494	162	350	41	1,965
2012년	4,457	-	-	-	124	4,333

* 출처 : 경찰청 내부자료.

청소년 대상 성매매사범 중 인터넷 이용자 적발 현황을 보면 2006년에 비해 2007년 적발건수가 증가하였다가 2008년부터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II-1-5 청소년 대상 성매매사범 중 인터넷 이용자 적발 현황 (단위 : 건)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 8월
적발 건수	590	701	647	590	414	275

* 인터넷 성매매 알선사이트 단속 현황은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음

* 출처 : 경찰청 내부자료.

2.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⁵⁾

1)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유입요인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가출과 성매매를 하는 아동·청소년들의 특성을 밝히고 가출과 성매매로 밀어내는 요인을 탐색하고 그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여 왔다. 정혜원(2011b: 14)은 홍봉선, 남미애(2009)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성매매에 남아있게 하는 위험요인과 벗어날 수 있는 보호요인, 그리고 성매매에 재유입되도록 하는 위험요인과 재유입을 막는 보호요인을 개인적, 성매매관련, 관계적, 시설적 요인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표 II-2-1> 참조). 탈성매매에 대한 개인적 요인은 사회유대이론에서 말하는 관습사회 가치의 수용 (commitment)이 높음, 성에 대한 허용성이나 성매매에 대한 부정적 기대와 같은 성매매 관련요인, 강력한 사회적, 비공식적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의 존재, 더 나아가 자신에게 맞는 쉼터 및 실무자와의 만남, 심리적 안식처 역할을 해주는 쉼터의 존재 등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반면 성매매의 위험요인으로는 빈곤, 학교문제, 어린 시절 위험에 노출, 충동성, 가출 후 생활비가 없는 것이 개인적 차원에서의 위험요인이고, 성에 대한 허용도가 높거나 첫 성매매 연령이 낮을 때, 성행동에 대한 통제력이 낮을 때 성매매로 유입될 위험이 높아진다. 가출 시에 성매매경험을 한 또래 친구들을 만나거나 도움을 주면서 이용하고 착취하는 사람과의 관계유지가 관계적 차원에서의 위험요인으로, 마지막으로 시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시설에의 접근성이 낮은 경우, 그리고 시설입소 후 초기에 신뢰관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경우에는 성매매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5) 이 부분은 윤옥경(경기대학교 교수)이 집필하였음.

표 II-2-1 탈성매매와 재유입에 대한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구분	탈성매매		재유입	
	보호요인	위험요인	보호요인	위험요인
개인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에 대한 희망 - 인내심 - 학교졸업에 대한 의지 - 직업의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동성 - 학교중퇴 - 빈곤문제 - 가출해서 생활비가 없을 때 - 어린 시절부터 다중 위험에 노출됨 - 적절한 놀이 및 스트레스 해소방법 모름 - 적절한 아르바이트 찾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에 대한 열망 - 성숙 - 자신을 버티고 지탱하는 힘 - 한번의 성공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돈을 쉽게 벌려는 생각 - 돈과 자유, 놀이에 대한 향수 - 정신건강상의 어려움 - 무력감과 미래에 대한 준비없음
성매매 관련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에 대한 허용성 낮음 - 성행동에 대한 통제력 높음 - 성매매에 대한 긍정적 기대 낮음 - 성매매횟수 적음 - 첫 성매매 나이가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에 대한 허용성 높음 - 성행동에 대한 통제력 낮음 - 성매매에 대한 긍정적 기대 높음 - 성매매 횟수 많음 - 첫 성매매 나이가 적음 - 성매매 초기단계에 적절한 외부 도움 받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 기간 및 횟수가 적음 - 성매매로 인한 임신, 성병, 폭력 등 심각한 위기 경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 지속기간 길 - 인터넷상의 무차별적 유혹 - 성매매에 대한 긍정적 기대 높음
관계적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지지(시설친구, 남자친구, 실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잦은 친구들의 유혹 - 가출 시 성매매 경험 있는 또래 만남 - 도움도 주면서 이용하고 착취하는 또래 및 주변사람과의 관계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사람과의 만남 - 가족문제에 휘둘리지 않고 적절한 분리와 관계유지 - 주변의 긍정적 시선과 기다려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약한 사회적 관계로 인해 위험한 사회적 관계라도 유지하고자 함 - 주변의 낙인 - 부정적인 가족관계의 유지
시설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에서의 적절한 통제(외출조절) - 심리적 안식처로서의 쉼터 - 자신에게 맞는 쉼터 및 실무자 발견 - 실무자 측의 심리적 여유와 인내 - 자립을 위한 지원금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과의 초기 신뢰관계 구축 못하고 이탈됨 - 시설에 대한 정보 부족 - 시설에의 접근성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순간에 시설에 입소 - 반복적, 지속적 교육과 지원 -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자기살보기 - 심리적 지지자의 역할 - 시설생활로 인한 성매매 위험차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에게 맞는 시설 찾지 못함 - 시설생활이 잘 맞지 않음 - 안정적이지 못한 시설 분위기

* 출처 : 홍봉선·남미애(2009), <표Ⅶ-1>(표Ⅶ-2)를 정혜원(2011b:14)이 재구성.

다른 한편 재유입을 저지할 수 있는 개인적 보호요인은 자신에 대한 열망, 자신을 버티는 힘 등 내적인 강인함과 의지이며, 성매매로 임신이나 폭력 등의 위험을 경험한 경우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억제하는 보호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주변의 긍정적 시선과 기다려주는 의미있는 사람이 있다면 관계적 요인으로 성매매 재유입을 저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진다. 적절한 순간에 시설에 입소하고, 반복적, 지속적 교육과 지원,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자기 삶을 들여다 보기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성매매 재유입을 막을 수 있다. 반면에 돈을 쉽게 벌려는 생각, 무력감과 미래에 대한 비전없음 등은 개인적 차원의 재유입 위험요인이며, 주변의 낙인이나 부정적인 가족관계는 성매매 재유입을 촉진하는 위험요인이 된다. 또 시설생활이 잘 맞지 않거나 안정적이지 못한 시설환경도 성매매로 재유입될 가능성을 높이는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

정혜원(2011b: 113-120)은 이러한 각 차원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영향력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일반 여자청소년과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97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가출 및 성매매를 경험한 집단, 가출만 경험한 집단, 가출 및 성매매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으로 나누어 설문한 결과 가출 및 성매매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서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성매매경험이 있는 친구가 많았고, 이들의 첫 성경험은 자발적이라기보다는 강제적으로 또는 술에 취해서 한 경우가 많았고 첫 경험의 연령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과 성매매를 경험한 집단에서 성폭행 피해 경험이 매우 높았다는 사실은 상당히 우려할 만한 일이며 성매매와 성폭력이 “성적 피해”라는 하나의 통합된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또 가출과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가부장적 의식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사회적 역량, 자기존중감, 자기통제, 법에 대한 태도, 성역할, 부모애착, 학교만족도 등이 모두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의 상호작용 효과를 탐색하였는데, 가정방임과 같은 위험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의미있는 타인과의 결속과 보호 등 관계적인 지지의 보호요인이 있다면 성매매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홍봉선(2010: 10-14)은 청소년성매매를 ‘성착취’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며 따라서 성매매 아동·청소년은 학대피해자로서 통제와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 복지적 관점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로 나가도록 만드는 환경적 요인을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첫째, 가족요인으로 부모불화와 이혼, 가족

불화, 애정결핍, 학대, 둘째, 학교요인으로 학교부적응, 중도탈락, 학교에 대한 부정적 태도, 셋째, 친구요인으로 일탈, 비행친구와의 접촉을 넷째, 물질만능주의, 혼전순결에 대한 개방적 태도 등 성윤리의 하락, 성산업의 발전과 인터넷의 발달을 사회적 요인으로 보았다.

2)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피해유형과 정도

청소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복지적 관점에서 성매매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가출과 성매매 실태를 실태조사나 연구보고서를 통해 파악하고, 선행연구 등을 종합해서 가출과 성매매 요인을 찾아내고 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최근에 와서 아동·청소년의 가출과 성매매를 그 원인 뿐 아니라 가출과 성매매로 이어지는 경로(path)와 과정(process)을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다.⁶⁾

아동·청소년 가출과 성매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련의 젊은 여성학자들은 참여관찰과 인터뷰 방법을 통해 가정으로부터 탈출하여 거리생활을 시작하여 성매매에 진입하게 되는 과정을 질적으로 탐구하는 한편,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보는 우리사회의 공식적인 관점과는 달리 여전히 가출과 성매매 경험을 가진 청소년에 대해 보호와 지원 보다는 비난과 제재의 눈길을 주는 비공식적이지만 강력한 시각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민가영(2009: 173-187)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둘러싼 논쟁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청소년성보호법이 성매매 청소년을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성매매를 조장한다는 시각을 소개하면서 이것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가 자발성에 기초하고 있다는 전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 반대시각에서의 청소년 성매매는 겉으로는 자발적인 선택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해 강제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처벌이 아닌 보호적 차원에서의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관점이 존재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처벌/보호 논쟁과 그 근거에 있는 자발성에 대한 논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청소년들의 삶을 진정으로 들여다보고 이해하며 그들의 삶속에서 성매매가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서울, 경인지역 쉼터와 중학교, 실업계 고교를 접촉해서

6) 윤선미와 이나영(2012:126)은 가출원인이나 가출의 결과에 초점을 둔 많은 연구들은 양적 연구방법에 기반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삶을 세밀하게 들여다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8명의 사례를 스노우볼링 기법으로 찾아내어 1여 년에 걸친 인터뷰를 통한 현장기술지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청소년들의 성매매 참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처해있는 사회문화적 조건과 그것에 대한 청소년들의 해석, 그리고 그러한 환경에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하위문화를 분석하여 그들의 행위를 맥락화(contextualize)할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례에 대한 분석결과, 사회구조적 하위문화의 전형적인 두 가지 요소를 발견하였다. 하나는 학력이 계급이동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현실을 간파하면서 학업을 지속해야 할 동기와 욕구가 크게 감소하게 되고 그래서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를 상실하게 되어 남들이 보기에는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다. 또한 미래에 대한 전망상실은 현재를 지향하는 지금 여기(here and now orientation)에 집중하게 만든다. 사치품 등의 소비를 위한 비용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것은 본질적 상승이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소비를 통해 '계급이동 모방을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한다. 다른 하나는 탈규범성이라고 표현된 것으로서 "기존의 지배적 가치와 규범을 작동시키는 두 가지 원리인 유예와 훈육을 거부함으로써 그것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탈각시킨다." 현재의 욕망을 유예시키고 훈육과 규범에 동조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로서 성매매를 이해하는 것이다. 거리친구들과의 일시적이고 비지속적 관계는 이들의 불법성, 반규범성을 부치기는 힘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매매로 유입되지만 성매매는 결과가 아니라 역동적이고 유동적인 과정으로서 단일하고 고정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니며 과정의 어느 시점에서 자기주도적으로 삶을 계획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계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사례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표 II-2-2 청소년 성매매의 성격과 맥락

성격	맥락
적극적 성매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의 계급이동기능 상실에 대한 간파 - 미래에 대한 전망상실 - 소비행위를 통해 자신의 계급이 이동한 것처럼 일시적으로 느끼는 계급이동 모방 현상
탈규범성: 비유예, 반훈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예, 훈육에 대한 동기상실

* 출처 : 민가영(2009:182)

이자림(2008: 88)은 세 명의 성매매청소년을 대상으로 내러티브 인터뷰(narrative interview)를 통해 그들의 생애경험을 분석하고 있는데, 연구자는 그들을 “긴 세월 모진 풍파를 겪어내온 척박한 삶의 생존자”로 묘사하고 있다. 그들의 생애경험은 첫째, 모성의 조기박탈과 가정의 붕괴로 애착형성이 안되며 인간관계를 통한 신뢰형성에 장애를 만들어낸다. 둘째, 소속감과 역할의 부재, 그리고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셋째,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와 관심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성매매청소년들은 “매순간 사랑을 믿고 또 인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한다”(이자림, 2008: 90)는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 사회는 이들을 위한 진정한 복지와 법률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혜원의 또 다른 연구(2011a: viii-ix)에서는 여성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가출과 이어지는 성매매의 과정을 질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15세에서 18세까지의 가출 또는 성매매의 경험이 있는 26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결과 성매매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폭력과 무관심의 공간인 가정이 그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상실하고 더 이상 행복과 안전의 역할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집을 나오게 된다는 것을 밝혔다. 가출 후 이들이 경험하는 공포는 생존에 대한 두려움과 남성폭력에 대한 공포라고 하며, 그 중에서도 남성 폭력의 공포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공포를 벗어나기 위해서 비슷한 처지의 또래끼리 친구관계를 맺게 되지만 이들은 “친밀하면서 신뢰하지 못하는” 성격을 띠게 된다고 한다. 가출을 하고 거리의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성을 접하게 되는데 성적 욕망과 성적 강제가 혼합이 된 왜곡된 성을 경험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성적으로 타락한 여성이라는 사회적 낙인을 주위로부터 부여받고 자기 스스로 부여하게 된다고 한다. 성폭력과 성매매가 혼합되어 나타나는 성행동을 경험하면서 자신들이 성적 피해의 대상이 되는 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성적으로 문란하고 난잡한 여성으로 부정적 낙인을 감수해야 하고 순결이데올로기적 자포자기에서 성매매로 유입되게 되는 위치에 놓이게 되는 점에 대해 지적한다.

김연주(2011: 241-242)는 성매매소녀들의 가출과 성매매유입과정을 사회적 배제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청소년 성매매는 지난 10년간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되는데, 가장 큰 변화는 가격 하락이라고 본다. 가출하는 소녀들의 수가 증가하고 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억압이 많이 완화된 상태에서 십대 여성의 희소성이 감소함에 따라 가격하락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조건만남의 형태로 개인적으로 성매매에 나서면서 신체적, 물질적 위해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다시 포주 또는 보도방이라는 중간조직책이 관여하는 산업형 성매매로 회귀하고 있다고 본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지와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주로 처지가 비슷한 또래와의 폐쇄적인 관계망을 유지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는 다는 명목으로 산업형 성매매 관리자들과 연관되면서 사회적 배제는 더 깊어진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해결책은 긍정적 관계의 사회적 확장으로서의 새로운 인간관계 구축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돌봄공동체로서의 쉼터와 그룹홈에서 찾고 있다.

페미니즘의 렌즈를 통해 가출소녀들의 삶을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한 윤선미와 이나영(2012: 128)은 “젠더, 계급, 연령이 중층적으로 교차하면서 만들어내는 성매매 소녀들의 억압적 경험에 주목하고 성매매를 권하는 사회에서 저소득층 소녀에게 가능한 선택이란 어떤 의미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앞서 언급한 자발성 논쟁과 맥을 같이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들은 서울, 광주, 부산의 쉼터에 거주하는 성매매 경험소녀와 이들로부터 받은 친구들을 합해 1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삶과 생존전략을 살펴보았다. 인터뷰 결과 가출을 하여 거리로 나온 소녀들은 십대라는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를 당하거나 임금체불, 장시간 노동, 성폭력 피해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계급) 가정 출신의 어린(연령) 여성(젠더)이 거리에서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다고 보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김고연주(2011: 190)는 성매매 청소년들이 공식적으로는 피해자의 지위를 가지고 보호의 대상으로 간주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어린 소녀들이 자발적으로 남성과 조건만남을 통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고 쉽게 돈을 벌려고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이것은 이들 성매매 청소년들의 거리의 삶과 성매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편협한 사고가 만들어진다고 분석한다. 성매매 청소년들은 공식적인 피해자의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고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실상은 형사사법 기관에서 조차 언어적 희롱과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을 인터뷰를 통해 밝혀내고 있다(김고연주, 2011: 209).

부정주(2010: 25-32)에 따르면 많은 성매매 청소년들이 성구매자로부터 성폭력피해나 돈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상당히 경험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질까바

또는 그들을 범죄자로 보는 주변의 인식 등으로 인해 신고를 포기하는 경향이 있고, 경찰당국도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만 전담하는 부서가 많지 않아 타 업무와 함께 병행하다보니 범죄의 심각성에서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아동청소년 성매매 수사과정에서 수사관들이 그들을 성착취의 피해자,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전히 그들이 성적인 문란함과 일탈의 대상, 즉 일탈자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한다. 더불어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구매한 남성에 대한 처벌이 아직은 미약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는데, 그들 대부분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있고, 유기징역의 경우는 단지 전체의 9.7%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또 초범자의 경우 존스쿨 8시간은 매우 부족하며, 적어도 보호처분을 받는 성매매 청소년이 40시간의 수강명령을 받는 것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교육시간을 부과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3)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최근에 청소년들의 가출과 성매매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연구가 수행되었다. 박운환·정혜원(2013: 26-28)은 이들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이 일정한 패턴을 가질 것이라고 보고 공간분석을 통한 정책방안의 도출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에 지배적인 범죄학 이론으로 거론되고 있는 일상생활이론이나 합리적 선택이론 등에 기초하여 물리적 공간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범죄예방을 달성하려고 하는 상황적 범죄예방전략(situational crime prevention strategy)을 성매매에 적용해 보려는 이 연구는 GIS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교통망, 유흥, 숙박업소의 분포와 성매매 발생장소, 가출시 거처 등을 면접자료에 표시하는 기법을 활용하였는데, 분석결과를 보면 서울경기관에서 청소년 성매매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은 서울남서권과 한강이북의 지역이었으며 인천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서부권 위성도시에서도 청소년 성매매 군집이 확인되었다. 가출시 숙식장소와 성매매 피해장소는 공간적으로 군집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가출시 숙식장소는 거의 대부분이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내에 모여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는 발견은 청소년 성매매의 발생장소와 쉼터 위치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존재하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매매 청소년들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곳에 쉼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새로운 쉼터시설을 마련할 경우

이러한 공간분석의 결과를 활용해야 할 필요가 크다 하겠다.

Michell, Janis and David(2005: 258-262)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들을 유혹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성인남성들을 색출하기 위해 경찰관이 십대인 척하며 채팅룸에 들어가 성범죄가 일어나기 이전에 성인남성을 성범죄 미수범으로 검거하는 이른바 적극적, 예방적 수사(proactive investigation)가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1998년에 미국 연방 소년사법과 청소년비행예방국(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JJDP)에 의해 창설된 아동범죄근절 태스크 포스팀에 2005년에는 49개주가 참여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적극적, 예방적 경찰수사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먼저 성범죄가 발생하기 이전에 검거된 성인남성들이 실제 성매매를 한 남성들과 비교해서 위험성이나 특징에서 유사한가? 둘째, 함정수사(entrapment)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는가? 이러한 사전수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 범죄를 일부러 만들어내는 것인가? 엄청난 예산과 시간을 투입하고 있는 데 이러한 수사방식이 의미있고 효과가 있는가? 경찰은 채팅방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실행범위나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가 거의 없다. 아동청소년성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방안이 동시에 실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제 3 장

정책 현황과 외국사례

1. 현행 정책 및 법령
2. 주요 국가의 관련 정책 및 입법례

제 3 장

정책 현황과 외국사례

1. 현행 정책 및 법령

1) 현행 정책⁷⁾

(1) 아동·청소년 성매매 정책의 변화추이

아동·청소년 성매매 정책은 아동·청소년 정책이면서 성매매 정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성매매 정책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두 정책의 변화과정을 모두 살펴보아야 한다.

정부의 청소년 기구는 1964년 내무부를 시작으로 지난 50여 년 동안 9차례나 정부조직과 소속을 옮겨 다녔다. 청소년성매매 정책의 변화추이와 관련해서는 1997년 청소년보호법의 제정, 2000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제정, 2005년 국무총리실 청소년위원회의 설치를 중요전환기 시점으로 선정해서 살펴볼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의 제정 이전에는 ‘교정과 선도’(1948~1997)를 중심으로 청소년정책이 이루어졌다.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활동을 청소년정책의 중심개념으로 부각시킨 시기로 체육부 청소년국(이후 체육청소년부 청소년정책조정실)에서 청소년정책을 담당하였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91). 청소년정책의 범주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구분을 해서 다룬다는 개념이 별도로 성립되지 않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97년 청소년보호법 제정 이후에는 청소년의 ‘보호와 육성’(1998~2005)이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았다. 일반청소년을 비롯하여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청소년의 환경을

7) 이 부분은 강지명(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이 집필하였음. 주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의 ‘정책목표 및 추진체계’를 참고하여 작성하였고, 여성가족부 담당공무원과의 면담을 통해 보완하였음.

정책대상으로 하여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이후 문화체육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으로 변천)에서 청소년정책업무를 담당하였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93).

2000년 2월 3일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청소년의 성매매와 관련된 내용은 명시적인 청소년보호정책의 일부가 되었다. 특히 성매매대상청소년의 처벌이 아니라 보호와 지원을 규정한 것은 청소년보호의 시각이 심분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정 이후 탄생한 보호와 육성의 이원화 정책은 통합된 조직의 필요성을 낳았다고 한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93). 2005년 4월 27일 청소년정책 전담기구로 청소년위원회(2006년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명칭변경)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설치되어 통합된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5년 이후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은 ‘자율과 참여’라고 할 수 있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6: 94).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008년 2월 29일에는 -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 개편되었다가 2010년 3월에 조직개편에 따라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어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 개편되었다.

성매매관련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면 1961년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제정하여 1962년에는 성매매 영업이 가능한 104개 특정지역을 허용하였다. 이를 내무부, 법무부, 보사부가 공동 관리하였고, 1972년에는 지역사회정화목적으로 특정지역화를 폐지하여 정책적으로 불법화 하였으나 실효성은 없었다.

이후 1995년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개정해 성매매여성을 강제 수용하여 직업교육을 하는 정책에서 인성변화위주의 선도정책으로 전환하였다. 2001년 여성부의 신설로 보건복지부에서 성매매여성의 관리업무가 이관되고, 2002년에는 관련부처 합동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수립추진의 결과로 2003년에 국무총리 산하 민·관 합동 성매매방지기획단이 설치되었다(이춘화 외, 2007: 131~132). 2004년에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를 토대로 여성부에서는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2005년에는 성매매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였으며 성매매피해자의 신용회복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2006년에는 그룹홈 설치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고, 의료·법률·직업훈련의 통합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1997년 12월에는 1366 여성긴급전화번호가 위기여성상담 특수전화번호로 지정되었으나 2001년에서야 전담직원의 배치와 365일 24시간 운영체제가 구축되었다(이춘화 외, 2007: 131~133).

(2) 아동·청소년 성매매 정책현황

현재 아동·청소년정책 업무의 주무부처는 여성가족부이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매매관련 정책은 청소년보호업무가 아니라 성매매정책업무의 일부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2012년 한 해 동안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은 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단속하는 등의 실질적인 업무는 행한 적이 없다고 한다.⁸⁾ 현재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정책은 중앙부처 주도의 일회적이고 캠페인적인 정책보다는 지자체나 일선 경찰의 연속성있는 역할이 강화되어 있다. 특히 '청소년 성매수 유인 관련 업무'는 법규정의 신설을 통해서 일선 경찰단계에서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아동·청소년 성매매 정책은 성매매관련 정책 속에서 살펴볼 수 있다. 성매매정책은 '성매매의 예방과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법규정의 집행'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변화순 외, 2011: 3).

성매매 예방차원에서는 성매매 예방 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육, 연구, 대중매체 등을 통해서 성매매가 범죄라는 국민인식을 강화하며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상담·의료·법률지원을 국가적 차원에서 하고 있으며 교육과 고용기회의 확대를 통해 자활할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있다. 이밖에 알선업자, 건물주에 대한 법집행, 성매매 범죄관련 수사역량을 강화, 신변중 성매매 및 해외 성매매 방지, 성매매수요차단을 위한 성구매자 처벌은 법규집행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내용이다. 세 가지 정책차원별 세부내용을 소관부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중앙부처 정책의 접근 차원과 방향

가)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예방

예방적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성매매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비는 여성가족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 이루어진다.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의 운영은 여성가족부가 하고 성매매방지 및 관련 법령의 보완 및 정비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등의

8)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원과의 전화인터뷰. 2013년 7월

관계부처에서하고 관련법령의 유기적 연계 체계의 정비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의 관계부처에서 하고 있다.

성매매예방을 위한 두 번째 정책내용인 성매매방지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는 성매매방지 홍보 및 왜곡된 성문화를 개선하는 정책과 성매매 방지정책의 공감대를 확산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성매매 방지 홍보 및 왜곡된 성문화의 개선은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관계부처에서 하고 있으며 성매매 방지정책에 대한 국민공감대의 확산은 여성가족부가 맡고 있다.

성매매 예방차원의 세 번째 정책내용은 성매매 예방교육의 활성화이다. 대상별로 특화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활성화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에서 각각 주관하고 있다. 이때 필요한 성매매 예방교육 전문강사 인력 양성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고 있다.

성매매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성매매방지정책의 이행을 점검하고 지자체별 성매매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는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나)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부분의 정책은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성매매피해 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인프라를 강화하는 일, 탈성매매여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내실화 하는 일, 성매매피해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을 강화하는 일, 외국인 여성 성매매피해자를 보호하는 일,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일을 올해의 성매매 피해자 보호분야 과제로 하고 있다.

성매매 피해 여성보호 및 지원인프라 강화를 위한 ‘상담소 및 지원시설기능의 강화’는 국토교통부와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다. 탈성매매여성에 대한 보호와 지원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해서 피해자의 특성에 맞는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의료 법률지원과 치료회복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탈북성매매여성의 자활인큐베이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성매매 피해여성의 신용회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 강화는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상담지원센터를 통한 의료 및 법률자문 지원을 강화하는 것,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지원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 가출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차단을 강화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외국인 여성의 성매매 피해자 보호는 외국여성을 고용하고 있는 유흥업소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가 맡고 있다. 이때 성매매 피해 외국인 여성을 보호하고 지원을 체계화하는 것은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국내외의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성매매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보호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법무부는 성매매 피해자 상담실을 설치하여 운영해서 전국의 검찰청으로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다) 아동·청소년성매매 관련 법규의 집행

법무부는 성매매 관련 전담검사 운영을 활성화하고 경찰청은 성매매 전담 수사인력을 확충하고 법무부와 경찰청은 성매매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서 성매매관련 수사역량을 강화한다.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상시단속을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무부와 경찰청의 역할과 함께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등의 관계부처에서는 관련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을 통해서 성매매 집결지 폐쇄 및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집결지의 성매매여성의 현장상담이나 자활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역할은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있다.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은 성매매 알선업자 및 건물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성매매알선 직업소개소를 단속하고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 부처에서는 경찰 및 관계 공무원의 유착고리를 근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청소년 고용업소의 점검 및 청소년 성매매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고용업소 성매매 범죄의 점검과 단속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 성매매 알선 근절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성매매알선행위의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 고용노동부가 협력하고 있는데 비해서 청소년 고용업소의 점검 및 청소년 성매매의 단속과정은 여성가족부만 관여함으로써 인해서 여성가족부만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휴대폰, 인터넷 상의 성매매 유인광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유해 휴대전화 성매매 정도의 차단을 맡고 있으며 인터넷 성매매의 알선 및 음란정보 등의 유해환경 차단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청이 맡고 있다.

해외성매매의 방지를 위해서 외교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해외성매매 방지를 위한 체계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교부와 법무부,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해외성매매의 실태를 조사·홍보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 업체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와 안전행정부는 성매매 수요 차단을 위해서 성구매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신·변종 성매매 단속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법무부, 경찰청,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는 자유업종의 성매매 적발업소의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에서는 성매매 범죄수익환수 조치를 강화하고 국세청에서는 성매매 관련 탈세 추징을 강화하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안마시술소 등의 마사지 업소를 개방적 공간화 하고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성매매 방지 정책사례

가출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차단은 여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다. 가출청소년의 성매매 유입차단의 강화를 위한 각 중앙부처의 노력이 아쉬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제시된 예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도 서울시의 ‘주민 힘으로 지키는 여성안전마을’ 14곳 선정하기 사업 중에서 중랑구의 사례를 아동·청소년 성매매방지를 위한 정책사례로 들 수 있다. 여성안전마을은 갈수록 증가하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 문제에 대해 마을 주민과 NGO, 마을 내 경찰, 구청 등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주민들이 직접 파수꾼이 되어 여성들이 안전한 마을을 조성하는 것이다. 중랑구의 ‘초록상상’은 다가구 주택 등 거주지역 주변에 게임방, 주점 등 유흥업소가 많아 10대 가출 청소년이 늘어나는 등 여성폭력으로 안전하지 않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시스템이 없다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강동구 ‘소냐의 집’에서는 아동 눈높이에 맞춘 여성폭력예방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성매매집결지와 유흥업소들이 유치원과 도서관 등의 아동통학로에 인접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아동 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여성폭력 예방인형극 등을 통해서 아동의 눈높이에 맞추어 예방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주민, 성문화센터, 상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여성 전문가 인력

풀을 형성하여 땅 내에 발생한 여성폭력 문제에 대한 연합공동체의 구축을 통해서 즉각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⁹⁾

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세부 정책별 현황

가) 아동·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지원 기본체계

아동·청소년 성매매피해자 지원은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2004년 9월부터 시행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성매매 피해여성의 보호와 자립, 자활을 지원하여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막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성매매 피해지원 목적은 설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목적부터 성인성매매 여성과는 다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성매매집결지 여성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중심으로 시작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은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에 대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알맞지 않다는 사실은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아동·청소년 성매매피해자지원 정책은 성인 성매매피해자지원정책의 일부로 수립되어 집행되고 있으므로 성인 성매매피해자 지원정책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지원 기본체계는 <표 III-1-1>과 같이, 상담소나 경찰서를 통해서 긴급구조가 이루어지고 상담을 통해 의료 및 법률의 지원 필요성에 의해서 지원이 이루어진다. 시설에 입소하면 지원시설을 이용하게 되고 지원시설을 통해서도 의료 및 법률지원이 가능하다. 시설퇴소 후에는 그룹홈에서 거주하고 창업 및 취업을 통해서 자립을 도모하고 있다.

9) 서울시청 보도자료(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 2013년 4월 25일 조간용

표 III-1-1 성매매 피해자 지원체계



* 출처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2013.6.10방문)

이러한 단계별 성매매 피해자 지원에 있어 지원시설은 심리안정, 인성변화, 진학 및 취업교육, 직업알선, 숙식제공 등을 목적으로 성매매피해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시설에는 상담소,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그룹홈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청소년은 청소년지원시설을 이용한다. 아동·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지원시설은 2012년 8월 기준으로 14개소이며 기본입소기간을 1년으로 하여 19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표 III-1-2 성매매피해자 지원 시설별 현황 (2012년 8월말 기준, 단위 : 개소)

계/구분	지원시설			그룹홈	자활지원센터	상담소	대안교육 위탁기관
	일반	청소년	외국인				
88개소	25	14	1	11	9	26	2

* 출처 : 여성가족부(201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332

일반지원시설은 대다수의 시도에 있지만 청소년지원시설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남, 경남에 총 14개소가 있다.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에 거주하는 성매매 청소년에게 청소년지원시설 입소의 실질적인 의미는 성매매청소년으로 하여금 본인의 거주 지역을 떠나서 시설입소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타 지역으로 입소를 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시 고려를 해보아야 할 것이다. 성장기 청소년에게 연고지를 떠난 시설의 입소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고려해볼 필요성이 있다.

표 III-1-3 성매매 청소년 피해자지원시설의 지역별 현황 (2013.1.1.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계	11	5	4	1	2	2	1	4	1	-	1	1	-	1	3	1	39
일반	6	3	2	1	1	1	1	4	1	-	1	1	1	1	1	1	25
청소년	5	2	2	-	1	1	-	-	-	-	-	-	1	-	2	-	14

* 출처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2013.6.10방문\)](http://www.mogef.go.kr/(2013.6.10방문))

하지만 2010년부터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운영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서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청소년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학습 기회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2010년 이용인원은 47명, 2011년 이용인원은 81명이다.

표 III-1-4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입소·이용현황 (단위 : 명)

연도	시설별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일반·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외국인)	청소년 대안교육 위탁기관	그룹홈	자활지원 센터	성매매피해 상담소	비 고
2004~ 2005	1,729	-	-	-	359	16,336	
2006	1,967	-	-	27	148	7,685	
2007	1,873	-	-	52	288	7,252	
2008	1,770	-	-	65	304	8,124	
2009	1,772	27	-	73	560	9,892	
2010	1,811	55	47	80	564	7,360	
2011	1,613	39	81	84	561	6,846	

* 시설 입소·이용인원 = 전년말 보호인원 + 연중 입소·이용인원

* 출처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나) 성매매 대상 청소년의 위탁교육처리절차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치료재활 교육 및 사이버 또래상담은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 성보호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치료재활 교육을 위한 위탁교육처리절차는 '경찰-검찰-여성가족부-위탁교육기관' 순으로 이어진다. 성매매대상청소년이 발견되면 경찰에서 성매매대상 청소년을 수사하여 소년보호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송치한다. 검사는 교육상담이수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소년부에 송치할 수도 있다. 교육상담이수 명령을 내리는 경우 여성가족부에 교육과정 이수결정을 통보하여 전국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한다(40시간). 성실하게 이수하였는지 불성실하게 이수하였는지에 관한 교육결과는 검사에게 보고되며 성실하게 이수한 경우 교육수료 후 6개월간 사후관리가 이루어진다.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교육을 지원하고 진로 및 진학을 지도하고 시설입소를 연계해 줄 수 있다. 또한 의료 및 법률적 지원을 위한 기관 연계도 가능하다.

표 III-1-5 성매매 피해청소년 교육 실적 (2012년 12월말 기준, 단위 : 명)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교육실시	94	197	205	255	372	355	364

* 출처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성매매피해청소년 교육현황을 살펴보면 해마다 인원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대상 성매매의 최초경로가 인터넷 채팅이라는 경찰청 통계자료를 감안하면 정보통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터넷 성매매가 용이해졌고 이로 인해 청소년대상 성매매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최초경로는 인터넷 채팅의 경우가 78.4%에 달한다.

표 III-1-6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최초경로(2010년)

구분	계	인터넷채팅	유흥단란	티켓다방	스포츠마사지	기타
인원수(명)	518	414	14	4	4	92
백분율(%)	100	78.4	2.6	0.8	0.8	17.4

* 출처 : 경찰청 내부자료

위탁교육은 청소년성장캠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국에 걸쳐 교육기관이 선정되어 있다.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부산, 광주, 전북, 대구에서 위탁교육이 가능하며 지적장애 청소년의 경우 서울의 '평화의 샘' 한 곳에서만 지원 가능한 실정이다. 장애청소년에 대한 성매매의 발굴 및 지원대책의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표 III-1-7 성매매 피해청소년성장캠프(교육) 위탁기관

지 역	사업수행주체(대표자)
중 앙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서 울	새날을여는청소년센터
인 천	인천성산사랑의집
경 기	성매매근절을위한소리회
강 원	춘천길잡이의집
대 전	대전광역시여자청소년센터
부 산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광 주	광주YWCA
전 북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대 구	대구여성회
서 울	평화의샘(지적장애청소년)

* 출처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2013.6.10방문\)](http://www.mogef.go.kr/(2013.6.10방문))

다) 청소년 성매매 예방과 성매매 피해자 조기발견 정책

청소년 성매매 예방과 성매매 피해자 조기발견 정책의 일환으로서의 가출 청소년 정책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가출 등으로 인해 성매매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을 반영하여 2013년 정책 추진방향은 성매매 피해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다. 교육의 대상을 청소년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지원시설, 대안학교 등 관련 시설에서 추천한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사이버포래상담 등을 통한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의 긴급구조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가) 가출청소년의 보호와 지원

청소년 성매매 예방과 성매매 피해자 조기발견 정책은 특히 가출 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에 비중을 두고 정책이 전개되고 있으며, 성매매피해청소년에 대한 정책의 입장에서는 가출 청소년을 일시 보호하여 생계로 인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정책이다. 가출청소년을 일시보호하고 상담하여 교육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그들의 비행과 탈선을 예방하고 가정으로 복귀하게 하거나 사회로의 적응 지원이 목적이다. 컴퓨터상담 및 아웃리치 강화로 청소년쉼터의 운영실적은 이용인원이 4년 전에 비해 63.1% 증가하였다.

표 III-1-8 청소년쉼터 운영 실적 (2012년 12월말 기준, 단위 : 개소 수, 백만원, 명)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쉼터 수 ¹⁰⁾	72	76	81	83	83	92
예산(국비)	4,165	4,639	4,651	5,874	6,262	7,287
쉼터 수	72	76	81	83	83	92
이용 청소년 수 (연인원)	234,271	235,209	245,653	267,117	400,533	405,204
일시	234,271	235,209	245,653	267,117	109,616	106,109
단기·중단기	(8,733)	(9,019)	(9,673)	(9,350)	290,917 (11,657)	299,095 (11,764)

* 괄호 안은 연간 입소 실인원

* 출처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쉼터의 유형과 기능의 현황을 살펴보면, 일시쉼터의 경우 전국에 13개소로 가출예방과 조기발견, 초기개입을 목적으로 한다. 24시간에서 일주일 이내의 일시보호가 이루어지고 가출하거나 거리를 일시적으로 배회하는 청소년을 이용대상으로 한다. 차량과 같은 이동형과 청소년유동지역의 경우에는 고정형이 있다. 일시 보호 및 거리상담을 통해서 위기개입상담을 할 수 있다. 진로지도와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가 제공되며 가출청소년이 구조되거나 발견되면 청소년쉼터와 연결해준다. 기본적인 먹거리, 음료수 등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10) 2013년에는 여성가족부에서 103개의 청소년쉼터를 지원하고 있고, 2014년에는 6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구분	일시쉼터	단기쉼터	중장기쉼터
개소 수	13	49	30
지향점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	보호, 가정 및 사회복귀	자립 지원
이용기간	24시간~7일 이내 일시보호	3개월 내외 단기보호	2년 내외 중장기보호
이용대상	가출·거리 배회청소년	가출청소년	자립의지가 있는 가출청소년
위치	이동형(차량), 고정형(청소년 유동지역)	주요 도심별	주택가
핵심기능	일시 보호 및 거리 아웃리치(상담)	사례관리를 통한 연계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
기능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 -가출청소년 구조·발견, 청소년쉼터와 연결 -먹거리, 음료수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등	-가출청소년의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치료서비스 및 예방 활동 전개 -의식주 및 의료 등 보호서비스 제공 -가정 및 사회복귀를 위한 가출청소년 분류, 연계·의뢰 서비스 제공 등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 및 자립지원 등 특화 서비스 제공

* 출처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단기쉼터의 경우 49개소가 있으며 청소년의 보호와 가정으로의 복귀 및 사회적응을 목적으로 한다. 3개월 내외의 단기보호를 통해서 가출청소년의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이나 치료서비스가 이루어진다. 의식주와 의료 등의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 및 사회복귀를 위해 가출청소년을 분류하여 타 기관과의 연계의뢰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

중장기 쉼터의 경우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 및 자립지원 등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전국에 30곳이 있으며 자립을 목적으로 한다. 2년 내외의 중장기 보호가 이루어지며 자립의지가 있는 가출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다. 위치도 단기쉼터가 접근의 용이성을 위해서 주요도심별로 자리 잡고 있다면, 중장기 쉼터는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다.

(나)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정책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는 지역사회 청소년 사회안전망(Community Youth Safety-Net)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의료·자립 등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가정, 학교 및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위기청소년 통합지원과 연계협력을 비롯하여 상담 및 활동 지원한다. 청소년 전화인 1388을 운영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를 하고 있다. 교육지원과 자립지원 등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표 III-1-10 지역별 운영 현황 (2013년 4월 기준)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시·도	16개소	16개소	16개소	16개소	16개소	16개소
시·군·구	65개소	81개소	150개소	170개소	174개소	180개소

* 2013년 기준 16개 시·도 및 180개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 출처 : 여성가족부 내부자료

2013년 4월 전국 시군구 180개소를 중심으로 CYS-net은 운영되고 있으며 상담 및 정서적 지원서비스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초생활을 비롯한 경제적 지원, 여가 및 문화 활동지원, 교육 및 학업지원의 순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표 III-1-11 서비스별 제공 내용 (2012.12월말 기준, 단위 : 건)

구분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사회적 보호	기초생활 및 경제지원	교육 및 학업지원	자활 지원	의료 지원	법률자문 및 권리구제	여가 및 문화 활동지원	합계
2009	504,540	43,517	109,428	18,210	3,387	5,431	1,283	29,793	715,589
2010	882,001	62,456	225,721	84,535	11,544	6,254	1,728	129,255	1,403,494
2011	1,102,858	64,147	237,072	146,621	18,565	8,513	4,981	191,135	1,773,892
2012	1,094,027	67,300	228,533	172,502	15,486	6,872	1,409	189,707	1,775,836

* 출처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종합정보망

(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청소년 동반자(관련 전문가)가 위기 청소년을 대면하여 심리적·정서적 지지와 지역사회 자원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위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 동반자는 1:1의 개입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며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례 판정 후에 이루어진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은 정서적 지원, 연계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동반자 근무형태로는 전일제(주40시간 월 184만원), 분기당 12사례 관리시간제(주12시간 시급 13,700원), 분기당 6사례 관리의 형태가 있다. 청소년동반자의 경우에도 상담 및 정서지원이 가장 많은 사례유형이며 기초생활을 비롯한 경제적 지원, 사회적 보호, 여가 및 문화활동의 순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졌다.

표 III-1-12 청소년 동반자 지원 사례 유형

(2012년 6월말 기준, 단위 : 건)

구분	계	상담 및 정서지원	사회적 보호	기초생활 및 경제적 지원	교육 및 학업지원	자활	의료	법률자문 및 권리구제	여가 및 문화활동
2009	486,963	400,566	19,221	44,070	6,675	988	2,687	796	11,960
2010	537,516	446,226	20,877	49,686	6,517	996	2,061	497	10,656
2011	584,464	492,903	18,593	51,688	8,201	1,097	2,109	767	9,106
2012	649,455	562,019	18,638	50,413	6,147	513	1,571	391	9,763

* 출처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종합정보망

라)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체계 강화정책

여성가족부에서는 유해환경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유해업소와 유해매체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유해업소 감시는 최근 신·변종 유해업소 증가 등에 따른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청소년 유해환경 이동점검 및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단속하는 과정에서 가출청소년을 구호하기도 한다.

1999년 12월부터 대통령 지시를 근거로 유해업소와 사범단속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보호중앙점검단은 청소년성보호(성매매, 강요행위 등) 등의 5건의 단속 실적을 가지고 있다(2012년 12월 31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음란·유해정보의 청소년 유통 차단을 위해서 청소년 유해매체 환경 감시체계가 존재한다. 토렌트, P2P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배포 등과 같이 청소년유해정보가 대량 유통될 때 체계적·시의적 대응하고 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과 같은 신종매체를 통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의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심의기관, 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신속한 유해정보 차단시스템 구축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 감시강화를 위한 모니터링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마) 성매매 대상청소년의 보호처분 정책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해서 처벌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한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고 있다. 대상 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또는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집, 학원, 교습소,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보호·재활센터의 장은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하였을 경우 관할 법원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그러나 성매매대상 아동·청소년의 보호사건 수는 따로 집계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¹¹⁾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집행을 위해 통계를 구분하여 생산할 필요가 있다. 일반 범죄나 비행을 저지른 보호사건과는 별도로 성매매보호사건의 통계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11) 법무부 답변

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 정책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성매수 유인행위처벌 조항이 신설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동행위는 형사처벌하게 되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서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성매매의 미수까지 형사처벌의 범주에 들어오게 된 것이다. 성인대상 성매매는 미수를 처벌하지는 않는다. 특히 인터넷 채팅 등에서 성매수 제의가 있는 경우 경찰청 안전 드림센터(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에서 24시간 온오프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경찰청 안전 드림센터는 각 지방 경찰청과 연결되어있어서 해당경찰관서에서 즉각적인 수사개시를 할 수 있으며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특히 포상금제도를 2012년 3월 16일부터 도입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온라인매체 등을 통한 홍보 등을 강화해 옴으로써 아동·청소년 성매수 유인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왔다. 그러나 인터넷대표 신고사이트를 관장하고 있는 경찰관서에서도 청소년 성매수 유인관련 자료는 따로 통계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은 아동·청소년 성매수 유인에 대한 정책수립과 현실이 유리되어 있음을 뜻한다.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법제도는 반드시 평가를 통해서 끊임없는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자 정책현황

가. 엄벌정책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해서 국가는 성인성매매보다 훨씬 더 강경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성인성매매는 미수범규정이 없지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범주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의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이다.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가 규정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이다. 그러나 13세 미만자와의 성교행위는 성매매가 아니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받게 된다.

나. 신상공개 및 고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할 경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판결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신상정보 공개명령은 법원이 판결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다. 이때 공개하도록 제공되는 등록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여부가 그 내용이다. 또한 법원은 판결로 공개명령 기간 동안 고지정보를 고지 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영유아보육법상의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상의 유치원장, 초·중등교육법 상의 학교장,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의 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의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장, 아동복지법상의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상의 청소년수련시설의 장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고지명령)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한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나 그 밖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고지명령의 집행은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다.

다. 신고에 대한 포상금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동·청소년 성매매나 성매매유인 및 권유행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 신고(고소 및 고발을 포함함)에 대한 포상금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신고 된 사람이 해당 범죄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에 지급한다. 하지만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나 신고대상 범죄의 실행에 관련된 사람이 신고하는 등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유아교육법 상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상의 학교, 의료법 상의 의료기관,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 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 상의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의 학원 및 교습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가정폭력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성폭행피해자보호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상의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상의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보호·재활 센터’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하는 의무가 있다(동법 제34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동법 제13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7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동법 제14조) 또는 알선 영업행위 등(동법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이 포상금액이다.

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유아교육법 상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상의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의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의 교습자(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및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의교습자),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보호·재활센터, 청소년활동진흥법상의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 쉼터, 영유아보육법상의 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복지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주택법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중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의료인은 제외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경비업법상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영리의 목적으로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활동의 기획·주관·운영을 하는 사업장(청소년활동기획업소), 영리의 목적으로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 또는 제공하려는 의사를 가진 자를 위하여 훈련·지도 또는 상담을 하는 사업장(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아동·청소년의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특정 시설의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아동·청소년과 해당시설 등의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 사이에 업무상 또는 사실상 위력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시설 등, 아동청소년이 선호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시설 등으로서 해당 시설 등의 운영과정에서 운영자·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자에 의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등)에는 취업이 제한된다.

(4) 요약 및 시사점

집창촌의 성매매피해자를 대상으로 시작한 ‘시설입소와 직업교육’이라는 성매매피해자지원 및 보호정책의 기본틀은 아동·청소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아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예방 및 피해지원 정책으로 적합하지 않은 실정이다. 2010년부터 시작된 대안교육 위탁

운영의 수요의 증가는 청소년성매매피해자에 대한 개별 분석·지원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성매매피해자지원에 대한 정책이 청소년성매매피해자에 특화되어 사례별로 수립되지 않은 이유를 청소년의 성매매피해자의 수가 성인에 비해서 적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매매피해자에 대해서는 단 한 명이 형사사법 기관에 인지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시스템의 존재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는 형사사법기관에 인지된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의 수가 실질적인 성매매의 수를 가늠할 수 있는지, 성매매피해청소년을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아동·청소년성매매정책의 주관부서의 부재가 대두된다. 성매매를 한 대상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구매한 아동·청소년 모두 다양한 부처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 어느 한 정책부서가 전담할 수는 없다. 대상아동·청소년이라도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가 기본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으며 아동복지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업무와도 관련이 되어 있다. 대상아동·청소년이 소년보호사건처리절차를 거쳐야할 경우 가정법원에서 이를 담당한다. 다시 말해서 아동·청소년 성매매관련 업무는 성매매예방 및 대책의 주제 범주에서 다루기보다는 ‘아동·청소년’이라는 인적 자원을 관장하는 타위기관에서 개입의 정도와 단계를 조율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아동·청소년보호정책에 입각한 대표적 대응책인 대상아동·청소년을 보호 처분하는 제도는 별도의 통계조차 잡히고 있지 않고 있다. 이것은 보호처분결정시 ‘성매매’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보호처우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례별 조사분석과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단체로 캠프를 실시하고 사회성 발달을 위한 교육을 받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개개 아동·청소년에 대한 원인의 진단과 처우가 필요하다. 그리고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19세까지 시설입소 기간을 연장하는 것 이외에는 지속적인 지원에 대한 정책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주된 대응책인 위탁교육은 청소년성장 캠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애청소년의 경우 서울의 평화의 샘 한 곳에서만 지원 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장애아동·청소년의 성매매는 실태 파악을 통해서 꾸준히 관찰해서 성매매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대응책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다.

전체적으로 아동·청소년성매매사건발굴을 위한 정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의 비율을 감안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지원 대책의 첫 단추는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 있다. 파악된 성매매아동 청소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여성가족부의 몫이지만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은 법무부와 경찰청의 몫일 것이다. 2012년에 여가부 중앙점검단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단속실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부처의 업무해태가 아니라 일선 형사사법기관으로 그 역할이 이양되고 일선의 역할이 강화되었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통계자료가 산재되어 있고 통계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청소년성매수 유인과 같이 최근에 법제화된 정책은 우선 순위로 통계데이터의 정리 및 구축을 통해 정책평가가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통계자료의 추출이 힘든 실정이다. 또한 성매매대상청소년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상청소년으로 분류되어 보호사건처리절차를 거쳐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기타의 범죄와는 통계분류가 되어야 한다. 현재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축을 받는 미성년자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 미성년자만 통계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성매매를 통해서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소년의 인원수를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여성가족부 대안교육위탁생의 수를 통해서 가늠할 수 있을 따름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성매매에 관한 내용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유인은 처벌 대상이라는 점이 들어있지 않은 성범죄 및 성매매예방 교육 자료도 다수 존재한다.

아동·청소년성구매자 정책이 엄벌 일변도를 달리고 있다. 엄벌화 이외의 정책마련이 필요하며, 당근책 마련이 요구된다.

2) 현행 법령¹²⁾

(1) 청소년의 성매매피해자성 인정

가. 의의

2004. 9. 23.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11731호; 2013. 4. 5. 타법개정, 이하에서는 ‘성매매처벌법’이라고 한다)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285호; 2012. 2. 1. 일부개정, 이하에서는 ‘성매매방지법’이라고 한다)에서는 ‘성매매피해자’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¹³⁾의 시행으로 폐지된 (구)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하면 성매매피해자 개념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판매자의 경우 대부분 범죄자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에 해당할 뿐이었지만, 현행법은 성판매자와 관련하여 성매매범죄자(‘성매매한 자’)와 성매매피해자(‘성매매된 자’)로 양분하여 전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가하는 이원적 입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총 4가지 유형의 성매매피해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청소년¹⁴⁾은 그 자체로써 성매매피해자성이 인정되고 있다(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4호 다목). 이는 다른 유형의 성매매피해자 정의 규정에서 요구하는 별도의 요건, 예를 들면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할 것,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할 것,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될 것,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할 것 등의 추가적인 사항이 필요 없이 청소년이기만 하면 그 자체로써 성매매피해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무에 있어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성매매피해자의 유형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성매매피해자의 개념정의와 관련하여 현행 성매매특별법의

12) 이 부분은 박찬걸(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이 집필하였음.

13)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법을 모두 지칭할 때에는 성매매특별법이라고 한다.

14) 아동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지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시행 하에서 과연 성매매된 자(성매매피해자)와 성매매한 자(성매매범죄자)의 구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¹⁵⁾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은 성매매피해자로서 이들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하는데(성매매처벌법 제6조 제1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친족 또는 지원시설¹⁶⁾·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연계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성매매처벌법 제6조 제2항).

한편 성매매피해자로 분류되는 청소년성매매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은 ‘대상아동·청소년’이라고 호칭되어(아청법 제2조 제7호), 아청법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호칭하는 것(아청법 제2조 제6호)과 구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상아동·청소년’에게만 인정되는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나. 형사처벌의 금지

가) 규정의 내용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처벌하지 아니한다(아청법 제38조 제1항). 이는 성매매처벌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아청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아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 때문이다(성매매처벌법 제5조).

15) 왜냐하면 성매매된 자로 분류되면 법의 보호를 받아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성매매한 자로 분류되면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양자의 구별기준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3. 5. 31.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로 제안된 성매매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246)에 의하면 ‘성매매피해자’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라고 정의하여, 성판매여성 모두를 일정한 조건과 상관없이 비범죄화하는 입법안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16) 지원시설의 장은 입소자 및 이용자의 사회 적응능력 등을 기를 수 있는 상담, 교육, 정보 제공 및 신변 보호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성매매방지법 제9조 제2항). 이는 구법과 달리 ‘이용자’의 개념을 별도로 명시하여, 희망자의 형편에 따라 시설에서 숙식을 하지 않고도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가능성을 높였다. 관련시설 입소·이용 경력자인 경우 前 입소·이용시설 장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있는 자를 선정하고, 초기 대상자는 상담 및 심사를 통하여 자활의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용기간은 입소기간에 준하여 최장 1년 6개월이며, 이용가능인원은 입소 정원의 50% 이내이다.

나) 규정의 검토

아청법과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청소년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보호처분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는 소년보호주의의 이념에 따라 성매매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보호와 선도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성매매청소년에 대하여는 원천적으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호처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 청소년은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박찬걸, 2012: 332). 이를 위하여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보호처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보호시설이나 상담소의 확충과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는 작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특히 직업형·기업형 성매매청소년,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사기행각을 일삼는 청소년 등에 대하여는 보호처분의 가능성과 정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다. 보호사건 등으로의 처리

가) 검사에 의한 송치 여부 결정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한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아청법 제38조 제2항). 또한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데(아청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여성가족부장관은 사법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하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아청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그리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업무를 성매매방지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청소년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청소년보호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 등의 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아청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검사는 아청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와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대상아동·청소년에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으며(아청법 제39조 제1항), 검사는 이에 따른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또는 재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하여야 한다(아청법 제39조 제2항). 이 경우에 그 교육 또는 상담시간을 40시간 내외로 하고¹⁷⁾,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대상자를 통보하여야 한다(아청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이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는데, 여성가족부장관은 교육과정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아청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아청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은 교육과정 등의 운영을 위탁받은 시설(이하 '교육수탁시설'이라고 한다)에 교육과정 등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아청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교육수탁시설의 장이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는 중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대상아동·청소년의 질병치료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그 질병치료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아청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와 학대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아청법 제45조와 제46조에 따른 보호시설과 상담시설은 아청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교육·상담 등 대상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 대상아동·청소년의 치료·안정회복과 사회복지를 돕는 프로그램 운영, 대상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을 위한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아동·청소년 성보호 전문가 교육, 그 밖에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데(아청법 제48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보호시설이나 상담시설의 업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아청법 제48조 제2항).

이에 따라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는 여성가족부장관 및 교육수탁시설의 장은 교육과정 등의 이수명령을 받은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과정 등을 마친 경우 대상아동·청소년의

17) 이에 반하여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일명 John School의 교육시간은 2012. 3. 1부터 강화된 내용에 따르면 총 16시간에 불과하다(박찬걸·송주영, 2013: 473).

교육과정 등 이수 여부 및 대상아동·청소년이 교육과정 등의 이수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교육이나 상담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의 사항을 검사와 여성가족부장관(교육수탁시설의 장만 해당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아청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그리고 검사나 여성가족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교육수탁시설의 장에게 대상아동·청소년의 교육과정 등의 이수 상황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아청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이 경우에 검사는 교육과정 등의 이수명령을 받은 대상아동·청소년이 교육과정 등의 이수를 거부하는 경우 또는 교육과정 등의 이수 시 지켜야 할 사항을 현저히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보호 및 재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교육수탁시설의 장의 의견을 들어 교육과정 등의 이수명령을 취소하고, 대상아동·청소년을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다(아청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나) 법정대리인 등에 의한 통고 여부 결정

대상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 또는 아청법 제3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 법원 소년부에 '통고'를 할 수 있다(아청법 제38조 제4항). 이는 소년법 제4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소년에 대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지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는 제도와 비교할 수 있는데, 소년법상의 통고제도도 그 운영실적 내지 실효성이 미미한 상황에서 아청법상의 통고제도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보호처분을 부과하기 위한 소년부의 통고제도를 활용하기 보다는 여성가족부 산하 교육기관이나 상담기관에 인계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 소년부 판사에 의한 보호처분의 결정

(가) 의의

아청법 제39조 제1항 또는 아청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법원 소년부 판사는 그 아동·청소년에게 소년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 또는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아청법 제40조 제1항). 먼저 소년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에 따라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보호관찰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는데(아청법 제40조 제2항), 법원이 수강명령을 병과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수강명령 집행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아청법 제40조 제5항).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수강명령을 집행하는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탁하려는 경우 그 대상기관 또는 단체를 추천할 수 있다(아청법 시행령 제11조).

다음으로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에 따른 위탁의 기간은 6개월로 하되, 법원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 6개월의 범위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아청법 제40조 제3항), 법원 소년부 판사는 위탁기간이 만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그 위탁을 종료할 수 있다(아청법 제40조 제4항).

(나) 보호시설로의 위탁

성매매방지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청소년지원시설,¹⁸⁾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제1항에

18) 청소년지원시설이란 청소년인 성매매피해자들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성매매방지법 제5조 제1항 제2호)을 말하는데, 청소년지원시설의 장은 청소년이 19세가 될 때까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성매매방지법 제5조 제3항).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는 청소년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성매매방지법 제6조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청소년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성매매방지법 제6조 제2항). 청소년지원시설의 구체적인 업무를 살펴보면, ① 숙식 제공, ②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③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청소년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는 아청법 제7조부터 제18조까지의 범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대상아동·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 시설과의 연계 및 위탁, 그 밖에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 대상아동·청소년의 보호·자립지원, 장기치료가 필요한 대상아동·청소년의 다른 기관과의 연계 및 위탁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아청법 제45조).

(다) 상담시설로의 위탁

성매매방지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¹⁹⁾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은 아청법 제7조부터 제18조까지의 범죄 신고의 접수 및 상담, 대상아동·청소년과 병원 또는 관련 시설과의 연계 및 위탁, 그 밖에 아동·청소년 성매매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아청법 제4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라) 보호처분의 대상

성매매피해자의 4가지 유형 가운데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4호가목, 나목, 다목의 후단, 라목에 우선하여 다목의 전단이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해당 청소년에게 가목, 나목, 다목의 후단, 라목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별도로 존재할 경우에는 다목의 전단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야 한다(박찬걸, 2012 : 349). 이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의료지원, ④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⑤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⑥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⑦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사회보장 관련 법령에 따른 급부의 수령 지원, ⑧ 기술교육(위탁교육을 포함한다), ⑨ 다른 법률에서 지원시설에 위탁한 사항, ⑩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⑪ 진학을 위한 교육 제공, ⑫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성매매방지법 제7조).

1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성매매방지법 제10조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성매매방지법 제10조 제2항). 이러한 상담소에는 상담실을 두어야 하며, 이용자를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보호실을 운영할 수 있는데 (성매매방지법 제10조 제3항), 주요 업무로는 ① 상담 및 현장 방문, ② 지원시설 이용에 관한 고지 및 지원시설에의 인도 또는 연계, ③ 성매매피해자의 구조(救助), ④ 성매매방지법 제7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⑤ 다른 법률에서 상담소에 위탁한 사항, ⑥ 성매매피해자들의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 있다.

또는 교육수강제도 등의 부과 여부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하여 성매매를 강요당한 청소년이 존재한다면 다목의 전단이 아니라 가목이 적용될 것인데, 이 경우에도 아청법상 청소년에게 인정되는 특례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다. 생각건대 아청법상 청소년에 대한 특례규정은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다목의 후단, 라목 중 어느 하나에도 저촉되지 않는 청소년(소위 ‘자발적’ 성매매청소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 법정대리인 등에게 통지 및 인계

가) 규정의 내용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실을 대상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아청법 제38조 제3항). 하지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친족 또는 지원시설·성매매피해 상담소와의 인계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성매매처벌법 제6조 제2항).

나) 규정의 검토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아청법에서는 ‘대상아동·청소년을 발견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실을 대상아동·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성매매여성이라는 요건 이외에 별도의 강요적인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이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성매매청소년이라는 요건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입증이 용이하여 발견한 때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자의 경우에는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생활 보호라는 통지의 제외사유를 설정하고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들의 사생활 보호보다는 보호조치를 보다 중하게 여겨 특별한 사정이라는 통지의 제외사유를 설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청소년을 포함한 성매매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친족이나 관련기관에 인계할 경우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박찬걸, 2012 : 346). 또한 성매매처벌법상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친족 또는 지원시설·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인계’의 경우에는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생각건대 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일정한 시설로 ‘인계’하는 것은 통지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참고로 「성매매여성 조사 및 인권보호지침」(경찰청 여성청소년과-3072(2004. 9. 6.)) 제14조에 의하면 ‘담당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성매매피해자의 의사를 물어 친족 또는 지원시설·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인계(관련시설 등의 소개, 연락, 통지 포함) 등 성매매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성매매피해자의 의사에 의한 인계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지원시설의 장과 상담소의 장은 성매매피해자 등이 밝힌 의사에 반하여 지원시설에 입소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규정(성매매방지법 제13조 및 성매매방지법 시행령 제3조)도 참고할 수 있겠다.

마. 신뢰관계인의 동석

가) 규정의 내용

법원은 신고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이나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고(성매매처벌법 제8조 제1항), 수사기관은 신고자 등을 조사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본인·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성매매처벌법 제8조 제2항).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청소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이나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성매매처벌법 제8조 제3항).

나) 규정의 검토

성매매처벌법 제8조에서 말하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란 주로 탈성매매를 지원하는 상담소, 지원시설 등의 관계자가 될 것이다. 성매매청소년의 경우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때문에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뿐만 아니라 상담소 등 지원기관에서의 진정서 제출이야말로 그들의 법적·행정적 조치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신고자등을 조사할 때에는 직권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는 경우와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청소년에 대하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이나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사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사생활의 보호 차원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신뢰관계인이라고 할지라도 동석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바. 심리의 비공개

가) 규정의 내용

법원은 신고자등의 사생활이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결정으로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성매매처벌법 제9조 제1항), 증인으로 소환 받은 신고자 등과 그 가족은 사생활이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성매매처벌법 제9조 제2항). 재판장은 이러한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여부, 법정 외의 장소에서의 신문 등 신문의 방식 및 장소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데(성매매처벌법 제9조 제3항), 심리의 비공개에 관하여는 법원조직법 제57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성매매처벌법 제9조 제4항).

나) 규정의 검토

성매매청소년은 아청법 제13조 제1항의 범죄와 관련하여 불가벌적 대항범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성매수남성의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참고인 내지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득이하게 법원으로부터 소환통보를 받고 출석할 의무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성매매청소년의 증인신문의 방식을 비공개로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증인신문의 방식을 비공개로 한다고 할지라도 법정에서의 출두가 강제되어진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서면을 통한 신문 대체 또는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조서 내지 진술서로의 대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러한 서면을 통한 방식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하여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증인으로서의 출두가 강제되어야 할 것이다.

(2) 청소년성매수 관련 범죄의 개념

가. 규정의 내용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뿐만 아니라(아청법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아청법 제13조 제2항). 여기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행위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아청법 제2조 제4호).

나. 규정의 검토

2009. 6. 9. 아청법 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청소년성매수죄와 독립적으로 청소년성매수유인죄와 청소년성매수권유죄를 신설한 바 있다. 이는 기존 청소년성매수행위의 형사처벌 형태가 기수범만을 처벌하는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보다 실효적인 청소년의 성보호 및 예방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청소년 성매수행위의 전(前)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유인행위와 권유행위를 별도의 규정을 통하여 처벌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청소년성매수유인죄와 청소년성매수권유죄는 모두 목적범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청소년성매수유인죄에서의 유인(誘引)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청소년을 피어 현재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는 청소년성매수권유죄에서의 말하는 권유(勸誘)의 '유(誘)'와 동의어라고 할 수 있다(박찬걸, 2009 : 278). 그러므로 청소년성매수유인죄와 별도로 청소년성매수 권유죄를 둘 필요성은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청소년성매수유인죄만이 남게 되는데, 이에 대한 법정형이 형법상 미성년자약취유인죄와 비교하여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미성년자약취유인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청소년성매수유인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이러한 불합리에 더하여 2013. 4. 5. 형법 개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88조 제2항에서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아청법이 형법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이라는 점에서 현행법상 성매매를 목적으로 청소년을 유인하면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청소년성매수 유인행위에 대하여 형법을 적용하게 된다면 청소년성매수죄의 법정형보다 훨씬 높은 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므로 형법 제287조 및 제288조 제2항, 아청법 제13조 제1항 및 제13조 제2항의 법정형을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3) 청소년성매매신고포상금제도

가. 규정의 내용

기존에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 운영과는 달리 (구)아청법상에는 별다른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가 인정되지 않아 아청법과 비교하여 일반법적인 성격을 지니는 성매매처벌법상의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를 준용하여 신고나 고소 등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었다. 하지만 청소년성매매죄의 불법성을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처의 일환으로 2011. 9. 15. 단행된 아청법 일부개정을 통하여 아청법 제46조의2를 신설하여 별도의 청소년성매매신고포상금제도를 두게 되었다. 이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청법 제8조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과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아청법 제59조).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신고된 사람이 해당 범죄로 기소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 지급하지만(아청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① 아청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② 아청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사람이 신고하는 등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범죄의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아청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포상금 지급 사유의 발생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아청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여성가족부장관은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 지급조서 및 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아청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는 해당 신고 사건의 처리 결과(기소, 기소유예)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한다(아청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한편 여성가족부장관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아청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아청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제31조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액분만 환수한다)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아청법 시행령 제32조).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내로 하되, 그 세부적인 지급액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데(아청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아청법 제13조의 범죄에 대한 포상금은 70만원, 아청법 제8조, 제14조 및 제15조의 범죄에 대한 포상금은 100만원으로 한다(아청법 시행규칙 제10조). 하지만 신고자가 해당 범죄의 신고와 관련하여 성매매처벌법 제28조에 따른 보상금 또는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이 아청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른 포상금보다 큰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받은 금액이 아청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른 포상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아청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나. 규정의 검토

가)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와와의 비교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2항 제3호, 제18조 제3항 제4호, 제18조 제4항, 제22조의 범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성매매처벌법 제28조 제1항), 이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성매매처벌법 제28조 제1항 제2항). 이와 같이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 중 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이 행한 성매매 관련 범죄, ② 업무관계·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 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범죄, ③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의 범죄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신고의 대상이 모든 성매매관련행위가 아니라 특정한 행위라는 범위가 상당히 협소하지만, 아청법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 모두를 신고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순성매매 행위를 신고보상금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국가재정의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이와 대조적으로 아청법 제13조 제1항뿐만 아니라 아청법 제13조 제2항의 위반행위까지도 신고보상금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나)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11. 9. 15. 아청법에 도입된 청소년성매매신고포상금제도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행위가 은밀한 형태를 취하면서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동 제도가 가지고 있는 다음의 몇 가지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개선한다면 보다 나은 제도로서의 정착이 가능하다고 본다.

첫째, 포상금의 액수를 늘려 적극적인 신고를 권장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70만원 또는 100만원의 포상금액은 청소년성매매의 근절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완수하기에는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할 것인데, 국가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반대논거는 청소년성매매죄의 법정형에 하한형량제를 도입하여 불법성을 가중하고 있는 현재의 입법태도에 역행하는 인식의 부족에서 등장하는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 특히 아청법 제13조 제1항에서 청소년성매매죄의 법정형 가운데 벌금형 부분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조정되었는데, 동 범죄로 거두어 들이는 벌금액의 일부분을 신고포상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안해 볼 만하다. 2004년도에 논의된 성매매방지법 제정안 제20조에 의하면 성매매 강요·알선·광고행위 등의 처벌이 확정되어 불법수익이 몰수·추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3~15%의 범위에서 신고자 내지 자수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명문의 규정을 통하여 신고포상금의 집적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 동시에 신고포상금의 금액을 범률에 명시해야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²⁰⁾

둘째, 현행과 같이 정해진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할 것이 아니라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정한 다음, 구체적인 포상금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신고의 정확성, 당해 사건의 적발과 적정한 처리에 기여한 공로, 범행 적발의 난이도, 범죄의 경중과 규모, 몰수·추징될 범죄수익

20) 2011. 10. 21. 법무부에 성매매신고보상금 운영실적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접수번호: 1477465), 당시까지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 운영실적이 전혀 없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 2004. 9.부터 시행된 성매매처벌법상의 신고보상금제도가 지난 7년여 동안 단 한 번도 운영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었다.

등의 액수, 신고로 인한 범인검거 및 피해자 구조 여부, 신고대상이 된 범죄에의 관여 여부 등 여러 정황을 참작하여 공정하게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성매매처벌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및 성매매처벌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서와 같이 신고포상금지급신청은 당해 사건의 담당검사의 승인을 얻어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익명 또는 가명’으로의 신청이 가능한데, 이의 주된 이유는 조직범죄가 개입된 것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록 조직범죄가 개입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신원을 노출하기 꺼리는 신고자들을 위한 배려적인 차원에서 익명 또는 가명으로의 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신고율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현행 신고포상금은 신고가 접수된 범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기소유예처분이 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비록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하는 등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고로 인하여 범죄의 주요 증거가 확보되거나 당해 청소년의 구조에 현저히 기여한 때에는 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성매매처벌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참조).

다섯째, 아청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범죄의 실행과 관련된 사람이 신고하는 등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데(아청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청소년 성매매 관련 신고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포상금 지급대상 제한의 범위를 축소해야 할 것으로 본다(박선영·박찬걸, 2012: 192). 왜냐하면 아청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청소년성매매의 실행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개념이 다소 애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성매매 관련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이후의 단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그 이전의 시기인 예비 또는 음모의 단계에 있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 요약 및 시사점

이상에서 논의한 청소년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현행법령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성매매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보호시설이나 상담소의 확충과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특히 직업형·기업형 성매매청소년, 조건만남을 빙자하여 사기행각을 일삼는 청소년 등에 대하여는 보호처분의 가능성과 정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보호처분을 부과하기 위한 소년부의 통고제도를 활용하기 보다는 대상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등의 유관기관에 인계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본다.

셋째, 성매매청소년은 원칙적으로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다목의 후단, 라목에 우선하여 다목의 전단이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해당 청소년에게 가목, 나목, 다목의 후단, 라목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별도로 존재할 경우에는 다목의 전단 적용이 배제된다.

넷째, 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일정한 시설로 '인계'하는 것은 통지의 경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수사기관이 신고자 등을 조사할 때에는 직권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할 수 있는 경우와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청소년에 대하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이나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사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사생활의 보호 차원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신뢰관계인이라고 할지라도 동석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여섯째, 청소년성매수권유죄에서의 말하는 권유(勸誘)의 '유(誘)'는 '유인'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성매수유인죄와 별도로 청소년성매수권유죄를 둘 필요성은 없다. 그렇다면 청소년 성매수유인죄만이 남게 되는데, 이에 대한 법정형이 형법상 미성년자약취유인죄 또는 성매매목적의 약취유인죄 등과 비교하여 볼 때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바,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할 수 있도록 법정형의 조정이 필요하다.

일곱째, 아청법 제13조 제1항에서 청소년성매매죄의 법정형 가운데 벌금형 부분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조정되었는데, 동 범죄로 거두어들이는 벌금액의 일부분을 신고포상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안해 볼 만하다. 또한 신고포상금지급신청은 당해 사건의 담당검사의 승인을 얻어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2. 주요 국가의 관련 정책 및 입법례

1) 독일²¹⁾

(1) 성매매규제

가. 규제주의

독일은 1927년 이래 개인적인 성매매를 합법으로 규정하고 대신 이에 대한 사회적 피해를 규제하는 규제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1963년 연방법원은 성매매로 인한 소득도 과세 대상으로 판시하였지만 민법상 성매매는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무효인 계약으로 간주되어 민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이로 인해 독일의 규제주의 정책은 국가가 성매매를 허가해주면서 동시에 성매매 종사자의 착취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이은애·김재광, 2006: 82).

그러자 성매매종사자들의 법적 지위 향상과 권리의 보장을 위해 2001. 12. 20. 성매매행위를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하는 법률인 ‘성매매종사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Gesetz zur Regelung der Rechtsverhältnisse der Prostituierten : Prostitutionsgesetz, ProstG)이 제정되어 2012. 1. 1.부터 시행되었다. 성매매 종사자의 의료보험, 실업급여, 연금제도 등 사회보장적 수혜와 성매매 종사자의 노동3권 인정 및 성판매매자의 고용, 공급행위 등이 규정되었다. 이로 인해 첫째, 성매매가 더 이상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둘째, 과거에는 성매매를 조장하는 것도 처벌받았으나, 현재는 성매매 종사자를 착취하는 것이 처벌되며, 셋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성매수인을 고소할 수 있으며, 넷째, 성매매 종사자는 의료보험, 실업보험 또는 연금 등을 포함해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되었다(김민아, 2006: 15).

그러나 ‘성매매종사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ProstG)의 제정을 통해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성매매 종사자는 여전히 차별과 편견,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실제로 성매매 종사자는 보험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노조결성도 사회적 인식 때문에

21) 이 부분은 김정환(시립대학교 교수)이 집필하였음. 독일사례는 독일출장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반영해 집필하였음.

꺼려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성매매 종사자의 80%에 해당하는 외국인 여성에 대한 법적 승인이나 지원은 ‘성매매종사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ProstG)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다(김민아, 2006: 16·20). 독일에서 성매매 종사자의 대부분은 외국인 여성인데, 경찰은 인신매매의 근절을 위해서 불법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김민아, 2006: 19).

‘성매매종사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ProstG)에 의거하여, 개인은 숙박, 거주 및 부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성매도인을 고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세금납부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개인이 성매도인을 고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성매도인의 개인적이고 경제적인 자립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이어야 한다. 개인적 혹은 경제적 종속형태로 성매도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0a조(Ausbeutung von Prostituierten, 성매도인 착취)에 의하여 처벌된다. 그 외에도 포주행위(Zuhälterei, 독일형법 제181a조), 금지된 성매매의 수행(Ausübung der verbotenen Prostitution, 제184e조)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각 도시의 특성에 맞게 성매매 금지지역을 선포할 수 있는데, 인구 2만 이하의 지방자치단체는 도시 전체에 대하여 성매매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인구가 2만에서 5만의 경우에는 지역 전체 혹은 일부에 대하여, 인구 5만 이상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일부에 대하여 성매매를 금지할 수 있다(이은애·김재광, 2006: 85). 일단 성매매 금지구역이 선포되면, 성매매 종사자들의 근무영역은 그 나머지 영역으로 한정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질서위반법(Gesetz über Ordnungswidrigkeiten, OWiG) 제120조22)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그 외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는 광범위하게 형사 처벌되고 있다. 아동에 대한 성적 남용(Sexueller Mißbrauch von Kindern, 독일형법 제176조), 아동에 대한 중한 성적 남용(Schwerer sexueller Mißbrauch von Kindern, 독일형법 제176a조), 아동에 대한 성적 남용치사(Sexueller Mißbrauch von Kindern mit Todesfolge, 독일형법 제176b조),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적행위

22) § 120 Verbotene Ausübung der Prostitution, Werbung für Prostitution

(1) Ordnungswidrig handelt, wer

1. einem durch Rechtsverordnung erlassenen Verbot, der Prostitution an bestimmten Orten überhaupt oder zu bestimmten Tageszeiten nachzugehen, zuwiderhandelt oder
2. durch Verbreiten von Schriften, Ton- oder Bildträgern, Datenspeichern, Abbildungen oder Darstellungen Gelegenheit zu entgeltlichen sexuellen Handlungen anbietet, ankündigt, anpreist oder Erklärungen solchen Inhalts bekanntgibt; dem Verbreiten steht das öffentliche Ausstellen, Anschlag, Vorführen oder das sonstige öffentliche Zugänglichmachen gleich.

(2) Die Ordnungswidrigkeit kann mit einer Geldbuße geahndet werden.

조장(Förderung sexueller Handlungen Minderjähriger, 독일 형법 제180조),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성적 남용(Sexueller Mißbrauch von Jugendlichen, 제182조), 미성년자 위협적인 성매매(Jugendgefährdende Prostitution, 제184f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나. 성매매에 대한 형사처벌

성매매에 대한 형사처벌의 규정을 살펴보면, 독일 형법 제176조²³⁾에서는 ‘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성적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독일 형법 제176a조²⁴⁾에서는 제176조에 해당하는 ‘행위자가 5년 이내에 그러한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18세 이상인 자가 아동과 성교를 하거나

- 23) 독일형법 제176조(아동에 대한 성적 남용) ① 14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성적 행위를 하거나 14세 미만 아동이 자신에 대하여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한 자는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아동으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하여 성적 행위를 하거나 제3자가 아동에 대하여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발한 자도 전항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③ 특별히 중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1. 아동에 대하여 성적 행위를 한 자,
 2.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아동이 하도록 유발한 자,
 3. 범죄자나 제3자에게 혹은 범죄자나 제3자 앞에서 행해지거나 범죄자나 제3자가 아동에게 행해지는 성적 행위를 유발케 하기 위하여 문서를 통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친 자, 또는
 4. 음란도화나 음란표현물의 게시, 음란한 내용의 매체물의 상영, 또는 그에 준하는 대화를 통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친 자.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범행을 아동에게 제안하거나 알선을 약속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범행을 약속한 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⑥ 미수는 처벌한다; 이는 제4항 제3호, 제4호, 제4호의 범행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24) 독일형법 제176a조(아동에 대한 중한 성적 남용) ① 제176조 제1항과 제2항의 아동에 대한 성적 남용의 경우, 행위자가 5년 이내에 그러한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② 제176조 제1항과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중한 성적 남용은 2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1. 18세 이상인 자가 아동과 성교를 하거나 유사 성교 행위를 하거나 또는 아동으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2. 다수가 공동으로 범한 경우 또는
 3. 행위자가 아동에게 범죄를 통하여 중한 건강상의 훼손이나 신체적 혹은 정신적 성장에 현저한 훼손을 가져온 경우
 ③ 제176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4항 제1호나 제2호 또는 제176조 제6호의 경우, 제184b조 제1항 내지 제3호의 유포될 음란문서의 대상이 되도록 할 목적으로 그 범행을 한 자와 가담자는 2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중하지 않은 때에는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 제2항 경우에 중하지 않은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
 ⑤ 제17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범행이 아동에게 신체적으로 중한 남용을 하거나 범행을 통해서 사망의 위험을 야기한 자는 5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⑥ 제1항의 기간에 행위자가 당국의 선고로 시설에 감화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외국에서 판결 받은 행위는 독일형법에 따라 제176조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행위라면 제1항의 경우에 국내에서 판결 받은 행위와 같다.

유사 성교 행위를 하거나 또는 아동으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다수가 공동으로 범한 경우, 행위자가 아동에게 범죄를 통하여 중한 건강상의 훼손이나 신체적 혹은 정신적 성장에 현저한 훼손을 가져온 경우'에는 가중처벌한다. 독일형법 제176b조²⁵⁾에서는 성적 남용을 통해서 중과실로 아동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독일형법 제180조²⁶⁾에서는 '중개를 통하여, 보증 또는 기회의 마련을 통하여 16세 미만자의 성적 행위 또는 16세 미만자에게 대한 성적 행위를 조장한 자'를 처벌하고, '18세 미만자가 대가를 받고 제3자에게 혹은 제3자 앞에서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18세 미만자에게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한 자 혹은 중개를 통해 그러한 행위를 조장한 자' 또한 처벌한다.

독일형법 제180a조²⁷⁾에서는 '성매도인을 종사시켜 개인적 혹은 경제적인 종속 하에서 성매매가 행해지는 사업체를 영업적으로 유지하거나 운영하는 자'를 처벌한다. 독일형법 제182조²⁸⁾에서는 '18세 미만자에게 강제상태를 악용'하여 성적행위를 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 25) 독일형법 제176b조(아동에 대한 중한 성적남용치사) (제176조와 제176a조) 성적 남용을 통해서 중과실로 아동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자유형에 처한다.
- 26) 독일형법 제180조(미성년자의 성적행위 조장) ① 제3자에게 혹은 제3자 앞에서 다음 각 호를 통하여 16세 미만자의 성적 행위 또는 제3조의 16세 미만자에게 대한 성적 행위를 조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이나 벌금형에 처한다.
1. 중개를 통하여
 2. 보증 또는 기회의 마련을 통하여
- 제2호는 16세 미만자의 보호권자가 행한 경우에 적용하지 않는다. 보호권자가 조장을 통해 교육의무를 상당히 침해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 ② 18세 미만자가 대가를 받고 제3자에게 혹은 제3자 앞에서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18세 미만자에게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한 자 혹은 중개를 통해 그러한 행위를 조장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이나 벌금형에 처한다.
 - ③ 교육, 직업교육 또는 보호를 위하여 생활을 위탁하고 있거나 혹은 근무·노동관계에서 따르고 있는 18세 미만을 교육-, 직업교육-, 보호-, 근무-, 노동관계에서 종속된 것을 남용하여 제3자에게 혹은 제3자 앞에서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혹은 제3자로 하여금 18세 미만자에게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이나 벌금형에 처한다.
 - ④ 제2항 및 제3의 미수는 처벌한다.
- 27) 독일형법 제180a조(성매도인 착취) ① 성매도인을 종사시켜 개인적 혹은 경제적인 종속 하에서 성매매가 행해지는 사업체를 영업적으로 유지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이나 벌금형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1. 18세 미만자에게 성매매용의 주거, 영업적인 숙소 또는 영업적인 거소를 제공한 자
 2. 성매매의용의 주거를 제공한 자가 성매매를 하도록 독려하거나 성매매에 있어서 성매매의용의 주거를 제공한 자를 착취한 자
- 28) 독일형법 제182조(청소년에 대한 성적 남용) ① 18세 미만자에게 강제상태를 악용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남용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이나 벌금형에 처한다.
1. 18세 미만자에게 성적 행위를 하거나 18세 미만이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2. 18세 미만자에게 성적 행위를 하거나 18세 미만이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발한 경우
 - ② 18세 미만이 대가를 받고 18세 이상의 사람에게 성적 행위를 하거나 18세 이상의 사람이 18세 미만이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한 18세 이상의 사람은 5년 이하의 자유형이나 벌금형에 처한다.
 - ③ 16세 미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남용과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능력의 흠결을 이용한 21세 이상의 사람은 10년 이하의 자유형이나 벌금형에 처한다.

있고, 독일형법 제184f조29)에서는 ‘학교인근 또는 기타 18세 미만자가 출입하는 지역, 18세 미만자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성매매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2) 성매매 중단을 위한 지방정부의 지원프로그램

가. 지원프로그램

‘성매매종사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ProstG)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성매매종사자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성매매행위를 중단하고 다른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나, 동법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다만 성매매를 합법적인 직업으로서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원소연, 2012: 53).

2009년 이전에는 성매매 중단을 위한 지원은 각 주의 지원프로그램 형태로 운영되었다. 그 지원내용은 주로 직업능력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최저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인데, 이는 아래와 같다(원소연, 2012: 54).

-
1. 16세 미만자에게 성적 행위를 하거나 18세 미만자가 성적 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2. 16세 미만자에게 성적 행위를 하거나 18세 미만자가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발한 경우
 - ④ 미수는 처벌한다.
 - ⑤ 제3항의 경우, 형사소추기관이 형사소추에 특별한 공적 이익으로 인해 직권에 의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소추 된다.
 -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불법이 경미한 경우에는 성매매인의 태도를 고려하여 법원은 동조항에 따른 형벌을 면제할 수 있다.
- 29) 독일형법 제184f조(청소년 위해적 성매매) 성매매를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 18세 미만자를 도덕적으로 해하는 방법으로 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이나 벌금형에 처한다.
1. 학교인근 또는 기타 18세 미만자가 출입하는 지역
 2. 18세 미만자가 거주하는 주택

표 III-2-1 성매매 중단을 위한 각 주의 지원프로그램

지원프로그램	기간	시행주체
성매매종사자들의 노동시장으로의 통합을 위한 능력분석을 위한 훈련	2000 - 2001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성매매종사자들을 위한 최저생계보장	1998 - 2000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성매매 이외의 새로운 직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지원	1997 - 2007년 현재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판매직종을 위한 교육훈련	2001 - 2004	바이에른 주
성매매종사자 최저생계보장 프로젝트	2002년까지 17개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문서작성을 위한 교육훈련	2002 - 2003	니더작센 주

* 출처 : 원소연, 2012: 54.

이러한 프로그램과 별도로 각 주정부에서는 직업 전환을 원하는 성매매종사자들을 위한 상담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뉘른베르크, 베를린, 브레멘, 포츠담, 함부르크, 프랑크푸르트, 보쿰, 도르트문트, 자르부뤼켄, 하노버 등에 직업전환을 위한 상담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상담소 운영을 위한 재정은 대부분 각 주정부에서 담당하고 있다(원소연, 2012: 55).

나. 재교육 프로그램

성매매 종사자들을 재교육시켜 다른 직업을 갖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등장하였는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는 주정부와 유럽연합 예산 100만 유로를 들여 성매매 종사자들을 노인 간병인으로 직업을 바꾸게 하는 '성매매 여성 재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6년에 30여 명이 2년 과정의 예비간호사 교육을 받았다(김민아, 2006: 16).

(3) 성매매 중단을 위한 연방정부의 지원프로그램

독일연방의 여성가족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는 2009년 이래 다수의 지역에서 인격적·직업적인 새로운 방향제시가 후원될 수 있도록 성매매 활동에 대한 대안을 추구하는 다양한 계획을 시도하고 있다. 베를린에서의 'DIWA' 프로젝트,

뉘른베르크에서의 'OPERA' 프로젝트, 프라이부르크와 쾰른에서의 'P.I.N.K.' 프로젝트가 성매매로부터 탈출을 후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인데, 이들은 2014년까지 진행되고 학문적으로 수반된다.³⁰⁾

가. DIWA(Der individuelle Weg zur Alternative)³¹⁾

2011. 3. 11. 독일연방 여성가족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는 성매매로부터 탈출을 후원하기 위한 세 번째 프로젝트인 'DIWA(Der individuelle Weg zur Alternative : 개인적 택일방법)'를 베를린에서 시작했다. 'DIWA'의 목적은 여성이 성매매 이외에 자기 책임적인 생계에 대한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전망을 열어주는 것이다. 직업적인 자격부여조치와 고용조치 및 그 외의 구호조치의 중개를 통해서 성매매 이외에 근로활동에 장애가 되는 것들이 제거되어야 한다. DIWA는 직업적인 새로운 방향제시와 성매매에 대한 대안의 추구에 있어서 조언과 동행을 통해 여성들을 후원한다. 이때 프로젝트 담당자는 양성기관담당자나 고용주와 같은 중요한 파트너와의 체계적이고 신뢰적인 협력을 한다.

DIWA의 인터넷홈페이지(<http://www.diwa-berlin.de>)를 보면, 일반적인 정보(Information), 사회복지적 조언(Sozialberatung), 아이디어의 발전과 방향설정(Ideenentwicklung und Orientierung), 자격부여/워크샵/훈련(Qualifizierungen/Workshops/Trainings), 개인적인 경력계획/구직지도(individuelle Karriereplanung/Bewerbungsscoaching)를 제공하고 있다. 원하는 사람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고, 비용은 없다.

결국 독일연방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탈출 프로젝트의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성매매 종사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Gesetz zur Regelung der Rechtsverhältnisse der Prostituierten : Prostitutionsgesetz, ProstG)'의 실효성이 발휘되도록 돕고 있다.³²⁾

나. OPERA

OPERA는 뉘른베르크에 있는 카산드라협회(Kassnadra e.V.)의 프로젝트로서, 성매매자의

30) 독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bmfsfj.de/BMFSFJ/gleichstellung,did=97962.html>), 2013. 5. 23. 방문

31) 독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bmfsfj.de/BMFSFJ/gleichstellung,did=168444.html>), 2013. 5. 24. 방문.

32) <http://www.diwa-berlin.de/>, 2013. 5. 23. 접속.

직업적인 새로운 방향제시의 후원과 자격부여를 목적으로 한다. 카산드라협회(Kassnadra e.V.)는 성매매자의 법적·사회적 동등을 노력하기 위해 1987년 성매매자, 전직 성매매자 및 다른 직업의 여성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협회는 바이에른 주에 있는 성매매자의 그리고 성매매자를 위한 유일한 상조기관(Selbsthilfeorganisation)이다. 카산드라협회(Kassnadra e.V.)의 목적은 첫째, 성매매자의 근무조건과 생활조건의 향상, 둘째, 성매매유혹에 처한 사람들에게 조언·후원·동행, 셋째, 성매매에 있는 여성과 남성의 관심사에 대한 공론화, 넷째, 성매매자의 법적·사회적 동등의 노력이다.³³⁾

OPERA는 독일연방 여성가족부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4년까지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전용 교육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이곳에서 개인적·직업적 새출발을 위한 정보의 제공과 모든 질문에 대한 조언이 행해지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며, 새로운 관점과 목적을 찾으며, 새로운 지식을 전해주고 옛 인식을 새롭게 하며,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하게 된다.³⁴⁾

다. P.I.N.K.

P.I.N.K.는 성매매(Prostitution)·통합(Integration)·새출발(Neustart)·전문지식(Know-how)을 의미하는데, 독일연방 여성가족부의 성매매 탈출 후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2. 10. 22.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프라이부르크에서 시작되었다. 현재는 동시에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사회복지부로부터도 후원을 받고 있다.

P.I.N.K.는 성매매 탈출 후원을 위해서 프라이부르크 연구그룹(Arge Freiburg), 오르텐나우크라이스의 지역노동후원(Kommunale Arbeitsförderung im Ortenaukreis), 프라이부르크와 오르텐나우크라이스의 에이즈구조단체(Aidshilfe in Freiburg und im Ortenaukreis), 브라이스가우-호호슈바르쯔발트와 오르텐나우크라이스의 보건청(Gesundheitsämtern im Landratsamt Breisgau-Hochschwarzwald und Ortenaukreis) 등과 공조하고 있다. 그 주요 업무는 DIWA나 OPERA와 비슷하며, 온라인 상담 등을 행하고 있다.³⁵⁾

33) <http://kassandra-nbg.de/uber-uns/>, 2013. 5. 24. 접속.

34) <http://kassandra-nbg.de/opera/>, 2013. 5. 24. 접속.

35) <http://www.pink-baden.de/wirfueruns.htm>, 2013. 5. 24. 방문.

(4) 성매매 중단을 위한 민간단체의 지원프로그램

가. DONA CARMEN

성매매 종사자의 사회적·정치적 권리를 위한 단체인 DONA CARMEN은 프랑크푸르트 중앙역 인근 성매매 집결지역에 1998년에 설립되어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5명의 인원으로 정부지원 없이, 후원금이나 성매매 종사자의 회비(월 10유로)나 수익사업(베이비시터 등)으로 운영된다(김민아, 2006: 21).

이 단체는 성매매 여성을 위한 상담, 법률, 정보제공 등 사회복지사업과 성매매 여성의 권리향상을 위한 강연, 기고, 청원 등 대외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성매매가 직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의식개선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김민아, 2006: 22).

나. 카산드라협회(Kassnadra e.V.)

카산드라협회(Kassnadra e.V.)는 성매매자의 법적·사회적 동등을 노력하기 위해 1987년 성매매자, 전직 성매매자 및 다른 직업의 여성들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협회는 바이에른 주에 있는 성매매자의 그리고 성매매자를 위한 유일한 상조기관(Selbsthilfeorganisation)이다. 카산드라협회(Kassnadra e.V.)의 목적은 첫째, 성매매자의 근무조건과 생활조건의 향상, 둘째, 성매매유혹에 처한 사람들에게 조언·후원·동행, 셋째, 성매매에 있는 여성과 남성의 관심사에 대한 공론화, 넷째, 성매매자의 법적·사회적 동등의 노력이다.³⁶⁾

(5) 성매매 피해자 보호

독일의 범죄피해자 대책은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뒤늦은 편이어서, 1970년대 이후에 피해자 문제가 심각하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1976. 5. 11. '폭력범죄피해자보상법(Gesetz über die Entschädigung für Opfer von Gewalttaten: Opferentschädigungsgesetz) 제정됨으로써

36) <http://kassandra-nbg.de/uber-uns/>, 2013. 5. 24. 접속.

폭력범죄 피해자가 치료비 등을 보상받게 되었다(김용세, 2012: 157).

한편 독일에서는 1960년대 이래 지금까지 각 지역별로 매우 다양한 피해자 지원단체가 활동해 왔다. 그 중에서도 전국적인 연결망을 가지고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백색고리(Weißer Ring)'와 '독일피해자보호협회(Arbeitskreis der Opferhilfe in Bundesrepublik Deutschland)'이다(김용세, 2012: 158).

가. 여성피난처(Frauenhäuser)와 긴급구조센터(Notrufgruppen)

독일 전국에 약 300여 개 이상의 여성피난처(Frauenhäuser)가 있으며, 이곳에 4만여 명의 여성과 아동이 수용되어 있다. 한편 250여 개의 긴급구조센터(Notrufgruppen)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이들 시설들은 여성운동을 중심으로 한 비영리단체가 운영하지만, 재정지원의 대부분은 연방정부가 담당하고 있다(이송희, 2009: 31).

나. 백색고리(Weißer Ring)(김용세, 2012: 410-411)

백색고리(Weißer Ring)는 1976년 TV 아나운서 에드워드 짐머만(Eduard Zimmermann) 등에 의해 마인츠에 설립된 독립적 민간단체로서 독일에서 처음으로 결성된 전국적 규모의 피해자 원호조직이다. 이 단체는 약 7만 명에 달하는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매월 최저 25유로 이상)와 각종 기부금, 과징금으로부터의 할당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는데, 전국에 산재한 약 400개의 지부에서 약 2,30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돕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대부분 일반시민으로 전문성은 없지만 범죄피해로 인해 곤경에 처한 피해자에 대하여 신속한 구원과 재활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범죄 후의 개인적 부조, 법원 기타 국가기관 동행, 상담프로그램 운영, 변호사상담료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 중재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또한 연방 또는 주 차원에서 입법 또는 정책 수립을 요구하고, 일반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계몽활동을 전개한다.

다. 독일피해자보호협회(Arbeitskreis der Opferhilf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do) (김용세, 2012: 411-413)

‘독일피해자보호협회(Arbeitskreis der Opferhilfe in Bundesrepublik Deutschland)’는 1988년 설립되었는데, 전국 각지에 산재한 피해자지원조직을 가맹시킴으로써 전국적인 망을 형성하였다. 운영재창원은 회비와 기부금 이외에 각 지역조직이 속한 주 정부의 보조금 등으로 조성된다.

독일피해자보호협회(Arbeitskreis der Opferhilf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do)의 가입단체는 베를린 범죄피해자지원협회(Hilfe für Opfer von Straftaten in Berlin), 베를린 동성애자긴급전화(Schwulles Überfalltelefon Berlin), 브레멘 범죄피해자 및 증인보호협회(Beratung für Opfer und Zeugen von Straftaten in Land Bremen), 브레멘 북부 형사화해 알선협회(Täter-Opfer-Ausgleich Bremen Nord), 함부르크 피해자지원협회(Opferhilfe Hamburg) 처럼 대부분 독일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적인 범죄피해자 지원단체이다. 독일피해자보호협회(Arbeitskreis der Opferhilf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do)는 전화상담 또는 면담 및 정신·심리적 치료를 주된 임무로 하지만, 피해자를 위한 위기개입, 법률적 조언, 민사절차와 사법절차 진행과정에서 법정 동행등 다양한 원조를 제공한다. 최근에는 각 조직 소재지 관할 법원의 위촉을 받아 형사화해 알선기관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한편 독일피해자보호협회(Arbeitskreis der Opferhilf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do)에서 행하는 피해자지원은 전국 각지에서 실시되는 피해자지원의 질과 양을 표준화하고 그 내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996. 11. ‘피해자지원기준(Opferhilfestandards: Qualitätsstandards für eine professionelle Unterstützung von Kriminalitätsopfern[1996])’을 마련하였다. 다만 동 지침은 법적 구속력은 없고 지침으로 활용되는데, 매우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체로 시설설치기준·재정·직원·사무소이 규모와 설비·상담·조언·기타 업무 등에 관한 안내서의 성격을 지닌다.

동 지침에 의한 상담소 운영의 기본방향은 첫째, 독일피해자보호협회(Arbeitskreis der Opferhilf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do)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독립적인 공익법인이며, 둘째, 범죄피해자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설립된 상담소로서, 셋째, 대표자 외에 사회교육하 등의 전문지식을 가진 적어도 3인 이상의 상담원을 두어 상담에 응한다.

또한 그 상담은 피해자지원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이라는 성격을 지니며, 오직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무료로 행해지는 것이고, 피해자가 원한다면 익명성을 보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명시한 동의가 없는 한 상담소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으며, 상담소에서 행하는 모든 상담과 지원은 고소·고발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독일피해자보호협회(Arbeitskreis der Opferhilf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do)나 백색고리(Weißer Ring) 모두 피해자지원을 위한 전국조직으로서 주 또는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두 조직 간의 갈등은 거의 없다고 한다. 독일피해자보호협회(Arbeitskreis der Opferhilf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do)에 비하여 훨씬 큰 규모의 백색고리(Weißer Ring)는 일반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를 지원하는 반면에, 독일피해자보호협회(Arbeitskreis der Opferhilfe in Bundesrepublik Deutschland)의 산하조직에 소속된 상담원들은 대학에서 상담기법을 익힌 전문상담원에 의하여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두 조직 간에는 분명한 차별이 존재한다. 실제로 백색고리(Weißer Ring)의 상담원이 피해자를 가까운 지역의 독일피해자보호협회(Arbeitskreis der Opferhilfe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do)에 소개하는 사례도 많다.

라. 증인보호 프로그램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특별 카운슬링 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4주간의 거주기간에 포주의 행각에 대하여 증언할 기회를 얻는다. 증언하기로 한 경우, 보복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경찰이 보호해 주며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이때 성매매피해자를 상담한 의사에게 묵비권이 인정되어 피해자의 비밀이 보장된다(김민아, 2006: 18).

KOK(The Federal Associa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in the Migration Process)에 의하면, 독일 16개 주의 절반 이상에서 상담소와 경찰 사이의 협정을 맺고 있는데, 피해자의 시원확인 및 상담소로의 이송이 어렵다고 한다. 2001년의 경우 신원 확인된 피해자의 24%는 강제 추방되었고, 13%는 임시체류권을 받았으며, 13%는 본국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단지 2%만이 경찰의 증인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갔으며, 8%는 기타 이유로(결혼, 보호신청 등) 독일에 남았고, 나머지 39%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김민아, 2006: 19).

(6) 요약 및 시사점

독일은 1927년 이래 개인적인 성매매가 허용되었으나, 동시에 민법상으로는 성매매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무효인 계약으로 간주되어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착취가 가능해 왔다. 이에 2001. 12. 20. 성매매행위를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하는 ‘성매매종사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Gesetz zur Regelung der Rechtsverhältnisse der Prostituierten : Prostitutionsgesetz, ProstG)을 제정하여, 성매매 종사자의 의료보험·실업급여·연금제도 등 사회보장적 수혜와 성매매 종사자의 노동3권이 인정되고 있다. ‘성매매종사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ProstG)에 의거하여, 개인은 숙박, 거주 및 부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성매도인을 고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 성매도인을 고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성매도인의 개인적이고 경제적인 자립도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이어야 하지, 개인적 혹은 경제적 종속형태로 성매도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독일형법 제180a조(Ausbeutung von Prostituierten, 성매도인 착취)에 의하여 처벌된다. 그 외에도 포주행위(Zuhälterei, 독일형법 제181a조), 금지된 성매매의 수행(Ausübung der verbotenen Prostitution, 제184e조)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 외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는 광범위하게 형사처벌되고 있다. 아동에 대한 성적 남용(Sexueller Mißbrauch von Kindern, 독일형법 제176조), 아동에 대한 중한 성적 남용(Schwerer sexueller Mißbrauch von Kindern, 독일형법 제176a조), 아동에 대한 성적 남용치사(Sexueller Mißbrauch von Kindern mit Todesfolge, 독일형법 제176b조),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적행위 조장(Förderung sexueller Handlungen Minderjähriger, 독일형법 제180조),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성적 남용(Sexueller Mißbrauch von Jugendlichen, 제182조), 미성년자 위협적인 성매매 (Jugendgefährdende Prostitution, 제184f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렇듯 독일은 성인의 성매매를 원칙적으로 합법화하였고, 다만 성매매 종사자를 착취하는 행위와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에 대하여 형사처벌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이렇게 성매매가 합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성매매에 대한 대책은 성매매의 예방이 아니라 성매매 종사자의 (직업)전환에 중점이 두어져 있다. 비록 성매매가 합법화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직업의 종사자와 달리 성매매 종사자의 환경은 열악하고 장기적인 생계보장이 어렵기 때문에 성매매 종사자가 성매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시행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민간단체에서도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지방정부의 성매매 중단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이 각 주별로 운영되었는데, 주로 직업능력에 대한 교육훈련프로그램과 최저 생계보장을 위한 내용, 그리고 이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 1990년 후반과 2000년대 초반 다수 운영되었다. 이후 독일연방의 여성가족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는 2009년 이래 다수의 지역에서 인격적·직업적인 새로운 방향제시가 후원될 수 있도록 성매매 활동에 대한 대안을 추구하는 다양한 계획을 시도하고 있다. 베를린에서의 'DIWA' 프로젝트, 뉘른베르크에서의 'OPERA' 프로젝트, 프라이부르크와 쾰른에서의 'P.I.N.K.' 프로젝트가 그 예로서 성매매 종사자의 성매매로부터 탈출을 후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인데, 이들은 2014년까지 진행되고 학문적으로 수반된다. 동 프로그램은 독일연방 여성가족부의 재정지원으로 운영되며, 개인적·직업적 새출발을 위한 정보의 제공과 상담 및 교류를 지원하고 있으며,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여 온라인으로도 성매매인을 지원하고 있다. 연방과 주정부의 지원 이외에도, 성매매가 합법화되었기에 각 지역별 성매매 종사자의 상조단체나 협회가 설립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도나카르멘(DONA CARMEN)과 뉘른베르크에 있는 카산드라협회(Kassadra e.V.)이다. 이들 상조단체나 협회에서도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조언과 후원이 행해진다. 다만 정부와 다른 점은 이들 단체는 성매매의 직업으로서의 권리보장에 일차적인 노력을 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성매매가 원칙적으로 합법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 종사자를 착취하는 행위와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서도 각종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먼저 일반적인 범죄피해자와 마찬가지로 형사 절차상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폭력범죄피해자보상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도 있다.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특별 카운슬링 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4주간의 거주기간에 포주의 행각에 대하여 증언할 기회를 얻는다. 증언하기로 한 경우, 보복으로 인한 위협으로부터 경찰이 보호해 주며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정부에 의한 피해자 보호 이외에 각종 민간 피해자지원조직이 발달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전국적인 연결망을 가지고 피해자지원을 하고 있는 단체로서 대표적인 것이

‘백색고리(Weißer Ring)’와 ‘독일피해자보호협회(Arbeitskreis der Opferhilfe in Bundesrepublik Deutschland)’이다. 독일피해자보호협회나 백색고리 모두 피해자지원을 위한 전국조직으로서 주 또는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두 조직 간의 갈등은 거의 없다. 독일피해자보호협회에 비하여 훨씬 큰 규모의 백색고리는 일반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를 지원하는 반면에, 독일피해자보호협회의 산하조직에 소속된 상담원들은 대학에서 상담기법을 익힌 전문상담원에 의하여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두 조직 간에는 분명한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2) 일본³⁷⁾

(1) 서론

종래부터 일본에서는 소년비행 및 문제행동의 요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유해 환경」이 지적되어, 이러한 유해환경에 대한 법적규제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이러한 유해환경의 하나로써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동매춘의 온상으로 지적되는 것은 인터넷상에서 타인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이성소개사이트(出会い系サイト³⁸⁾」이다. 예를 들어 2011년 일본경찰백서에 따르면, 인터넷을 이용한 범죄건수를 살펴보면 보이스 피싱사기 다음으로 아동포르노 등과 같은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37) 이 부분은 강경래(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가 집필하였음.

38) 이성소개사이트란 이성과의 교제를 희망하는 자가 인터넷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전달받은 이성교제 희망자가 전자메일 그 외의 전기통신을 이용해 상호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표 III-2-2 네트워크이용범죄³⁹⁾의 검거건수의 추이(2001년~2010년)

구분	년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건)		1,209	1,471	1,649	1,884	2,811	3,593	3,918	4,334	3,961
사기		485	514	521	542	1,408	1,597	1,512	1,508	1,280	1,566
아동매춘· 아동 포르노법 위반 (아동포르노)		128	140	102	85	136	251	192	254	507	783
청소년 보호육성 조례위반		10	70	120	136	174	196	230	437	326	481
이성소개 사이트규제법 위반		-	-	8	31	18	47	122	367	349	412
아동매춘· 아동 포르노법 위반 (아동매춘)		117	268	269	370	320	463	551	507	416	410
저작권법 위반		86	66	87	174	128	138	165	144	188	368
외설물 배포 등		103	109	113	121	125	192	203	177	140	218
상표법위반		31	37	95	82	109	218	191	192	126	119
그 외		249	267	334	343	393	491	752	748	629	842

* 자료: 일본경찰백서, 2011년⁴⁰⁾

한편, 이러한 인터넷의 이용과 관련된 범죄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2011년 중에 이성소개사이트의 이용에 기인한 사건의 검거건수는 1,025건으로 2010년과 비교하여 178건 (14.8%)이 감소하여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커뮤니티사이트(コミュニティサイト⁴¹⁾)를 이용에 기인한 아동(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이 피해를 입은 일정한 사건⁴²⁾으로서 경찰청에

39) 네트워크이용범죄란, 그 실행에서 불가결한 수단으로써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범죄를 말한다.

40) [http://www.npa.go.jp/hakusyo/h23/honbun/참조\(2013.05.13\)](http://www.npa.go.jp/hakusyo/h23/honbun/참조(2013.05.13))

41) 커뮤니티사이트란, SNS(Social Network Service), 모바일사이트(プロフィールサイト) 등 웹사이트에서 다수인과 소통할 수 있는 웹사이트 가운데 이성소개사이트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보고된 검거건수는 1,54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0년에 이성소개사이트의 이용에 따른 범죄피해아동은 254명으로 전년보다 199명(43.9%)이 감소하였으나, 커뮤니티 사이트를 이용에 따른 범죄피해아동은 1,239명으로 전년보다 103명 (9.1%)이 증가하였다.

피해아동의 죄종별로 보면 이성소개사이트의 이용에 따른 범죄피해를 입은 아동으로는 아동매춘의 피해아동이 151명(59.4%)으로 가장 많으며, 커뮤니티사이트의 이용에 따른 범죄피해를 입은 아동으로는 청소년보호육성조례위반(음란한 성행위 등 위반 등)의 피해아동이 772명(62.3%)로 가장 많았다. 또한 피해아동의 연령을 살펴보면 14세 이하의 피해아동 수에 대해서는 이성소개 사이트의 이용에 따른 범죄피해아동의 수는 50명(19.7%)인 것에 대해서 커뮤니티사이트의 이용에 따른 범죄피해아동의 수는 362명(29.3%)으로 아동매춘의 저연령화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통계로부터는 종래의 아동매춘의 온상으로 지적되어 온 이성소개사이트를 이용한 아동매춘 등의 범죄가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유형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2-3

이성소개사이트 및 커뮤니티사이트의 이용에 기인하는 검거건수 및 아동피해의 추이(2006년~2010년)

		2006	2007	2008	2009
이성소개사이트	검거건수	1,915	1,753	1,592	1,203
	피해아동 수	1,153	1,100	724	453
커뮤니티사이트	검거건수	-	-	994	1,347
	피해아동 수	-	-	792	1,136

*자료: 일본경찰백서, 2011년⁴³⁾

일본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아동매춘이 인터넷을 이용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다양한 인터넷상의 규제 등이 실시되고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일본의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의 예방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주로 인터넷의 규제정책을 중심으로 개관하고자 한다.

42)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되는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청소년보호 육성조례위반 및 중요범죄(살인, 강도, 방화, 강간, 약취유괴, 인신매매 및 강제추행)에 관계되는 사건을 말한다.

43) <http://www.npa.go.jp/hakusyo/h23/honbun/>참조(2013.05.13)

(2) 일본의 아동·청소년 성매매로서의 원조교제(援助交際)의 의의

지금까지 일본에서의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라고 할 수 있는 원조교제와 관련된 논의는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宍台(1998: 165)가 지적하는 것과 같이 객관적인 수치에 근거하는 것은 매우 적다. 원조교제의 실태를 조사한 데이터로서는 1996년도에 동경도생활문화국의 조사가 있다(深谷和子·三樹恵子·小原孝久, 1998: 13). 동 조사에 따르면 동경도의 여자고등학생 중에 원조교제의 경험을 갖은 자의 비율은 4.6%였다. 이러한 여자고등학생의 원조교제를 한 이유로서는 「돈을 받을 수 있으므로」가 53.9%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는 실태조사에 그친 것으로 배경요인에 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회답자에 대해서 「원조교제」의 정의가 명시되지 않은 상태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한편, 福富(1997: 3)는 수도권의 여자고등학생 30명에 대해서 원조교제와 관련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동 조사에 따르면 피면접자의 원조교제에 대한 개념에 많은 차이가 있어 실증연구에 있어서 원조교제의 정의를 규정할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일본형태의 아동매춘이라고도 할 수 있는 「원조교제」의 정의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矢島·宍台(1997: 155)에 따르면 원조교제라는 용어에는 다음의 3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1980년대 전반의 개념으로 「장기적 애인계약」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1990년대 전반의 다이얼Q2⁴⁴⁾ 등에 있어서의 「매춘」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여자고등학생의 데이트 클럽(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업종)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매춘」 행위 또는 「非매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세 번째의 의미에 있어서의 「원조교제」에 대해서 矢島·宍台는 반드시 매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매춘화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원조교제란 「금품을 대신하여 일련의 성적행위(만남을 갖거나 성행위를 하는 것)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원조교제란 금품을 대신하여 성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춘과 동일하지만 금품을 대신하여 만남을 가는 경우에는

44) 다이얼 Q2란 전화에 의한 유료정보서비스의 정보요금을 전화요금과 함께 회수하는 것으로 일본의 NTT에 의해 1989년 7월 10일 개시된 정보서비스이다. 초기의 NTT에 의한 서비스의 목적은 뉴스 또는 전화상담 등과 같은 일반적인 서비스에 이용되는 것으로 하였으나, 이후에 성인정보제공업자의 다이얼 Q2에의 사업확장에 따라 과금요금 상한의 최고인 3분 300엔이라는 과금을 설정하여 남녀 간의 외설적인 대화, 음성 및 Two-Shot Dial(다이얼 Q2, 일반의 공중회선, 국제전화회선을 이용한 남성유료, 여성무료의 쌍방향 대화서비스)을 제공하게 되었다. 폭발적인 이용확대에 따라 원조교제 목적의 이용이 증가하여 소년비행 또는 아동매춘의 온상이 되어 사회적 문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매춘과는 상이한 측면을 갖고 있다.

종래의 비행연구에서는 여자청소년의 경우에는 성과 비행은 매우 높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으며, 그 배경으로서는 부모에 대한 애정요구, 욕구불만, 자기현시욕구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松本, 1995: 13), 또한 성행동연구에 있어서도 성경험이 빠른 자의 배경에 비행연구와 공통하는 요인(애정이 없는 가정, 자기현시욕구의 강함) 및 성의식의 왜곡 등이 지적되고 있다(東京都生活文化局, 1996: 4).

内山(1996: 69-81)는 성관련복지법(매춘방지법 등의 범죄)의 피해자로서 보도된 여자 433명(보호군) 및 일반의 여자 중·고생 584명(일반군)에 대해서 성의 상품화에 관한 의식 및 태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보호군의 70% 이상이 가정에 문제가 있었으며, 일반군과 비교하여 장래에 대한 비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것이 보호군의 자존감정의 상실을 촉구하여 성의식의 왜곡을 발생시켜 성의 상품화가 촉진된다고 고찰하고 있다.

또한, 石橋昭良 외(1997: 47-59)는 데이트 클럽의 출입에 의해 보도처분된 여자청소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즉, 보도처분된 여자청소년은 일반적인 학생들과는 달리 불량행위에 있는 자로 보고 있다. 또한, 그들은 데이트 클럽의 이용 후에 죄악감이 강하게 됨과 동시에 금전에 대한 집착이 더욱 강해졌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원조교제의 배경요인과 종래의 성비행의 배경요인이 상당부분 공통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石橋昭良 외(1997: 47-59)는, 전술한 조사에 있어서 보도처분된 여자청소년들의 가정환경의 문제를 지적하는 종래의 연구와는 상이한 결론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최근 휴대전화 등의 이동통신기기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성풍속산업에의 접촉이 매우 쉽게 된 것을 지적하고 있다. 田村·米里·麦島(1996: 48-59)에 의하면 여자고등학생의 텔레폰클럽(テレクラ)⁴⁵⁾ 이용경험자의 비율은 29.3%였으며, 텔레폰클럽을 이용하는 것을 일탈행동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인 변화를 고려하면 종래의 성행동 또는 성비행연구에서 취급하지 않았던 요인이 원조교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宮台(1998: 160-173)는 원조교제의 경험을 동기로 하는 친구와의 동조압력을 지적하고 있다. 즉, 친구가 하기 때문에 자신도 한다는

45) 텔레폰클럽이란 전화를 매개로 여성과의 대화를 알선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인실에서 여성으로부터 전화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연결 후에 여성과의 대화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대화를 하는 것이지만 여성과의 대화에 따라 외부에서 접촉하거나 성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매춘의 알선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가벼운 동기이다. 福富(1997)의 면접조사에 있어서도 원조교제의 배경요인으로서 이러한 친구 또는 유행에 대한 과도한 동조경향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집단에의 소극적인 동조성은 현대의 청소년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上野·上瀬·松井·福富, 1994: 21).

(3)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의 사전예방을 위한 인터넷상의 규제정책

최근 인터넷상의 위법·유해정보에의 대응과 관련하여 각국에서는 다양한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미디어수용능력(media literacy)에 관한 연구와 교육이 발전된 북미 등에서는 제도의 재검토와 유해정보접근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일본에서는 고속 데이터 통신망 등의 인프라의 보급과 인터넷관련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함께 이에 따른 새로운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06년 인터넷감시재단(Internet Watch Foundation: IWF)의 발표에 따르면, 인터넷상의 아동포르노 정보의 유통은 미국(51.1%), 러시아(14.9%), 일본 (11.7%), 스페인(8.8%), 그 외(7.5%), 태국(3.6%), 한국(2.16%)의 순으로 일본의 경우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다.⁴⁶⁾ 또한, 이러한 인터넷을 이용한 아동매춘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2009년부터 인터넷 등에 대한 규제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아동매춘의 예방을 위한 인터넷상의 규제정책에 대해서 개관하고자 한다.

가. 일본의 인터넷상의 유해정보 현황

윈도우95가 발표된 1990년대 중반의 일본의 인터넷의 인구보급률은 10% 정도였으나, 인터넷관련서비스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인터넷보급률도 함께 상승하였다.⁴⁷⁾ 가정에서의 컴퓨터보급률은 2008년의 시점에서 85.9%로(總務省, 2009: 2) 각 가정에 약 1대로 가족이 공유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특징으로서는 자기전용의 컴퓨터를 갖고 있는 아동이 비교적 적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8년의 일본청소년연구소에 의한 비교조사에

46) 인터넷감시재단 <http://www.iwf.org.uk/>(2013.4.22)

47) 일본총무성(2009)의 통신이용동향조사에 따르면 인터넷보급률은 2008년의 시점에 75.3%로 급속히 상승하였다.

따르면 일본의 고등학생 가운데 자신전용의 컴퓨터를 소유하는 학생은 21%로, 미국의 60.7%, 중국 40%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와 달리 일본의 휴대전화의 보급률은 95.6%로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휴대전화이용률을 보면 13세부터 19세까지의 경우에는 약 80%이며, 40대까지는 90%가 넘고 있다. 또한 수입이 낮은 세대일수록 컴퓨터보다 휴대전화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컴퓨터의 가격이 장벽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總務省, 2009: 1-8면⁴⁸⁾).

일본문부과학성의 「아동의 휴대전화 등의 이용에 관한 조사⁴⁹⁾」(2009: 7)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는 자는 초등학교 6학년 24.7%, 중학 2학년 45.9%, 고교 2학년 95.9%로 거의 전원이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으며, 2011년의 경우에는 초등학생에서는 20.9%, 중학생 49.3%, 고등학생 97.1%로 초등학생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内閣府: 2011: 50).

이에 따라 인터넷에 접속하는 기기로서도 컴퓨터보다 휴대전화가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이 가능한 휴대전화는 1999년에 등장하였는데, 2007년의 일본 내각부의 조사에 따르면 휴대전화로부터 인터넷에 접속하는 아동의 비율은 초등학생은 약 27%, 중학생 약 56%, 고등학생 약 96%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13세부터 19세의 경우 인터넷의 접속에는 컴퓨터보다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아동이 많았다. 또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게임기가 약 20%의 세대에 보급되어 있어 컴퓨터와 휴대전화 다음으로 인터넷접속단말기로서 나타나고 있다(總務省, 2009: 5).

이와 같이 일본의 특징으로는 휴대전화를 통한 인터넷의 이용하는 아동이 다수를 점하고 있어, 보다 쉽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관계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유해정보에의 접속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성소개사이트」를 이용하여 아동매춘·아동포르노금지법 위반 및 강간의 피해를 입은 아동이 2008년의 경우 724명으로(警察白書, 2009⁵⁰⁾), 그 가운데 98% 이상이 「이성소개사이트」에 접속하는 수단으로써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다. 피해내용 으로서는 자동차에 동승하여 자동차 또는 호텔에서 성피해를 입는 것이 전형적이지만, 그 외에도 「각성제를 강제복용하고 성폭행을 가하였다」, 「몸에 강제로 문신을 새겼다」, 「수면제를

48) http://www.soumu.go.jp/johotsusintokei/statistics/data/100427_1.pdf(2013.4.22)

49) http://www.mext.go.jp/component/b_menu/houdou/_icsFiles/afieldfile/2009/05/15/1266544_2_1.pdf(2013.4.22)

50) <http://www.npa.go.jp/hakusyo/h21/honbun/> 일본경찰백서 2009.

강제로 복용하도록 하여 알몸사진을 촬영하였다」는 경우도 있다.

한편, 최근 일본 아동·청소년들에게 유행하는 휴대전화사이트로 「프로후(プロフ)」가 있다. 프로후란 자신의 프로필을 기입하는 홈페이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름과 생년월일, 좋아하는 음악 등 자신의 정보를 공개한다. 사진 또는 일기를 게재하거나 제3자가 댓글을 게재할 수도 있다. 문부과학성이 2008년 말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교 2년생의 40%이상, 수도권 여고고등학생의 70% 이상이 프로후를 개설하고 있으나, 자신의 자녀가 프로후를 개설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는 보호자는 20%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다(文部科学省, 2009: 14-15).

이러한 프로후가 최근에는 「원조교제」의 사이트로 이용되고 있다. 여자청소년이 프로후에 자신의 누드사진을 게재하여 원조교제의 상대를 모집하고 있다. 또한 아동매춘을 하고자 하는 성인도 여자청소년의 프로후에 권유댓글을 게재하기도 한다.

이러한 프로후, SNS, 게임사이트 등의 「이성소개사이트」 이외의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한 성범죄 등의 피해아동의 수는 2008년 792명, 2009년의 상반기에 545명으로 모두 이성소개 사이트에 의한 피해보다 높다. 즉, 이성소개사이트에 대한 연령확인 등의 규제강화에 따라 아동매춘의 장소가 일반인터넷사이트로 이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동이 피해자가 되는 성범죄는 일본의 경우 대부분 휴대전화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인터넷사이트에서도 성적인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의 나체화상과 동영상을 게재하거나 성인비디오의 선전을 하는 성인인터넷사이트는 18세 미만의 자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즉, 성인인터넷사이트의 접근과정에서 단순히 「당신은 18세 이상입니까?(あなたは 18歳以上ですか?)」라고 질문하여 「예(はい)」라고 답하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III-2-4

「이성소개사이트」 이외의 인터넷사이트에 관계된 사건의 검거상황 등 (2009년 상반기)⁵¹⁾

		검거건수	피해아동 수			전년비
			여성	남성	합계	
아동매춘·아동포르노법 위반	아 동 매 춘	129	97	1	98	+39
	아 동 포 르 노	65	39	2	41	-5
청소년보호육성조례위반		389	343	20	363	+110
아동복지법위반		37	32	0	32	+19
중요범죄	살 인	1	1	0	1	-1
	강 도	0	0	0	0	0
	방 화	0	0	0	0	0
	강 간	6	6	0	6	-4
	약 취 유 괴	2	2	0	2	-2
	강 제 추 행	2	2	0	2	+1
합 계		631	522	23	545	+157

* 자료: 警察庁「平成20年中のいわゆる出会い系サイトに関係した事件の検挙状況について」(2009: 3).

또한, 인터넷사이트에는 성범죄를 범하고자 하는 자를 모집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는 공범자의 모집이 이루어져 실제로 집단성추행내지 집단성폭행사건을 실행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09년 10월에는 이러한 교류인터넷사이트에서 공범자를 모집하여 여성을 집단성폭행을 반복한 40대의 남성 4명이 집단강간상해의 용의로 체포되었다. 또한, 아동의 휴대전화에도 무차별적으로 송부하는 메일에는 여성의 나체사진이 게재되어 이성소개사이트에 유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휴대전화를 통한 인터넷사이트의 성적유해정보에 항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의 아동포르노관련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9년의 상반기의 일본전국의 경찰이 적발한 아동포르노사건의 피해아동은 218명으로 전년 대비 51.4%가 증가하여 과거 최대수치를 기록하였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 이하가 33명으로 73%가 증가하는 등 저연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아동포르노의 제작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51) [http://www.npa.go.jp/cyber/statics/backup/h19/pdf02.\(2013.4.22\)](http://www.npa.go.jp/cyber/statics/backup/h19/pdf02.(2013.4.22))

많다. 예를 들어 2010년 1월에 파일교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여자중학생의 외설적 화상을 불특정다수가 열람하도록 한 18~55세의 남성 48명이 적발되었는데, 여기에는 중학교교사와 연구원, 소방사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2006년에는 약 20명이 소속된 아동포르노 애호가 집단이 적발되었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집단으로 법무국의 직원 내지 우편국원, 자위대대원 등이 포함되어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나체사진 등을 촬영하는 집단이었다.

한편, 이러한 아동포르노의 제조업자가 아동을 모집하는 수단으로서 대부분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다. 즉, 휴대전화인터넷사이트에 「수영복모델모집」 등을 광고하여 모델 등에 관심을 갖고 있는 아동이 접속을 하도록 하고 있다. 2008년에는 촬영모델의 모집광고에 응모한 10대의 소녀가 스튜디오에서 남성에게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성폭행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부모가 자신의 아동의 아동포르노를 제조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즉, 2009년 2세의 여아의 포르노사진을 촬영하여 판매하려고 하는 부모 등 10명 이상이 아동매춘·아동포르노금지법 등의 혐의로 체포되었다. 또한, 아동·청소년에 의한 「성적이지메(いじめ)」도 아동포르노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즉, 동급생의 나체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인터넷 사이트의 게시판에 공개한 중·고등학생이 아동포르노의 제조 및 공연진열의 용의로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인터넷상의 아동포르노 문제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나. 휴대전화 및 인터넷사이트의 열람규제정책

이와 같이 휴대전화를 통한 인터넷활용도가 높은 일본에서는 컴퓨터보다도 휴대전화 사이트에의 규제가 중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2009년 4월에 「청소년인터넷환경 정비법(青少年 インターネット環境整備法)」을 시행하여 휴대전화사업자에 대해서 18세 미만용의 휴대전화에 위법·유해정보를 사전에 열람을 차단하는 필터링서비스를 제공할 책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보호자에 대해서도 18세 미만의 아동을 위하여 휴대전화를 계약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휴대전화사업자에게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이러한 필터링서비스는 보호자의 신청이 없으면 해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어떠한 내용을 유해로 판단하여 필터링의 대상으로 하는 가는 「표현의 자유」 내지 「알 권리」의 관점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일본에서는 민간의 필터링제공회사인 「NetStar

(ネットスター)사」가 작성한 유형을 모두 휴대전화회사가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은 접근제한의 대상사이트를 「대화관련」, 「도박」, 「성인기호」 등 73개로 구분한 것으로 본래 인터넷 사이트의 필터링에 설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필터링서비스는 친구간의 대화관련 사이트내지 공적기관으로부터의 정보도 일률적으로 차단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필터링의 이용이 저조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2008년 4월에 휴대전화사이트의 심사 및 인정, 운용감시업무를 담당할 목적으로 총무성 주도로 민간의 제3자기관인 「일반사단법인모바일콘텐츠심사·운용감시기구(一般社団法人モバイルコンテンツ審査・運用監視機構:EMA⁵²)」가 설립되었다. EMA는 필터링 기준을 설정하는 것 외에 심사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된 사이트에 대해서는 필터링에 의한 접근제한을 해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필터링소프트에 관해서는 일본의 경우 복수의 민간기업이 제공하고 있다. 통신이용동향조사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세대의 약 20%는 컴퓨터에 필터링소프트를 이용하고 있으나(総務省, 2009: 23). 또한, 인터넷전반의 콘텐츠의 유해성을 판단하는 민간의 제3자기관으로서 2008년 5월에 「일반사단법인인터넷콘텐츠심사감시기구(一般社団法人インターネットコンテンツ審査監視機構:I-ROI⁵³)」가 설립되었다. 여기에서는 전문가에 의해 책정된 기준에 따라 각 사이트의 건전성을 객관적으로 인정한다. 신청기업은 먼저 I-ROI에 신청을 하여 기준에 따라 자사의 사이트에 유해정보가 존재하지 않도록 관리 및 감시를 한다. 기준유형으로는 「nud 등」, 「섹스」, 「폭력·잔혹」 등의 10개로 구분하고 있다. 신청기업에 의한 이러한 운영이 가능하고 있는 것을 I-ROI가 심사한 다음에 건전성을 설정한다. 설정된 사이트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어느 발달단계에 적합한 표현내용인지를 평가하여 연령구분을 부여하는 형식이다.

다. 휴대전화소지에 관한 규제

휴대전화에 의한 인터넷이용이 활발한 일본의 독자적인 정책으로서 아동의 휴대전화소지의

52) 홈페이지 <http://www.ema.or.jp/ema.html>(2013.4.22)

53) 홈페이지 <http://www.i-roi.jp/about/purpose.html>(2013.4.22)

제한이 있다. 문부성은 2009년에 초·중학교에서 휴대전화를 가져오는 것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전국의 교육위원회에 지시하였다. 이에 앞서 2008년의 「아동의 휴대전화 이용에 관한 조사」조사에서 초등학교의 94%, 중학교의 99%가 휴대전화의 지참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文部科学省, 2009: 174).

또한 휴대전화 그 자체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나타났다. 즉, 이시카와현(石川県)은 2010년 1월 「아동에게 휴대전화를 갖지 못하도록」 규정한 일본 최초의 조례를 시행하였다. 「이시카와아동종합조례(石川子ども総合条例⁵⁴)」는 방법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초·중학생에게 휴대전화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보호자의 노력의무로 하고 있다. 물론 별칙규정으로 없으나 휴대전화사이트와 관련된 사건 등의 발생에 따라 제정된 조례이다.

라. 아동포르노대책

아동포르노의 피해자는 촬영되는 과정에서 정신적·육체적인 고통을 느끼고, 화상이 인터넷상에 게재되면 2차 피해를 입게 된다. 현재 일본의 아동포르노에 대한 법적규제는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다. 즉, 일본의 아동매춘·아동포르노금지법은 아동포르노의 단순소지를 규제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G8(주요국수뇌회의)의 참가국 중 일본과 러시아 2개국만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만화 등의 포르노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로는 피해자가 실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화에서는 아동에게 성행위 및 성적학대, 고문을 가하는 묘사가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아동포르노의 대책으로서 2009년에 단속과 유통방지대책,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중점프로그램을 만들고, 용의자 및 피해아동을 특정하기 위하여 화상분석의 전문반을 설치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의 심리치료 등의 지원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아동포르노범죄의 단속하기 위한 전담수사반을 신설함과 공시에 익명으로 통보를 접수하는 전용전화 「STOP! 아동포르노·정보핫라인」을 개설하였다.

54) http://www1.g-reiki.net/ishikawa/reiki_honbun/ai10111621.html(2013.4.22)

(4)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피해지원

많은 수의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경우, 아동성매매(원조교제)를 한 요인으로 금전적인 부분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따라서 아동성매매의 전단계의 일탈행위로서 가출 또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011년 일본경찰에 의해 발견되어 보호된 가출소년은 15,917명으로 대부분이 중학생으로(42.5%) 여자청소년이 남자소년보다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内閣府, 2011: 60).

표 III-2-5 연도별 가출소년의 추이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인원	22,615	18,704	16,630	16,989	17,549	16,906	16,766	16,502	15,917

*자료: 内閣府, 日本子ども・若者白書, (2011: 60)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경우, 일반적으로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요보호아동(우범소년)으로서 아동상담소에 통고조치가 이루어지며,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우범소년으로서 가정법원에 송치되어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으로서 아동자립지원시설⁵⁵⁾에서의 처우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은 각 처분에 따른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일본경찰청생활안전국소년과에서 2004년 8월 5일에 발표한 「아동매춘에 관계되는 피해아동에 대한 갱생지원의 강화에 대해서(児童売春に係る被害児童に体する立直り支援の強化について)」의 내용을 중심으로 개관하고자 한다.

아동매춘에 관계되는 피해아동의 보호에 대해서는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되는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기초한 적극적인 단속 등에 대해서(1999년 10월 14일)」과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되는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시행에 대해서(2004년 6월 21일)」 등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요령을 경찰단계에서 규정하고 있다.

먼저, 피해아동의 지원기준으로서 아동매춘에 관계되는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갱생지원조치를

55) 아동자립지원시설은 비교적 낮은 연령의 소년에 대해서 개방적인 시설에서의 생활지도가 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송치된다. 즉, 불량행위를 하거나 또는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 등을 입소시켜 필요한 지도를 하여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강구하여 재피해방지를 우선적으로 하며, 우범소년으로서 송치 또는 통고조치를 취한 경우라도 관계기관과의 연계의 확보를 통하여 피해아동의 지원을 도모하도록 배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아동매춘관련 피해아동에 대해서 송치 또는 통고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 있어서 소년서포터센터 이외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소년카드를 작성한 때에는 거주지경찰서에 원본을 보관하고, 관계기관과 연계한 지속적인 지원활동을 위하여 소년서포터센터에 소년카드 복사본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송치 또는 통고의 조치를 취한 아동 이외의 아동매춘에 관련된 피해아동에 대해서 소년카드를 작성한 경우에도 동일한 지원정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소년카드를 작성하지 않은 아동매춘의 피해아동이 스스로 매춘의 상대방이 되는 등 「불건전성적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호자 등과의 연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년보도표를 작성하고, 소년서포터센터 이외에서 소년보도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거주지경찰서에 원본을 보관하고 소년서포터센터에 복사본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표 III-2-6 아동매춘에 관계되는 피해아동의 경쟁지원의 기준

아동의 상황	아동의 연령	
	14세 미만의 자인 경우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인 경우
(1) 아동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인터넷이성 소개사업을 이용하여 부정유인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동매춘의 상대방이 된 경위, 그 외의 사정으로부터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예를 들어 아동에 대해서 부정 유인으로서 입건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아동의 공술 등으로부터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 통하여 매춘의 상대방과 만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될 때에는 우범소년으로서 통고·송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요보호아동 (우범소년)으로서 아동상담소에 통고	우범소년으로서 가정법원에 송치
(2) 아동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죄를 범하거나 또는 형벌법령에 저촉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요보호아동 (우범소년)으로서 아동상담소에 통고	우범소년으로서 가정법원에 송치
(3) 아동이 보호자가 없는 경우 또는 보호자에게 감호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1) 및 (2)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요보호아동으로서 아동상담소에 통고	
(4) 아동의 심신의 상황, 처한 환경 등에 따라 아동매춘의 상대방이 된 것 등에 의해 받은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회복하는 것에 있어서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1), (2) 및 (3)에 해당하는 아동을 제외)	서포터센터 등에서 지속적인 지원 또는 보도를 실시(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자료: 警察庁生活安全局少年課長 『児童売春に係る被害児童に対する立直り支援の強化について56』

이와 같이 아동매춘의 피해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의 보호처분에 따라 각 시설에서의 개별적인 지원을 받게 되고, 그 외 소년서포터센터 등에서 지속적인 지원과 보도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일본전국의 지역경찰에 설치되어 있는 소년서포터센터는 소년보호직원을 중심으로 학교, 아동상담소, 그 외의 관련기관 또는 단체와 긴밀한 연계를 하면서 종합적인 비행방지대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2010년 4월 1일 현재, 일본전국에 197개소(이 가운데 경찰시설 이외는 67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소년서포터센터의 주요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소년상담활동이다. 소년 및 보호자 등으로부터의 고민 또는 문제 등의 상담에 응하는 것으로, 심리학 또는 교육학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직원과 소년비행문제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직원이 조언을 하는데, 직접상담 외에 전화상담 및 이메일 상담 등을 하고 있다. 둘째, 가두보도활동이다. 소년비행을 억지하고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비행에 이르지 않은 단계에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필요하다. 이에 일본경찰에서는 소년이 모이는 번화가나 통학로 등에서 학교, 그 외의 관계기관 및 자원봉사자 등의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보도활동을 하고 있다. 셋째, 계속보도 및 갱생지원 등이다. 소년상담 및 가두보도활동을 통하여 관계된 소년에 대해서 가정, 학교, 교우관계 등이 개선되기까지 본인 및 보호자 등의 신청에 따라 면접, 가정방문, 사회봉사활동에의 참가 등에 의한 갱생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집단괴롭힘 및 성범죄의 피해를 입은 소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넷째, 계몽홍보 활동이다. 학교에서의 비행방지교실, 약물남용 방지교실 등을 개최함과 동시에 지역주민 및 소년의 보호자가 참가하는 비행문제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소년비행과 범죄피해의 실태 및 소년경찰활동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기관이다.

(5) 요약 및 시사점

지금까지 일본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정책 등에 대해서 개관하였다.

56) <http://www.pref.gifu.lg.jp/police/horei-shiryō/kitei/tsutatsu-tsuchi/shonen/index.dala/tu-h16-syonen459.pdf#search='%E5%85%90%E7%AB%A5%E5%A3%B2%E6%98%A5%E3%81%AB%E4%BF%82%E3%82%8B%E8%A2%AB%E5%AE%B3%E5%85%90%E7%AB%A5%E3%81%AB%E5%AF%BE%E3%81%99%E3%82%8B%E7%AB%8B%E7%9B%B4%E3%82%8A%E6%94%AF%E6%8F%B4%E3%81%AE%E5%BC%B7%E5%8C%96%E3%81%AB%E3%81%A4%E3%81%84%E3%81%A6'>
참조. (2013.05.13)

종래까지의 일본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정책은 주로 성풍속산업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1960년대의 개인실 욕장업과 1970년대의 모텔의 증가, 80년대의 개인실 누드, 개인실 마사지 등의 아동·청소년 성매매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과 개정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왔다. 또한, 1999년의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되는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당시의 아동매춘(원조교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와 달리 최근에는 일본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정책은 주로 인터넷유해사이트(이성소개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즉, 일본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아동매춘이 인터넷을 이용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산업의 발달에 따라 종래의 이성소개 사이트만이 아니라 휴대전화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아동매춘이 이루어지는 등 휴대전화용 인터넷사이트의 규제와 관련된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휴대전화용 인터넷사이트의 열람규제정책으로서 2009년 4월에 「청소년인터넷환경정비법」을 제정하여 아동·청소년의 휴대전화에 위법·유해정보를 사전에 차단하는 필터링서비스를 실시하였다. 또한, 아동매춘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휴대전화용 인터넷사이트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이 휴대전화를 소지하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이 문부성에 의한 실시되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로 아동에게 휴대전화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물론 강제적이거나 또는 벌칙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으나 아동매춘을 사전에 예방하여 아동·청소년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본정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예방을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문제 가운데 하나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즉, 2003년에 내각총리 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청소년육성추진본부」가 책정한 「청소년육성시책대강」에서도 일본사회의 인구 구조의 변화와 정보화, 국제화, 소비사회화 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청소년의 성적비행, 등교거부, 가출, 학대 등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인식과 그 해결책 등을 모색하고 있다. 이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와 그리고 모든 문제행동의 발생요인이 사회환경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반적인 사회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2003년 9월에 설치된 「범죄대책각료회의」가 동년 12월에 발표한 「범죄에 강한 사회의 실현을 위한 행동계획」에서도 범죄소년에 대한 대응으로서 법률체제의 정비와 함께 비행소년의 조기발견과 조기조치, 그리고 아동매춘과 아동포르노, 약물남용, 가출 등을 억제하기 위한 대응을 추진하고, 유해도서 등의 유해환경의 정화와 유해인터넷사이트에 대한 대책의 추진 등을 구체적인 대응책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의 발생원인을 개인적인 요인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사회구조와 이에 따른 부산물로 인식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와 그 보호를 위해서는 개별적인 법률에 의해 대처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종합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의 예방정책의 중심이 법적규제강화에 있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3) 미국⁵⁷⁾

(1) 입법례

① 연혁 및 최근 추세

2011년에 발간된 미국의 『아동 거래에 대한 복지적 대응책 수립(Building Child Welfare Response to Child Trafficking)』에 따르면, 미국에서 발생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 수는 한 해 약 29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Adolescents, Center for the Human Rights for Children, 2011: 11).

미국은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국가적 이슈로 간주하고, 18세 미만의 청소년 성매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11년 3월 16일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법(Domestic Sex Trafficking Deterrence and Victims Support Act of 2011)”을 발의하였다(Hardy, Compton, & McPhatter, 2013: 12).

사실 2000년에 이미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TVPA)”을

57) 이 부분은 조운오(동국대학교 교수)가 집필하였음.

통과시킨 바 있으나, 청소년 성보호 대책을 강화하고자 최근 보다 강력한 새로운 법안을 2011년에 다시 발의한 것이다. 이 새로운 법안(S.596)은 18세 미만의 성매매 청소년을 철저히 성 착취의 피해자로 간주하고,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해 보호처분이나 경미한 수준의 형사처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취지를 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최근 각 州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다루는 시각과 연방의 입장이 서로 유사한 방향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에 있다. 즉, 두 입장 모두 미성년자 성매매 대책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18세 미만의 성매매 행위는 성인 여성의 성매매와는 완전히 다르게 “피해자 보호” 입장에서 성매매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실제 미성년자의 성매매는 철저히 피해자 중심적 시각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미국의 2011년 법안에서는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를 한 경우 그 아동·청소년을 일반 비행청소년이나 성인 성매매 여성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특별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할 온전한 범죄 피해자로 간주하고 있다.

다시 말해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피해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데 초점을 두면서,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어떤 전통적인 형사처분도 내리지 않게 하는데 2011년 새 법안의 의의가 있다. 청소년의 성 착취 피해경험에 대해 개별 상담치료 및 지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약물중독 등의 문제를 사례관리(case management) 방식으로 해결하는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요약하면, 미국에서 2011년에 발의된 이 새로운 법안은 청소년 성매매 행위를 남성 가해자의 성 착취(sexual exploitation) 행위로 간주하고, 성매수 행위는 청소년의 자발성 여부와 상관없이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청소년 피해자는 성매매 당사자가 아닌 철저한 범죄 피해자이며 일종의 “인신매매 생존자(survivors of trafficking)”라고 천명하고 있다(Hardy, Compton, & McPhatter, 2013: 10).

② 유형 및 활동

2013년 현재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미국 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법(Domestic Sex Trafficking Deterrence and Victims Support Act of 2011)”은 2000년에 통과된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법(TVPA)을 모태로 새로운 성매매 예방정책을 담고 있다.

이 법안에서는 인신매매(trafficking)를 성매매와 노동매매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다루는데, 성매매는 강압, 회유, 기망 등을 이용해 피해자로 하여금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상업 목적의 성 행위에 사용하는 행위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성인의 경우 강압, 회유, 기망 등의 방법이 동원되어야 하나, 아동·청소년에게는 그 수범에 제한 없이 모든 형태의 성행위 강요 자체가 인신매매 행위로 간주된다.

반면, 노동매매는 비자발적인 채무변제 등을 이유로 상대방을 강압, 회유, 기망으로 피해자를 실질적인 노예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특정 개인의 강제 노동력 모집, 착취, 제공, 은닉 행위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된다.

사실 미국은 일반적인 인신매매 정책을 수립하면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2000년에 이미 통과되었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VPA)을 2008년에 다시 확대,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거쳤다.

일명 “윌리엄 윌버포스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재인가법(William Wilberforce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Reauthorization Act of 2008)”이라 불리는 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매매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적 근간을 만들고, 성매매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하겠다(Hardy, Compton, & McPhatter, 2013: 9).

동법 제212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성매매 또는 노동매매의 피해자라는 정보가 입수되면 보건사회부(Health and Human Services) 장관이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목적으로 90일 간 일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Hardy, Compton, & McPhatter, 2013: 9). 일시적 지원 기간을 90일로 정한 이유는 피해 청소년에게 정확히 어느 정도의 사후지원 및 치료기간이 필요한지를 조사하고, 그 서비스 적격성 여부가 어느 정도인지를 세심히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법적으로 보장된 90일이라는 중간 지원 기간 통해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 법(제212조)에서는 聯邦, 州, 地域社會 내 관련 기간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발견하면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24시간 내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즉각적인 국가 개입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단순히 개인 간의 “경제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관계가 아니라 위기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문제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 그리고 청소년의 정서적 불안감과 낮은 의존감, 부모의 양육능력 부재

등에서 비롯된 복잡한 사회문제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즉각적인 국가개입과 정부 차원의 장기적·종합적 개입이 필수인 주요 국가 의제로 다루고 있다.

또한, 2008년에 통과된 이 법에서는 보건사회부 장관과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聯邦 및 州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다(Hardy, Compton, & McPhatter, 2013: 9). 만약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성매매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가출 원인이나 성매매 경로 및 그 사후에 발생하는 심리적·신체적 고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보호 정책은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다시 말해 피해 청소년이 갖고 있는 심리적 상황 및 피해자의 개별 욕구 등을 담당 공무원이 왜곡된 형태로 오해한다면, 이로 인해 오히려 담당 공무원들이 성매매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을 비난하거나 간접적으로 이중적인 처벌을 하게 될 소지가 있어 진정한 성매매 피해 청소년 보호 정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관련 일선 공무원들이 성매매 청소년에게 잘못된 낙인을 유발하거나, 혹은 성매매 청소년을 “어린 매춘부”로 인식하여 아동·청소년 상담, 개입 중 의도하지 않은 비난적 표현을 쓰게 된다면, 피해자의 성매매 행위를 방지·예방하는 일은 결코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없다. 즉, 관련 공무원 및 실무자들이 명확하게 아동·청소년 성보호의 필요성과 피해 청소년들의 욕구 등을 이해해야만, 진정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정책도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유관기관 공무원들의 교육훈련 과정이 의무적으로 법에 포함되어 있고, 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상대로 한 성별-적합 교육(gender-specific)과 아동·청소년 성보호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바라보는 관련 공무원들의 시각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해당 아동·청소년을 범죄자가 아닌 성 착취 피해 생존자로 보게 하는 공무원들이 진정한 태도가 결국 성매매 아동을 착취의 굴레에서 보호해 주는 핵심적인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형사사범 시스템 내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2008년에 발표된 “윌리엄 윌버포스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재인가법”의 근본적인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다고 하겠다.

③ 개념 및 특징

2011년에 발표된 미국의 『아동 거래에 대한 복지적 대응책 수립(Building Child Welfare Response to Child Trafficking)』보고서를 보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약취행위를 연방 및 일리노이즈(Illinois) 주(州)법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약취행위란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와 포르노물 제작, 상업적 성행위 등에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위력이나 협박, 기망, 유인 등이 그 구성요건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고, 18세 미만에 대한 성매매와 포르노물 제작, 상업적 성행위 그 자체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Adolescents, Center for the Human Rights for Children, 2011: 26). 즉, 18세 미만에 대한 성 약취 행위는 유인이나 기망, 협박, 감금 등의 수법이 처벌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참여한 경우에도 동법에 의해 아동·청소년 성매수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하겠다.

심지어 일리노이즈(Illinois) 주에서는 2010년 “일리노이즈 아동 안전법(Illinois Safe Children Act)”을 통해 “청소년 매춘(juvenile prostitution)”이란 표현을 완전히 삭제하기도 하였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의 개념 정의에서 보듯이 청소년 성매매 보호정책은 자발적인 매춘이라도 아동·청소년이라면 항상 순수한 성매매 피해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청소년 매춘이라는 표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성 착취자나 포주가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가두어 두거나 강제로 납치, 유인하는 등의 방법을 쓰지 않아도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소개하는 행위를 했다면, 무조건 아동·청소년 성매매 가담자로 처벌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자에 대한 처벌은 가중시키고,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완벽한 보호·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Lloyd(2011) 역시 최근의 미국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안에 대해 “강압이나 기망, 유인 없이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한 성매매의 경우에도 18세 이하라면 무조건 아동·청소년을 성 착취 피해자로 보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이 결국 아동과 청소년의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한 단계 앞선 선진화된 피해자 보호 정책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선진화된 피해자 보호 대책에도 불구하고, 실제 미국에서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신속히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포주나 약취자에 의한 강압, 희유, 납치 등의 행위가 없이도 은밀하게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반드시 가출 청소년이나 비행청소년만이 성매매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매매를 하는 모든 여성 아동·청소년을 찾아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겉으로 보기에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유지하면서 일반적인 가정생활을 하는 듯 보이는 청소년도 때로는 호기심에 성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은 어떻게 하면 일선 지역사회에서 성매매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낼 수 있느냐에 모아지고 있다.

이에 미국에서는 최근 들어 아동·청소년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빠른 선별 도구(rapid screening tool) 제작 및 위험 아동·청소년 사정평가 분류표 제작 등에 연구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것은 지역사회에서 보다 신속하게 고위험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확인하기 위한 대표적인 아동·청소년 예방 정책의 하나로 강조되고 있는 사업이다(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Adolescents, Center for the Human Rights for Children, 2011: 60).

지금까지 미국의 최근 아동·청소년 성매매 개념 및 성보호 관련 정책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정책은 법령 개정을 통해 청소년 성매매 관련 공무원 의무 교육, 조기 성매매 청소년 알림 시스템, 90일 간의 국가 일시지원, 평가 업무 등에 모아지고 있다.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매춘행위(juvenile prostitution)”가 아닌 아동·청소년 “성착취(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피해 문제로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보고 있는바, 미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 청소년을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분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는데 그 특색이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역시 매춘 행위라는 표현 대신 성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는 성인 여성의 성매매와 동일한 맥락에서 청소년의 성매매를 해석할 우려가 있어, 이 역시 새로운 고찰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즉, 여전히 아동·청소년 고유의 “피해자적 지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어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성매매라는 표현 자체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하 미국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실태 및 피해자의 특징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살펴본다.

(2) 실태 및 심각성

① 발생 실태

미국에서의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연간 약 200,000건에서 300,000 정도에 이르고 있다(Hardy, Compton, & McPhatter, 2013: 8).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시카고 지역에서만 약 16,000명의 아동·청소년들이 성적 착취 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Adolescents, Center for the Human Rights for Children, 2011: 27).

2011년에 국제청소년조직(IOFA)이 발간한 동 보고서에 따르면, 시카고 지역에서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를 시작하는 평균 연령은 12세이고, 전체 성매매 여성의 60% 이상이 18세 이전에 최초 성매매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확한 발생 실태는 청소년 성매매 발생 지역과 조사 시기, 성매매 범위 등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유형 별로 봤을 때 주로 가출 청소년의 성매매가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Kotrla, 2010: 183). 대다수의 성인 성매매 여성이 실제 그들이 미성년자일 때 처음 성매매 행위를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청소년 성매매 수치는 공식적인 통계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하겠다.

구체적으로 2001년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연간 244,000명에서 325,000명의 청소년이 성 착취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중 집을 나온 가출청소년의 성 착취 피해 수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겠다(Estes & Weiner, 2001: 14). 동 보고서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보았고, 청소년 유형을 (1) 자발적인 가출 청소년(runaway youth from home), (2) 시설 무단이탈 청소년(runaway from juvenile and other institutions), (3) 비자발적 가출 청소년(thrownaway youth), (4) 무연고 청소년(homeless children) 네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성매매 피해 수치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보면, 미국의 경우 보호자나 부모의 허락 없이 몰래 가출한 자발적인 가출 청소년이 121,911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모의 학대나 방임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집을 나갈 비자발적 가출 청소년이 51,602명으로 많이 나타났다. 세 번째로 처음부터 전혀 연고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주거부정으로 생활하던 무연고자 청소년이 27,972명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그룹 홈이나 비행청소년 쉼터, 청소년전문 복지시설, 병원 등에서 생활한다고 허가 없이 무단이탈한 청소년이 6,793명으로 성 착취 피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Estes & Weiner, 2001: 11).

② 성매매 발생 특징 및 약취자-피해자 관계

성매매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미국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대상이 급격하게 저연령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청소년기에 한정되었던 성 착취 피해 여성이 이제는 어린 여자 아동으로 점차 바뀌어 가고 있다. 10대 중후반의 여자 청소년뿐만 아니라 8~12세의 어린 아동도 성적 매력(sexualization)의 대상으로 미디어에 등장하면서, 여성 고유의 가치를 폄하하는 분위기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성적 약취 피해 연령 역시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실제, 미국에서 포주들이 선호하는 평균 성매매 아동·청소년 연령은 12~14세인 것으로 나타났고, 심지어 10세 전후의 어린 아동들도 성매매 행위에 동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and, 2009: 154;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Adolescents, Center for the Human Rights for Children, 2011: 27).

아동·청소년 성매매 행위는 성인 성매매와 같이 주로 포주(pimps)라고 불리는 불법 거래자(sex traffickers)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그 중간 거래자는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알선, 소개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람을 말하는데, 청소년과 비슷한 연령대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여성일 수도 있다(Hardy, Compton, & McPhatter, 2013: 9).

다시 말해 포주로 알려진 성매매 중간거래자가 아동·청소년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일 수 있고, 때로는 그 중간거래자가 아동·청소년의 동료이거나 남자친구, 가족 구성원일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 미국에서 발생하는 대다수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을 살펴보면, 미디어나 언론에서 자주 묘사되듯 우연히 만난 낯선 남자가 피해자의 포주가 아니라, 아동·청소년과 과거부터 어느 정도 친밀한 정서적 관계를 유지 했던 친구나 동료, 친척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Agustin, 2001: 108).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청소년의 성매매 행위가 발각된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포주와 아동·청소년이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과거의 착취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의 포주-피해자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성매매로 이윤을 취하는 성인 포주 및 또래 포주들은 정확히 자신이 아동·청소년과 어떤 착취-피착취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포주들은 초기에는 아동 및 청소년이 안정을 느끼면서 가족 구성원들이 제공해 주지 않았던 정서적 안정과 보살핌을 제공하는 척하다가, 일단 피해자가 자신의 통제권 내에 들어오게 되면 착취적, 억압적 관계를 보여 아동·청소년들의 욕구(needs)가 자신들에 의해서만 충족될 수 있도록 통제하고 강제하는 심리적 전략을 쓰게 된다.

포주들이 초기에 제공하는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정서적인 안정과 특별한 관심, 안정적인 주거지 제공 행위는 분명 처음에는 청소년을 도와주겠다는 선의로 오해되기도 한다. 청소년에게 이성으로서 관심이 있는 듯 행동하여 애정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또래 포주들은 가출 상태에 놓인 불안한 상태의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어린 여자 청소년들이 원하는 보호, 안정, 가족, 사랑, 보살핌 등을 제공한 후 간접적인 회유와 교묘한 조종, 협박 등의 방식을 이용해 성매매를 강제한다고 볼 수 있다(Kalegris, 2009: 317).

③ 성매매 이전의 피해경험

실질적인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경로(pathway)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성매매 피해여성의 약 70-90%가 성매매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성폭력 등의 범죄피해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rdy, Compton, & McPhatter, 2013: 10). 즉, 아동·청소년의 과거 범죄피해 경험은 낮은 자존감과 자기 비난, 우울증 등의 부정적 감정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또 다른 범죄 피해 및 성매매 피해 취약성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청소년이 돈을 받고 성매매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강제적인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면, 그 피해자는 복잡한 심리적, 정서적 불안감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성매매를 결심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성매매 아동·청소년 중 가출청소년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가출 여자 청소년 중 약 75%가 성매매 등으로 착취를 당하면서 포주의 통제 하에서 계속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면 미국에서도

아동·청소년의 가출과 정서적 불안감, 포주와의 왜곡된 유대감 형성, 빈곤 등의 문제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Estes & Weiner, 2001: 21).

미국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장기간의 학대 상황에 놓인 여자가 가정폭력 피해자를 바라는 입장과 유사하다. 은밀하게 오랫동안 폭력 피해에 노출되어 있었으나, 외부에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오히려 본인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자기 때문에 상황이 더 나빠졌다는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두 피해자 모두가 보이는 공통점이라고 하겠다. 매 맞는 아내 증후군(Battered Women Syndrome)에서 볼 수 있듯이 성매매 아동·청소년은 학습된 무기력 증상을 보이며, 많은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자신의 범죄행위로 가족들이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일부 피해 아동·청소년은 성매수 남성들이나 또래 포주를 두려워하며 다른 어른들을 전혀 믿지 않으려고 하는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될 수 있다.

여자 아동·청소년들은 자신의 성매매 사실을 수치스럽게 느끼기 때문에 외부에 성매매 사실을 털어놓거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느끼게 되고, 대신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Palmer, 2010: 44). 즉, 다른 가족이나 외부사람들에게 쉽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이유도 청소년 스스로가 본인이 어떤 면에서는 성약취의 피해자가 아닌 성매매 범죄자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Hardy, Compton, & McPhatter, 2013: 14).

(3) 아동·청소년의 심리적·정신적 문제

① 트라우마 유대감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갖고 있는 심리적·정신적 문제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성매매 행위에 대한 수치스러움이나 범죄행위로 인한 처벌 가능성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갖고 있는 성매매 중간 포주에 대한 정서적 감정은 보통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이다. Kalegris(2009)는 이러한 복잡한 성매매 약취자나 성매매 포주에 대한 여자 성매매 청소년의 정서적 애착관계를 일명 “트라우마 유대감(trauma bond)”이라고 불렀다.

왜 자신을 성매매 도구로 사용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포주에 대해 피해 아동·청소년은 독특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는 것인가? 역설적인 표현일 수 있으나, 성매매 피해 청소년은 자신에게 고통을 가한 포주에게 자신이 그 포주를 책임지고 도와주어야 할 의무감이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느끼게 된다. 자기분리적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학대받는 상황을 별개로 인식하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자신에게 고통을 가하는 가해자를 자신이 진심으로 이해해주고 보호해 주어야 할 대상이라고 느끼는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해 성매매 상황 자체에 대해 자신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느끼게 된다(Herman, 1992: 386).

피해 아동·청소년은 자신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포주의 힘이 막강하면 할수록, 그리고 외부에서 자신의 상황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믿게 되고, 결과적으로 청소년이 갖게 되는 트라우마 유대감은 더욱 강화된다. 자신이 결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무의식적으로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자신이 처한 현실을 자기분리적 상황으로 인식하고, 자신이 어느 정도 그 상황에 통제하고 관여할 수 있다고 믿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실제 가해자와 왜곡된 형태의 적극적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② 스톡홀름 신드롬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가 보이는 왜곡된 정서적 유대감은 트라우마 유대감뿐만 아니라 인질 상황에서 인질 피해자가 인질 가해자에게 보이는 “스톡홀름 신드롬”과도 공통되는 면이 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이는 정서적 친밀감은 주로 일부 형사사건에서 인질로 잡혔던 피해자들이 사건 종결 후, 법정에서 가해자에게 보이는 정서적 친밀감과도 비슷한 면이 있는데 이러한 스톡홀름 신드롬은 실제 일부 피해자들이 과거 범죄행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오히려 우호적인 법정 증언을 하게 되면서 밝혀지게 되었다.

납치, 인질, 협박 등의 범죄 피해경험으로 생사의 고통을 경험한 피해자들이 외부 사람들과 장기간 고립됨으로써 그들에게는 구원의 손길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분노와 배신감이라는 부정적 감정과 큰 관련이 있다. 피해자는 자신을 인질로 잡고 있던 범죄자에게 인간적인 동질감과 이해심을 느껴 정서적인 애착관계를 갖게 되고 자신이 협조해 줘야 할 것 같은 공생관계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반면, 외부에서 자신을 구해 주지 않는 가족이나 경찰에게는 분노와 서운함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아동·청소년 성 약취 피해자들이 또래 포주에게 느끼는 왜곡된 감정이 일종의 트라우마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Hardy, Compton, & McPhatter, 2013: 11).

성매매 아동·청소년들은 가출 이전에 이미 심각한 가정해체, 빈곤, 가출, 범죄피해, 아동학대 등의 부정적 경험을 갖는 경우가 많고, 과거에 자신에게 도움을 준 인적 네트워크도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또래 포주와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그 정서적 애착은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 미국에서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보면,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에게 해리장애, 약물남용, 기분 이변성, 충동조절 장애, 행동장애, 반사회적 성격장애 등의 징후가 장기간 계속되었던 것으로 나타나 성매매 이전에 어느 정도 심리적, 신체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Cloitre, Stolbach, Herman, Kolk, Pynoos, Wang & Petkova, 2009: 309-408).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 치료 프로그램은 트라우마 유대감과 스톱홀름 신드롬 같은 왜곡된 정서적 유대감을 교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 항목이다. 미국에서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갖고 있는 독특한 심리상태와 정서불안, 애정결핍 상황 등을 먼저 이해한 후 피해자 지원 상담,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바로 일부 성매매 아동·청소년들이 또래 포주와 맺고 있는 애착관계와 피해자의 불안정한 심리상태 등을 모두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Herman, 1992: 390).

또한, 장기간 은밀하게 포주나 성적 약취자로부터 학대를 받게 되면,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은 건강하게 자신을 보호하고, 성매매 생활에서 탈출하게 되는 대처능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낮은 자존감과 함께 약물, 알코올 남용 등의 문제도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와 함께 일부 성매매 아동·청소년들은 다른 청소년들이 포주에게 잡혀 어떻게 다시 성매매 행위로 돌아오게 되는지를 간접 경험하게 되면서 아예 탈출 자체를 포기하기도 한다. 강압적인 포주의 심리적, 신체적 학대행위가 두려워 일부 성매매 아동·청소년들은 탈출 자체를 기피하면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반복적인 성매매 행위를 계속하게 되는 것이다(Hardy, Compton, & McPhatter, 2013: 12).

계속되는 가혹행위 상황에서 피해자가 신체적 질병이나 우울증의 문제를 겪게 되면,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자해 및 자살 시도 행위도 증가하게 된다. 성매매 청소년의 경우, 자신이 수치스러운 행위를 했고 어쩌면 그로 인해 보호처분 등의 사회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쉽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실제 외부의 개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게 되면, 반복적인 학대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도망치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 자발적인 통제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자해 및 자살과 같은 행동이 증가할 우려가 크다고 하겠다(Kotrla, 2010: 355).

(4) 정책 및 사업 내용

① 성매매 아동·청소년 보호 방향

미국에서는 2000년에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VPA)”을 제정한 이후, 아동·청소년 성매매 및 성 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 왔다. UN이 TVPA를 근간으로 여성과 아동을 위한 성매매 예방, 억제, 처벌을 위한 프로토콜(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을 개발해 오면서 미국 내 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U.S. Department of Justice, 2010: 5).

일명 “팔레르모 의정서(Palermo Protocol)”로 불리는 이 정책은 미국 정부의 성매매 정책을 크게 세 가지 패러다임으로 요약하고 있다. 그것은 3P 전략으로 불기도 하는데 첫째, 아동·청소년 성 착취 행위 예방(Prevention), 둘째, 성 착취자 기소(Prosecution), 셋째, 아동·청소년 피해자 보호(Protection)로 요약된다.

성 착취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3P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대책이 주로 피해자에 대한 개별화된 욕구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다수의 성매매 여자 청소년이 인구사회학적으로 매우 취약한 빈곤 가정 출신인 경우가 많고, 비자발적 가출을 한 경우가 많아 성매매 이전의 복잡한 문제 환경을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Hardy, Compton, & McPhatter, 2013: 13).

② 피해자-중심 접근방법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를 상담, 지원할 때는 포주나 성매매 약취자가 장기간 청소년에게 과거에 어떤 식으로 접근했고, 다른 가족이나 외부 사람들에 대해서 아동·청소년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살펴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즉, 미국의 아동·청소년 성보호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청소년 피해자 중심의 시각(victim-centered)을 강조하고, 청소년이 성매매에 이르게 된 경로(pathway)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성매매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권한부여(empowerment)를 중요시하며, 동시에 종합적인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방식을 유지한다는데 핵심적인 피해자 지원 목적이 있다(U.S. Department of Justice, 2010: 323).

여기서 말하는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이란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건강의료 지원 사업과 심리적 개별상담 사업, 생활기술 훈련제공, 일반학업 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것이다. 이하 “피해자-중심 접근방법”이 활용되는 미국의 청소년 성매매 예방 정책 및 프로그램 내용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매매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을 조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구조화된 문항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는 성인 여성의 그것보다 더 복잡한 심리적, 정서적 상황을 갖고 있고, 그로 인해 복잡한 PTSD와 학습된 무기력, 트라우마 유대감 등을 강하게 만들어 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반복적인 성매매 행위는 단순히 피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학습기회 박탈이나 정서적·신체적 피해대 경험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이나 자해, 자살시도, 알코올 및 약물남용 등의 2차적 문제와 연결되기 쉽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행위가 항상 성 약취자나 포주의 유인과 강압을 전제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이미 언급했듯이 일부 성매매 아동·청소년은 학교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일반적인 교우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은밀하게 성매매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피해자-중심 접근방법”에 따른 성매매 아동·청소년 선별 방법은 매우 세심하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만 한다.

<표 III-2-7>의 “성매매 피해아동 체크리스트”를 보면, 미국에서 법 집행 기관과 청소년 복지 산하기관 담당자들이 얼마나 세심하게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피해여부를 사정, 평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표 III-2-7 성매매 피해아동 체크리스트

Yes No

-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갖고 있는 심리적·물리적·성적 피해 증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아이 스스로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을 쉽게 표현하지 못한다.
- 혼자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데 많이 망설이고,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만 마음을 놓고 이야기 한다.
- 본인의 신분증이나 학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보통 때는 가짜 신분증을 갖고 다닌다.
- 학교 수업 이외에 아르바이트 근무 시간이 매우 긴 편이다.
- 일하는 시간에 비해 받는 보수가 매우 적다.
- 경찰이나 선생님 등에게 자기 이야기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쉽게 어른들을 믿지 못하는 눈치이다.
- 기억력이 같은 또래에 비해 좋지 않다.
- 돈을 벌기 위해 가족이 아닌 직장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많은 사람들과 혼숙을 하며 살고 있다.
- 학교를 중퇴한 상태이거나 오랫동안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다.
- 과거에 성매매 행위나 상업적인 음란행위 등을 한 적이 있다.
- 남자친구나 포주 이야기를 꺼낸다.
- 돈을 벌어야 바로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이야기 하거나, 밀린 방세를 내야 한다거나, 돈을 벌어서 생활 필수품이나 이동경비를 내야 한다고 말한다.
- 인터넷이나 온라인 채팅을 통해 협박 및 성적 착취를 당한 적이 있다고 말한다.
- 포주나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게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적이 있다.

* 출처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Adolescents, Center for the Human Rights for Children(2011). Building Child Welfare Response to Child Trafficking Handbook, pp. 39-40.

둘째, 미국 보건사회부(2008)에서는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갖고 있는 사후의 심리적·정서적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 구조화된 “선별문항 척도”를 개발하여 실무에 적용하고 있다. 일명 인신매매 피해자 선별도구(screening tool for victims of human trafficking)로 알려진 이 문항 척도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이 인신매매피해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지, 혹은 어느 정도로 그 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표 III-2-8>에서 보듯이, 누군가에게 강압적인 위협을 받고 있지 않은지 알아보기 위해 최대한 아동·청소년에게 우회적인 방법으로 현재 살고 있는 곳과 하고 있는 일 등을 묻는다.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갖고 있는 알코올 및 약물남용행위나 기타의 비행행위도 성매매 행위로 인한 일종의 복합적 PTSD 증상의 하나로 간주하여 최대한 간접적인 방식으로 질문, 평가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Justice, 2010: 297).

- 현재 본인이 떠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자유롭게 원하는 곳으로 떠날 수 있는 상황인가요?
- 자신이 원한다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인가요?
- 현재 살고 있는 곳(또는 일하고 있는 곳)을 떠나려고 한다면, 혹시 누군가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을 위험이 있나요?
- 최근 신체 일부를 다른 사람 때문에 다친 적이 있나요?
-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이나, 살고 있는 곳의 환경이 어떤지 솔직히 말해 줄 수 있나요?
- 본인이 현재 어디에서 먹고, 자며, 생활하고 있는지 말해 주세요.
- 몸이 아플 때 적절한 의료처우를 받았는지, 혹은 음식이나 물, 잠 등의 기본적인 욕구를 제대로 충족했는지 말해 주세요.
- 최근에 밥 먹는 일이나, 잠자는 것, 목욕하는 것 등의 기본적인 행위를 할 때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고 한 적이 있나요?
- 혹시 최근에 누군가가 가족이나 친구를 협박하겠다고 말한 사람이 있나요?
- 본인의 신분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누군가가 대신 갖고 있던 적이 있나요?
- 최근에 본인이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누군가가 억지로 하라고 한 적이 있나요?

* 출처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2008). Screening tool for victims of human trafficking⁵⁸⁾

③ 체계적인 아동·청소년 피해자 보호 프로젝트

미국에서는 최근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프로젝트를 개발, 시행하고 있다. 2011년 미국에서 시행된 “북극성 프로젝트(Polaris Project)”를 보면,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업이 어느 정도로 개별화, 구체화되어 가는지 알 수 있다.

가장 먼저 프로젝트 내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성 약취 피해 아동·청소년의 안전이다.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성매매의 늪에서 빠져 나오는데 초점을 두어 포주나 다른 성매매수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신변안전을 확보하고, 잠재적인 다른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있는지 확인한다. 성매매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들의 위치를 확인하여 최대한 많은 청소년들이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이다.

프로젝트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아동·청소년 스스로가 자신들을 “성 약취 피해자”라고 느끼지

58) [http://www.justice.gov/usao/ian/htrt/law_screen_questions%20\(2\).pdf](http://www.justice.gov/usao/ian/htrt/law_screen_questions%20(2).pdf) (2013. 8. 12)

못하는 이유를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돕는데 초점을 둔다. 먼저 자신들에게 지금까지 무슨 일이 일어났지 최대한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성매매로 도움을 요청한 이후 결코 자신들이 처벌받지 않게 됨을 분명히 깨닫도록 한다. 중요한 것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성매매 사실을 부끄럽게 느끼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고, 자신들이 모든 경우에서 성 약취 범죄피해자라고 명확히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미국의 2011년 북극성 프로젝트(Polaris Project)는 무엇보다도 성매매 상황에서 성 약취자와 포주의 확대 정도나 협박 기간, 위협 수법, 유인방식 등이 어떠한지를 성매매 아동·청소년 개인별로 조사하는데 초점을 둔다. 아동·청소년이 어떤 상황에서 성매매 생활을 하게 되었고, 어떤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강요받아 왔는지를 밝히는 것이 프로젝트의 관건이라고 하겠다. 이를 통해 종합적인 성매매 아동·청소년 평가·사정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재범방지가 가능해지면서 아동·청소년의 안전도 함께 담보될 수 있다(Hardy, Compton, & McPhatter, 2013: 13).

④ 피해자 보호·자원 협력 프로토콜 개발

미국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에 대해 청소년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만들어 운영하는데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11년에 “아동권리 센터 연계 청소년 국제조직(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Adolescents partnered with the Center for the Human Rights for Children)”이 발간한 『2011 아동 거래에 대한 복지적 대응책 수립』(Building Child Welfare Response to Child Trafficking Handbook(2011))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다양한 아동·청소년 복지단체들이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단계별로 협력 업무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사실과 위협 상황 등을 처음 확인·조사(identification & investigation) 하는 업무이고, 둘째는 파악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 업무(case management)이며, 셋째는 법적보호 및 옹호 업무(legal protections and advocacy) 협력이다. 마지막 넷째는 성매매 경험 아동·청소년이 다시 성매매의 굴레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위탁 및 자원동원(referrals and resources) 업무 협력을

포함하고 있는데, 각 단계에서 유관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Adolescents, Center for the Human Rights for Children, 2011: 20).

성매매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고, 어떠한 욕구를 지니고 있는지 청소년 복지 관련 단체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 실질적인 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긴밀히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서로 구조화된 프로토콜을 함께 수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기관들이 전문 아동·청소년 평가·사정 매뉴얼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관련 서비스들을 통합, 조절하면서 조직화된 아동·청소년 성매매 보호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선 청소년 복지기관 담당자들이 법률적 용어 및 아동·청소년 처우과정을 명확히 이해하여 개별 사안들을 각 특성에 맞게 사례관리하고, 청소년이 다시 성매매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활동을 협력해서 이루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다. 일련의 각 과정들이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다시 “피해자”로 재낙인시키는 절차를 밟지 않도록 하는데 특히 주의하고 있다(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Adolescents, Center for the Human Rights for Children, 2011: 97).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재낙인을 막기 위해 “2010 일리노이즈 아동 안전법(Illinois Safe Children Act 2010)”처럼 처음부터 법률 용어 내에 청소년 매춘(juvenile prostitute)라는 표현을 삭제하기도 하고, 저연령의 아동 성매매와 10대 중후반의 청소년 성매매를 구분지어 처분하는 실무자들의 태도를 공식적으로 비판하기도 한다. 즉, 실무자 처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미국의 경우, 10세 미만의 어린 아동의 성매매에는 비교적 관대하게 처분하면서 10대 중후반의 청소년 성매매에게는 엄격한 실무자들의 태도를 수정해야 할 사항으로 명확히 지적해 두었다(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Adolescents, Center for the Human Rights for Children, 2011: 83).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경험은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아 사회에 재적응하는데 큰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일선의 청소년 상담기관 담당자는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과거 성매매 상황 표출 및 인지-행동 치료를 받을 때, 재트라우마(retraumatization)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주의해야 한다(Kotrla, 2010: 184; Hardy, Compton, & McPhatter, 2013: 14).

⑤ 피해자 사후관리 사례관리 수립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아동·청소년 성보호 사후관리 지원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 성 착취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이 반복적인 성매매의 늪에서 빠져 나와 건강하게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건강관리 계획수립과 경제적 재정관리 능력향상, 학업수행 능력 향상 등의 체계적인 지원계획이 피해 아동의 특성에 맞게 수립되어야 한다(Lolyd, 2011: 223). 사실, 성매매를 경험한 아동·청소년들의 환경은 일반적인 청소년들의 환경보다 훨씬 더 열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후관리 계획 역시 주거지 및 음식제공, 질병치료, 학업이행 등의 기본적인 욕구에 맞춰질 필요가 있다.

미국 일리노이즈주에서 권장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인테이크 체크리스트를 보면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예측해 볼 수 있다(표 III-2-9 참조).

표 III-2-9 일리노이즈주 사례관리 클라이언트 Intake 체크리스트

- 인테이크 및 초기 약속
 - 사생활 철저보호 고지 및 익명성 보장과 관련된 절차적 한계 고지
 - 아동·청소년 피해자 동의서 받기 및 사후 처리절차 설명
 - 빠른 성매매 선별 도구 활용 및 종합적 사정평가 도구 등
 - 사후 약속 날짜 잡기 및 적절한 상담 장소, 스케줄 설정

-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욕구평가
 - 신변안전 여부 및 적절한 활용 자원 정도 평가
 - 의식주 및 기타 생필품 제공 정도 결정
 - 단기 및 장기 거주지 확보 여부
 - 휴대폰 사용 정도 점검 및 확인
 - 정신건강 상태 조사
 - 의료/구강 검사 실시
 - 보호자 및 부모 이외의 자원 제공 정도 확인

- 사례평가 과정 및 핵심 케이스 파일 기록 요건
 - 제 1부 - 사례관리 문서

- 제 2부 - 건강관리 문서
- 제 3부 - 법적지원/이민관리 문서
- 제 4부 - 혜택/지원관리 문서
- 제 5부 - 교육/취업/거주지 문서
- 제 6부 - 기타

* 출처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Adolescents, Center for the Human Rights for Children(2011). Building Child Welfare Response to Child Trafficking Handbook, p. 60.

미국에서 제공되는 “성매매 아동·청소년 생존자들을 위한 쉼터”는 일반적인 비행 및 가출청소년 쉼터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운영되고 있다(U.S. Department of Justice, 2010: 5). 비행이나 범죄행동을 억누르기 위한 청소년 시설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이 겪은 트라우마를 극복하여 사회에 재통합하기 위한 일종의 중간 휴양소로써 성매매 피해 생존자 쉼터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 말은 청소년을 위한 쉼터가 결코 아동·청소년의 자유를 조금이라도 제한하는 규제 성격의 시설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생존자의 건강과 치유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청소년이 과거에 겪은 억압적 시간들이 다시 트라우마로 다가오게 되면 시설 내 규율을 강조하는 강압적인 분위기가 자칫 성매매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을 더욱 소심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법무부는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위한 쉼터가 피해자들에게 일종의 “천국(heaven)의 문”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갖고 있는 심각한 트라우마를 사후 개입치료 과정에서 쉼터 운영 담당자들이 부정적인 자극으로 다시 회상시키기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U.S. Department of Justice, 2010: 13). 일반 청소년들의 가출쉼터가 비행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일련의 규율과 훈육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다소 포함되어 있는 반면,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위한 쉼터는 결코 신병을 강제하는 듯한 억압적 분위기를 보여주어서는 안 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과거의 억압적인 트라우마가 다시 떠오르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⑥ 피해자 반복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운영

아동·청소년의 반복적인 성매매 행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교육 기회 및 학습

환경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 피해자가 다시 성매매의 굴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적성에 맞는 적절한 경력 관리를 만들어 가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평균 성매매를 시작하는 아동·청소년의 연령이 12~14세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단절된 학습 기회를 먼저 다시 제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겠다. 심지어 일부 아동은 10세 전부터 성 착취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Rand, 2009: 141). 이에 전반적으로 성매매 아동·청소년들의 과거 학습 경험 및 기회가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어 미국에서는 공식적인 학업 기회제공과 실무 직장경력 훈련(career-related skills) 등을 중점적으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의 발달장애와 학습지체, 학업수행 능력 부족 등은 결국 성매매 경험 아동·청소년들을 다시 성매매 현장으로 내몰게 만드는 위험인자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후 지원 대책의 하나로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위한 경력 길잡이(career counseling)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은 매우 중요한 성매매 개입 활동 중의 하나라고 하겠다(Kalegris, 2009: 320). 멘토링 프로그램과 개인의 건강관리 계획수립,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들의 장래 경력 준비를 지원하는 것은 종합적인 카운슬링 프로그램의 토대가 되며, 보다 효과적인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회 재통합 대책을 마련하는 시금이 된다고 하겠다.

⑦ 성매매 관련 실무자 유의사항

지금까지 미국의 아동·청소년 성보호 대책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최근 발표된 Hardy, Compton, & McPhatter(2013)의 “정신건강 전문가를 위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실무 제안(Domestic minor sex trafficking: Practice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professionals)”을 통해 다시 한 번 미국 임상 실무자들이 강조하는 태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간략히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여덟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존자 개인이 갖고 있는 개별 욕구(individual needs)를 충분히 이해하여 피해자-중심적 접근(victim-centered approach)을 실천해야 한다. 피해자-중심적 접근이란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갖고 있는 자살 가능성, 건강의료

필요성, 정신적 안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실질적인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둘째, 실무 담당자들은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갖고 있는 위험 인자를 조사하기 위해 기존에 존재하는 과학적인 선별 도구들을 통합하여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조기에 성매매를 단절시키고, 고위험 성매매 청소년에게 집중적인 개입 전략을 시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유관기관들이 가장 과학적인 성매매 아동·청소년 선별 도구를 개발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선별 도구 개발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주관적인 평가와 객관적인 위험인자가 적절히 평가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도구 개발 및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자료 공유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대할 때는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합법적인 미국 시민권자인지에 관계없이 모든 인종, 연령, 성별을 아울러 성매매 아동·청소년에게는 동일한 수준의 보호 정책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넷째,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자유롭게 자신을 표출할 수 있는 개방형 방식의 질문태도를 사용하여 여러 차례 피해자의 상태를 중복 점검해 보는 평가 단계를 만들어야 한다. 단 한번의 피해조사만으로는 정확한 성매매 유입 경로 및 재유입 가능성 정도 등을 파악할 수 없는바, 일정한 시기를 두어 반복적으로 평가·사정해 두는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대할 때는 과거 피해자가 겪은 트라우마에 초점을 두어 치료 전략(trauma-focused strategies)을 수립해야 한다. 학습된 무기력이나 스톱홀름 신드롬과 같은 왜곡된 정서적 애착이 만들어진 이유와 과정을 명확히 인식시키고, 성매매 포주-피해자 간에 만들어진 유대감이 어떻게 단절되어야 하는지 피해자의 트라우마에 초점을 두어 처우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반복적으로 성매매 포주나 성 착취자에게 돌아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결국은 과거 트라우마 속에서 비롯된 왜곡된 유대감에 의한 것인 경우가 많으므로 실무자들은 이를 비난하기보다는 그 근본적 트라우마의 원인을 밝히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거주하는 쉼터 운영은 가능한 과거 수용, 강제, 억압, 자유제한 등의 트라우마를 떠올리지 않게 최대한 피해자의 자유가 허용되는 방식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자칫 규율과 훈육을 강제하는 청소년 쉼터 분위기가 국가의 '국친사상' 등으로 당연시될 경우도 있으나, 아동·청소년 성매매 쉼터의 경우에는 과거 피해자가 겪은 강제생활의 트라우마가 떠오르지 않도록 안전하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일곱째, 성매매 피해를 겪은 아동·청소년에게는 성병, 임신, 낙태와 같은 건강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별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성매매로 인한 신체상의 건강 문제가 성매매 기간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므로 사례관리 단계에서 아동·청소년의 질병 관리를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여덟째, 성 착취 피해경험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계획해 나가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바,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위해 자기가치 향상 기법, 권한부여, 자존감 향상 등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Hardy, Compton, & McPhatter, 2013: 15). 장기간의 성매매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은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력이 미약하고, 타인과의 올바른 관계형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심리적, 정서적 특징을 고려한 개별화된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과 아동의 발달 특징에 민감한 프로그램(development sensitive program)이 필요하다.

(5) 요약 및 시사점

지금까지 미국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입법례 및 지원방침 등을 살펴보았다. 위에서 Hardy, Compton, & McPhatter(2013)의 연구를 통해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다루는 실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들을 여덟 가지로 정리해 살펴보았으나,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본 연구에서 활용한 미국의 다른 관련 보고서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사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 방지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가장 큰 특징은 어떠한 경우에도 18세 미만의 성매매 아동·청소년은 비행청소년이나 형사처분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본인의 자발성 여부와 상관없이 오히려 철저히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및 약취 피해자로 간주함으로써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자유롭게 외부에 알릴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크게 보면 이것을 가리켜 성매매 아동·청소년 생존자 개인이 갖고 있는 개별 욕구(individual needs)를 반영한 피해자-중심적 접근(victim-centered approach) 정책이라

부를 수 있다.

일부에서는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아동·청소년을 훈육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미국에서는 오히려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성매매 사실을 외부에 알려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철저히 보호해 주는 것이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는 첩경이라고 보았다. 미국에서 성매매 아동·청소년 생존자들을 위한 쉼터가 다른 일반 청소년 쉼터보다 더 자유롭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운영되도록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다루는 관련 실무자들에게 법적으로 성매매 유입경로 및 발달 민감성 특성 등을 의무적으로 교육받게 하여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다룰 때 절대 “작은 매춘부”로 여성 아동·청소년을 인식하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하는 것도 피해자 중심적 아동·청소년 성매매 대책과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유관기관 실무자들과 우리 사회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미국의 경우, 10세 미만의 어린 아동의 성매매 행위보다 10세 중후반의 여자 청소년의 성매매에 상대적으로 관련 실무자들이 더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잘못된 처우로 강력히 지적하며, 아동·청소년의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18세 미만의 성매매 아동·청소년에게는 동일한 피해자적 지위를 부과하도록 요구한바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 큰 것으로 소년보호기관 및 청소년 보호 담당자들이 10세 미만의 여자 아동(child)이 아닌 10대 중후반의 성매매 여자 청소년(adolescent)에게도 동일한 잣대의 보호 기준을 가지고 그들 모두를 온전한 성매매 착취 피해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법령을 통해 아예 청소년 매춘(juvenile prostitution)이라는 표현도 삭제시켰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록 매춘이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성인 여성에게 사용되는 성매매라는 표현을 아동·청소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바, 피해자 시각이 부각되는 다른 방식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표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둘째,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지역사회 내 종합적인 청소년 사회복지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조하고 있다. 성매매 아동·청소년은 일반 가출 위기 청소년이나 비행 청소년과는 또 다른 특징을 갖고 있으므로, 청소년 유관 기관들과의 정보공유와 정확한 조기 진단 도구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미국에서는 청소년 지원 단체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만들어 공동으로 운영하는 있는데, 단계별로 협력 업무 내용을 보면 첫째,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사실과 위험 상황 등을 처음 확인·조사(identification & investigation) 하여 둘째, 파악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case management), 셋째, 법적보호 및 옹호 업무(legal protections and advocacy) 협력, 넷째, 성매매 경험 아동·청소년이 다시 성매매의 굴레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위탁 및 자원동원(referrals and resources) 업무 협력을 포함하고 있다(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Adolescents, Center for the Human Rights for Children, 2011: 20).

셋째,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수자 대책과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공식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상업적 성행위를 하거나 모집, 은닉, 매매, 제공, 획득의 목적으로 관련 행위를 한 경우 연방법(18 U.S.C. § 1591)에 의거 성매매자로 처벌하고 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연령이 18세 미만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가해자의 물리적 폭력이나 사기, 회유, 협박 등이 처벌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팔레르모 의정서(Palermo Protocol)”에 의거, 미국 정부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정책을 크게 세 가지 패러다임으로 나누어 천명하였다. 일명 3P 전략으로 요약되는 세 가지 패러다임은 첫째, 성 약취 예방(Prevention), 둘째, 성 약취자 기소(Prosecution), 셋째, 아동·청소년 피해자 보호(Protection)로 축약된다. 두 번째 성 약취자 기소가 미국의 성매매수자 정책을 대변하는 것으로 18세 미만에 대한 성매매 및 성 약취에 있어서는 가해자를 반드시 기소하여 엄격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일부 주에서는 아동에 대한 그루밍(Grooming) 관련 처벌법을 통해 직접적인 성행위 및 약취, 유인 단계에서 국가가 성매매수자를 적극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까지 마련하였다. 인터넷 이메일이 등을 통해 미성년자를 성적인 행동으로 유인해 내는 일체의 행동이 법 위반 범죄(18 U.S.C. § 2422)로 간주되고, 동일한 성적 목적으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정보를 유포한 경우에도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플로리다 주에서는 온라인상의 직접적인 아동·청소년 성매매수자 처벌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의 간접적인 아동·청소년 유인행위까지 “아동·청소년 유혹 컴퓨터 사용죄(Use of a Computer to Seduce a Child)”로 인정되어 중범죄의 양형 처벌을 받게 된다.⁵⁹⁾

59) http://en.wikipedia.org/wiki/Child_grooming (2013. 8. 12)

4) 영국⁶⁰⁾

(1) 입법례

영국은 2009년 “아동·청소년 성착취 안전방안(Safeguarding Children and Young People from Sexual Exploitation)”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들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HM Government, 2009: 6). 세부 방안들을 살펴보기 전에 간략히 영국이 지금까지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제정한 핵심 법안들부터 간략히 검토한다.

① 아동법(Children Act)

1989년의 아동법(Children Act of 1989)에 의해 지역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들이 1차적인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공식적인 책임이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HM Government, 2009: 71).

동법 제20조에 의거, 관할 지역 내에서 적절한 주거 공간을 찾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아동 및 청소년이 발견되면 지역 내 담당자들이 주거부정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일차적 의무가 있음을 천명하였다. 영국의 아동법에 말하는 아동·청소년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지칭한다. 동법에 따르면, 법원의 판단에 의해 긴급 보호명령(emergency protection order)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아동·청소년이 발견되면 먼저 안전한 곳으로 아동을 이동시킬 수 있고, 특정인과의 접촉도 차단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동법 제 44조).

또한, 경찰도 아동법에 의거 가출청소년이나 성매매 청소년에게 특별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2시간 동안 경찰 재량으로 보호적 구금(protective custody)을 할 수 있다. 결국, 영국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누군가로부터 중대한 위협을 당하거나, 상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아동법에 근거하여 지역 내 법원이나 경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들이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안전을 가장 먼저 책임질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0) 이 부분은 조운오(동국대학교 교수)가 집필하였음.

아동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된 행위를 언급하며 성 착취자와 포주를 처벌하는 근거 규정을 함께 규정하였다. 즉, 동법 제 49조에서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여 납치하려 하거나 가출하게 만들거나, 혹은 가출을 도와주는 행위 전체를 범죄행위로 간주하는 것이다. 또한, 동법에서는 납치되거나 가출한 아동·청소년을 발견하면, 아동·청소년을 원래 상황으로 신속하게 되돌려 놓는 법원의 회복명령(recovery order)이라는 제도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HM Government, 2009: 72).

② 성범죄법(Sexual Offense Act)

영국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직접 언급하는 법으로 2003년에 제정된 성범죄법(Sexual Offense Act 2003)을 들 수 있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이 법안은 아동의 성행위 동의 여부나 가해자의 아동연령에 대한 인식여부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있으며, 오직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동법은 16세 미만에 대한 성범죄나 아동·청소년이 저지른 성범죄 문제까지도 함께 언급하고 있어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피해와 가해 문제를 모두 포괄하여 다루고 있다고 하겠다(HM Government, 2009: 73).

동법에서는 일명 “그루밍(sexual grooming)”이라고 알려진 성인의 아동·청소년 유혹 및 유인 행위까지도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즉, 동법 제15조에서는 18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만날 의도로 두 번 이상 이야기를 주고받거나 혹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신체적 접촉을 할 의도로 연락을 취해 만날 약속을 하게 되면 아동·청소년 유인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그루밍 외에도 동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행위와 음란물 시청 행위를 한 행위도 성범죄로 처벌받게 된다. 2003년에 만들어진 성범죄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재범 위험성이 있을 때, 법원으로 하여금 성범죄 등록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일종의 성범죄 예방명령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에 의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가해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면, 법원은 범죄자에 대해 기타 다양한 부가 명령도 부과할 수 있다.

(2) 개념정의 및 처벌 범위

영국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 착취(sexual exploitation) 행위란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성적 행위를 대가로 하여 착취적 상황 및 관계를 유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Pearce & Pitts, 2011: 16). 구체적으로 2009년에 발표된 “성적 착취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Safeguarding Children and Young People from Sexual exploitation)”라는 보고서를 보면, 성 착취 행위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하여금 성적 행위나 행동을 하게 만들면서 그 조건으로 음식, 거주지, 약물, 알코올, 담배, 애정, 돈, 선물 등의 무언가를 대가로 제공하여 아동에 대한 착취적인 상황, 환경, 관계를 만들어 내는 행동 전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Pearce & Pitts, 2011: 17).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 행위는 가해자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이나 제공이 없더라도 처벌이 가능하고,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아동·청소년과의 음란한 대화 및 성적 행위 요구 등만으로도 성 착취로 처벌이 가능하다. 결국 영국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과의 성매매 및 성 착취 행위는 연령이 낮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힘의 우위를 가진 자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회유, 통제하는 일체의 행위로 볼 수 있다.

미성년자라는 피해자의 연령 특징 외에도 영국의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그 범행 수범을 매우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는데,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향해 회유와 설득 과정을 통해 인터넷이나 전화 등의 통신수단으로 피해자의 성적 이미지나 사진을 올리게 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 성 착취 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 즉, 가해자의 경제력과 물리적 힘, 지능의 상대적 우월감 등을 인정하여 아동·청소년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용하려고 하면 폭넓게 가해자의 아동·청소년 착취를 인정한다고 하겠다(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2009: 10).

그러나 성매매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은 자신이 가해자로부터 간접적으로 회유, 통제받고 있다는 상황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Warrington, 2010: 75). 특히, 성매매 초기 유입 과정이 비강압적인 과정으로 성매매를 하게 되었거나 자기 스스로의 판단으로 신체 일부의 사진이나 성적 동영상을 온라인에 올렸을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가해자나 포주와 맺고 있는 “학대적(abusive)” 관계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Pearce & Pitts, 2011: 18).

이와 같은 이유로 영국에서는 성매매 매수자의 아동·청소년 유인 및 유혹 행위도 광범위하게 성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즉, 가해자의 그루밍(grooming) 행위도 아동·청소년 성 약취의 일부로 보고 있는 것이다. 영국에서 그루밍이란 미성년자와 성행할 의도로 아동·청소년의 신뢰나 아동·청소년 가족 구성원의 신뢰를 얻어내는 행동 일체를 의미한다(HM Government, 2009: 66).

구체적으로 그루밍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열거하면,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적인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보도록 만드는 것과 아동으로 하여금 성적인 이미지를 보여주어 그것을 흥내 내도록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성적인 의도가 담긴 메시지나 질문을 아동에게 하는 것을 말하고,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만나자고 제안하는 행동 등을 광범위하게 포함한다.

영국에서는 2003년 주류 판매 허가법(Licensing Act 2003)에 의해 술집이나 클럽 등의 레스토랑에서 성인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법에 의해 금지하고 있고, 1984년 아동 유괴법(Child Abduction Act 1984)에 의거 아동이 16세 미만인 경우 권한 없는 성인이 아동·청소년과 접촉하게 되는 경우도 그것을 범죄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2003년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을 통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행위를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거나 혹은 아동·청소년 앞에서 성행위를 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 범죄 유형에 따라 최대한 10년 또는 14년의 구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행위 동의 여부는 처벌 유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또한, 영국에서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연령이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5년형의 구금에 처해 질 수 있다.

(3) 관련 정책 및 활동내용

영국의 최근 아동·청소년 성매매 보호정책은 미국의 성매매 예방정책과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순수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정책의 일환이었다기보다는 2007년 이후 런던 지역에서 나타난 급격한 청소년 갱 증가와 청소년 갱에 의한 총기 살해 사건 증가의 한 축으로 조직범죄 맥락에서 여자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2007년 공식통계에 의해 런던 지역 내 청소년 갱과 관련된 살해 사건이 역대 최고 수치를

보이게 되었고, 이에 영국 수상은 2007년에 “총기 범죄 회담(Gun Crime Summit)”을 개최하여 경찰과 사법부, 지역사회 청소년 유관기관 합의체 모임을 결성하였다. 이 모임을 통해 결국 영국 런던에서 “런던 청소년 범죄예방 위원회(London Youth Crime Prevention Board)”가 만들어졌고, 이 위원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런던 경찰청과 소년사법위원회(Youth Justice Board), 기타 지역사회 청소년 유관단체들이 청소년 갱 문제와 관련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식적으로 모임을 갖기 시작했다(Pearce & Pitts, 2011: 22).

이후 지속적으로 영국 내 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는 청소년 갱 문제 속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했는데, 2009년과 2010년에 발표된 “치안유지 및 범죄법(Policing and Crime Act 2009)”과 “범죄 및 안전법(Crime and Security Act 2010)”을 통해 갱 활동 통제명령과 여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갱 구성원의 폭력행위 금지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영국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대책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청소년 갱과 관련된 폭력의 개념을 먼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영국에서 성매매 대책이 2007년 이후 청소년 갱 통제 정책과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우선, 갱(gang)과 관련된 폭력(violence)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2009년의 치안유지 및 범죄법 제4편(Part 4, Policing and Crime Act 2009)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갱과 관련된 폭력행위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갱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 명 이상의 사람으로 구성된 하나의 조직이 존재해야 한다. 둘째, 청소년 갱이 아동·청소년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사전에 특정 갱이 다른 집단과 구분되는 고유의 이름이나 상징물, 색깔 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갱이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 내 일부 영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Pearce & Pitts, 2011: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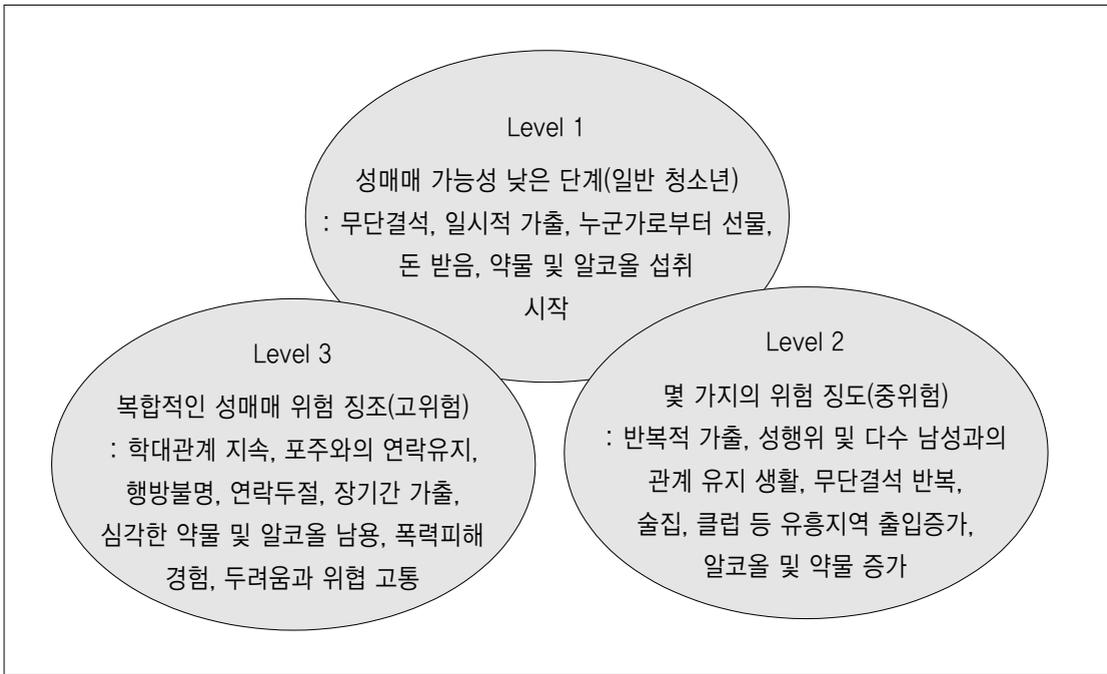
영국 내무성은 청소년 갱의 폭력성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이 성별에 따라 갱 활동에 관여하게 되는 경로가 다르고, 그 가해활동 범위 및 피해 정도도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Home Office, 2010: 21). 여자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행위가 주로 조직적인 갱 활동 속에서 이루어지고, 단순히 아동·청소년 개인의 1회적인 우발적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주나 성 약취자가 여자 아동·청소년과 긴밀한 유대감을 장기간 갱 속에서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갱 조직 내에서 악용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또한, 청소년 갱과 관련된 연구를 통해 여자 아동·청소년이 갱 활동에 관여하면서 일종의 갱 멤버로서 또 다른 범죄의 가해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피해자 역할도 하고 있음을 알아냈다. 성매매 아동·청소년 중 갱에 속해 있으면서 100% 순수한 피해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갱 구성원의 일원으로, 혹은 가족관계로, 긴밀한 파트너로서 성매매 여자 아동·청소년도 불법행위와 관여하고 있는 복잡한 2중적 위치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Pearce & Pitts, 2011: 25).

2010년 3월에 영국의 아동, 학교, 가족부(DCSF)와 내무성(Home Office)이 공동으로 발간한 “갱 활동에 영향을 받은 아동·청소년 보호대책(Safeguarding Children and Young People who may be Affected by Gang Activity)” 보고서를 보면, 구체적으로 성매매 여자 아동·청소년이 갖고 있는 복잡한 욕구와 갱 속에서의 가해자-피해자 중첩적 위치가 기술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영국에서는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조기에 여자 아동·청소년이 갱 조직과 관여하게 되는 경로를 차단시키고, 갱 조직과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아동·청소년은 지역사회에서부터 집중적으로 감독,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미 갱 멤버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자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그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천명하고 있다(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 Home Office, 2010: 7).

(4) 성매매 예방 모델

영국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보호정책은 공중위생 보건 모델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즉, 1차 예방에 속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수준의 예방활동(level 1)과 성매매 경력이 있는 고위험 아동·청소년을 위한 2차, 3차 예방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2차 예방활동은 주로 과거에 성매매 경험이 있었던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level 2), 3차 예방은 과거뿐만 아니라 최근 현재 상황에도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말한다(level 3).



* 출처 : SERA Model by the National Working Group for Sexually Exploited Children and Young People, 2008 from 『2009 Safeguarding Children and Young People from Sexual Exploitation: Supplementary guidance to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pp. 79-80.

【그림 Ⅲ-2-1】 아동·청소년 성매매 개입 다이어그램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차 예방단계에서는 성매매 가능성 낮은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방활동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아동·청소년이 이유 없이 잦은 무단결석이나 일시적 가출 등의 비행행위를 보인다면, 아직 성매매 활동을 보이지는 않더라도 예방 목적에서 증가된 수준의 훈육과 관심, 감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비교적 성매매 가능성이 낮은 단계이지만, 누군가로부터 뚜렷한 이유 없이 선물이나 돈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면, 그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동시에 아동·청소년의 약물 및 알코올 섭취가 확인된다면, 이것도 위험 징후로 파악하여 비행행위를 하게 된 최초 경로 등을 세심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2차 예방단계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위험 징후들이 포착되게 된다. 중위험 수준에 해당하나, 1차 예방단계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징후들이 나타난다고 하겠다. 아동·청소년이 초기에는 호기심으로 저질렀던 가출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여자 아동·청소년의 성행위 가능성이

우려되거나 특히, 다수 남성과 애정관계를 유지하는 생활을 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 수업에 흥미를 완전히 잃으면서 무단결석과 함께 가출을 반복적으로 한다면, 이것도 뚜렷한 2차 수준의 위험 단계라고 볼 수 있다.

3차 예방활동은 주로 이미 성매매를 저지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활동을 말한다. 2차 단계의 중위험 아동·청소년과 유사한 행동 패턴을 보이거나 여기에서는 실제 성행위를 성매매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술집이나 클럽, 모텔 등과 같은 유흥지역을 빈번하게 이용하는 행동을 보인다고 하겠다. 아동·청소년의 알코올 섭취량이나 약물 사용도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 것을 3차 단계 고위험 아동·청소년의 행동 징후라고 볼 수 있다.

(5) 고위험 아동·청소년 지표

제한된 성매매 예방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성매매 가능성이 가장 높은 아동·청소년을 빠르게 파악하여 그 대상에게 집중적으로 자원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영국에서는 소위 고위험 아동·청소년 지표(indicators)라는 것을 만들어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다루는 관련 전문가들이 개입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HM Government, 2009: 43-44). 고위험 아동·청소년 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의 위험성 확인 지표는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째는 아동·청소년 발달 욕구이고, 둘째는 부모 양육능력 분야이며, 셋째는 가족 및 환경 요인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분야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발달 욕구 부분은 다시 세부 영역으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에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건강, 교육, 감정 및 행동발달, 정체성,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외모 변화가 확인 지표로 포함된다.

I. 아동·청소년 발달 욕구 중심

■ 건강분야

- 물리적 징후(신체적·성적 학대로 인한 멍 자국 및 타박상 등)
- 만성적 피로 호소
- 반복적인 성병
- 임신 및 낙태 호소
- 약물, 알코올, 및 약물 오남용 증거
- 위험한 성 행동

■ 교육분야

- 학교 무단결석 및 무단이탈
- 현저한 학교 수업능력 및 태도 부진

■ 감정 및 행동발달 분야

- 감정이변 및 불안 급증, 폭력적인 언어 사용 증가
- 상점 들치기 및 절도 등의 경미한 범죄 행동
- 남에게 감추려고 하는 은밀한 행동 증가
- 알 수 없는 성인 차량에 동승하거나 내리는 경우

■ 정체성 분야

- 낮은 자기 이미지, 낮은 자존감, 자해 행위 등, 기타 손목을 긋거나 약물을 과다복용하고, 섭식장애를 보일 수 있고, 이성과의 난잡한 성행위를 보임.

■ 가족 및 사회관계 분야

- 부모 및 보호자, 기타 가족 구성원과의 적대적 관계
- 부모, 형제자매, 애완동물, 선생님, 주변 교우들을 향한 물리적 신체 공격행동
- 잦은 거주 시설 및 보호시설 이동
- 부모 및 보호자, 친구나 주변 전문가들로부터의 성 착취 피해 우려 의견
- 연령에 맞지 않는 행동
- 성매매 행위를 하고 있는 다른 아동·청소년과의 연계
- 성적으로 왕성한 행동
- 나이가 현저히 많은 성인과의 성 관계
- 나이 많은 성인들과의 이해되지 않는 친밀한 관계 유지
- 인터넷을 통한 성인 남성들과의 잦은 대화 접촉 등 부적절한 관계 형성
- 알 수 없는 성인들이 보내는 문자 메시지, 전화, 편지 등
- 아동·청소년 집 주변에서 맴도는 알 수 없는 성인들 및 나이 많은 청소년

- 지속적으로 종적을 감추거나, 밤에 갑자기 외박을 하거나 적절한 이유 없이 밤늦게 외출했다가 귀가
- 적당한 거주지 없이 가출하여 연락두절 상태로 지나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잠자리 등의 숙식문제를 어디선가 잘 해결한 것으로 보임.
- 가출 후 발견 된 곳이 피해 아동·청소년이 전혀 연고가 없는 지역임.

■ 외모 변화

- 현저한 외모, 얼굴, 치장 방법 등의 변화
- 아동·청소년의 연령에 맞지 않는 화장이나 옷, 치장을 하고 외출

II. 부모 양육능력 분야

■ 아동의 안전 확보

- 부모의 과거 신체적, 성적, 감정적 아동학대 기록, 또는 방임 경력

III. 가족 및 환경요인 분야

■ 가족의 과거 기록 및 기능

- 신체적, 성적, 감정적 학대 기록, 또는 방임 경력
- 가정폭력 기록
- 아동양육의 한계 및 어려움

■ 거주지

- 주거부정 노숙행위의 형태
- 권한 있는 사람이 아니면서 특정 지역의 열쇠를 보유

■ 수입

- 적절한 이유 없이 막대한 양의 돈을 소유
- 적절한 이유 없이 비싼 옷과 전화기, 등의 물건들을 소유
- 적절한 이유 없이 사치스러운 여가 활동에 많은 돈을 소비

■ 가족의 사회적 통합

- 피해 아동·청소년이 특정 성매매 장소에서 발견된 적이 있다는 기록

* 출처 : HM Government(2009), Safeguarding Children and Young People from Sexual Exploitation: Supplementary guidance to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pp. 43-44.

<표 III-2-10>와 같이 영국의 고위험 지표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매매 가능성 및 심사 분야가 아동·청소년 본인의 발달 욕구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 요인을 고려한 종합적·체계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성매매 예방 프로그램

영국의 성매매 예방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 성매매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취약성(vulnerability)을 감소시켜 예방 효과를 거두는 것이고, 둘째,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탄력적 회복력(resilience)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셋째, 영국의 성매매 예방 프로그램은 가해자의 범행 의도와 접근행동을 차단(disrupting and preventing the activities of perpetrators)시키는 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고, 넷째, 아동·청소년에 대한 포주나 가해자의 착취적 행동에 국가가 관용적 목인을 보여주지 않고(reducing tolerance of exploitative behaviour)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예방적 효과를 거둔다는 목적이 있다. 넷째, 영국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프로그램은 가해자를 체포하여 반드시 법적으로 기소(prosecuting abusers)함으로써 억제효과를 통한 범죄 예방효과를 거둔다는 목적이 있다(HM Government, 2009: 37).

위의 다섯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영국에서 개별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바, 이것들을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 관계 교육(Sex and Relationships Education: SRE)”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올바른 관계형성과 건강한 성관계 행동 등을 제대로 습득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자기 자신을 위협한 성적 착취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인간관계 형성 방법과 남녀 청소년들 모두가 알아야 할 성관계 방법 등 관련 지식사항과 행동기술들을 실질적으로 습득하게 만든다. 특히, 아동·청소년들이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싶을 때, 자신이 진정으로 믿고 따라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도와주는데 본 프로그램의 의의가 있다. 아동·청소년의 연령 별 습득 지식 및 선택 노하우가 달라지므로 본 프로그램은 발달 단계별로 연령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청소년이 고려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인식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HM Government, 2009: 37).

이러한 SRE 프로그램은 영국의 대표적인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프로그램으로써 2011년 11월부터 영국내각의 국무성장관에 의한 합법적인 공식 “사회 및 건강 교육(Personal, Social, Health and Economic, PSHE)” 교과과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영국의 “사회 및 건강 교육”

교과과정이란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하는 교양수업으로써 일종의 “인생수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달리 말하면 성매매 예방 프로그램인 SRE가 영국에서는 의무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교과과정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결국은 사회 전반의 인식 전환을 요구하고, 모든 학생들이 잠재적인 성매매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이므로 영국 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SRE 프로그램 의무 교육은 성매매 예방이라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이 프로그램은 영국 학교에서 8세부터 받을 수 있는 교과과정으로 매우 어린 나이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고 하겠다. 어릴 때부터 아동이 의심해야 하는지 정확히 위험성 여부를 인식하고,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제대로 파악할 줄 알고, 어떻게 행동해야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지 알게 된다면 미연에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HM Government, 2009: 38).

두 번째 예방 프로그램으로 영국의 “아동 성 착취 및 온라인 보호(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EOP)”을 들 수 있다. 일명 CEOP센터로 불리는 이 조직은 경찰활동의 일부분을 담당하면서도 1차 범죄예방 수준에서 아동·청소년 보호자와 부모, 학교 선생님, 일반 아동·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의식 개선과 정보공유 등을 폭넓게 담당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용의자와 수매자 관련 정보도 함께 공유하고 있어 일반 시민들에 대한 신고 활동도 독려하면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한 관련 제반 지식 사항들도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예방 교육과 의식 제고가 가장 중요한 1차적인 예방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바, CEOP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정보는 중요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활동의 단서가 된다고 하겠다.⁶¹⁾

세 번째로 영국은 지방 당국(local authorities) 내 청소년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연합활동을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활동의 중추로 간주한다. 2004년 소년법 65조에 의거, 지방정부 관련 단체들의 파트너십 수립을 결성하였고, 아동·청소년 복지 및 건강을 위한 상호 의무조약도 법률 조항으로 만들었다(HM Government, 2009: 28).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함께 해결하기(Working Together)”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지방 자치단체 유과기관들이 성매매 취약성이

61) <http://www.thinkuknow.co.uk/> (2013. 10. 3)

심각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교육과 거주문제, 보건 건강위상 문제,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프로젝트에서는 성매매 취약 대상을 집중적인 지원, 원조 아동·청소년으로 보는데, 집에서 가출하여 혼자 생활하는 경우, 아동양육 시설이나 보호소, 쉼터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 실종 리스트에 등록되었던 경우, 성매매 과거 경력이 있는 경우 등을 지역사회 내 집중 관심 대상으로 주목하였다. 영국 내무성과 건강부가 2002년에 발표한 “복잡한 아동 학대 수사: 기관 간 의제(Complex Child Abuse Investigation: Interagency Issues)”라는 보편,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지역사회 통합 서비스가 제공되는 각 단계까지 아동·청소년 각 단체들이 어떻게 협력하여 피해자를 지원, 구조해야 하는가가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성매매 고위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개별 지방정부 유관단체들의 연합 활동이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성매매 예방 프로그램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고 하겠다. 그 활동 내용은 지역사회 일반인들과 가족, 보호자, 학교 선생님들에게 성매매의 유입 과정과 성 약취자의 접근 및 유혹 수업, 그루밍 방법 등,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보이는 징후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교육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특히, 지방 당국 유관기관들의 예방활동이 정규 교육과정으로부터 이탈한 학생들과 가출이나 실종신고 상황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을 성매매에 가장 취약한 대상이라고 보고, 주로 이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역사회 예방활동을 펼치고 있는바, 아동·청소년의 위험성을 고려한 단계별 성매매 예방 전략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7) 요약 및 시사점

지금까지 영국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정책을 살펴보았다. 핵심사항별로 영국의 예방정책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의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 방지정책은 1차-2차-3차 예방 차원에서 위험 수준별로 개별화된 예방 활동을 펼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일반 청소년과 부모, 학교 관계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예방 목적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교육은 영국 학교에서 의무적인 “사회 및 건강 교육(Personal, Social, Health and Economic, PSHE)” 교과과정을 만들어 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정규 교과과정도 성매매 예방 교육 내용을 포함시켜 실질적인 1차 예방활동 중심으로 개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어떤 상황에서 아동·청소년을 향한 성 약취자의 유혹의 손길이 생겨나고, 새로운 온라인상의 성매매 수법 및 사용 통신 기술들이 어떠한지 아동·청소년들에게 상세히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누구의 호의에 의심을 품어야 하는지, 그리고 성매매 발생 이후에는 어떻게 외부에 알려야 하는지를 일반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학생들에게 먼저 정확히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영국에서는 2~3차 예방활동을 위해 지방 당국(local authority) 내 관련 기관들이 아동·청소년 지역사회 단체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해 일하고 있다. 영국의 2004년 소년법 제65조에 의거, 지방정부 관련 단체들 청소년 복지 및 건강을 위한 상호 의무조약을 법률 조항으로 규정하여 지역사회 고위험 아동·청소년에게 집중적인 지원과 감독, 처우를 제공하고 있는바,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아동·청소년의 유입, 재유입을 막기 위해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철저한 피해자로 간주하는 것은 영국과 미국이 동일하다. 영국에서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가 발생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는 가해자를 처벌하는데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둘째,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영국은 미국과 달리, 2007년 이후 영국 내 청소년 갱 조직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면서 여자 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심각한 국가 의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행위가 청소년 단독의 행위로 1회적으로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조직화된 갱 조직 내의 약취 행위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갱들의 범죄행위 일부분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갱 조직과 연관된 여자 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영국 정부는 2010년 3월에 아동, 학교, 가족부(DCSF)와 내무성(Home Office)이 공동으로 발간한 “갱 활동에 영향을 받은 아동·청소년 보호대책 (Safeguarding Children and Young People who may be Affected by Gang Activity)”라는 보고서에서 성매매 여자 아동·청소년이 갖고 있는 복잡한 욕구를 명시하면서, 갱 조직 내에서 성매매 여자 청소년의 위치가 가해자-피해자가 중첩되는 2중적 위치에 있음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영국에서는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조기에 여자 아동·청소년이 갱 조직과 관여하게 되는 경로를 차단시키고, 갱 조직과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아동·청소년은 지역사회에서부터 집중적으로 감독, 지원하는 활동들이 강조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성매매자를 영리 목적에 이용하는 포주들과 그들과 관련된 조직범죄 관련성 등을 사전에 경찰 및少年사법 당국과 청소년 관련 단체가 면밀히 함께 조사, 지원하는 협력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성매매 매수자 처벌대책과 관련하여 영국에서는 법령을 통해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를 엄격히 금지함과 동시에 그루밍과 관련된 아동·청소년 접근 행위를 법으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영국에서는 2003년 주류 판매 허가법(Licensing Act 2003)에 의해 술집이나 클럽 등의 레스토랑에서 성인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것 등을 원천적으로 법에 의해 금지하고 있고, 1984년 아동 유괴법(Child Abduction Act 1984)에 의해 아동이 16세 미만인 경우 권한 없이 성인이 아동·청소년과 접촉하는 것을 법으로 금하고 있다.

동시에 2003년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을 통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행위를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성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거나 혹은 아동·청소년 앞에서 성행위를 했을 때 범죄 유형에 따라 최대 10년 또는 14년의 구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때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행위 동의 여부는 처벌 유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피해 아동·청소년의 연령이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5년형의 구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영국에서 이루어지는 처벌 규정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아동·성매매 그루밍 사례 및 기범에 대한 분석 및 교육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1차 예방 활동 차원에서 일반 아동·청소년들과 부모,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절차와 그루밍 수법 등이 알리고, 최근 스마트 폰이나 온라인 등의 SNS(Social Networks Services) 상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아동·청소년 성매매 접촉 수법을 밝혀 지역사회 내에서 성매매 사전 예방 활동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캐나다⁶²⁾

(1) 입법례

① 연혁 및 개념정의

캐나다에서 최근 20여 년 동안 아동·청소년 성매매 근절에 대한 국가적 관심으로 새로운 법률 조항들과 성매매 피해자 지원 기구들이 만들어졌다. 먼저 캐나다에서는 정책적으로 아동·청소년 “매춘”이라는 표현 대신 “아동 성착취(Child Sexual Exploitation: CSE)”라는 표현을 법률 용어에 사용함으로써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이에 캐나다에서 말하는 아동 성착취(CSE)란 보통 성인이 아동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간 존엄성을 말살시키는 행위 전체를 의미한다(Standing Senate Committee on Human Rights, 2011: 6).

2011년 11월에 발표된 “캐나다 아동 성 착취: 국가 정책 실현을 위한 필요(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n Canada: the need for national action)”라는 보고서를 보면, 아동 성착취 행위에 (1) 가정 내 아동 성학대 행위(domestic sexual abuse), (2) 매춘을 통한 아동 성착취(children exploited through prostitution), (3) 성착취 목적의 아동 인신매매(trafficking in children for the purpose of sexual exploitation), (4) 성 관광(sex tourism), (5) 인터넷을 통한 아동 유혹하기(luring over the internet), (6) 아동 포르노그래피(child pornography)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캐나다의 상원 인권 위원회가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개념과 범위를 규정짓기 이전부터 캐나다는 형법(Criminal Code)을 통해 아동 성착취와 관련된 다양한 행위들을 범죄로 간주하여 강력히 처벌해 왔다. 형법 내에서 매춘 행위와 아동 포르노그래피, 납치 행위, 사기 등의 관련 조문이 아동 성착취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캐나다의 형법 제 153조를 보면, 아동 성착취(CSE)란 어린 아동을 상대로 아동의 신뢰나, 보호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악용하여 아동으로 하여금 성인에게 의존하는 관계를

62) 이 부분은 조운오(동국대학교 교수)가 집필하였음.

맺게 하여 아동을 착취하면서 성적 목적을 위해 아동의 신체와 신체 일부분을 만지거나 사용하는 행위, 혹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아동을 신체를 만지게 하는 것을 말한다(Standing Senate Committee on Human Rights, 2011: 6).

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캐나다에서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성취착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캐나다 언론에서 보이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과장된 성적 욕구 묘사와 왜곡된 폭력 장면이 간접적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Standing Senate Committee on Human Rights, 2011: 7). 따라서 캐나다에서는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의 개인적인 문제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를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회 전반에 퍼진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잘못된 시각과 왜곡된 여성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Canadian Center for Child Protection, 2011: 3).

최근 캐나다 의회와 정부는 스마트폰이나 SNS 등의 활용한 인터넷상의 새로운 전자통신 기술을 활용한 아동 성착취 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⁶³⁾ 직접적인 성매매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1:1 신체적 성폭력 피해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지만, 성 관계 전 단계에 해당하는 온라인상의 간접적 접촉도 아동·청소년의 정서 및 심리적 안정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 메시지 유포 등으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큰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새로운 수법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성착취 행위를 강력하게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Canadian Center for Child Protection, 2011: 4).

캐나다 형법 제172.1조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아동을 유인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성 목적으로 해당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면 형법에 의해 공식적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이러한 조항은 캐나다에서 2002년에 처음 만들어졌다. 실제 2002년 이후 매년 인터넷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행위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06과 2007년 사이에는 무려 464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행위가 캐나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Standing Senate Committee on Human Rights, 2011: 12).

63) <http://www.rcmp-grc.gc.ca/ncecc-cncee/index-accueil-eng.htm> (2013. 8. 5)

② 처벌 세부규정

캐나다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행위는 인신매매와 가족 내 성학대, 아동 포르노그래피 등 다양한 행위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세부 처벌 규정 역시 형법이나 아동 복지법 등의 관련 법규에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캐나다의 경우, 형법에서 직접적으로 “매춘”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구매(procuring)”라는 말로 유사 매춘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법 규정을 통해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과 성을 거래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실제 성(sex)을 아동·청소년으로부터 구매한 경우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Standing Senate Committee on Human Rights, 2011: 14).

또한, 캐나다 형법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를 한 경우 그 연령이 너무 어려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의 동의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나이에 있다고 간주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캐나다에서는 성인과 아동·청소년이 5살 이상의 나이 차가 있는 상황이라면, 만약 16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이 성 행위에 자발적으로 동의했다라도 그것은 진정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고, 성매매 행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는다고 하겠다. 또한, 착취적 관계 하에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보여준 성 관계에 대한 동의도 진정한 의미의 동의로 인정되지 않는다.⁶⁴⁾

캐나다는 각 주마다 아동 성착취를 규정하는 방법이 약간씩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브리티시 콜롬비아(British Columbia)나 앨버타(Alberta)에서는 아동 보호법에 의거, 아동복지 관련 기관 담당자가 성착취 상황에 있는 아동이나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재량으로 성매매 위험 장소에서 복지 시설로 옮길 수 있다. 반면, 다른 주에서는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도 법원의 공식적인 위탁명령을 받아야 해당 아동·청소년을 안전한 지정 시설로 옮길 수 있다 (Standing Senate Committee on Human Rights, 2011: 15).

한편, 아동·청소년 인신매매 행위(trafficking)는 아동·청소년을 특정 단체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캐나다 형법에서는 인신매매를 가리켜 착취 목적으로 특정인의 자유를 통제하거나 자유로운 이동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로 정의하면서, 특정인에 대한 모집, 이송, 수용, 숨김, 은신처 제공 등의 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캐나다

64) <http://www.justice.gc.ca/eng/rp-pr/other-autre/clp/faq.html> (2013. 8. 5)

형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행위를 철저한 피해자 중심시각에서 바라보면서 인신매매 환경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동의(consent)” 역시 진정한 동의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 UN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아동 인신매매 아동·청소년의 79%가 성인들의 성착취 목적으로 인해 불법 성매매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⁶⁵⁾ 캐나다는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인신매매 문제를 아동·청소년 성착취(CSE)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캐나다 정부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인신매매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학대 문제나 아동·청소년 성 관광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사실, 1997년 이전에는 캐나다 법으로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인신매매나 성 관광 문제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1997년 형법 7(4.1)조를 통해 구체적으로 성 관광 목적의 해외 방문 등을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캐나다 밖의 나라에서 캐나다 시민 또는 영구 거주자(permanent resident)가 아동과 성 관계를 가진 1차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나가는 경우 성 관광(sex tourism)으로 처벌받게 된다. 캐나다 자국 밖에서 이루어진 행동을 국내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문제 때문에 그 입증 방법이나 처벌 절차가 매우 어렵고 까다롭다. 사실 때문에 아동 성 관광에 대한 처벌 조항이 만들어진 후, 2011년까지 단 두 명의 캐나다인만 성 관광 행위로 형법 7(4.1)조항에 의거 처벌받았다(Standing Senate Committee on Human Rights, 2011: 21).

한편, 캐나다에서는 아동 포르노그래피 역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행위의 하나로 간주된다. 형법 163.1과 164.2에 의의 아동 포르노그래피는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나 이미지를 보이거나 묘사하는 것, 혹은 미성년자로 보이는 아동·청소년과 성적인 행위를 하거나 성적 착취 행위를 보여주거나 묘사하는 것, 또는 성적 목적으로 미성년자의 신체 성기 일부나 전체를 묘사하는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

그러나 캐나다에서는 아동 포르노그래피와 예술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그 기준이 주관적일 수 있다는 비판 때문에 아동 포르노그래피 행위에 대한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다. 즉, 여기에는 사법 정의상 예외적으로 아동 포르노그래피가 필요한 경우, 혹은 과학이나 의료, 교육, 예술 목적상 그것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아동 포르노그래피 행위를

65) http://www.unodc.org/documents/Global_Report_on_TIP.pdf (2013. 8. 5)

했더라도 이러한 예외 사항에 해당되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겠다. 또한, 추가적인 예외 조항으로 아동 포르노그래피가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에게 지나친 피해를 가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동 포르노그래피 행위로 처벌받지 않는다(Standing Senate Committee on Human Rights, 2011: 21-22).

(2) 성매매 관련 통계 및 실태

아동·청소년 성매매 실태 전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왜곡된 성적 이미지와 관련된 통계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캐나다 아동 보호 센터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인터넷 상의 사진, 동영상 이미지 중 전체의 약 82%가 12세 미만의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Canadian Center for Child Protection, 2011: 3). 그 중 35% 이상이 심각한 수준의 아동 성폭력 장면을 담고 있고, 전체 이미지의 83%는 어린 소녀들의 성적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일반인들의 왜곡된 성적 이미지가 반드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나 성매매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경우 그것이 일반인들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에 침묵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라고 보고, 1차 예방 차원에서 어린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잘못된 성적 이미지나 미디어 묘사, 사진 유포 방식 등을 제한하는 캠페인을 만들고 일반인들로 하여금 그 심각성을 인식하게 만드는 다양한 시민운동이 이루어졌다(Canadian Center for Child Protection, 2011: 3-4).

실제, 캐나다의 법무부 자료를 보면 2002년에서 2003년에 총 2,854건의 아동 성착취(CSE) 사건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 년도에 아동 성착취로 캐나다에서 유죄확정을 받은 비율은 전체의 38.5%에 불과했다. 이것은 다른 일반 사건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유죄확정 비율인데, 평균적으로 일반 형사사건은 유죄확정비율이 60%에 이른다고 하겠다. 즉, 캐나다에서 아동 성착취로 기소된 경우, 법원 단계에서 유죄 확정을 받을 가능성이 다른 일반 범죄보다 훨씬 낮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캐나다에서 일반 폭력행위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는 비율은 전체 폭력사건의 50%이고, 성인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은 전체의 41%에 해당한다. 따라서 아동 성착취의 유죄 확정 판결 비율이 다른 사건에서보다 현저히 낮다고 하겠다.⁶⁶⁾

66) <http://www.justice.gc.ca/eng/rp-pr/jr/jr13/p5d.html> (2013. 8. 5)

캐나다의 성범죄 재범률을 보면, 전체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자의 13%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Harris & Hanson, 2004). 여기서 말하는 성착취 재범률이란 주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은밀한 성학대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실제 가정 밖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성매매 재범률 16%보다 약간 낮은 수치라고 하겠다. Harris & Hanson(2004)이 발표한 이 연구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캐나다에서 발생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에 대한 15년 동안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그 재범률을 조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연구에서 가정 밖에서 주로 낯선 외부인에 의해 저질러지는 남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재범률이 전체의 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즉,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또는 성매매 문제는 반드시 여자 아동이나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문제가 아닐 수 있으며, 재범률 차원에서 봤을 때는 여자 아동에 대한 성착취보다 남자 아동에 대한 성착취가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겠다.

(3) 피해 취약계층의 특징

캐나다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요인과 연관되어 있다. 즉, 최근 발표된 캐나다 상원 인권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성매매 문제는 아동·청소년의 과거 피학대 경험, 낮은 자존감, 가정의 빈곤, 부모의 보호능력 부재, 일반 시민들의 어린 여성에 대한 왜곡된 성적 이미지, 잘못된 온라인 활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tanding Senate Committee on Human Rights, 2011: 10-11).

무엇보다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문제는 낯선 타인에 의한 인신매매 문제보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자나 가족 구성원 등에 의한 성 학대(sexual abuse)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Standing Senate Committee on Human Rights, 2011: 13). 앞서서도 이미 언급했듯이 캐나다의 아동·청소년 성착취(CSE) 개념이 다소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어, 그 핵심 유형에 가정 내 아동 성학대(domestic sexual abuse)가 성착취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성학대 문제는 쉽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장기간 은밀하게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지켜줘야 할 내부 가족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장기간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경우라면, 다른 가족 구성원이 설사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외부에 성학대

사실을 신고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발견이 가장 어렵다는 점에서 가정 내부에서 발생하는 성학대 문제가 성착취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하겠다.

한편, 캐나다에서는 성착취 피해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상으로 가출 아동·청소년과 거리에서 거주부정자로 생활하는 노숙 아동·청소년을 지목했다(Standing Senate Committee on Human Rights, 2011: 10). 일시적으로 청소년 복지체계 내에 있다가 다시 사회로 이탈해 나간 아동·청소년 역시 성매매에 취약한 대상일 수 있는데, 이들은 보통 정상적인 아동·청소년과 비교하여 안정적 거주공간이 없고,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통상적인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성매매 유혹에 비교적 쉽게 넘어가고, 성매매 중단 후에도 다시 성매매 행위에 재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캐나다에서는 성매매 위험에 노출된 취약 아동·청소년으로 정신지체 아동 및 약물·알코올 중독 청소년을 들고 있다. 신체적·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고 약물 의존성이 높아 이러한 취약 아동·청소년은 쉽게 성매매 대상이 될 수 있다. 가해자가 체포된 경우에도, 이들이 자신들의 성폭력 피해 상황을 사후에 정확히 표현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성인 성착취자들은 이러한 취약 아동·청소년을 더 쉬운 성매매 대상으로 생각하여 접근을 시도한다(Standing Senate Committee on Human Rights, 2007: 294). 신체, 정신 장애 아동·청소년과 약물·알코올 의존 청소년, 그리고 일부 캐나다 원주민 아동·청소년은 스스로를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피해 발생 후에도 성착취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정확히 보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착취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특히 크다고 하겠다.

(4) 성매매 예방 프로그램 및 활동

① 성별 근거 분석(Gender-Based Analysis) 시스템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남자보다는 여자 청소년이 주로 성인 남성과 상업적 거래를 통해 성(sex)을 팔고 사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실제 대다수의 성매매 피해자들은 남자 청소년보다는 여자 청소년이나 아동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⁶⁷⁾ 그러나 캐나다의 경우, 남자

67) 캐나다에서 전체 성범죄 피해자의 80%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의 61%는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범죄 가해자의 90%는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Standing Senate Committee on Human Rights, 2011: 25)

아동·청소년도 성착취 및 성매매의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초로 성별 특징에 근거한 성매매 분석 시스템(Gender-Based Analysis: GBA)을 도입하였다(Standing Senate Committee on Human Rights, 2011: 24).

앞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캐나다의 경우, 남자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재범률은 여자 아동·청소년의 그것보다 더 높고 남자 아동·청소년의 사후 피해 욕구가 여자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욕구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 있어, 양적으로 남자 아동에 대한 성매매 발생 빈도가 낮더라도 남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문제에도 국가적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피해와 남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경로가 다르고, 피해자의 사후 욕구 및 문제도 다르다고 할 수 있는바, 성별 특성에 기반한 개별화된 체계적 접근으로 새로운 형태의 피해자 지원 전략을 도출에 내고 있는 것이다(Standing Senate Committee on Human Rights, 2007: 165-167).

특히, 성적 정체성이 확고히 자리 잡히지 않은 청소년 시기에 동성애적 성향이나 게이, 레즈비언과 같은 비주류의 성 소수 집단(sexual minority) 청소년에게는 그들이 성매매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성별 근거 분석 시스템이 사후 실질적인 피해 지원 시스템을 제공하는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게 된다.⁶⁸⁾ 여자 아동과 남자 아동이 성매매를 접하게 되는 경로가 그 성별에 따라 각각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 캐나다에서는 실제 인터넷을 포함한 SNS 도구를 사용하는 빈도나 방법, 의존성 정도가 남자 청소년과 여자 청소년 사이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tanding Senate Committee on Human Rights, 2011: 24-25).

GBA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경험이 남자 피해자와 여자 피해자에게 어떤 상이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사후 피해자들에게 어떤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게 해주는 과학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캐나다에서는 이러한 GBA 시스템을 통해 성별 특성에 근거한 성매매 아동·청소년 지원 서비스를 구축하고, 성별 적합적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정책적으로 만들어냄으로써 피해자의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요인들을 성매매 남녀 아동·청소년의 개별 특성 욕구 분석에 반영하고 있다(Standing Senate Committee on Human Rights, 2007: 168).

68) 캐나다에서 성적 소수자 아동(sexual minority children)이란 표현은 공식적으로 18세 미만이면서 자기 자신을 레즈비언이나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또는 성 정체성에 스스로 의심을 갖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말함(Standing Senate Committee on Human Rights, 2007: 6).

② 인터넷 경계 프로그램(Vigilance on the Net Program)⁶⁹⁾

캐나다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프로그램을 “인터넷 경계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한 가지 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에 있어 분명한 것은 아동·청소년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과거보다 더 쉽게 성매매를 접촉할 가능성 자체가 증가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동·청소년을 위해 그 보호활동이나 경계활동도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온라인 채팅, MySpace, Facebook 등의 다양한 SNS 접촉 경로를 통해 성 착취 가해자와 직·간접적으로 만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는바, 예방활동 역시 아동·청소년이 잠재적 가해자를 만나게 되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캐나다 아동보호센터(Canadian Center for Child Protection)는 어린 여자 아동·청소년을 성적인 대상으로 인식시키는 사회 전반의 잘못된 성 산업과 미디어의 왜곡된 성 문화 조성을 근절시키기 위해 다양한 국가적·사회적 차원의 인식 전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Standing Senate Committee on Human Rights, 2011: 26).

캐나다에서 현재 운영 중인 “인터넷 경계 프로그램(Videotron’s Vigilance on the Net program)”은 온라인상에서 어린 여자 아동·청소년들에게 사이버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잠재적 성착취 가해자나 성매매 남성의 행태에 대해 미리 사전에 경고하는 기능을 한다. 우연히 잘 생긴 남자 사진을 받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불특정 남성과 대화가 오가고, 그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이버 스토킹(cyber stalking)이나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바, 인터넷 경계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정확한 성착취 피해 사례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⁷⁰⁾

이 프로그램은 온라인을 통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 정보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 보호자, 일반인들을 위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및 성착취 예방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어떤 아동·청소년이 특히 성매매 피해 대상으로 위험한지 알리고, 취약 유발 요인을 분석하여 그 정보를 아동·청소년 보호자 및 관계자들에게 제공하고, 사후 성매매 징후들을 신속히 파악하는 방법들을 교육시킨다.

69) <http://www.vigilancesurlenet.com/en/home/index.phpv> (2013. 8. 5)

70) <http://www.vigilancesurlenet.com/en/home/index.phpv> (2013. 8. 5)

또한,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부모 및 보호자나 선생님의 대처방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리고 있는 업무다 담당한다. 아이들이 성매매 가해자를 접하게 되는 경로 역시 점차 증가하고 있고 새로워지면서 부모나 보호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버 공간 상의 은밀한 접촉 장소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바, 캐나다 정부는 인터넷 경계 프로그램의 정보내용도 계속 새로운 성매매 수법들을 소개하는데 치중하고 있다(Standing Senate Committee on Human Rights, 2011: 26).

③ 국가적 계몽 및 관련단체 협력 활동

캐나다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및 성착취 근절을 위해 다양한 관련 기관들의 연계를 강조한다. 특히 아동 사회복지 담당자, 관계기관 공무원, 경찰, 소년정책 및 소년사법 연구자, 자원봉사자 및 관련 시민단체들의 파트너십을 통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역사회에서 신속히 구조, 지원하는데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관련 단체들의 활동은 피해 아동·청소년 핫라인 운영, 경찰의 인터넷 아동·청소년 성매매 특별전담팀 가동, 일시쉼터, 아동권리 지원 기관 등의 활동을 광범위하게 포함한다(Standing Senate Committee on Human Rights, 2011: 35).

그러나 캐나다에서도 2007년 의회 보고서를 통해 다양한 기관들의 연계가 개별 주나 지역사회 내부에 한정되어 있어 국가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인신매매나 성 관광 문제에 국가적 수준의 효과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Standing Senate Committee on Human Rights, 2007: 240).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포주나 성착취자를 피해 다른 주로 이주하려고 할 때, 결국 피해 아동의 안전이 다시 위협에 처해질 수 있고, 관련 정보를 해당기관들이 서로 공유하고 있지 않아 제대로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해 줄 수 없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Standing Senate Committee on Human Rights, 2011: 37).

이에 캐나다 상원 인권위원회(2011)는 다양한 아동·청소년 보호 기관들이 캐나다 전역에서 관련 정보와 서비스 내용을 공유하여 보다 원활하게 상호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를 수립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성매매 피해 아동에게 각각의 기관이 유사한 서비스를 중복적으로 제공한다는 과거의 비판을 없애고, 각 기관들이 갖고 있는 서로의 장단점을 명확히 인식하여 최고의 성매매 아동·청소년 지원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피해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유관기관들이 상호이해와 협력을 극대화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캐나다에서는 성매매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강조하기 시작했고, 단기간의 1회적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프로그램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성매매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 서비스가 강조되기 시작했다(Standing Senate Committee on Human Rights, 2011: 36). 이러한 아동·청소년 복지 기관들의 연계와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적 평가 작업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대중적 인식전환 캠페인을 불러왔다. 또한, 이러한 움직임은 성매매 위험 상황에 처해진 아동·청소년을 지역사회에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게 만들었고, 일반인들로 하여금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잘못된 의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

특히, 캐나다 원주민(aboriginal) 아동·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빈곤 문제와 가족의 부양능력 부족, 약물 및 알코올 남용, 학교교육 부족 등의 문제가 아동의 가출과 주거부정 등의 문제와 겹쳐 있음을 인식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가 피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국가적 접근으로 해결해야 문제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결국 성매매와 성착취 피해 문제는 아동·청소년이 갖고 있는 기존의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로 인식되게 되었고, 캐나다 당국의 정책적 활동 및 지원을 요구하는 국가 의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Standing Senate Committee on Human Rights, 2011: 37-38).

④ 국가 아동착취 조정 센터(National Child Exploitation Coordination Center)

캐나다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근절의 일환으로 가해자를 체포할 1차적 책임이 경찰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사이버 공간과 SNS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캐나다 치안국(Department of Public Safety)이 제안한 “인터넷 상의 성매매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y to Protect Children from Sexual Exploitation on the Internet: NSPCSEI)”은 캐나다 의회의 일반 대중의 큰 관심을 모았다.

실제 캐나다 경찰의 성매매 근절 노력은 2004년에 처음 체계적인 국가 전략을 구체화시켰고, 이 운동에 5년 동안 무려 4천 2백만 달러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었다(National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Canada, 2007: 2).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에 경찰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대응하여 가해자를 반드시 체포하여 처벌한다는 강한 국가 의지가 들어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소년사법 유관기관들과의 공동 노력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게 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캐나다 내에서는 “국가 아동착취 조정센터(National Child Exploitation Coordination Center)”라는 새로운 기구가 설치되었다. 국가 자금의 일부가 이 조정 센터 건립에 사용되었는데, 이 센터를 통해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단체들이 경찰과 함께 성매매 가해자를 발견하고 증거를 모으는데 함께 유기적으로 힘을 모으게 되었다(Standing Senate Committee on Human Rights, 2011: 39). 즉, 국가 아동착취 조정센터에서 지역사회에서 관련 기관 실무자들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과 만나 정보를 공유하게 되고, 성매매 가해자를 신속히 발견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 활동에 도움을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센터를 통해 아동·청소년 업무 담당자들의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들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조정센터에서 제공하는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욕구 및 특징을 고려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5)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활동

2007년에 캐나다 상원 인권 위원회가 발표한 “아동: 침묵하는 시민들(Children: the Silence Citizen)”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업무를 상시 감독하는 장관급 책임자 (commissioner)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Standing Senate Committee on Human Rights, 2011: 44).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성매매 투입 및 재투입 예방 활동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감독하는 업무를 장관급 책임자가 맡도록 하는 것이다. 이 책임자를 통해 성매매 아동·청소년 보호 단체들의 활동이 아동·청소년의 기본 권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 독립된 책임기구의 관리·감독으로 보다 체계적인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겠다.

이와 함께 캐나다에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성매매 피해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아동 보호센터(Child Advocacy Centres, CACs)”가 만들어졌다. 기본적으로 캐나다의 CAC는 성매매 아동·청소년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성착취 및 성매매 피해자가

원하는 개별화된 욕구를 조사하여, CAC 내의 아동·청소년 전문가들이 아동 친화적인 환경(child-friendly settings)에서 피해자에게 가장 적합한 개별화된 서비스와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보다 신속하게 전달되도록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발생했을 때 CAC가 어린 피해자들의 안전(safety)을 담보하면서, 정서적으로 성매매 피해아동 및 성매매 목격자가 최대한 편하게 느끼도록 하는데 아동 보호센터의 의의가 있다. 경찰, 검찰, 법원 등의 형사사법기관과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접촉했을 때 자신들의 과거 성착취 피해 및 목격사실을 최대한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도록 CAC가 도와주는 것도 중요한 핵심 역할이라고 하겠다. 실제 캐나다에서 CAC의 활동을 통해 형사사법기관의 성매매 가해자 검거 및 증거수집이 훨씬 더 용이해지고 캐나다 경찰의 성매매 수사 관련 비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Standing Senate Committee on Human Rights, 2011: 51).

이처럼 캐나다의 아동보호센터(CACs)는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발생했을 때 바로 현장에서 성매매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담보하고, 사후 아동에게 제공되어야 할 적절한 치료 서비스를 계획하며, 형사사법기관을 도와 성매매 가해자의 체포, 처벌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아동 보호센터의 이름은 각 지역사회마다 다양한데, 캐나다 에드먼턴(Edmonton)에서는 “얼룩말 아동보호센터(Zebra Child Protection Centre)”로 불리고 있고, 몬트리올(Montreal)에서는 “마리 빈센트 전문 센터(the Center d’expertise Marie Vincent)”라고 불리기도 한다. 캐나다의 CAC를 통해 무엇보다도 경찰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수사 비용이 줄어들었고, 가해자 검거가 매우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동시에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 연계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CAC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일반 부모들의 만족도가 증가하였고, 아동들의 범죄 피해 두려움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Standing Senate Committee on Human Rights, 2011: 52).

캐나다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CAC의 활동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고, 경찰의 수사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매우 성공적인 성매매 예방 전략으로 평가될 수 있다. 비록 캐나다 전역을 대상으로 한 국가적 차원의 기관 연계나 성매매 예방 활동은 다소 부족한 편이지만, 지역사회 차원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활동은 CAC를 통해 비교적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로 최근 캐나다에서는 2010년 10월 법무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민간기구와 아동 보호센터 활동을 후원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5,250,000을 쓰기로 결정하였다(Standing Senate Committee on Human Rights, 2011: 53-54).

(6) 가해자 처벌 및 단속 규정 강화

2010년 이전에는 캐나다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가해자에 대한 양형 수위가 다른 일반 범죄 양형보다 더 관대한 편이었다(Standing Senate Committee on Human Rights, 2011: 54). 이로 인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캐나다에서는 최근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처벌 기준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캐나다 상원 인권위원회는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최소한의 양형 기준(minimum sentence) 원칙을 제안했는데, 이것은 일종의 최소 의무 형량(mandatory minimum sentences) 도입을 만들어냈다.

이 법안은 캐나다에서 2009년에 처음 한 의원에 의해 발의(Bill C-268 수정법안)되었는데, 미성년자 불법 인신매매(children trafficking)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 법안은 2010년 6월 29일에 정식으로 캐나다 형법 내에 독립된 법 규정으로 제안되었는데, 이로 인해 캐나다에서 동일한 범죄행위라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인 경우 피해자의 연령으로 인해 처벌 기준이 더 강화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Standing Senate Committee on Human Rights, 2011: 55).

이와 함께 캐나다에서는 2010년 11월에 캐나다 정부의 수정 요구로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 처벌 규정 일부가 수정되었다. C-54 법안으로 불리는 이 수정 법안은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Canada)가 발의한 것인데, 성인이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행위를 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최소 의무 형량 기준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캐나다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로 특정 성인이 아동 및 청소년에게 외설스런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이미지를 보여주거나, 인터넷 등의 전자통신 기술 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면 다른 범죄보다 더 엄격한 양형 기준을 적용받아 처벌받게 된다

(Standing Senate Committee on Human Rights, 2011: 56).

그러나 이러한 캐나다 의회 및 정부의 강경대응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성매매 문제는 성 구매에 대한 강경한 처벌 대응보다는 성매매 사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일반인 인식계몽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및 성착취가 피해자 주변의 지인이거나 가족 구성원, 혹은 피해 아동과 오랫동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경찰이나 소년보호기관에 접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가 포주나 성 구매자와 정서적 관계를 형성해 다시 성매매에 재투입되거나 성매매 사실을 쉽게 밖에 노출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성 구매자에 대한 강경대응이 유일한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에 근거한 형벌의 엄격성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예방하거나 근절하는 유일한 방안일 수 없다고 하겠다.

아무리 좋은 아동·청소년 보호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강화된 처벌 규정을 준비해 놓는다고 해도 성매매 피해사실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게 된다면,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영원히 암수범죄로 남게 되고, 성매매 상황에 노출된 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구조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근절을 위한 첫 단추는 성매매 실태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관심과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필요성 인식계몽 등의 캠페인 및 필요성 인식에 모아져야 한다. 이에 캐나다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범죄자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및 최소 의무 형량 도입뿐만 아니라 시민 인식제고와 정확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연구 분석을 위한 관련 자료 데이터베이스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Standing Senate Committee on Human Rights, 2011: 57-58).

(7) 요약 및 시사점

지금까지 캐나다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정책 및 관련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 방지정책, 성매매 피해자 지원정책, 성매매 매수자 처벌 정책 위주로 캐나다의 사례를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캐나다의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 방지정책은 일반 시민과 학교 선생님, 부모 및 보호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예방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초기 성매매 유입을 막기 위해 캐나다 아동보호 센터(Canadian Center for Child Protection)를 통해 어린 여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인들의 왜곡된 성 인식 변화 캠페인과 미디어에 의한 과장된 성 산업 변화 활동 등이 강조된다고 하겠다(Standing Senate Committee on Human Rights, 2011: 26). 또한, 캐나다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 경계 프로그램(Videotron's Vigilance on the Net program)을 통해 어린 여자 아동·청소년에게 사전에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게 될 위험한 사람들이 어떤 유형인지, 그리고 성매매수자의 접근방법이나 특성 및 범행수법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경고하고 교육하는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⁷¹⁾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 정보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 보호자, 일반인들에게 아동·청소년 성매매 및 성착취 예방 정보가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특성 상 쉽게 성매매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사전 성매매 유입 예방활동이며 여기에는 오프라인 상의 인식 전환 활동뿐만 아니라 온라인 내의 사전 유입 방지 활동을 광범위하게 포함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보호단체들 간의 성매매 관련 자료 공유와 국가적 데이터베이스화도 가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하겠다.

둘째,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 대책으로 캐나다에서는 피해자의 개인 욕구에 적합한 개별화된 처우 서비스 제공을 강조한다. 정책적으로 여자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뿐만 아니라 남자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히 캐나다에서는 성별 근거 분석(Gender-Based Analysis: GBA) 시스템을 도입하여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지원할 때 피해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과학적인 사례관리 방식을 강조한다.

또한,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국가 아동착취 조정센터(National Child Exploitation Coordination Center)”를 설치하여 이 기구를 통해 형사사법기관에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보다 원활히 성매매 피해 사실을 알리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 즉, 캐나다의 아동착취 조정센터는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에서 형사사법기관에 협조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안전과 정서적 안전을 책임지고,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요구하는 지원 서비스를 발굴하여 사례관리를 통해 관련

71) <http://www.vigilancesurlenet.com/en/home/index.phpv> (2013. 8. 5)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조직화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고 하겠다.

이와 함께 캐나다에서는 개별 지역사회 내에서 성매매 피해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캐나다 “아동 보호센터(Child Advocacy Centres, CACs)도 활발히 운영 중이다. 아동 보호센터를 통해 실질적인 성매매 아동·청소년 지원 업무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캐나다의 CAC는 성매매 아동·청소년에게 직접적인 건강, 교육, 법률, 취업, 정서적·심리적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성착취 및 성매매 피해자가 원하는 개별화된 욕구를 조사하여, CAC 내의 아동·청소년 전문가들이 아동 친화적인 환경(child-friendly settings)을 조성하면서 지역사회 내에서 실제 피해자가 요구하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다(Standing Senate Committee on Human Rights, 2011: 51).

셋째, 성매매 매수자 처벌대책과 관련하여 캐나다에서는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는 최소 의무 형량(mandatory minimum sentences)을 활용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2009년에 처음 수정 법안을 통해 최소 의무 형량제도가 소개되었고, 2010년 6월에 형법 개정을 통해 최소 의무 형량제가 정착되었다. 이 법안을 통해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신매매와 온라인상의 그루밍, 사이버 공간 상의 아동·청소년 포르노그래피가 강화된 양형 기준으로 더 엄격히 처벌받게 되었다(Standing Senate Committee on Human Rights, 2011: 56).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함께 성매매 매수자에 대한 처벌 강화 역시 2010년 이후에 캐나다에서 나타난 새로운 변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다.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및 성매매에 대해 캐나다 의회 및 법무부가 형량 강화를 요구해 실제 최소 의무 형량제가 적용되고 있는바, 이는 우리나라에도 사시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베이스와 그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 분석 및 평가를 통해 강화된 양형 기준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

제 4 장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사

1. 조사개요
2.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분석
3. 면접조사 결과분석

제 4 장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사⁷²⁾

1. 조사개요

1) 전문가 의견조사

(1) 대상과 방법

전문가 의견조사의 조사대상은 성매매 관련 시설 종사자이다. 성매매 관련 시설은 성매매상담소, 성매매 피해여성 일반지원시설,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시설, 성매매 피해여성 그룹홈,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센터, 성매매 피해여성 대안교육 위탁기관 등이고, 성매매를 전담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유관기관으로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포함했다. 조사대상 시설의 전국분포는 다음의 표와 같다.

각 시설별 종사자 수는 공식적인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숫자는 파악할 수 없으나 여성가족부에서 추산하고 있는 숫자는 성매매상담소 143명, 성매매 피해여성 일반지원시설 130명,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시설 88명, 성매매 피해여성 그룹홈 22명,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센터 49명, 성매매 피해여성 대안교육 위탁기관 7명, 청소년성문화센터 200명, 청소년쉼터 460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00명 등 총 3,099명이다.

전문가 의견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나누어 2차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예비조사는 9개 유형의 시설별로 각 1명씩 전문가를 선정⁷³⁾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 4월

72) 이 부분은 이유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22일부터 5월 8일까지였고, 조사방법은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표 IV-1-1 조사대상시설의 전국분포 현황

대상시설	종사자수 (추산)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성매매 상담소	143	26	3	2	2	1	1	1	1	5	1	1	1	1	2	1	2	1
성매매 피해여성 일반지원시설	130	25	6	3	2	1	1	1	1	3	1	-	1	1	1	1	1	1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시설	88	14	5	2	2	-	1	1	-	-	-	-	-	1	-	2	-	-
성매매 피해여성 그룹홈	22	11	3	2	1	-	1	-	-	1	-	-	1	1	-	-	1	-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센터	49	9	1	1	1	1	-	1	-	1	-	-	-	1	1	-	-	1
성매매 피해여성 대안교육위탁기관	7	2	1	-	-	-	-	-	-	-	-	-	-	-	-	-	1	-
청소년성문화센터	200	33	6	3	1	1	2	1	1	2	3	2	1	4	3	1	1	1
청소년쉼터	460	92	-	-	-	-	-	-	-	-	-	-	-	-	-	-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000	190	22	6	2	8	3	2	4	32	10	13	17	15	18	15	21	2
합계	3,099	402	47	19	11	12	9	7	7	44	15	16	21	23	26	18	29	6

다음으로 본 조사는 9개 유형의 시설 종사자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이 중 505명의 조사지가 회수되어 16.3%의 회수율을 보였다. 기관유형별로 보면, 성매매 상담소는 전국 143개 기관 종사자 수 143명 가운데 94명이 응답하여 65.7%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성매매 피해여성 일반지원시설은 130명 가운데 35명이 응답하여 26.9%의 응답률을 보였다.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시설은 88명 가운데 43명이 응답하여 48.9%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성매매 피해여성 그룹홈은 22명 가운데 1명이 응답하여 4.5%의 응답률을 보였다.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센터는 49명 가운데 6명이 응답하여 12.2%의 응답률을 보였다. 청소년성문화

73) 전문가 선정은 성매매상담소, 성매매 피해여성 일반지원시설,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시설, 성매매 피해여성 그룹홈,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센터, 성매매 피해여성 대안교육 위탁기관은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추천받았고,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추천받았으며,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여성가족부 청소년복지지원과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추천받았다.

센터는 200명 가운데 67명이 응답하여 33.5%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청소년쉼터는 460명 가운데 76명이 응답하여 16.5%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00명 가운데 183명이 응답하여 9.2%의 응답률을 보였다.

조사기간은 2013년 7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 2주간 진행되었고, 조사방법은 이메일 또는 우편조사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설문을 통해 진행하였다.

(2) 내용과 도구

예비조사의 내용은 첫째, 기관 현황으로써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해 하고 있는 업무, 각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실효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것, 각 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것을 알아보았다. 둘째,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 대책으로써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의 중첩성에 대한 대책, 성매매 유입경로와 조기개입 대책, 성매매유입의 장소적 특성에 따른 대책, 재유입 대책, 성매매 대책과 위기청소년대책의 연계방안 등을 알아보았다. 셋째,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 대책으로써 성인여성 피해자와 차별화된 서비스의 필요성, 성매매 저연령화 대책, 남자 아동·청소년의 원조교제 대책, 성매매 관련 법률의 개선방안 등을 알아보았다. 넷째,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수자 대책으로써 현행 교육 및 치료의 효과성과 대책, 성매매 유인행위의 효과성과 대책 등을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정책이나 사업전반에 대한 기타 건의사항을 질문하였다. 조사도구는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본조사의 내용은 예비조사의 내용과 동일하나 조사도구는 선택형 질문지를 사용한다.

(3) 조사대상자의 특성

설문조사 대상자의 특성은 다음 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소속기관별로 성매매상담소가 18.6%, 성매매 피해여성 일반지원시설이 6.9%,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시설이 8.5%, 성매매 피해여성 그룹홈이 0.2%,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센터가 1.2%, 청소년성문화센터가 13.3%, 청소년쉼터가 15%,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36.2%로 나타났다. 직위별로 기관장이 3.4%,

간부(실장, 팀장 등)이 26.7%, 직원이 69.9%로 나타났으며, 학력별로 고졸 이하가 0.4%, 대졸이 56.8%, 대학원졸이 42.8%로 나타났으며, 성별로 남자가 14.3%, 여자가 85.7%로 나타났다. 재직기간은 평균 38개월이고, 연령은 평균 35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2 전문가 의견조사 대상자의 특성

변 인		인원수(명)	비율(%)
전체		505	100.00%
소속기관	성매매상담소	94	18.60%
	성매매 피해여성 일반지원시설	35	6.90%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시설	43	8.50%
	성매매 피해여성 그룹홈	1	0.20%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센터	6	1.20%
	성매매 피해여성 대안교육 위탁기관	0	0.00%
	청소년성문화센터	67	13.30%
	청소년쉼터	76	15.0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83	36.20%
변 인		인원수(명)	비율(%)
직위	기관장	17	3.40%
	간부(실장, 팀장 등)	135	26.70%
	직원	353	69.90%
학력	고졸이하	2	0.40%
	대졸	287	56.80%
	대학원졸	216	42.80%
성별	남자	72	14.30%
	여자	433	85.70%
변 인		평균	표준편차
재직기간(총개월)		38	38
연령		35	9

2) 면접조사

(1) 대상과 방법

면접조사의 대상자는 성매매 및 가출 경험 아동·청소년으로 성매매 관련기관이나 청소년쉼터 종사자의 도움을 받거나 거리에서 섭외하였다. 조사시기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30일이다. 조사대상자의 표본수는 다음과 같다.

- 심층면접 : 40명(길거리 섭외 21명, 성매매 피해자 쉼터 18명, 가출청소년쉼터 1명)⁷⁴⁾
- 집단면접 : 2그룹 총 14명(쉼터 거주자 1그룹, 길거리 섭외 1그룹)

(2) 내용과 도구

조사내용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욕구, 가출, 성폭력, 가정폭력과 성매매의 관련성 및 성매매 유입과정 탐색 등이고, 조사도구는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한다.

(3) 조사대상자의 특성

면접조사 대상자의 특성은 연령별로 14세에서 18세에 분포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특성은 다음 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표 IV-1-3 심층면접조사 대상자의 특성

사례번호	섭외방법	성별	연령	직업
1	성매매 피해자 쉼터	여성	17세	취업
2	성매매 피해자 쉼터	여성	17세	자퇴후 검정고시 준비 중

74) 길거리 섭외의 경우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성매매 경험자 중에 시설에 있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전체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에 포함시켰다.

사례번호	섭외방법	성별	연령	직업
3	길거리 섭외	여성	17세	학생
4	성매매 피해자 쉼터	여성	16세	학생
5	성매매 피해자 쉼터	여성	18세	아무 일도 안하고 있음
6	길거리 섭외	여성	18세	학생
7	길거리 섭외	여성	16세	학생
8	길거리 섭외	여성	17세	학생
9	성매매 피해자 쉼터	여성	17세	검정고시 준비중
10	길거리 섭외	여성	15세	아무 일도 안하고 있음
11	길거리 섭외	여성	17세	학생
12	길거리 섭외	여성	16세	학생
13	길거리 섭외	여성	16세	학생
14	길거리 섭외	여성	17세	학생
15	길거리 섭외	여성	16세	학생
16	길거리 섭외	여성	16세	학생
17	길거리 섭외	여성	15세	아무 일도 안하고 있음
18	길거리 섭외	여성	17세	학생
19	길거리 섭외	여성	17세	학생
20	길거리 섭외	여성	16세	아무 일도 안하고 있음
21	성매매 피해자 쉼터	여성	15세	학생
22	성매매 피해자 쉼터	여성	18세	아무 일도 안하고 있음
23	성매매 피해자 쉼터	여성	18세	학생
24	성매매 피해자 쉼터	여성	14세	학생
25	가출 청소년 쉼터	여성	18세	학생
26	성매매 피해자 쉼터	여성	17세	취업
27	성매매 피해자 쉼터	여성	16세	취업
28	성매매 피해자 쉼터	여성	18세	학생
29	길거리 섭외	여성	17세	학생
30	길거리 섭외	여성	17세	아무 일도 안하고 있음
31	길거리 섭외	여성	16세	학생
32	길거리 섭외	여성	18세	학생
33	길거리 섭외	여성	17세	아무 일도 안하고 있음

사례번호	섭외방법	성별	연령	직업
34	길거리 섭외	여성	17세	아무 일도 안하고 있음
35	성매매 피해자 쉼터	여성	19세	학생
36	성매매 피해자 쉼터	여성	16세	아무 일도 안하고 있음
37	성매매 피해자 쉼터	여성	19세	학생
38	성매매 피해자 쉼터	여성	17세	학생
39	성매매 피해자 쉼터	여성	17세	학생
40	성매매 피해자 쉼터	여성	17세	아무 일도 안하고 있음

집단면접 제1그룹 대상자의 특성은 학생이면서 가출 후 길거리에서 성매매를 하여 생활비를 벌면서 남녀 친구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 아이들이었으며, 제2그룹은 성매매피해자 쉼터에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이었다.

표 IV-1-4 집단면접조사 대상자의 특성

사례번호	섭외방법	성별	연령	직업
1	길거리 섭외	여성	17세	학생, 가출, 성매매
2	길거리 섭외	여성	17세	학생, 가출, 성매매
3	길거리 섭외	여성	16세	학생, 가출, 성매매
4	길거리 섭외	여성	18세	학생, 가출, 성매매
5	길거리 섭외	여성	17세	학생, 가출, 성매매
6	길거리 섭외	여성	17세	학생, 가출, 성매매
7	성매매 피해자 쉼터	여성	16세	학생, 가출, 성매매
8	성매매 피해자 쉼터	여성	16세	학생, 가출, 성매매
9	성매매 피해자 쉼터	여성	15세	학생, 가출, 성매매
10	성매매 피해자 쉼터	여성	17세	학생, 가출, 성매매
11	성매매 피해자 쉼터	여성	16세	학생, 가출, 성매매
12	성매매 피해자 쉼터	여성	16세	학생, 가출, 성매매
13	성매매 피해자 쉼터	여성	18세	학생, 가출, 성매매
14	성매매 피해자 쉼터	여성	17세	학생, 가출, 성매매

2.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분석

1) 관련 정책과 업무

(1) 예방 및 피해지원 정책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해서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정책에 대한 질문에서 예방 정책의 우선순위⁷⁵⁾는 소속기관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성매매 상담기관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자원조달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3.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모든 국민의 아동·청소년 보호, 선도, 교육 노력(4.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교육 및 계도(4.7)’, ‘모든 국민의 사회 환경 정비 노력(4.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사 및 연구(6.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범죄인 인도 등 관련 국제협력 강화(7.2)’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기관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자원조달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3.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모든 국민의 아동·청소년 보호, 선도, 교육 노력(4)’, ‘모든 국민의 사회 환경 정비 노력(4.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교육 및 계도(4.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사 및 연구(5.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범죄인 인도 등 관련 국제협력 강화(6)’ 순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상담기관과 청소년 기관을 통틀어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자원조달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3.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모든 국민의 아동·청소년 보호, 선도, 교육 노력(4.1)’, ‘모든 국민의 사회 환경 정비 노력(4.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교육 및 계도(4.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사 및 연구(5.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범죄인 인도 등 관련 국제협력 강화(6.4)’ 순으로 나타났다.

75) 점수가 낮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음.

표 IV-2-1 예방 및 피해지원 정책

개 선 방 안	순 위		
	성매매 상담기관	청소년 기관	합계
	평균	평균	평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사 및 연구	6.2	5.1	5.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교육 및 계도	4.7	4.4	4.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재원조달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3.9	3.2	3.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범죄인 인도 등 관련 국제협력 강화	7.2	6	6.4
모든 국민의 사회 환경 정비 노력	4.9	4.2	4.4
모든 국민의 아동·청소년 보호, 선도, 교육 노력	4.2	4	4.1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정책에 대한 기타 의견은 다음과 같다.

- 가족치료회복을 위한 무료상담 의무화
- 국가의 법 집행 강화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
- 보호시설 및 상담기관 신설 시급
-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벌강화, 형량증가 등
- 아동·청소년 성피해자 보호시설, 예방시설의 확대가 필요(예: 드롭인센터, Sleeping캡슐)
-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들의 환경개선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국민의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함.
- 인력충원과 교육 확장 필요
- 지금 있는 고급인력 대우를 제대로 해주고 기관에 지금 일하고 있는 고급인력 급여 인상
- 청소년 단기쉼터가 각 시, 군, 구에도 있어야 함.
- 청소년개인의 성향을 조사하여 피해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에게 특별교육 필요
- 청소년 성매매수자에 대한 처벌강화 필요. 직장에 통보해야 함.

- 피해사례 발생 시 조치할 수 있는 기관 및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2)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업무의 실효성

성매매 상담기관과 청소년 기관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실효성을 묻은 결과, [그림 IV-2-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 피해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피해자 보호 및 숙식 제공의 순으로 실효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없음이 0.4%, 없는 편이 2.8%, 보통이 12.7%, 있는 편이 39%, 매우 있음이 45.1%로 나타났다.

‘조사 개입 및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없음이 0.6%, 없는 편이 3.4%, 보통이 21.7%, 있는 편이 40%, 매우 있음이 34.4%로 나타났다.

‘피해자 조기발견 지원체계 운영’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없음이 1%, 없는 편이 17.5%, 보통이 28.4%, 있는 편이 30.4%, 매우 있음이 22.8%로 나타났다.

‘성매수자 재범방지 교육 실시’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없음이 4%, 없는 편이 20.8%, 보통이 29.6%, 있는 편이 23.2%, 매우 있음이 22.4%로 나타났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없음이 1.2%, 없는 편이 7%, 보통이 26.2%, 있는 편이 35%, 매우 있음이 30.6%로 나타났다.

‘성매매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없음이 1.4%, 없는 편이 14.7%, 보통이 37.9%, 있는 편이 29%, 매우 있음이 17.1%로 나타났다.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없음이 1.2%, 없는 편이 3%, 보통이 13%, 있는 편이 34.3%, 매우 있음이 48.5%로 나타났다.

‘피해자 보호 및 숙식제공’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없음이 0.8%, 없는 편이 6%, 보통이 15.1%, 있는 편이 35.4%, 매우 있음이 42.7%로 나타났다.

‘피해자 직업교육 및 취업정보 제공, 공동작업장 운영’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없음이 2.4%, 없는 편이 12.5%, 보통이 26.4%, 있는 편이 29%, 매우 있음이

29.6%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성매매 상담기관의 경우 전혀 없음이 4.5%, 없는 편이 10.7%, 보통이 18%, 있는 편이 32%, 매우 있음이 34.8%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기관의 경우 전혀 없음이 1.2%, 없는 편이 13.5%, 보통이 31.1%, 있는 편이 27.4%, 매우 있음이 26.8%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피해자 직업교육 및 취업정보 제공, 공동작업장 운영' 업무의 실효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카이스퀘어검정에 의해 알아본 결과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6.728, p<.01$). 성매매 상담기관의 경우 매우 있음이 34.8%, 청소년 기관의 경우 보통이 26.8%로 성매매 상담기관이 8% 높게 나타났다.

'피해자 교과교육 및 취학서비스 제공'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없음이 1.2%, 없는 편이 16.7%, 보통이 23.9%, 있는 편이 31.8%, 매우 있음이 26.4%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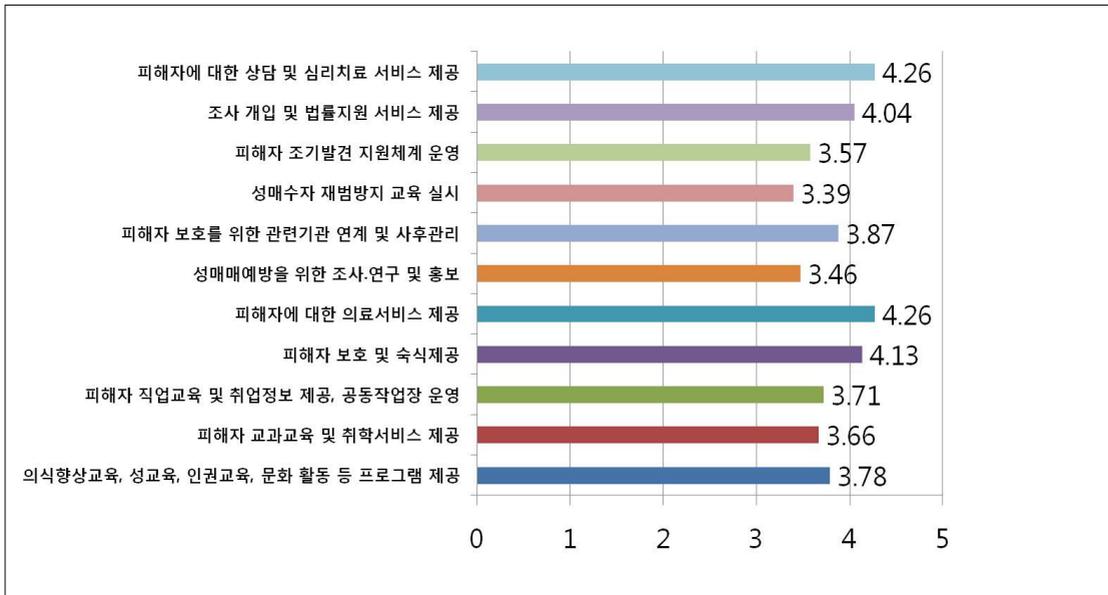
'의식향상교육, 성교육, 인권교육, 문화 활동 등 프로그램 제공'에서 전혀 없음이 2.2%, 없는 편이 10.7%, 보통이 23.3%, 있는 편이 35%, 매우 있음이 28.8%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성매매 상담기관의 경우 전혀 없음이 0.6%, 없는 편이 8.4%, 보통이 20.8%, 있는 편이 33.7%, 매우 있음이 36.5%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기관의 경우 전혀 없음이 3.1%, 없는 편이 12%, 보통이 24.6%, 있는 편이 35.7%, 매우 있음이 24.6%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의식향상교육, 성교육, 인권교육, 문화 활동 등 프로그램 제공' 업무의 실효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카이스퀘어검정에 의해 알아본 결과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1.2, p<.05$). 매우 있음이 성매매 상담기관의 경우 36.5%, 청소년 기관의 경우 24.6%로 성매매 상담기관이 11.9% 높게 나타났다.

표 IV-2-2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업무의 실효성

개선방안	기관	전혀 없음	없는 편	보통	있는 편	매우 있음	평균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	전체	2 (0.4)	14 (2.8)	64 (12.7)	196 (39)	227 (45.1)	4.26	505	$\chi^2=5.719$ $p=.221$
	성매매 상담기관	0 (0)	3 (1.7)	22 (12.4)	62 (34.8)	91 (51.1)	4.35	179	
	청소년 기관	2 (0.6)	11 (3.4)	42 (12.9)	134 (41.2)	136 (41.8)	4.2	326	

개선방안	기관	전혀 없음	없는 편	보통	있는 편	매우 있음	평균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조사 개입 및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전체	3 (0.6)	17 (3.4)	109 (21.7)	201 (40)	173 (34.4)	4.04	505	$x^2=3672$ p=.452
	성매매 상담기관	0 (0)	6 (3.4)	34 (19.1)	70 (39.3)	68 (38.2)	4.12	179	
	청소년 기관	3 (0.9)	11 (3.4)	75 (23.1)	131 (40.3)	105 (32.3)	4	326	
피해자 조기발견 지원체계 운영	전체	5 (1)	88 (17.5)	143 (28.4)	153 (30.4)	115 (22.8)	3.57	505	$x^2=3.815$ p=.432
	성매매 상담기관	0 (0)	33 (18.4)	49 (27.4)	52 (29.1)	45 (25.1)	3.61	179	
	청소년 기관	5 (1.5)	55 (16.9)	94 (28.9)	101 (31.1)	70 (21.5)	3.54	326	
성매수자 재범방지 교육 실시	전체	20 (4)	105 (20.8)	149 (29.6)	117 (23.2)	113 (22.4)	3.39	505	$x^2=1.401$ p=0.844
	성매매 상담기관	9 (5)	40 (22.3)	50 (27.9)	41 (22.9)	39 (21.8)	3.34	179	
	청소년 기관	11 (3.4)	65 (20)	99 (30.5)	76 (23.4)	74 (22.8)	3.42	326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전체	6 (1.2)	35 (7)	132 (26.2)	176 (35)	154 (30.6)	3.87	505	$x^2=7.847$ p=.097
	성매매 상담기관	0 (0)	12 (6.7)	38 (21.2)	70 (39.1)	59 (33)	3.98	179	
	청소년 기관	6 (1.9)	23 (7.1)	94 (29)	106 (32.7)	95 (29.3)	3.81	326	
성매매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전체	7 (1.4)	74 (14.7)	191 (37.9)	146 (29)	86 (17.1)	3.46	505	$x^2=4.371$ p=.358
	성매매 상담기관	3 (1.7)	21 (11.7)	63 (35.2)	56 (31.3)	36 (20.1)	3.56	179	
	청소년 기관	4 (1.2)	53 (16.3)	128 (39.4)	90 (27.7)	50 (15.4)	3.4	326	

개선방안	기관	전혀 없음	없는 편	보통	있는 편	매우 있음	평균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전체	6 (1.2)	15 (3)	65 (13)	172 (34.3)	243 (48.5)	4.26	505	$x^2=6.107$ $p=.191$
	성매매 상담기관	2 (1.1)	7 (4)	19 (10.7)	52 (29.4)	97 (54.8)	4.33	179	
	청소년 기관	4 (1.2)	8 (2.5)	46 (14.2)	120 (37)	146 (45.1)	4.22	326	
피해자 보호 및 숙식제공	전체	4 (0.8)	30 (6)	76 (15.1)	178 (35.4)	215 (42.7)	4.13	505	$x^2=6.343$ $p=.175$
	성매매 상담기관	0 (0)	10 (5.6)	21 (11.8)	61 (34.3)	86 (48.3)	4.25	179	
	청소년 기관	4 (1.2)	20 (6.2)	55 (16.9)	117 (36)	129 (39.7)	4.07	326	
피해자 직업교육 및 취업정보 제공, 공동작업장 운영	전체	12 (2.4)	63 (12.5)	133 (26.4)	146 (29)	149 (29.6)	3.71	505	$x^2=16.728$ $p=.002^{**}$
	성매매 상담기관	8 (4.5)	19 (10.7)	32 (18)	57 (32)	62 (34.8)	3.82	179	
	청소년 기관	4 (1.2)	44 (13.5)	101 (31.1)	89 (27.4)	87 (26.8)	3.65	326	
피해자 교과교육 및 취학서비스 제공	전체	6 (1.2)	84 (16.7)	120 (23.9)	160 (31.8)	133 (26.4)	3.66	505	$x^2=6.039$ $p=.196$
	성매매 상담기관	4 (2.2)	22 (12.4)	44 (24.7)	59 (33.1)	49 (27.5)	3.71	179	
	청소년 기관	2 (0.6)	62 (19.1)	76 (23.4)	101 (31.1)	84 (25.8)	3.62	326	
의식향상교육, 성교육, 인권교육, 문화 활동 등 프로그램 제공	전체	11 (2.2)	54 (10.7)	117 (23.3)	176 (35)	145 (28.8)	3.78	505	$x^2=11.2$ $p=.024^*$
	성매매 상담기관	1 (0.6)	15 (8.4)	37 (20.8)	60 (33.7)	65 (36.5)	3.97	179	
	청소년 기관	10 (3.1)	39 (12)	80 (24.6)	116 (35.7)	80 (24.6)	3.67	326	



【그림 IV-2-1】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업무의 실효성

2)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 대책

(1) 가정폭력, 성폭력과의 성매매 관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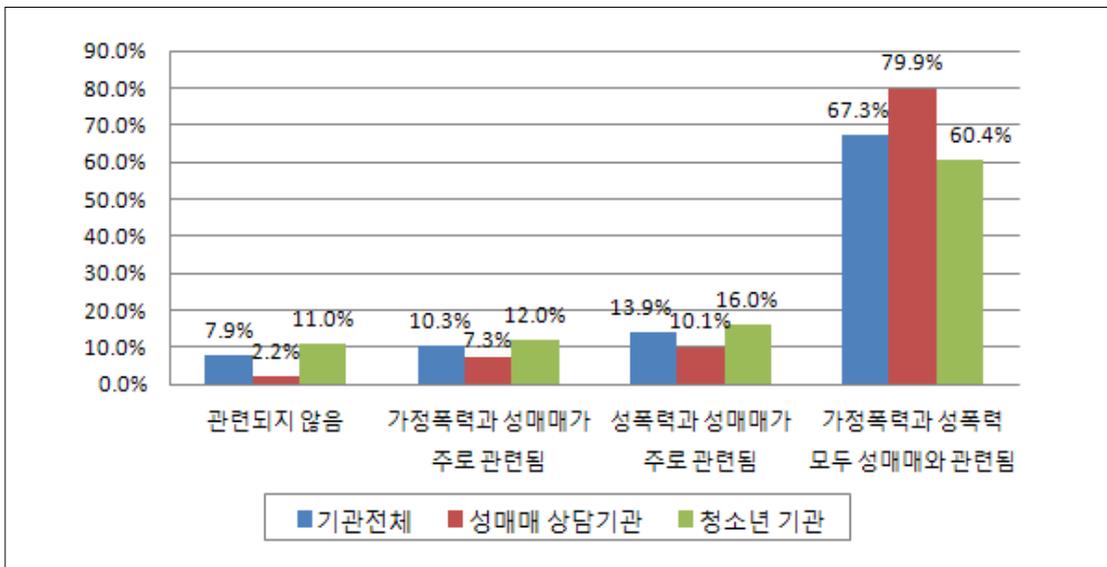
(ㄱ) 가정폭력, 성폭력과의 성매매 관련성 현장 체감 정도

가정폭력, 성폭력과의 성매매 관련성 현장 체감 정도를 묻은 결과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관련되지 않음이 7.9%, 가정폭력과 성매매가 주로 관련됨이 10.3%, 성폭력과 성매매가 주로 관련됨이 13.9%, 가정폭력과 성폭력 모두 성매매와 관련됨이 67.3%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성매매 상담기관의 경우 성매매 상담기관의 경우 관련되지 않음이 2.2%, 가정폭력과 성매매가 주로 관련됨이 73%, 성폭력과 성매매가 주로 관련됨이 10.1%, 가정폭력과 성폭력 모두 성매매와 관련됨이 79.9%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기관의 경우 관련되지 않음이 11%, 가정폭력과 성매매가 주로 관련됨이 12%, 성폭력과 성매매가 주로 관련됨이 16%, 가정폭력과 성폭력 모두 성매매와 관련됨이 60.4%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가정폭력, 성폭력과의

성매매 관련성 현장 체감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카이스퀘어검정에 의해 알아본 결과 9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23.190$, $p<.001$). '가정폭력과 성폭력 모두 성매매와 관련됨'이 성매매 상담기관에서 79.9%, 청소년 기관에서 60.4%로 성매매 상담기관이 청소년 기관에 비해 19.5% 높게 나타났다.

표 IV-2-3 가정폭력, 성폭력과의 성매매 관련성 현장 체감 정도

기관	관련되지 않음	가정폭력과 성매매가 주로 관련됨	성폭력과 성매매가 주로 관련됨	가정폭력과 성폭력 모두 성매매와 관련됨	무응답	전체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전체	40(7.9)	52(10.3)	70(13.9)	340(67.3)	3(0.6)	505(100)	$\chi^2=23.190$ $p=.000^{***}$
성매매 상담기관	4(2.2)	13(7.3)	18(10.1)	143(79.9)	1(0.6)	179(100)	
청소년 기관	36(11)	39(12)	52(16)	197(60.4)	2(0.6)	326(100)	



【그림 IV-2-2】 가정폭력, 성폭력과의 성매매 관련성 현장 체감 정도

(ㄴ)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가정폭력, 성폭력의 경험보다는 가정환경의 영향을 먼저 봐야 한다고 생각함.
- 다수의 내담자가 중복된 경험을 갖고 있으나 전혀 연관성이 없는 내담자들도 다수 발견됨.
- 돈을 벌기위해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음.
- 양육방식과 더 관련 있는 듯함.

(ㄷ)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가정 내에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가출의 확률이 높아지게 될 것임. 이러한 가출 상황에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면 쉽게 성매매에 노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며, 이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 직접적인 관련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생각됨.
- 가정폭력, 근친 성폭행의 경우 가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성매매를 하게 되는 사례가 대다수임.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성에 대한 기피 또는 문란한 성행동으로 이분화 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
- 가정폭력, 성폭력 경험 피해자는 성에 대한 자존감이 낮고, 그로 인해 성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 정립되기 힘들.
- 가정폭력, 성폭력을 통해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을 쓸모없다고 여기며 성에 대한 노출이 잦아들수록 둔감해지며, 가정 내에서 보호 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외부로 나와 생활하기 위해 비용마련을 위해서 복합적으로 성매매와 연관이 깊어진다고 생각됨.
- 가정폭력 → 가출 → 성매매, 성폭력 → 자존감 하락 → 성매매
-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위기상황을 경험한 아동, 청소년이 위기상황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위기상황인 성매매에 노출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음.

-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보호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매매의 노출 위험이 있으며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있다가 성폭력 경험도 있는 경우가 있음.
-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은 가출로 이어지고 가정자체가 청소년들에게 보호와 지지근거가 되지 못하면서 생존을 위해 특히 여자 청소년들은 성을 생존의 수단으로 삼게 되는 경우가 많음.
- 성장캠프참여청소년의 60% 이상이 가폭과 성폭을 경험하였으며, 가폭과 성폭으로 인해 가출하여 성매매에 빠진 청소년도 있었음.
- 실제로 상담해본 결과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성매매 이전 성폭력, 가정폭력을 경험했으며 성매매를 할 때도 성폭력이 있었음.
- 폭력에 익숙한 아이들은 자신에게 가해지는 다른 형태의 폭력에도 무기력하게 대응하게 되며, 성폭력에 익숙한 학생들 역시 성매매가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ㄷ)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인해 유입된 청소년과 다른 이유로 유입된 청소년과의 차이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인해 유입된 청소년과 다른 이유로 유입된 청소년과의 차이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 가정폭력, 근친 성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의 경우 가족의 지지체계 회복이 어려움/상대적으로 다른 이유로 가출한 청소년의 경우 가족의 지지체계를 가질 수 있고 가족으로 복귀가 가능함.
-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은 가출 등으로 인한 유해환경 접근 및 노출의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발생한다면, 다른 이유로 성매매 유입된 청소년은 금전적 필요성이나 인터넷, 미디어 등 매체에 의한 유혹으로 빚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되어 짐.
- 가정폭력, 성폭력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으로 나누기 보다는,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선택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본다면,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선택한 경우는, 교육과 취업 연결 등의 지지와 자원연결이 될 경우 다시 제자리로 돌아 올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쉽게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생각함.

-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인한 성매매 청소년들은 자존감이 낮아 보이며 다른 이유로 성매매에 유입된 청소년은 호기심내지 유희비 마련인 경우가 많은 것 같음.
-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인해 성매매에 유입된 청소년은 노출된 위기의 정도가 다른 이유로 성매매에 유입된 청소년보다 크고 회복역시 더 오래 걸림.
-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으로 성매매에 유입된 청소년의 경우 탈성매매를 위한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구체적인 지지체계로서 가족의 지원을 받기 어려움뿐만 아니라 조기에 탈 성매매를 실현하는 데에도 장애가 따름.
-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 인해 성매매를 하게 된 경우는 성매매의 원인을 외적요인 환경적 요인에서 찾을 수 있고 다른 이유로 유입된 경우는 내적요인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성폭력으로 인하여 성매매를 접하게 된 청소년들은 쉼터에서 잘 생활하다가도 성매매나 남성과의 성관계를 위하여 쉼터에서 가출하는 경우가 많음. 즉, 재유입 될 가능성이 큰 편이지만, 가출하여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하게 된 청소년의 경우 쉼터에서 생활하면서 돈에 필요성이 떨어진 이후에는 성매매에 재유입 되는 가능성이 낮은 편임.
- 청소년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다른 이유로 성매매에 유입된 청소년이 더 높을 것으로 생각함.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의해 성매매로 유입된 청소년은 일단 자신의 몸에 대한 중요성을 포기한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임.

(ㄹ)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인한 성매매 청소년들의 치유회복을 위한 대안 및 정책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인한 성매매 청소년들의 치유회복을 위한 대안 및 정책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 가정에서의 보호기능 강화 및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인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가정외의 그룹홈이나 쉼터 등에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미래를 준비하면서 지낼 수 있는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 마련
- 가정의 환경적인 요인들이 아이들을 더 위기상황으로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가정적인 회복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들을 위한 부모교육과 제도적인 부분이 선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가정폭력 및 성폭력으로 인한 성매매유입의 청소년은 개인적인 문제해결 뿐만이 아니라 가족단위의 치료와 개입이 요구되는 듯함. 따라서 가족치료 접근의 개입이 필요한 듯함.
-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 등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겪은 청소년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중에서도 복합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갖게 되는데,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경우 깊은 외상이기 때문에 쉽게 치유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님. 따라서 PTSD 전문 상담사가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법 중에 하나인데, 상담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면 청소년들의 치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됨.
-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다루는 기관과 그러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청소년쉼터 및 상담복지센터 등의 '지원시스템'를 만들어 적절한 연계와 지원이 필요. 또한 그러한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기관들 숫자는 너무 적음. 성매매피해상담소뿐만 아니라 성폭력피해청소년이 따로 보호되는 것처럼 성매매 피해청소년이 보호될 수 있는 시설이 늘어나야 할 것임. 성매매청소년들을 쉼터에서 함께 보호하게 될 경우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존 입소생들까지도 성매매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음.
-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게 하고, 사회에 적응 및 활동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및 자기개발을 위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긍정적이고 존중받는 관계 안에서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 정성을 쏟았을 때 온전한 일상복귀의 치유회복은 일어난다고 봄. 그러기 위해 기존의 중장기 시설의 운영방식-자립지원, 다양한 교육, 활동프로그램-이 시설입소자 규모가 아니라 소그룹 그룹형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음. 1인의 주된 보호자가 2~3명의 피해자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 가해자들에게 구형 등의 처벌과 더불어 금전적인 벌금형을 강하게 부과해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는 식의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
- 성매매로 유입된 청소년들 대부분 학교를 중퇴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탈성매매를 하고 성인이 되어 다시 사회로 복귀하려고 해도 학력이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대안학교 등 최소한의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물론 그 안에서 세심한 성교육, 반성매매 교육 등도 포함되어야 할 것임. 또한 가출 청소년들이 성매매로 유입되지

않도록 가출 시 지낼 수 있는 일시쉼터 등 청소년이 어려움이 없이 숙식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청소년쉼터 및 그룹홈 시설을 확충하여, 그 안에서 대안교육, 직업교육, 재활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회에 나왔을 때 적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필요한 교육을 장기적으로 실시함. 쉼터나 그룹홈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리고, 지역마다 설치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시설 운영자는 공인 전문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을 두어야 하며, 일반 보호시설보다 더욱 전문적인 인력들을 배치하여야 함.
- 폭력 피해 청소년들은 낮은 자존감, 미래에 대한 무망감, 좌절감, 우울감 등의 정서적 문제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이에 정서적 문제에 대한 치료 및 자존감 향상이 필요하므로, 심리치료나 정신건강의학과전 진료 지원 등이 필요해 보임.
-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한 장기적 방법으로 일반인 대상의 홍보 및 교육, 인식개선교육센터 등 주도적으로 지속하기 위한 기구 개설이 필요

(나)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인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방지 대책의 중요도

성매매 상담기관과 청소년 기관에서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인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방지 대책의 중요도에 대해 물은 결과, [그림 IV-2-3]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치료, 가정폭력 및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대안학교 및 자립생활관 확대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성매매로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가정폭력 및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동의 안함 0.4%, 별로 동의 안함 0.6%, 보통이 5.4%, 약간 동의함 13.3%, 매우 동의함 80.3%로 나타났다.

‘성교육 및 성평등 교육 강화’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동의 안함 0.8%, 별로 동의 안함 0.4%, 보통이 11.1%, 약간 동의함 21.6%, 매우 동의함 66.1%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성매매 상담기관의 경우 보통이 11.2%, 약간 동의함 15.6%, 매우 동의함 73.2%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기관의 경우 전혀 동의 안함 1.2%, 별로 동의 안함

0.6%, 보통이 11.1%, 약간 동의함이 24.9%, 매우 동의함이 62.2%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성교육 및 성평등 교육 강화'에 따라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인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방지 대책의 중요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카이스퀘어검정에 의해 알아본 결과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0.028, p<.05$). 매우 동의함이 성매매 상담기관에서 73.2%, 청소년 기관에서 62.2%로 성매매 상담기관이 청소년 기관에 비해 11% 높게 나타났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 치료'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동의 안함이 0.4%, 별로 동의 안함이 0.4%, 보통이 2.2%, 약간 동의함이 9.8%, 매우 동의함이 87.3%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대안학교 및 자립생활관 확대'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별로 동의 안함이 1.4%, 보통이 6.8%, 약간 동의함이 21.3%, 매우 동의함이 70.5%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성매매 상담기관의 경우 보통이 10.6%, 약간 동의함이 21.2%, 매우 동의함이 68.2%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기관의 경우 별로 동의 안함이 2.2%, 보통이 4.6%, 약간 동의함이 21.4%, 매우 동의함이 71.8%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대안학교 및 자립생활관 확대' 대책의 중요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카이스퀘어검정에 의해 알아본 결과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0.162, p<.05$). 매우 동의함이 성매매 상담기관에서 68.2%, 청소년 기관에서 71.8%로 청소년 기관이 성매매 상담기관에 비해 3.6% 높게 나타났다.

'위기가정 개입 및 가해 가족 분리조치'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동의 안함이 0.4%, 별로 동의 안함이 1%, 보통이 7.9%, 약간 동의함이 21%, 매우 동의함이 69.6%로 나타났다.

'쉼터 등 시설입소 외 의식주 지원방안의 다양화'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별로 동의 안함이 1.8%, 보통이 8.2%, 약간 동의함이 30.5%, 매우 동의함이 59.6%로 나타났다.

'학교 내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인자 요인검사 실시'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별로 동의 안함이 5.2%, 보통이 18%, 약간 동의함이 29.1%, 매우 동의함이 47.7%로 나타났다.

'직장 및 군부대, 공익요원 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동의 안함이 0.8%, 별로 동의 안함이 2%, 보통이 9.9%, 약간 동의함이 2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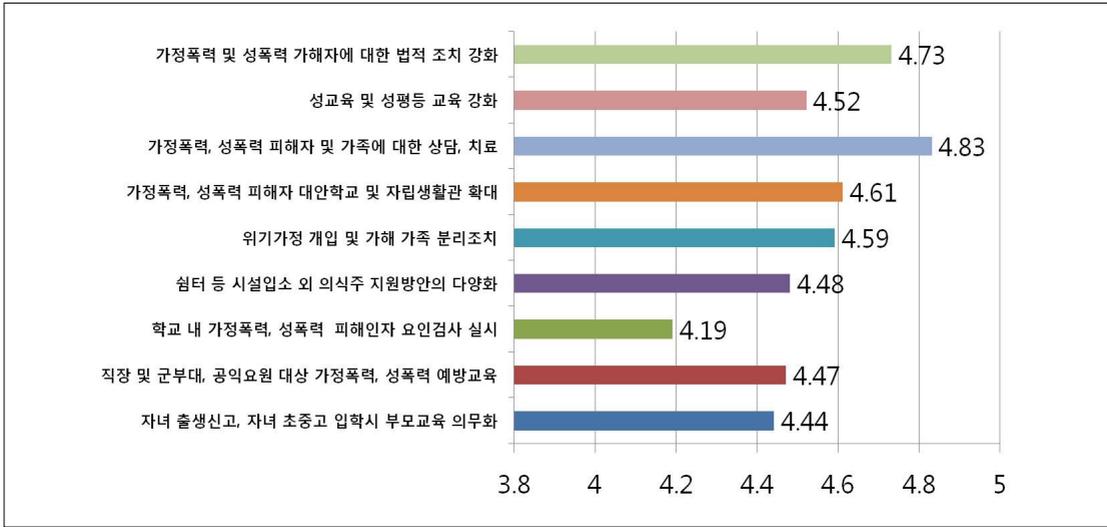
매우 동의함이 63.4%로 나타났다.

‘자녀 출생신고, 자녀 초중고 입학 시 부모교육 의무화’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동의 안함이 1%, 별로 동의 안함이 2%, 보통이 10.6%, 약간 동의함이 24.4%, 매우 동의함이 61.9%로 나타났다.

표 IV-2-4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인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방지 대책의 중요도

개선방안	기관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안함	보통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평균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가정폭력 및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전체	2 (0.4)	3 (0.6)	27 (5.4)	67 (13.3)	404 (80.3)	4.73	505	$x^2=2.578$ $p=.631$
	성매매 상담기관	0 (0)	1 (0.6)	12 (6.7)	21 (11.7)	145 (81)	4.73	179	
	청소년 기관	2 (0.6)	2 (0.6)	15 (4.6)	46 (14.2)	259 (79.9)	4.72	326	
성교육 및 성평등 교육 강화	전체	4 (0.8)	2 (0.4)	56 (11.1)	109 (21.6)	333 (66.1)	4.52	505	$x^2=10.028$ $p=.040^*$
	성매매 상담기관	0 (0)	0 (0)	20 (11.2)	28 (15.6)	131 (73.2)	4.62	179	
	청소년 기관	4 (1.2)	2 (0.6)	36 (11.1)	81 (24.9)	202 (62.2)	4.46	326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 치료	전체	2 (0.4)	2 (0.4)	11 (2.2)	49 (9.8)	438 (87.3)	4.83	505	$x^2=8.319$ $p=.081$
	성매매 상담기관	0 (0)	0 (0)	7 (3.9)	22 (12.4)	149 (83.7)	4.8	179	
	청소년 기관	2 (0.6)	2 (0.6)	4 (1.2)	27 (8.3)	289 (89.2)	4.85	326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대안학교 및 자립생활관 확대	전체	0 (0)	7 (1.4)	34 (6.8)	107 (21.3)	354 (70.5)	4.61	505	$x^2=10.162$ $p=.017^*$
	성매매 상담기관	0 (0)	0 (0)	19 (10.6)	38 (21.2)	122 (68.2)	4.58	179	
	청소년 기관	0 (0)	7 (2.2)	15 (4.6)	69 (21.4)	232 (71.8)	4.63	326	

개선방안	기관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안함	보통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평균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위기가정 개입 및 가해 가족 분리조치	전체	2 (0.4)	5 (1)	40 (7.9)	106 (21)	351 (69.6)	4.59	505	$x^2=3.229$ $p=.520$
	성매매 상담기관	0 (0)	2 (1.1)	16 (8.9)	43 (24)	118 (65.9)	4.55	179	
	청소년 기관	2 (0.6)	3 (0.9)	24 (7.4)	63 (19.4)	233 (71.7)	4.61	326	
쉼터 등 시설입소 외 의식주 지원방안의 다양화	전체	0 (0)	9 (1.8)	41 (8.2)	153 (30.5)	299 (59.6)	4.48	505	$x^2=3.58$ $p=.311$
	성매매 상담기관	0 (0)	1 (0.6)	16 (8.9)	50 (27.9)	112 (62.6)	4.53	179	
	청소년 기관	0 (0)	8 (2.5)	25 (7.7)	103 (31.9)	187 (57.9)	4.45	326	
학교 내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인자 요인검사 실시	전체	0 (0)	26 (5.2)	90 (18)	146 (29.1)	239 (47.7)	4.19	505	$x^2=5.801$ $p=.122$
	성매매 상담기관	0 (0)	4 (2.2)	29 (16.3)	55 (30.9)	90 (50.6)	4.3	179	
	청소년 기관	0 (0)	22 (6.8)	61 (18.9)	91 (28.2)	149 (46.1)	4.14	326	
직장 및 군부대, 공익요원 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교육	전체	4 (0.8)	10 (2)	50 (9.9)	120 (23.9)	319 (63.4)	4.47	505	$x^2=3.621$ $p=.460$
	성매매 상담기관	0 (0)	2 (1.1)	19 (10.7)	45 (25.3)	112 (62.9)	4.5	179	
	청소년 기관	4 (1.2)	8 (2.5)	31 (9.5)	75 (23.1)	207 (63.7)	4.46	326	
자녀 출생신고, 자녀 초종교 입학 시 부모교육 의무화	전체	5 (1)	10 (2)	53 (10.6)	122 (24.4)	309 (61.9)	4.44	505	$x^2=3.946$ $p=.413$
	성매매 상담기관	1 (0.6)	2 (1.1)	24 (13.4)	45 (25.1)	107 (59.8)	4.42	179	
	청소년 기관	4 (1.3)	8 (2.5)	29 (9.1)	77 (24.1)	202 (63.1)	4.45	326	



【그림 IV-2-3】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인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방지 대책의 중요도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인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방지 대책에 대한 기타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사전예방 차원에서 초, 중, 고 학교 내에 전문상담사를 학생 수 대비 현실화 배치. 청소년쉼터 및 기관, 단체 내 상담원의 전문성 향상. 성교육 및 성평등 교육의 현실화 및 지속성
- 가정교육이 최우선
- 가출청소년 지원체계의 다양화 - 드롭인센터 등, 정신적인 후견인 제도 도입 - 멘토
- 결혼 전 부모 및 부부 성교육 받아야 함.
- 고등학생 교과에 부모교육을 의무화
-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면 예비부부교육이 필요할 것. 부부는 새로운 가족구성의 첫 단계. 부부생활의 만족 이전에 이후 가족생활주기에 맞는 변화와 본인들이 갖춰야할 기본적인 지식, 태도 등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임. 그렇게 예비부부교육부터 임신출산, 육아, 청소년까지의 교육이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부모교육은 부모가 되기 전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함.
- 부모교육을 고등학생 교과에 의무화해야 함.
-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교육에 대해 잘 숙지하였는지 시험 등을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혜택을 마련하여 부모가 적극적으로 자녀양육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 성매매에 관한 인식변화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함.
- 엄마뿐 아니라 아버지 포함 부모교육 반드시 필요함.
-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부모교육 및 예방교육은 정책적으로 꼭 실시되었으면 좋겠음.
- 장애아동의 저연령화가 확연히 드러남. 장애아동에 대한 성교육 기회 확대 필요함.
- 직장 내 부모교육도 의무화 되어야 할 것 같음. 대기업부터 시작해도 될 것 같고 다들 경제적 이유로 부모 교육을 듣지 못하니 직장 내에서 의무화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피해발생 후 복구에 초점을 맞춘 정책과 법적 조치의 강화보다는 사전 교육 및 예방에 투자하는 정책이 필요함. 지금도 학교에서 의무적인 성교육 등을 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교육을 통해 배운 게 없고 너무 현실에 맞추지 못한 이론적인 교육이라고 함. 청소년들의 현실태에 초점을 맞추어 실질적인 가치관 교육과 부모교육 등의 현실적인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2)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원인 및 방법

(ㄱ)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원인 우선순위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원인 우선순위에 대해 소속기관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성매매 상담기관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원인이 가출 후 생활비 마련(1.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가출패밀리의 생활비 마련(2.5)', '유홍비 마련(2.9)', '임신중절이나 성형수술비 마련(3.5)'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기관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원인이 가출 후 생활비 마련(1.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가출패밀리의 생활비 마련(2.5)', '유홍비 마련(2.7)', '임신중절이나 성형수술비 마련(3.6)' 순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상담기관과 청소년 기관을 통틀어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원인이 가출 후 생활비 마련(1.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가출패밀리의 생활비 마련(2.5)', '유홍비 마련(2.8)', '임신중절이나 성형수술비 마련(3.5)'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5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원인 우선순위

	소속기관		
	성매매 상담기관	청소년 기관	합계
	평균	평균	평균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원인이 가출 후 생활비 마련	1.1	1.2	1.2
가출패밀리의 생활비 마련	2.5	2.5	2.5
임신중절이나 성형수술비 마련	3.5	3.6	3.5
유혹비 마련	2.9	2.7	2.8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원인에 대한 기타 의견은 다음 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 가출 후 업주에 의한 숙식제공 및 취업알선을 미끼로 유입
- 담뱃값, 화장품, 호기심에 의해 유입
- 또래압력이나 성매매를 하는 친구의 강요. 학교폭력 피해자의 경우에 가해학생이 시켜서.
- 또래포주(동성 및 이성친구, 선배)에 의한 남자친구임을 가장한 일방적인 강요
- 보도업자 등의 성매매 알선자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유입시킴.
- 스마트폰 채팅 등의 통신매체 노출로 유입
- 위의 원인 모두 우선순위를 따지기 보단 대부분 케이스 바이 케이스임. 또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원인이라고 봄.
- 자발적 의사
- 주변 선배, 언니들의 강요
- 주변의 유혹, 홍보전단지 등
- 친구나 선배 등 유혹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유입

(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방법 우선순위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방법 우선순위에 대해 소속기관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성매매 상담기관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방법이 인터넷을 통한 조건만남(1.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유입(2.8)', '인터넷 밤알바 사이트에서 유인(3.9)', '학교폭력으로 인한 성매매(친구나 선배의 강요와 돈 갈취)(4.4)', '가출청소년이 모이는 장소로 업주가 찾아와서 돈을 미끼로 유인(4.7)', '청소년 성매매 조직으로의 유입(4.9)', '인터넷 스팸메일을 통해 유입(5.7)'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기관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방법이 인터넷을 통한 조건만남(1.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유입(3.3)', '인터넷 밤알바 사이트에서 유인(3.7)', '학교폭력으로 인한 성매매(친구나 선배의 강요와 돈 갈취)(4.1)', '가출청소년이 모이는 장소로 업주가 찾아와서 돈을 미끼로 유인(4.3)', '청소년 성매매 조직으로의 유입(5)', '인터넷 스팸메일을 통해 유입(6)' 순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상담기관과 청소년 기관을 통틀어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방법이 인터넷을 통한 조건만남(1.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유입(3.1)', '인터넷 밤알바 사이트에서 유인(3.8)', '학교폭력으로 인한 성매매(친구나 선배의 강요와 돈 갈취)(4.2)', '가출청소년이 모이는 장소로 업주가 찾아와서 돈을 미끼로 유인(4.5)', '청소년 성매매 조직으로의 유입(5)', '인터넷 스팸메일을 통해 유입(5.9)'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6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방법 우선순위

	소속기관		
	성매매 상담기관	청소년 기관	합계
	평균	평균	평균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방법이 인터넷을 통한 조건만남	1.5	1.5	1.5
학교폭력으로 인한 성매매(친구나 선배의 강요와 돈 갈취)	4.4	4.1	4.2
청소년 성매매 조직으로의 유입	4.9	5	5
가출청소년이 모이는 장소로 업주가 찾아와서 돈을 미끼로 유인	4.7	4.3	4.5
인터넷 밤알바 사이트에서 유인	3.9	3.7	3.8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유입	2.8	3.3	3.1
인터넷 스팸메일을 통해 유입	5.7	6	5.9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방법에 대한 기타 의견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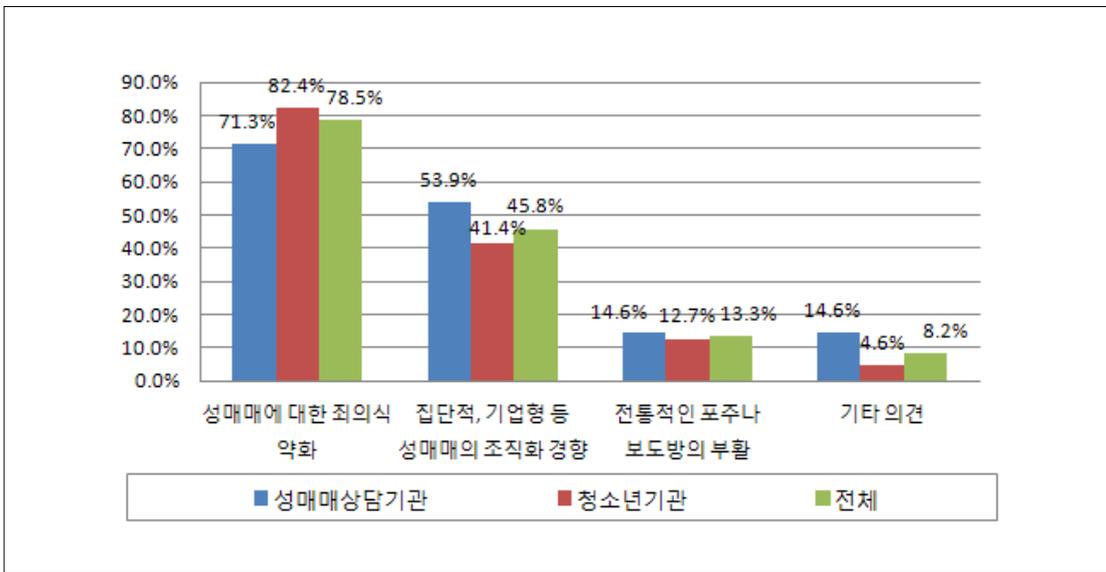
- 가출 후 길에서 만나서 성매매
- 길거리에서 유입
- 남친을 가장한 포주에 의해 유입
- 대부분 쉼터 청소년들은 인터넷 조건만남이나 조건만남 중인 주변 청소년의 소개로 조건만남에 유입됨.
- 먼저 유입된 청소년의 권유로 인해 유입됨
- 스마트폰을 통하여 쉽게 연락하고 유입되는 듯함.
- 친구나 선배의 강요가 아닌 단순한 소개로 확산됨.
- 친구나 선배의 소개, 보도방 연결

(ㄷ) 최근 성매매 현상에 변화된 특성

최근 성매매 현상에 변화된 특성에 대해 물은 결과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성매매에 대한 죄의식 약화가 78.5%, 집단적, 기업형 등 성매매의 조직화 경향이 45.8%, 전통적인 포주나 보도방의 부활이 13.3%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성매매 상담기관에서 성매매에 대한 죄의식 약화가 71.3%, 집단적, 기업형 등 성매매의 조직화 경향이 53.9%, 전통적인 포주나 보도방의 부활이 14.6%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기관에서 성매매에 대한 죄의식 약화가 82.4%, 집단적, 기업형 등 성매매의 조직화 경향이 41.4%, 전통적인 포주나 보도방의 부활이 12.7%로 나타났다. 성매매에 대한 죄의식 약화가 성매매 상담기관에서 71.3%, 청소년 기관에서 82.4%로 청소년 기관이 성매매 상담기관에 비해 11.1% 높게 나타났다.

표 IV-2-7 최근 성매매 현상에 변화된 특성(중복응답)

		소속기관		
		성매매상담 기관	청소년기관	전체
		빈도(%)	빈도(%)	빈도(%)
최근 들어 성매매 현상에 변화된 특성 (다중응답)	성매매에 대한 죄의식 약화	127(71.3)	267(82.4)	394(78.5)
	집단적, 기업형 등 성매매의 조직화 경향	96(53.9)	134(41.4)	230(45.8)
	전통적인 포주나 보도방의 부활	26(14.6)	41(12.7)	67(13.3)
	기타 의견	26(14.6)	15(4.6)	41(8.2)



【그림 IV-2-4】 최근 성매매 현상에 변화된 특성

최근 성매매 현상에 변화된 특성에 대한 기타 의견은 다음과 같다.

- 20대 초반 남성이 중심이 되어 청소년 5-6명을 관리하며 수수료를 지달하는 형식으로 소개
- 가출팸 형성을 통한 또래포주 피해자

- 과거 성매매유형은 가출 아동, 청소년의 숙식해결 목적으로 업소에 유입되었었다면 현재는 개인형 성매매로 조건만남 및 채팅을 통해 성매매활성화. 단속 혹은 지원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듯함.
- 변종 성매매의 다양화
- 성매매 저연령화 현상
- 성매매를 단순히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임. 죄의식을 전혀 갖지 않으며 임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설마라는 생각으로 성매매를 하고, 설사 임신을 한다하더라도 지우면 된다고 생각함.
- 스마트폰 어플로 인해 접근성이 더 용이해짐.
- 전자매체 이용한 알선과 성구매 증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모호, 피해청소년에 대한 피의자 조사 및 처벌사례 증가
- 학대, 방임 경험 청소년의 경우 구매 남성에 대해 보호자나 사랑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음. 그래서 처벌을 꺼리는 경우가 많음.

(ㄷ)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예방 대책 중요도

성매매 상담기관과 청소년 기관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예방 대책 중요도에 동의하는 정도를 물은 결과, [그림 IV-2-5]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유흥업소 및 보도방 단속·처벌 강화, 건강한 피임법 등 현실에 맞는 성교육 실시, 성매매 유입특성을 고려한 상담 및 지원, 인터넷 성매매 전담수사팀 및 모니터링 활성화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예방 대책으로 건강한 피임법 등 현실에 맞는 성교육 실시’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동의 안함 0.4%, 별로 동의 안함 1.4%, 보통 8.1%, 약간 동의함 19.6%, 매우 동의함 70.5%로 나타났다.

‘성매매 유입특성을 고려한 상담 및 지원’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별로 동의 안함 1.4%, 보통 8.1%, 약간 동의함 24.6%, 매우 동의함 65.9%로 나타났다.

‘사이버 상담 및 사이버 아웃리치 활성화’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별로 동의 안함 2.6%, 보통 14.9%, 약간 동의함 28.8%, 매우 동의함 53.8%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성매매 상담기관의 경우 보통 12.3%, 약간 동의함 24%, 매우 동의함

63.7%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기관의 경우 별로 동의 안함이 4%, 보통이 16.3%, 약간 동의함이 31.4%, 매우 동의함이 48.3%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사이버 상담 및 사이버 아웃리치 활성화’ 대책 중요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카이스퀘어검정에 의해 알아본 결과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5.664, p<.01$). 매우 동의함이 성매매 상담기관에서 63.7%, 청소년 기관에서 48.3%로 성매매 상담기관이 청소년 기관에 비해 15.4% 높게 나타났다.

‘유형업소 및 보도방 단속, 처벌 강화’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동의 안함이 0.2%, 별로 동의 안함이 1.4%, 보통이 7.1%, 약간 동의함이 14.3%, 매우 동의함이 77%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성매매 상담기관의 경우 전혀 동의 안함이 0.6%, 별로 동의 안함이 2.8%, 보통이 8.4%, 약간 동의함이 6.7%, 매우 동의함이 81.6%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기관의 경우 별로 동의 안함이 0.6%, 보통이 6.4%, 약간 동의함이 18.4%, 매우 동의함이 74.5%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유형업소 및 보도방 단속, 처벌 강화’ 대책 중요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카이스퀘어검정에 의해 알아본 결과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8.228, p<.01$). 매우 동의함이 성매매 상담기관에서 81.6%, 청소년 기관에서 74.5%로 성매매 상담기관이 청소년 기관에 비해 7.1% 높게 나타났다.

‘인터넷 성매매 전담수사팀 및 모니터링 활성화’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별로 동의 안함이 2.4%, 보통이 9.7%, 약간 동의함이 18.8%, 매우 동의함이 69.1%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성매매 상담기관의 경우 별로 동의 안함이 1.7%, 보통이 3.4%, 약간 동의함이 14.5%, 매우 동의함이 80.4%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기관의 경우 별로 동의 안함이 2.8%, 보통이 13.2%, 약간 동의함이 21.2%, 매우 동의함이 62.9%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인터넷 성매매 전담수사팀 및 모니터링 활성화’ 대책 중요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카이스퀘어검정에 의해 알아본 결과 9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9.965, p<.001$). 매우 동의함이 성매매 상담기관에서 80.4%, 청소년 기관에서 62.9%로 성매매 상담기관이 청소년 기관에 비해 17.5% 높게 나타났다.

‘유해사이트 차단 및 신고인센티브제 활성화’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동의 안함이 0.4%, 별로 동의 안함이 2.2%, 보통이 14.5%, 약간 동의함이 26.7%, 매우

동의함이 56.2%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성매매 상담기관의 경우 전혀 동의 안함이 1.1%, 별로 동의 안함이 1.7%, 보통이 7.3%, 약간 동의함이 23.5%, 매우 동의함이 66.5%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기관의 경우 별로 동의 안함이 2.5%, 보통이 18.4%, 약간 동의함이 28.5%, 매우 동의함이 50.6%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유해사이트 차단 및 신고인센티브제 활성화’ 대책 중요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카이스퀘어검정에 의해 알아본 결과 9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20.169$, $p<.001$). 매우 동의함이 성매매 상담기관에서 66.5%, 청소년 기관에서 50.6%로 성매매 상담기관이 청소년 기관에 비해 15.9% 높게 나타났다.

‘인터넷 유해게시물 삭제 등 업체의 자율정화 노력 활성화’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동의 안함이 1%, 별로 동의 안함이 7.3%, 보통이 13.9%, 약간 동의함이 21.6%, 매우 동의함이 56.2%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성매매 상담기관의 경우 전혀 동의 안함이 0.6%, 별로 동의 안함이 2.2%, 보통이 8.9%, 약간 동의함이 23.5%, 매우 동의함이 64.8%로 나타났으며, 청소년기관의 경우 전혀 동의 안함이 1.2%, 별로 동의 안함이 10.2%, 보통이 16.6%, 약간 동의함이 20.6%, 매우 동의함이 51.4%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인터넷 유해게시물 삭제 등 업체의 자율정화 노력 활성화’ 대책 중요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카이스퀘어검정에 의해 알아본 결과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9.419$, $p<.01$). 매우 동의함이 성매매 상담기관에서 64.8%, 청소년 기관에서 51.4%로 성매매 상담기관이 청소년 기관에 비해 13.4% 높게 나타났다.

‘아웃리치 전담인력 보강 및 경찰의 협조’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동의 안함이 0.4%, 별로 동의 안함이 2.2%, 보통이 13.7%, 약간 동의함이 29%, 매우 동의함이 54.7%로 나타났다.

‘가출 집결지에 대한 지속적인 아웃리치 실시’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별로 동의 안함이 1.8%, 보통이 10.5%, 약간 동의함이 30.2%, 매우 동의함이 57.5%로 나타났다.

‘드롭인센터 확대 및 쉼터의 다양화’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별로 동의 안함이 1.2%, 보통이 9.3%, 약간 동의함이 25%, 매우 동의함이 64.5%로 나타났다.

‘가출청소년쉼터에 대한 공식적인 홍보 실시’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동의 안함이 0.8%, 별로 동의 안함이 1%, 보통이 17.7%, 약간 동의함이 25.6%, 매우 동의함이 55%로 나타났다.

‘가출청소년쉼터의 입퇴소 절차 및 규칙 간소화’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동의 안함이 0.8%, 별로 동의 안함이 5%, 보통이 23.2%, 약간 동의함이 27.4%, 매우 동의함이 43.7%로 나타났다.

‘숙박시설 출입 및 원룸이나 오피스텔 임대 시 부모동의 의무화’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동의 안함이 1.8%, 별로 동의 안함이 5.2%, 보통이 12.9%, 약간 동의함이 24.7%, 매우 동의함이 55.5%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성매매 상담기관의 경우 전혀 동의 안함이 5%, 별로 동의 안함이 8.9%, 보통이 14%, 약간 동의함이 19%, 매우 동의함이 53.1%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기관의 경우 별로 동의 안함이 3.1%, 보통이 12.3%, 약간 동의함이 27.8%, 매우 동의함이 56.8%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숙박시설 출입 및 원룸이나 오피스텔 임대시 부모동의 의무화’ 대책 중요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카이스퀘어검정에 의해 알아본 결과 9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28.06, p<.001$). 매우 동의함이 성매매 상담기관에서 53.1%, 청소년 기관에서 56.8%로 청소년 기관이 성매매 상담기관에 비해 3.7%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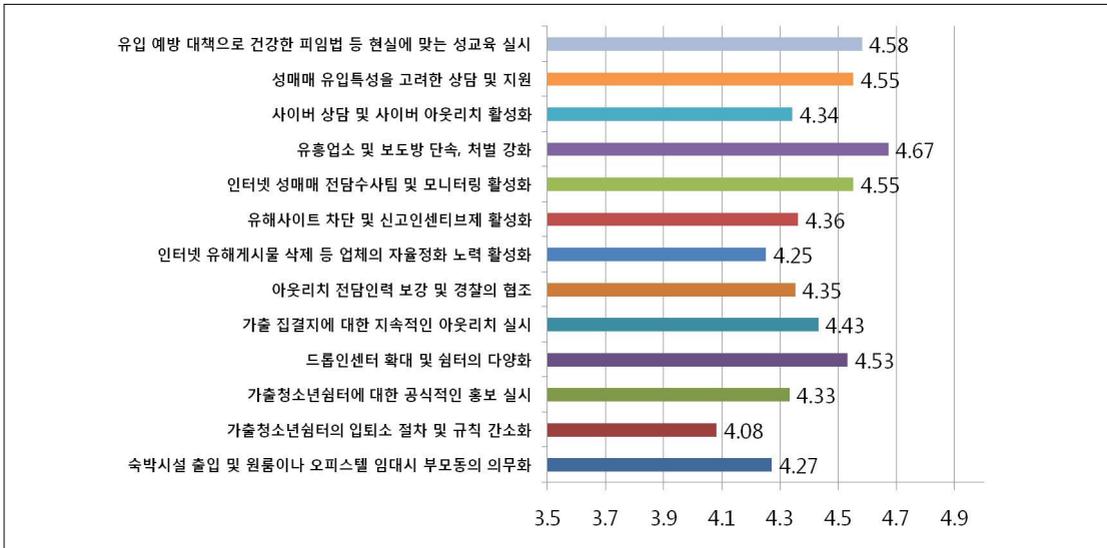
표 IV-2-8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예방 대책 중요도

개선방안	기관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안함	보통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평균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예방 대책으로 건강한 피임법 등 현실에 맞는 성교육 실시	전체	2 (0.4)	7 (1.4)	41 (8.1)	99 (19.6)	356 (70.5)	4.58	505	$\chi^2=5.345$ $p=.254$
	성매매 상담기관	0 (0)	2 (1.1)	14 (7.8)	27 (15.1)	136 (76)	4.66	179	
	청소년 기관	2 (0.6)	5 (1.5)	27 (8.3)	72 (22.1)	220 (67.5)	4.54	326	
성매매 유입특성을 고려한 상담 및 지원	전체	0 (0)	7 (1.4)	41 (8.1)	124 (24.6)	332 (65.9)	4.55	505	$\chi^2=7.625$ $p=.054$
	성매매 상담기관	0 (0)	0 (0)	17 (9.5)	36 (20.1)	126 (70.4)	4.61	179	
	청소년 기관	0 (0)	7 (2.2)	24 (7.4)	88 (27.1)	206 (63.4)	4.52	326	

개선방안	기관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안함	보통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평균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사이버 상담 및 사이버 아웃리치 활성화	전체	0 (0)	13 (2.6)	75 (14.9)	145 (28.8)	271 (53.8)	4.34	505	$x^2=15.664$ $p=.001^{**}$
	성매매 상담기관	0 (0)	0 (0)	22 (12.3)	43 (24)	114 (63.7)	4.51	179	
	청소년 기관	0 (0)	13 (4)	53 (16.3)	102 (31.4)	157 (48.3)	4.24	326	
유흥업소 및 보도방 단속, 처벌 강화	전체	1 (0.2)	7 (1.4)	36 (7.1)	72 (14.3)	389 (77)	4.67	505	$x^2=18.228$ $p=.001^{**}$
	성매매 상담기관	1 (0.6)	5 (2.8)	15 (8.4)	12 (6.7)	146 (81.6)	4.66	179	
	청소년 기관	0 (0)	2 (0.6)	21 (6.4)	60 (18.4)	243 (74.5)	4.67	326	
인터넷 성매매 전담수사팀 및 모니터링 활성화	전체	0 (0)	12 (2.4)	49 (9.7)	95 (18.8)	349 (69.1)	4.55	505	$x^2=19.965$ $p=.000^{***}$
	성매매 상담기관	0 (0)	3 (1.7)	6 (3.4)	26 (14.5)	144 (80.4)	4.74	179	
	청소년 기관	0 (0)	9 (2.8)	43 (13.2)	69 (21.2)	205 (62.9)	4.44	326	
유해사이트 차단 및 신고인센티브제 활성화	전체	2 (0.4)	11 (2.2)	73 (14.5)	135 (26.7)	284 (56.2)	4.36	505	$x^2=20.169$ $p=.000^{***}$
	성매매 상담기관	2 (1.1)	3 (1.7)	13 (7.3)	42 (23.5)	119 (66.5)	4.53	179	
	청소년 기관	0 (0)	8 (2.5)	60 (18.4)	93 (28.5)	165 (50.6)	4.27	326	
인터넷 유해게시물 삭제 등 업체의 자율정화 노력 활성화	전체	5 (1)	37 (7.3)	70 (13.9)	109 (21.6)	283 (56.2)	4.25	505	$x^2=19.419$ $p=.001^{**}$
	성매매 상담기관	1 (0.6)	4 (2.2)	16 (8.9)	42 (23.5)	116 (64.8)	4.5	179	
	청소년 기관	4 (1.2)	33 (10.2)	54 (16.6)	67 (20.6)	167 (51.4)	4.11	326	

개선방안	기관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안함	보통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평균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아웃리치 전담인력 보강 및 경찰의 협조	전체	2 (0.4)	11 (2.2)	69 (13.7)	146 (29)	275 (54.7)	4.35	505	$\chi^2=2.918$ $p=.572$
	성매매 상담기관	0 (0)	3 (1.7)	22 (12.3)	49 (27.4)	105 (58.7)	4.43	179	
	청소년 기관	2 (0.6)	8 (2.5)	47 (14.5)	97 (29.9)	170 (52.5)	4.31	326	
가출 집결지에 대한 지속적인 아웃리치 실시	전체	0 (0)	9 (1.8)	53 (10.5)	152 (30.2)	290 (57.5)	4.43	505	$\chi^2=2.077$ $p=.557$
	성매매 상담기관	0 (0)	3 (1.7)	20 (11.2)	47 (26.3)	109 (60.9)	4.46	179	
	청소년 기관	0 (0)	6 (1.8)	33 (10.2)	105 (32.3)	181 (55.7)	4.42	326	
드롭인센터 확대 및 쉼터의 다양화	전체	0 (0)	6 (1.2)	47 (9.3)	126 (25)	325 (64.5)	4.53	505	$\chi^2=2.407$ $p=.492$
	성매매 상담기관	0 (0)	2 (1.1)	16 (8.9)	38 (21.2)	123 (68.7)	4.58	179	
	청소년 기관	0 (0)	4 (1.2)	31 (9.5)	88 (27.1)	202 (62.2)	4.5	326	
가출청소년쉼터에 대한 공식적인 홍보 실시	전체	4 (0.8)	5 (1)	89 (17.7)	129 (25.6)	277 (55)	4.33	505	$\chi^2=9.215$ $p=.056$
	성매매 상담기관	4 (2.2)	3 (1.7)	29 (16.2)	43 (24)	100 (55.9)	4.3	179	
	청소년 기관	0 (0)	2 (0.6)	60 (18.5)	86 (26.5)	177 (54.5)	4.35	326	
가출청소년쉼터의 입퇴소 절차 및 규칙 간소화	전체	4 (0.8)	25 (5)	117 (23.2)	138 (27.4)	220 (43.7)	4.08	505	$\chi^2=0.424$ $p=.980$
	성매매 상담기관	1 (0.6)	10 (5.6)	41 (22.9)	49 (27.4)	78 (43.6)	4.08	179	
	청소년 기관	3 (0.9)	15 (4.6)	76 (23.4)	89 (27.4)	142 (43.7)	4.08	326	

개선방안	기관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안함	보통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평균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숙박시설 출입 및 원룸이나 오피스텔 임대시 부모동의 의무화	전체	9 (1.8)	26 (5.2)	65 (12.9)	124 (24.7)	279 (55.5)	4.27	505	$\chi^2=28.06$ $p=.000^{***}$
	성매매 상담기관	9 (5)	16 (8.9)	25 (14)	34 (19)	95 (53.1)	4.06	179	
	청소년 기관	0 (0)	10 (3.1)	40 (12.3)	90 (27.8)	184 (56.8)	4.38	326	



【그림 IV-2-5】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예방 대책 중요도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예방 대책 중요도에 대한 기타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 기관, 단체 상담원들의 상담교육 - 드롭인 센터, 이동일시쉼터, 단기청소년쉼터 등 최일선에 있는 청소년기관, 단체(보육시설 포함) 상담원들이 성매매 청소년들에 대한 대응책을 갖고 있지 않아 방관하거나 상담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기관연계도 되고 있지 않음 만나는 청소년이 성매매에 노출된 상황이 발견되었을 경우 본 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에 연계하거나 상담 요청 필요. 학교 내 청소년들의 경우 성매매 정확이 보여져 학교상담사가 연계하려 하여도 학교장에 의해 차단되는 경우 많음. 검, 경, 법원 가정지원의 협조 절실 - 경찰, 검사, 판사,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개인의 마인드에 따라 청소년 성매매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므로 협조체계도 천차만별임.

- 5항의 경우 사이버 아웃리치 전담인력이 보강되어야 함. 현재는 오프라인상의 가출 집결지가 점점 사라지고 청소년들이 사이버나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를 접하고 있음.
- 가출시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있는 기관이 생각보다 열악함. 실제 가출한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일시쉼터나 장기쉼터는 자리가 늘 짝 차있어서 추가로 입소를 하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경우도 많음.
- 가해자 처벌 엄격히 강화하기, 수요차단
- 건전하고 실질적인 청소년 일자리의 마련
- 남성 성구매자 의식 전환, 처벌강화
- 다양한 쉼터의 형태가 갖춰진다면 입, 퇴소 절차와 규칙은 각 해당 쉼터에 따라 일부는 더욱 엄격해져야 함(드롭인센터, 일시쉼터 등 있고 자립이나 비전을 위해 중장기쉼터에 입소하고 자립생활관의 형태의 시설에서 생활하고자 한다면, 그에 따른 의무사항들은 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것임). 청소년에게 다양한 쉼터들의 제공으로서 개인의 권리 또한 보다 다양해지고 넓어진다고 볼 수 있다면, 그에 따른 의무가 있음을 청소년 본인도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함. 시설이 꺼려진다는 이유로 쉼터의 모든 방향을 통일할 수는 없다고 생각. 다양한 쉼터가 이와 같은 시스템을 이해하고 연계망이 잘 갖춰진다면 규칙적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함.
- 방송이나 매스컴을 통한 홍보 강화, 의식 변화를 위한 제도 강화
- 생필품(식사, 숙옷 등)을 무상 제공할 거리부스가 필요함.
- 스마트폰 어플로 유입되는 성매매가 다수임. 인터넷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의 어플 또한 차단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 인터넷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어플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음.
-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다양한 노동환경 제공, 학업 외 다양한 대안문화와 지역공간 마련, 아동청소년의 성을 구매하는 범죄 엄중처벌 등

- 필터링 정책 강화
- 홍보 강화, 의식 변화

(3) 장소적 특성에 대한 대책

성매매 상담기관과 청소년 기관에서 장소적 특성을 반영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을 물은 결과, [그림 IV-2-6]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PC방 등 업소에 청소년쉼터나 상담전화 안내문 게시 의무화, 지하철역 인근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롭인센터 확충, 빈집 등 우범장소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경찰의 순찰의 순으로 동의율이 높게 나타났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소적 특성을 반영한 대책으로 가출 집결지 길거리 상담 및 심야 아웃리치 활성화’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동의 안함 0.6%, 별로 동의 안함 3.2%, 보통이 12%, 약간 동의함 31.4%, 매우 동의함 52.8%로 나타났다.

‘원룸 등 아웃리치 장소의 다양화’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동의 안함 0.4%, 별로 동의 안함 3.2%, 보통이 21.1%, 약간 동의함 31.6%, 매우 동의함 43.7%로 나타났다.

‘가출 집결지 현황조사 실시’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동의 안함 0.4%, 별로 동의 안함 0.6%, 보통이 16.5%, 약간 동의함 31.6%, 매우 동의함 50.9%로 나타났다.

‘지하철역 인근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롭인센터 확충’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별로 동의 안함 1.4%, 보통이 9%, 약간 동의함 30.7%, 매우 동의함 58.9%로 나타났다.

‘이동 상담버스 확충’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별로 동의 안함 7.4%, 보통이 19.2%, 약간 동의함 30.9%, 매우 동의함 42.5%로 나타났다.

‘청소년에게 24시간 개방된 문화공간 확충’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동의 안함 2.2%, 별로 동의 안함 7.8%, 보통이 16.9%, 약간 동의함 20.3%, 매우 동의함 52.8%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성매매 상담기관의 경우 전혀 동의 안함 6.2%, 별로

동의 안함이 8.4%, 보통이 12.4%, 약간 동의함이 19.7%, 매우 동의함이 53.4%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기관의 경우 별로 동의 안함이 7.4%, 보통이 19.4%, 약간 동의함이 20.7%, 매우 동의함이 52.5%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청소년에게 24시간 개방된 문화공간 확충’ 대책에 차이가 있는지를 카이스퀘어검정에 의해 알아본 결과 9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23.658, p<.001$). 매우 동의함이 성매매 상담기관에서 53.4%, 청소년 기관에서 52.5%로 성매매 상담기관이 청소년 기관에 비해 0.9% 높게 나타났다.

‘빈집 등 우범장소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경찰의 순찰’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별로 동의 안함이 0.6%, 보통이 13%, 약간 동의함이 28.1%, 매우 동의함이 58.3%로 나타났다.

‘PC방 등 업소에 청소년쉼터나 상담전화 안내문 게시 의무화’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별로 동의 안함이 2.6%, 보통이 5.8%, 약간 동의함이 25.7%, 매우 동의함이 65.9%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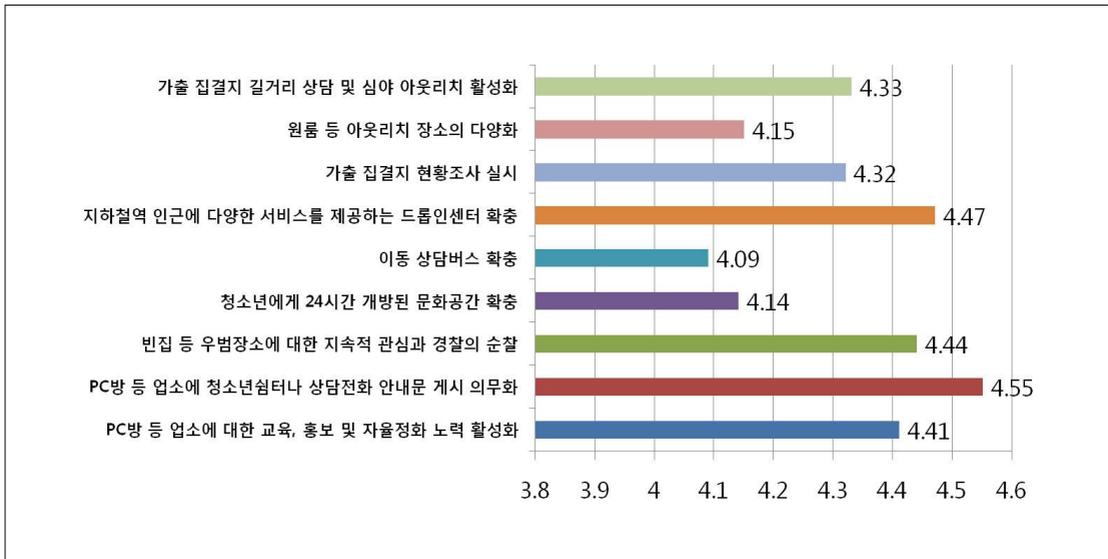
기관별로 살펴보면 성매매 상담기관의 경우 별로 동의 안함이 3.4%, 보통이 9.6%, 약간 동의함이 18.5%, 매우 동의함이 68.5%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기관의 경우 별로 동의 안함이 2.2%, 보통이 3.7%, 약간 동의함이 29.6%, 매우 동의함이 64.5%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PC방 등 업소에 청소년쉼터나 상담전화 안내문 게시 의무화’ 대책에 차이가 있는지를 카이스퀘어 검정에 의해 알아본 결과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3.23, p<.01$). 매우 동의함이 성매매 상담기관에서 68.5%, 청소년 기관에서 64.5%로 성매매 상담기관이 청소년 기관에 비해 4% 높게 나타났다.

‘PC방 등 업소에 대한 교육, 홍보 및 자율정화 노력 활성화’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별로 동의 안함이 2.4%, 보통이 11.6%, 약간 동의함이 28.3%, 매우 동의함이 57.6%로 나타났다.

표 IV-2-9 장소적 특성에 대한 대책

개선방안	기관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안함	보통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평균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소적 특성을 반영한 대책으로 가출 집결지 길거리 상담 및 심야 아웃리치 활성화	전체	3 (0.6)	16 (3.2)	60 (12)	157 (31.4)	264 (52.8)	4.33	505	$x^2=3.24$ $p=.519$
	성매매 상담기관	1 (0.6)	6 (3.4)	20 (11.2)	48 (27)	103 (57.9)	4.38	179	
	청소년 기관	2 (0.6)	10 (3.1)	40 (12.4)	109 (33.9)	161 (50)	4.3	326	
원룸 등 아웃리치 장소의 다양화	전체	2 (0.4)	16 (3.2)	106 (21.1)	159 (31.6)	220 (43.7)	4.15	505	$x^2=3.431$ $p=.488$
	성매매 상담기관	0 (0)	8 (4.5)	41 (23)	55 (30.9)	74 (41.6)	4.1	179	
	청소년 기관	2 (0.6)	8 (2.5)	65 (20)	104 (32)	146 (44.9)	4.18	326	
가출 집결지 현황조사 실시	전체	2 (0.4)	3 (0.6)	83 (16.5)	159 (31.6)	256 (50.9)	4.32	505	$x^2=4.723$ $p=.317$
	성매매 상담기관	0 (0)	2 (1.1)	33 (18.5)	49 (27.5)	94 (52.8)	4.32	179	
	청소년 기관	2 (0.6)	1 (0.3)	50 (15.4)	110 (33.8)	162 (49.8)	4.32	326	
지하철역 인근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롭인센터 확충	전체	0 (0)	7 (1.4)	45 (9)	154 (30.7)	295 (58.9)	4.47	505	$x^2=5.036$ $p=.169$
	성매매 상담기관	0 (0)	3 (1.7)	13 (7.3)	46 (25.8)	116 (65.2)	4.54	179	
	청소년 기관	0 (0)	4 (1.2)	32 (9.9)	108 (33.4)	179 (55.4)	4.43	326	
이동 상담버스 확충	전체	0 (0)	37 (7.4)	96 (19.2)	155 (30.9)	213 (42.5)	4.09	505	$x^2=6.592$ $p=.086$
	성매매 상담기관	0 (0)	7 (3.9)	39 (21.9)	51 (28.7)	81 (45.5)	4.16	179	
	청소년 기관	0 (0)	30 (9.3)	57 (17.6)	104 (32.2)	132 (40.9)	4.05	326	

개선방안	기관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안함	보통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평균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청소년에게 24시간 개방된 문화공간 확충	전체	11 (2.2)	39 (7.8)	85 (16.9)	102 (20.3)	265 (52.8)	4.14	505	$\chi^2=23.658$ $p=.000^{***}$
	성매매 상담기관	11 (6.2)	15 (8.4)	22 (12.4)	35 (19.7)	95 (53.4)	4.06	179	
	청소년 기관	0 (0)	24 (7.4)	63 (19.4)	67 (20.7)	170 (52.5)	4.18	326	
빈집 등 우범장소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경찰의 순찰	전체	0 (0)	3 (0.6)	65 (13)	141 (28.1)	292 (58.3)	4.44	505	$\chi^2=6.692$ $p=.082$
	성매매 상담기관	0 (0)	2 (1.1)	27 (15.2)	39 (21.9)	110 (61.8)	4.44	179	
	청소년 기관	0 (0)	1 (0.3)	38 (11.8)	102 (31.6)	182 (56.3)	4.44	326	
PC방 등 업소에 청소년쉼터나 상담전화 안내문 게시 의무화	전체	0 (0)	13 (2.6)	29 (5.8)	129 (25.7)	331 (65.9)	4.55	505	$\chi^2=13.23$ $p=.004^{**}$
	성매매 상담기관	0 (0)	6 (3.4)	17 (9.6)	33 (18.5)	122 (68.5)	4.52	179	
	청소년 기관	0 (0)	7 (2.2)	12 (3.7)	96 (29.6)	209 (64.5)	4.56	326	
PC방 등 업소에 대한 교육, 홍보 및 자율정화 노력 활성화	전체	0 (0)	12 (2.4)	58 (11.6)	141 (28.3)	287 (57.6)	4.41	505	$\chi^2=2.024$ $p=.567$
	성매매 상담기관	0 (0)	6 (3.4)	22 (12.6)	45 (25.7)	102 (58.3)	4.39	179	
	청소년 기관	0 (0)	6 (1.9)	36 (11.1)	96 (29.7)	185 (57.3)	4.42	326	



【그림 IV-2-6】 장소적 특성에 대한 대책

장소적 특성에 대한 대책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는 ‘업주들의 청소년 출입 제한시간 엄수’가 있었다.

(4)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차원에서의 대책

성매매 상담기관과 청소년 기관에서 성매매 피해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이 다시 성매매로 재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차원에서 해야 할 노력에 대해 물은 결과, [그림 IV-2-8]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위기상황에 따른 단계별 지원시스템 구축, 관련기관 실무자 사례회의 및 워크숍을 통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기관의 성매매 이해도 제고의 순으로 동의율이 높게 나타났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가출 집결지 길거리 상담 및 심야 아웃리치 활성화’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동의 안함 0.6%, 별로 동의 안함 3.2%, 보통이 12%, 약간 동의함 31.4%, 매우 동의함 52.8%로 나타났다.

‘성매매 피해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이 다시 성매매로 재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가족상담 및 부모교육 실시’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별로 동의 안함이 0.2%, 보통이 5.8%, 약간 동의함이 22.6%, 매우 동의함이 71.4%로 나타났다.

‘가정복귀가 어려운 아동·청소년에 대한 주거지원’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별로 동의 안함이 0.4%, 보통이 6.9%, 약간 동의함이 24.4%, 매우 동의함이 68.3%로 나타났다.

‘학교에서의 낙인 및 2차 피해 예방’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별로 동의 안함이 0.4%, 보통이 5.3%, 약간 동의함이 23.2%, 매우 동의함이 71.1%로 나타났다.

‘상담교사나 학교사회복지사의 지속적인 관심 및 1:1 사후관리’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보통이 7.3%, 약간 동의함이 18.6%, 매우 동의함이 74.1%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청소년 이용공간 확충’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보통이 11.3%, 약간 동의함이 25.2%, 매우 동의함이 63.5%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공동체 기능 회복’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별로 동의 안함이 2.6%, 보통이 12.9%, 약간 동의함이 30.5%, 매우 동의함이 54.1%로 나타났다.

‘왜곡된 성의식 및 성문화 개선’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별로 동의 안함이 0.2%, 보통이 5.3%, 약간 동의함이 22%, 매우 동의함이 72.5%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성매매상담기관의 경우 별로 동의 안함이 0.6%, 보통이 2.8%, 약간 동의함이 18.4%, 매우 동의함이 78.2%로 나타났으며, 청소년기관의 경우 보통이 6.7%, 약간 동의함이 23.9%, 매우 동의함이 69.3%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왜곡된 성의식 및 성문화 개선’ 대책에 차이가 있는지를 카이스퀘어검정에 의해 알아본 결과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8.046, p<.05$). 매우 동의함이 성매매 상담기관에서 78.2%, 청소년 기관에서 69.3%로 성매매 상담기관이 청소년 기관에 비해 8.9% 높게 나타났다.

‘지역사회 유해업소 단속 및 정화’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별로 동의 안함이 0.6%, 보통이 6.9%, 약간 동의함이 25.3%, 매우 동의함이 67.1%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성매매상담기관의 경우 별로 동의 안함이 1.7%, 보통이 7.8%, 약간 동의함이 19%, 매우 동의함이 71.5%로 나타났으며, 청소년기관의 경우 보통이 6.4%, 약간 동의함이 28.8%, 매우 동의함이 64.7%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지역사회 유해업소 단속 및 정화’ 대책에 차이가 있는지를 카이스퀘어검정에 의해 알아본 결과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0.987, p<.05$). 매우 동의함이 성매매 상담기관에서 71.5%, 청소년

기관에서 64.7%로 성매매 상담기관이 청소년 기관에 비해 6.8% 높게 나타났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자활 지원’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별로 동의 안함이 0.2%, 보통이 1.4%, 약간 동의함이 22.2%, 매우 동의함이 76.2%로 나타났다.

‘청소년쉼터 활성화’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별로 동의 안함이 1.2%, 보통이 12.7%, 약간 동의함이 23.8%, 매우 동의함이 62.3%로 나타났다.

‘성매매 단속 및 성매수자 처벌 강화’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동의 안함이 0.2%, 별로 동의 안함이 1%, 보통이 6.7%, 약간 동의함이 10.5%, 매우 동의함이 81.6%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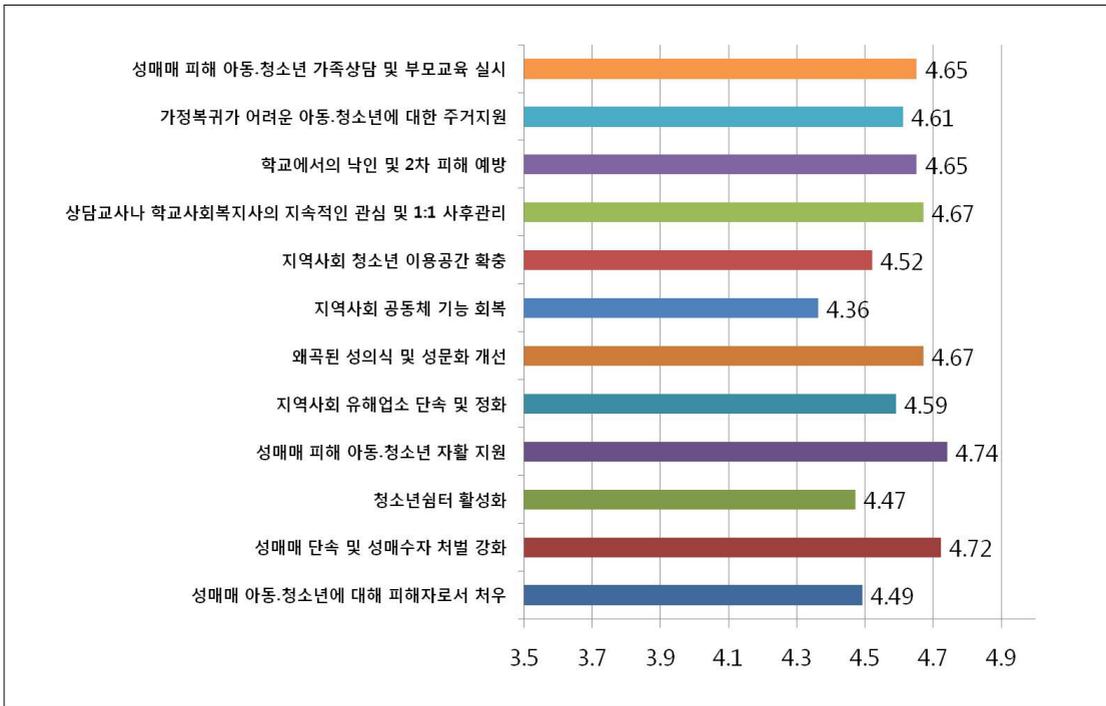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해 피해자로서 처우’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동의 안함이 0.2%, 별로 동의 안함이 1%, 보통이 9%, 약간 동의함이 29.3%, 매우 동의함이 60.6%로 나타났다.

표 IV-2-10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차원에서의 대책

개선방안	기관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안함	보통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평균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매매 피해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이 다시 성매매로 재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가족상담 및 부모교육 실시	전체	0 (0)	1 (0.2)	29 (5.8)	114 (22.6)	360 (71.4)	4.65	505	$x^2=1.742$ $p=.628$
	성매매 상담기관	0 (0)	0 (0)	13 (7.3)	39 (21.8)	127 (70.9)	4.64	179	
	청소년 기관	0 (0)	1 (0.3)	16 (4.9)	75 (23.1)	233 (71.7)	4.66	326	
가정복귀가 어려운 아동·청소년에 대한 주거지원	전체	0 (0)	2 (0.4)	35 (6.9)	123 (24.4)	345 (68.3)	4.61	505	$x^2=7.383$ $p=.061$
	성매매 상담기관	0 (0)	0 (0)	11 (6.1)	33 (18.4)	135 (75.4)	4.69	179	
	청소년 기관	0 (0)	2 (0.6)	24 (7.4)	90 (27.6)	210 (64.4)	4.56	326	

개선방안	기관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안함	보통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평균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학교에서의 낙인 및 2차 피해 예방	전체	0 (0)	2 (0.4)	27 (5.3)	117 (23.2)	359 (71.1)	4.65	505	$x^2=2.799$ $p=.424$
	성매매 상담기관	0 (0)	0 (0)	8 (4.5)	37 (20.7)	134 (74.9)	4.7	179	
	청소년 기관	0 (0)	2 (0.6)	19 (5.8)	80 (24.5)	225 (69)	4.62	326	
상담교사나 학교사회복지사의 지속적인 관심 및 1:1 사후관리	전체	0 (0)	0 (0)	37 (7.3)	94 (18.6)	374 (74.1)	4.67	505	$x^2=.413$ $p=.814$
	성매매 상담기관	0 (0)	0 (0)	13 (7.3)	36 (20.1)	130 (72.6)	4.65	179	
	청소년 기관	0 (0)	0 (0)	24 (7.4)	58 (17.8)	244 (74.8)	4.67	326	
지역사회 청소년 이용공간 확충	전체	0 (0)	0 (0)	57 (11.3)	127 (25.2)	320 (63.5)	4.52	505	$x^2=3.039$ $p=.219$
	성매매 상담기관	0 (0)	0 (0)	25 (14)	39 (21.8)	115 (64.2)	4.5	179	
	청소년 기관	0 (0)	0 (0)	32 (9.8)	88 (27.1)	205 (63.1)	4.53	326	
지역사회 공동체 기능 회복	전체	0 (0)	13 (2.6)	65 (12.9)	154 (30.5)	273 (54.1)	4.36	505	$x^2=5.817$ $p=.121$
	성매매 상담기관	0 (0)	2 (1.1)	21 (11.7)	48 (26.8)	108 (60.3)	4.46	179	
	청소년 기관	0 (0)	11 (3.4)	44 (13.5)	106 (32.5)	165 (50.6)	4.3	326	
왜곡된 성의식 및 성문화 개선	전체	0 (0)	1 (0.2)	27 (5.3)	111 (22)	366 (72.5)	4.67	505	$x^2=8.046$ $p=.045^*$
	성매매 상담기관	0 (0)	1 (0.6)	5 (2.8)	33 (18.4)	140 (78.2)	4.74	179	
	청소년 기관	0 (0)	0 (0)	22 (6.7)	78 (23.9)	226 (69.3)	4.63	326	

개선방안	기관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안함	보통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평균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지역사회 유해업소 단속 및 정확	전체	0 (0)	3 (0.6)	35 (6.9)	128 (25.3)	339 (67.1)	4.59	505	$\chi^2=10.987$ $p=.012^*$
	성매매 상담기관	0 (0)	3 (1.7)	14 (7.8)	34 (19)	128 (71.5)	4.6	179	
	청소년 기관	0 (0)	0 (0)	21 (6.4)	94 (28.8)	211 (64.7)	4.58	326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자활 지원	전체	0 (0)	1 (0.2)	7 (1.4)	112 (22.2)	384 (76.2)	4.74	505	$\chi^2=3.624$ $p=.305$
	성매매 상담기관	0 (0)	1 (0.6)	2 (1.1)	34 (19)	142 (79.3)	4.77	179	
	청소년 기관	0 (0)	0 (0)	5 (1.5)	78 (24)	242 (74.5)	4.73	326	
청소년쉼터 활성화	전체	0 (0)	6 (1.2)	64 (12.7)	120 (23.8)	314 (62.3)	4.47	505	$\chi^2=3.041$ $p=.385$
	성매매 상담기관	0 (0)	4 (2.2)	21 (11.7)	45 (25.1)	109 (60.9)	4.45	179	
	청소년 기관	0 (0)	2 (0.6)	43 (13.2)	75 (23.1)	205 (63.1)	4.49	326	
성매매 단속 및 성매수자 처벌 강화	전체	1 (0.2)	5 (1)	34 (6.7)	53 (10.5)	412 (81.6)	4.72	505	$\chi^2=6.581$ $p=.160$
	성매매 상담기관	1 (0.6)	3 (1.7)	7 (3.9)	20 (11.2)	148 (82.7)	4.74	179	
	청소년 기관	0 (0)	2 (0.6)	27 (8.3)	33 (10.1)	264 (81)	4.71	326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해 피해자로서 처우	전체	1 (0.2)	5 (1)	45 (9)	147 (29.3)	304 (60.6)	4.49	505	$\chi^2=7.027$ $p=.134$
	성매매 상담기관	1 (0.6)	2 (1.1)	20 (11.2)	42 (23.5)	114 (63.7)	4.49	179	
	청소년 기관	0 (0)	3 (0.9)	25 (7.7)	105 (32.5)	190 (58.8)	4.49	326	



【그림 N-2-7】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차원에서의 대책

성매매 상담기관과 청소년 기관에서 성매매 피해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이 다시 성매매로 재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차원에서 해야 할 노력에 대한 기타 의견은 다음과 같다.

- 눈에 보이는 유해업소 단속 보다는 인터넷, 스마트폰을 통한 피해사례들에 대한 개선방안이 시급함.
- 마치 재소자들이 교도소에서 만나는 것과 유사하게 청소년쉼터가 또 다른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음.
- 정신질환이 있는 성매매 청소년에 대한 병원이나 교육시설의 확대, 대안학교 확충. 보호감호시설확대
- 청소년쉼터 규칙 간소화, 일시보호소 등 쉼터 외 주거/휴식 공간 활성화, 일자리 마련
- 특성화된 쉼터

(5) 위기청소년 정책간의 연계방안

성매매 상담기관과 청소년 기관에서 현재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CYS-Net이나 청소년쉼터, 청소년동반자 등 가출청소년을 포함한 위기청소년 정책 간의 연계방안에 대해 물은 결과 '위기 아동·청소년 및 성매매 관련 법률의 통합'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동의 안함 1.2%, 별로 동의 안함 3.8%, 보통이 14.6%, 약간 동의함 31.8%, 매우 동의함 48.6%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성매매 상담기관의 경우 전혀 동의 안함 2.3%, 별로 동의 안함 6.8%, 보통이 15.3%, 약간 동의함 29%, 매우 동의함 46.6%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기관의 경우 전혀 동의 안함 0.6%, 별로 동의 안함 2.2%, 보통이 14.2%, 약간 동의함 33.3%, 매우 동의함 49.7%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위기 아동·청소년 및 성매매 관련 법률의 통합' 방안에 차이가 있는지를 카이스퀘어검정에 의해 알아본 결과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0.124$, $p<.05$). 매우 동의함 성매매 상담기관에서 46.6%, 청소년 기관에서 49.7%로 청소년 기관이 성매매 상담기관에 비해 3.1% 높게 나타났다.

'위기 아동·청소년 및 성매매 관련 정책부서의 통합'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동의 안함 1.8%, 별로 동의 안함 4.2%, 보통이 12.2%, 약간 동의함 31.4%, 매우 동의함 50.4%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성매매 상담기관의 경우 전혀 동의 안함 4%, 별로 동의 안함 7.4%, 보통이 11.4%, 약간 동의함 29%, 매우 동의함 48.3%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기관의 경우 전혀 동의 안함 0.6%, 별로 동의 안함 2.5%, 보통이 12.7%, 약간 동의함 32.7%, 매우 동의함 51.5%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위기 아동·청소년 및 성매매 관련 정책부서의 통합' 방안에 차이가 있는지를 카이스퀘어검정에 의해 알아본 결과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4.621$, $p<.01$). 매우 동의함 성매매 상담기관에서 48.3%, 청소년 기관에서 51.5%로 청소년 기관이 성매매 상담기관에 비해 3.2% 높게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위기상황에 따른 단계별 지원시스템 구축'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별로 동의 안함 0.4%, 보통이 3.6%, 약간 동의함 24.1%, 매우 동의함 72%로 나타났다.

‘관련기관 실무자 사례회의, 워크숍을 통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별로 동의 안함이 0.8%, 보통이 7.8%, 약간 동의함이 20.7%, 매우 동의함이 70.8%로 나타났다.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기관의 성매매 이해도 제고’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별로 동의 안함이 0.8%, 보통이 7.4%, 약간 동의함이 32.5%, 매우 동의함이 59.4%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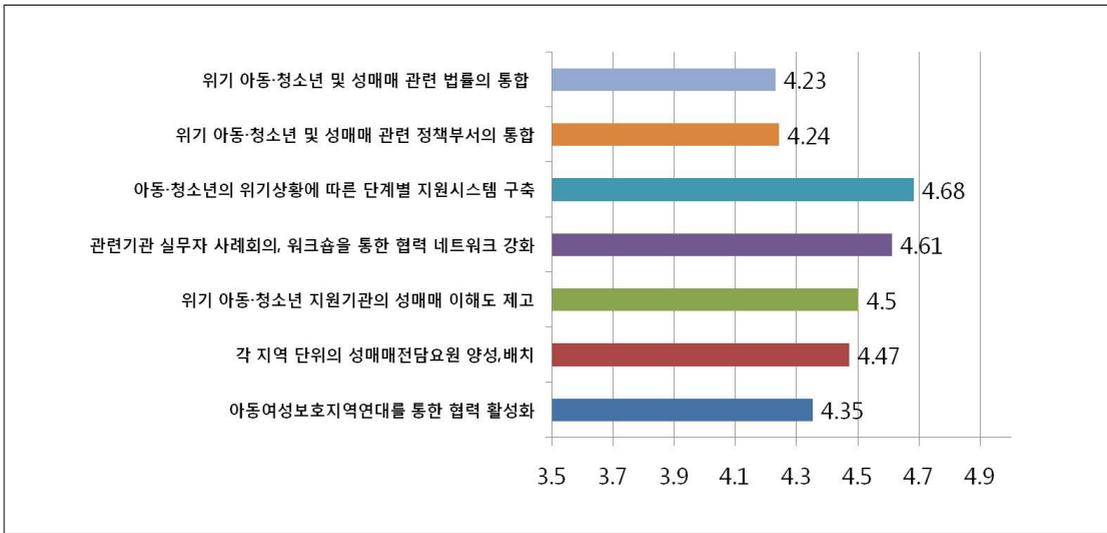
‘각 지역 단위의 성매매전담요원 양성, 배치’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동의 안함이 0.4%, 별로 동의 안함이 1%, 보통이 10.4%, 약간 동의함이 27.3%, 매우 동의함이 61%로 나타났다.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를 통한 협력 활성화’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별로 동의 안함이 2.4%, 보통이 13.8%, 약간 동의함이 30.7%, 매우 동의함이 53.1%로 나타났다.

표 IV-2-11 위기청소년 정책간의 연계방안

개선방안	기관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안함	보통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평균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위기 아동·청소년 및 성매매 관련 법률의 통합	전체	6 (1.2)	19 (3.8)	73 (14.6)	159 (31.8)	243 (48.6)	4.23	505	$x^2=10.124$ $p=.038^*$
	성매매 상담기관	4 (2.3)	12 (6.8)	27 (15.3)	51 (29)	82 (46.6)	4.11	179	
	청소년 기관	2 (0.6)	7 (2.2)	46 (14.2)	108 (33.3)	161 (49.7)	4.29	326	
위기 아동·청소년 및 성매매 관련 정책부서의 통합	전체	9 (1.8)	21 (4.2)	61 (12.2)	157 (31.4)	252 (50.4)	4.24	505	$x^2=14.621$ $p=.006^{**}$
	성매매 상담기관	7 (4)	13 (7.4)	20 (11.4)	51 (29)	85 (48.3)	4.1	179	
	청소년 기관	2 (0.6)	8 (2.5)	41 (12.7)	106 (32.7)	167 (51.5)	4.32	326	

개선방안	기관	전혀 동의함	별로 동의함	보통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평균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아동·청소년의 위기상황에 따른 단계별 지원시스템 구축	전체	0 (0)	2 (0.4)	18 (3.6)	121 (24.1)	362 (72)	4.68	505	$x^2=2.815$ $p=.421$
	성매매 상담기관	0 (0)	0 (0)	9 (5.1)	42 (23.6)	127 (71.3)	4.66	179	
	청소년 기관	0 (0)	2 (0.6)	9 (2.8)	79 (24.3)	235 (72.3)	4.68	326	
관련기관 실무자 사례회의, 워크숍을 통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	전체	0 (0)	4 (0.8)	39 (7.8)	104 (20.7)	356 (70.8)	4.61	505	$x^2=4.675$ $p=.197$
	성매매 상담기관	0 (0)	0 (0)	18 (10.1)	39 (21.9)	121 (68)	4.58	179	
	청소년 기관	0 (0)	4 (1.2)	21 (6.5)	65 (20)	235 (72.3)	4.63	326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기관의 성매매 이해도 제고	전체	0 (0)	4 (0.8)	37 (7.4)	163 (32.5)	298 (59.4)	4.5	505	$x^2=1.18$ $p=.758$
	성매매 상담기관	0 (0)	2 (1.1)	12 (6.7)	54 (30.3)	110 (61.8)	4.53	179	
	청소년 기관	0 (0)	2 (0.6)	25 (7.7)	109 (33.6)	188 (58)	4.49	326	
각 지역 단위의 성매매전담요원 양성, 배치	전체	2 (0.4)	5 (1)	52 (10.4)	137 (27.3)	306 (61)	4.47	505	$x^2=1.806$ $p=.771$
	성매매 상담기관	1 (0.6)	3 (1.7)	20 (11.2)	48 (27)	106 (59.6)	4.43	179	
	청소년 기관	1 (0.3)	2 (0.6)	32 (9.9)	89 (27.5)	200 (61.7)	4.5	326	
아동여성보호지 역연대를 통한 협력 활성화	전체	0 (0)	12 (2.4)	69 (13.8)	154 (30.7)	266 (53.1)	4.35	505	$x^2=7.18$ $p=.066$
	성매매 상담기관	0 (0)	1 (0.6)	20 (11.2)	52 (29.2)	105 (59)	4.47	179	
	청소년 기관	0 (0)	11 (3.4)	49 (15.2)	102 (31.6)	161 (49.8)	4.28	326	



【그림 IV-2-8】 위기청소년 정책간의 연계방안

성매매 상담기관과 청소년 기관에서 현재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CYS-Net이나 청소년쉼터, 청소년동반자 등 가출청소년을 포함한 위기청소년 정책 간의 연계방안에 대한 기타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위기청소년 관련업무 전체를 보건복지부로 옮겨 업무의 통합을 행해야 함.
- 저희 지역은 일시쉼터나 상담복지 센터간의 연계는 지금도 원활하게 잘 연계가 잘되는 편임. 다만 담당할 전담인력이 부족하고 시설이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됨. 인근지역에 장기쉼터가 없어 타 지역으로 청소년들을 보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3)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 대책

(1) 아동·청소년 피해자 전문기관 필요 여부

다른 성매매 관련기관에서도 아동·청소년 피해자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은 결과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필요 없음이 0.2%, 별로 필요 없음이 3%, 보통이 7.1%, 약간 필요함이 27.8%, 매우 필요함이 61.9%로 나타났다.

표 IV-2-12 아동·청소년 피해자 전문기관 필요 여부

개선방안	기관	전혀 필요 없음	별로 필요 없음	보통	약간 필요함	매우 필요함	평균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다른 성매매 관련기관들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 피해자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1 (0.2)	15 (3)	36 (7.1)	140 (27.8)	312 (61.9)	4.48	505	$x^2=8.224$ $p=.084$
	성매매 상담기관	1 (0.6)	8 (4.5)	18 (10.1)	45 (25.3)	106 (59.6)	4.39	179	
	청소년 기관	0 (0)	7 (2.1)	18 (5.5)	95 (29.1)	206 (63.2)	4.53	326	

(2) 최근 낮아지는 성매매 연령에 대한 현장 체감정도

최근 낮아지는 성매매 연령에 대한 현장 체감정도에 대해 물은 결과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동의 안함 1.2%, 별로 동의 안함 9.7%, 보통이 24.4%, 약간 동의함 37.5%, 매우 동의함 27.2%로 나타났다.

표 IV-2-13 최근 낮아지는 성매매 연령에 대한 현장 체감정도

개선방안	기관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안함	보통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평균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최근 들어 성매매 연령이 초등학교까지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체감정도	전체	6 (1.2)	49 (9.7)	123 (24.4)	189 (37.5)	137 (27.2)	3.8	505	$x^2=5.299$ $p=.258$
	성매매 상담기관	2 (1.1)	14 (7.9)	50 (28.1)	58 (32.6)	54 (30.3)	3.83	179	
	청소년 기관	4 (1.2)	35 (10.7)	73 (22.4)	131 (40.2)	83 (25.5)	3.78	326	

(3) 성매매의 저연령화 현상에 대한 대책

성매매의 저연령화 현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물은 결과, [그림 IV-2-9]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조기 성교육 및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인터넷에서의 아동보호를 위한 다기관협력체계 구축, 조기 미디어교육 실시의 순으로 동의율이 높게 나타났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성매매의 저연령화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조기 성교육 및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별로 동의 안함 0.4%, 보통이 5.8%, 약간 동의함 22%, 매우 동의함 71.8%로 나타났다.

‘조기 미디어 교육 실시’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동의 안함 0.4%, 별로 동의 안함 0.8%, 보통이 12.5%, 약간 동의함 34.1%, 매우 동의함 52.2%로 나타났다.

‘인터넷에서의 아동보호를 위한 다기관협력체계 구축’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별로 동의 안함 0.6%, 보통이 9.3%, 약간 동의함 30.6%, 매우 동의함 59.5%로 나타났다.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 기능 회복’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동의 안함 0.4%, 별로 동의 안함 1.8%, 보통이 17.5%, 약간 동의함 29.3%, 매우 동의함 51%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성매매 상담기관의 경우 별로 동의 안함 1.7%, 보통이 11.3%, 약간 동의함 26%, 매우 동의함 61%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기관의 경우 전혀 동의 안함 0.6%, 별로 동의 안함 1.8%, 보통이 20.9%, 약간 동의함 31.1%, 매우 동의함 45.5%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 기능 회복’ 대책에 차이가 있는지를 카이스퀘어검정에 의해 알아본 결과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3.555, p<.01$). 매우 동의함 61% 성매매 상담기관에서 45.5% 청소년 기관에서 45.5%로 성매매 상담기관이 청소년 기관에 비해 15.5%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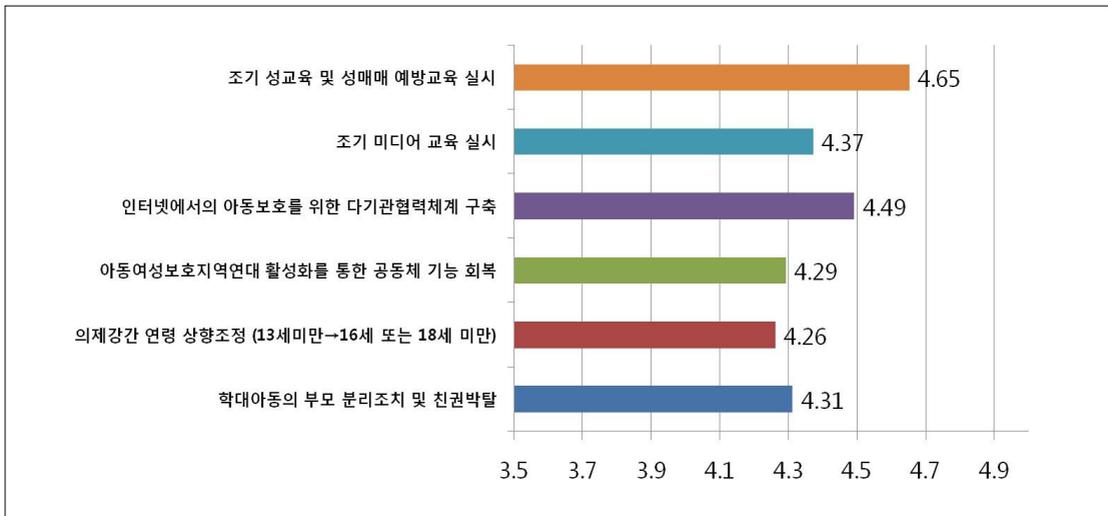
‘의제강간 연령 상향조정(13세 미만 → 16세 또는 18세 미만)’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동의 안함 2.8%, 별로 동의 안함 2%, 보통이 17.6%, 약간 동의함 21.6%, 매우 동의함 56.1%로 나타났다.

‘학대아동의 부모 분리조치 및 친권박탈’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동의 안함 0.4%, 별로 동의 안함 3%, 보통이 14.5%, 약간 동의함 29.1%, 매우 동의함 53.1%로 나타났다.

표 IV-2-14 성매매의 저연령화 현상에 대한 대책

개선방안	기관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안함	보통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평균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매매의 저연령화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조기 성교육 및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전체	0 (0)	2 (0.4)	29 (5.8)	111 (22)	362 (71.8)	4.65	505	$x^2=2.862$ $p=.413$
	성매매 상담기관	0 (0)	0 (0)	7 (3.9)	41 (23)	130 (73)	4.69	179	
	청소년 기관	0 (0)	2 (0.6)	22 (6.7)	70 (21.5)	232 (71.2)	4.63	326	
조기 미디어 교육 실시	전체	2 (0.4)	4 (0.8)	63 (12.5)	172 (34.1)	263 (52.2)	4.37	505	$x^2=4.615$ $p=.329$
	성매매 상담기관	0 (0)	2 (1.1)	16 (9)	64 (36)	96 (53.9)	4.43	179	
	청소년 기관	2 (0.6)	2 (0.6)	47 (14.4)	108 (33.1)	167 (51.2)	4.34	326	
인터넷에서의 아동보호를 위한 다기관협력체계 구축	전체	0 (0)	3 (0.6)	47 (9.3)	154 (30.6)	300 (59.5)	4.49	505	$x^2=2.838$ $p=.417$
	성매매 상담기관	0 (0)	2 (1.1)	17 (9.6)	48 (27)	111 (62.4)	4.51	179	
	청소년 기관	0 (0)	1 (0.3)	30 (9.2)	106 (32.5)	189 (58)	4.48	326	
아동여성보호지원대역연대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 기능 회복	전체	2 (0.4)	9 (1.8)	88 (17.5)	147 (29.3)	256 (51)	4.29	505	$x^2=13.555$ $p=.009^{**}$
	성매매 상담기관	0 (0)	3 (1.7)	20 (11.3)	46 (26)	108 (61)	4.46	179	
	청소년 기관	2 (0.6)	6 (1.8)	68 (20.9)	101 (31.1)	148 (45.5)	4.19	326	
의제기간 연령 상향조정 (13세미만→16세 또는 18세 미만)	전체	14 (2.8)	10 (2)	88 (17.6)	108 (21.6)	281 (56.1)	4.26	505	$x^2=4.629$ $p=.328$
	성매매 상담기관	8 (4.5)	3 (1.7)	35 (19.9)	38 (21.6)	92 (52.3)	4.15	179	
	청소년 기관	6 (1.8)	7 (2.2)	53 (16.3)	70 (21.5)	189 (58.2)	4.32	326	

개선방안	기관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안함	보통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평균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학대아동의 부모 분리조치 및 친권박탈	전체	2 (0.4)	15 (3)	73 (14.5)	147 (29.1)	268 (53.1)	4.31	505	$\chi^2=2.651$ $p=.618$
	성매매 상담기관	0 (0)	5 (2.8)	22 (12.3)	51 (28.5)	101 (56.4)	4.39	179	
	청소년 기관	2 (0.6)	10 (3.1)	51 (15.6)	96 (29.4)	167 (51.2)	4.28	326	



【그림 IV-2-9】 성매매의 저연령화 현상에 대한 대책

성매매의 저연령화 현상에 대한 대책에 대한 기타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성구매자 처벌 강화 등 성매매 전반에 걸친 환경 변화와 인식 전환
- 섹슈얼리티 교육 실시

(4) 남자 아동·청소년의 '역 원조교제'에 대한 현장 체감 정도

남자 아동·청소년의 '역 원조교제'에 대한 현장 체감 정도에 대해 물은 결과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동의 안함이 3%, 별로 동의 안함이 24%, 보통이 33.1%, 약간 동의함이 32.5%, 매우 동의함이 7.3%로 나타났다.

표 IV-2-15 남자 아동·청소년의 '역 원조교제'에 대한 현장 체감 정도

개선방안	기관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안함	보통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평균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최근 들어 남자 아동·청소년의 '역 원조교제'에 대한 현장 체감정도	전체	15 (3)	121 (24)	167 (33.1)	164 (32.5)	37 (7.3)	3.17	505	$\chi^2=9.353$ $p=.053$
	성매매 상담기관	9 (5)	38 (21.2)	59 (33)	54 (30.2)	19 (10.6)	3.2	179	
	청소년 기관	6 (1.8)	83 (25.5)	108 (33.2)	110 (33.8)	18 (5.5)	3.16	326	

(5) 하나의 법률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법률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은 결과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필요 없음이 0.6%, 별로 필요 없음이 6.6%, 보통이 21.7%, 약간 필요함이 34.8%, 매우 필요함이 36.4%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성매매상담기관의 경우 전혀 필요 없음이 1.7%, 별로 필요 없음이 10.6%, 보통이 20.1%, 약간 필요함이 34.6%, 매우 필요함이 33%로 나타났으며, 청소년기관의 경우 별로 필요 없음이 4.3%, 보통이 22.5%, 약간 필요함이 34.9%, 매우 필요함이 38.3%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 관한 사항인 경우 하나의 법률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를 카이스퀘어검정에 의해 알아본 결과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3.598$, $p<.01$).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 관한

사항인 경우 하나의 법률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는 성매매상담기관의 경우 약간 필요함이 34.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기관의 경우 매우 필요함이 38.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16 하나의 법률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개선방안	기관	전혀 필요 없음	별로 필요 없음	보통	약간 필요함	매우 필요함	평균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 관한 사항인 경우 하나의 법률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전체	3 (0.6)	33 (6.6)	109 (21.7)	175 (34.8)	183 (36.4)	4	505	$x^2=13.598$ $p=.009^{**}$
	성매매 상담기관	3 (1.7)	19 (10.6)	36 (20.1)	62 (34.6)	59 (33)	3.87	179	
	청소년 기관	0 (0)	14 (4.3)	73 (22.5)	113 (34.9)	124 (38.3)	4.07	326	

(6) 이원화된 법체계로 인한 애로사항

이원화된 법체계로 인한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 법률마다 대상을 정하는 방식이 다양하여 애로사항이 많음. 그러기 때문에 하루빨리 특성화된 성매매특별 법률이 더욱 실질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함.
- 법률이 통합된다면 지원시스템도 통합되어야 현장지원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임.
- 법체계가 다르다 보니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연계해야 할 곳이나 어떠한 처벌이 있는지 등을 알기가 어렵고 어떤 경우에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어려움이 있음.
- 성매매 방지법과 아동복지법에서는 기준이 되는 청소년의 연령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실무자들의 혼란을 야기하며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들로 지원에 어려움이 있음.
- 성매매 청소년을 지원하면서 경찰들이 '동의'에 초점을 맞추어 피해자로 보지 않고 처벌하려는 사례가 발생. '동의' 수준에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하지 말아야 함.

- 성매매를 성폭력이라고 보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사건 안에 성폭력과 성매매가 따로 나뉠 정도로 하더라도 성폭력보다는 성매매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한다고 생각함. 조건만남의 경우 청소년도 피의자로 조사 받는 경우가 대부분임. 청소년이기는 하나 완전한(?) 성폭력일 경우 아청법으로, 성매매일 경우 성매매방지법으로 나뉘어 적용하고 있음. 피해자에게 유리한 법 적용이 아니라고 봄.
- 이원화된 법체계 내에서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을 대상화하고 있는 것은 문제적이나 성매매피해 및 그 양상이 성인과 다르기 때문에 법이나 관련 정책부서는 별도로 마련되어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가 유지되어야 할 것 같음.
- 이원화된 법체계의 문제와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판사나 보호관찰관, 경찰 등 법집행 관련인들은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피해자’로 보지 않고 범법자로 보는 경향이 높음. 성매매방지법에 ‘피해자’와 아청법에 ‘대상청소년’이라는 구분을 하고 있고 사회의 전반적인 편견도 그러한 상태에서 아청법에 ‘대상청소년’이라는 규정이 ‘피해자’의 다른 표현으로 해석되기 때문인 것 같음.
- 청소년성매매에 관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책임성 있게 고민하거나 접근하기 쉽지 않음. 청소년 쪽은 성매매에 관해 잘 모르고, 성매매 쪽은 청소년에 관해 어려워하여 현장의 전문성 있는 경험들이 축적되기 쉽지 않으며, 관련부처도 나뉘어 있어 마찬가지로 상황인 것으로 보임.

4)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자 대책

(1) 성매수자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 및 치료 등의 성매매 예방대책 효과정도

성매수자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 및 치료 등의 성매매 예방대책 효과정도에 대해 물은 결과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동의 안함 9%, 별로 동의 안함 25.7%, 보통이 38.6%, 약간 동의함 19.3%, 매우 동의함 7.4%로 나타났다.

표 IV-2-17 성매수자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 및 치료 등의 성매매 예방대책 효과정도

개선방안	기관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안함	보통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평균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자에 대해 재범방지 교육 및 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성매매 예방 대책으로써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전체	45 (9)	129 (25.7)	194 (38.6)	97 (19.3)	37 (7.4)	2.9	505	$\chi^2=2.413$ $p=.66$
	성매매 상담기관	19 (10.7)	48 (27)	66 (37.1)	35 (19.7)	10 (5.6)	2.83	179	
	청소년 기관	26 (8)	81 (25)	128 (39.5)	62 (19.1)	27 (8.3)	2.95	326	

(2) 성매수자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 및 치료 등의 성매매 예방대책 중요정도

성매수자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 및 치료 등의 성매매 예방대책 중요정도를 묻은 결과, [그림 IV-2-10]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성매수자 교육 및 치료 강화 및 시간 확대, 왜곡된 성문화 개선 및 인권의식 제고,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 강화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문항별로 살펴보면,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별로 동의 안함이 0.4%, 보통이 2.2%, 약간 동의함이 14.9%, 매우 동의함이 82.5%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성매매 상담기관의 경우 보통이 4.5%, 약간 동의함이 10.6%, 매우 동의함이 84.9%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기관의 경우 별로 동의 안함이 0.6%, 보통이 0.9%, 약간 동의함이 17.2%, 매우 동의함이 81.2%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 강화’ 예방대책 중요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카이스퀘어검정에 의해 알아본 결과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1.338, p<.05$). 매우 동의함이 성매매 상담기관에서 84.9%, 청소년 기관에서 81.2%로 성매매 상담기관이 청소년 기관에 비해 3.7% 높게 나타났다.

‘성매수자 교육 및 치료 강화 및 시간 확대’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동의 안함이 0.4%, 별로 동의 안함이 0.4%, 보통이 4%, 약간 동의함이 18.7%, 매우 동의함이

76.5%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성매매 상담기관의 경우 전혀 동의 안함 1.1%, 보통이 6.7%, 약간 동의함 16.8%, 매우 동의함 75.4%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기관의 경우 별로 동의 안함 0.6%, 보통이 2.5%, 약간 동의함 19.8%, 매우 동의함 77.2%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성매수자 교육 및 치료 강화 및 시간 확대’ 예방대책 중요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카이스퀘어검정에 의해 알아본 결과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0.524$, $p<.05$). 매우 동의함이 성매매 상담기관에서 75.4%, 청소년 기관에서 77.2%로 청소년 기관이 성매매 상담기관에 비해 1.8% 높게 나타났다.

‘교육 및 치료와 벌금형의 병과’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동의 안함 0.2%, 별로 동의 안함 1.8%, 보통이 5%, 약간 동의함 21.1%, 매우 동의함 72%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성매매 상담기관의 경우 전혀 동의 안함 0.6%, 별로 동의 안함 1.7%, 보통이 8.4%, 약간 동의함 12.3%, 매우 동의함 77.1%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기관의 경우 별로 동의 안함 1.9%, 보통이 3.1%, 약간 동의함 25.9%, 매우 동의함 69.1%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교육 및 치료와 벌금형의 병과’ 예방대책 중요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카이스퀘어검정에 의해 알아본 결과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9.518$, $p<.01$). 매우 동의함이 성매매 상담기관에서 77.1%, 청소년 기관에서 69.1%로 성매매 상담기관이 청소년 기관에 비해 8% 높게 나타났다.

‘지속적인 보호관찰’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별로 동의 안함 0.2%, 보통이 7.7%, 약간 동의함 16.1%, 매우 동의함 76%로 나타났다.

‘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제도’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동의 안함 0.6%, 별로 동의 안함 1.4%, 보통이 6.8%, 약간 동의함 17.1%, 매우 동의함 74.2%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성매매 상담기관의 경우 전혀 동의 안함 0.6%, 별로 동의 안함 3.9%, 보통이 10.6%, 약간 동의함 12.8%, 매우 동의함 72.1%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기관의 경우 전혀 동의 안함 0.6%, 보통이 4.6%, 약간 동의함 19.4%, 매우 동의함 75.3%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제도’ 예방대책 중요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카이스퀘어검정에 의해 알아본 결과 9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21.884$, $p<.001$). 매우 동의함이 성매매 상담기관에서 72.1%, 청소년 기관에서 75.3%로 청소년 기관이 성매매 상담기관에 비해 3.2% 높게 나타났다.

‘전자발찌 제도’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동의 안함 0.8%, 별로 동의 안함 4.8%, 보통 17.3%, 약간 동의함 17.5%, 매우 동의함 59.6%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성매매 상담기관의 경우 전혀 동의 안함 2.2%, 별로 동의 안함 5.6%, 보통 19.7%, 약간 동의함 12.9%, 매우 동의함 59.6%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기관의 경우 별로 동의 안함 4.3%, 보통 16%, 약간 동의함 20.1%, 매우 동의함 59.6%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전자발찌 제도’에 따라 성매수자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 및 치료 등의 성매매 예방대책 중요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카이스퀘어검정에 의해 알아본 결과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1.892$, $p<.05$). 매우 동의함이 성매매 상담기관에서 59.6%, 청소년 기관에서 59.6%로 성매매 상담기관과 청소년 기관이 같게 나타났으나, 약간 동의함이라는 응답이 성매매상담기관의 경우는 12.9%, 청소년기관의 경우는 20.1%로 청소년 기관이 7.2% 높게 나타났다. 보통의 경우는 반대로 성매매 상담기관이 19.7%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기관이 16%로 나타나, 성매매 상담기관이 3.7% 높게 나타났다.

‘화학적 거세 제도’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동의 안함 6.5%, 별로 동의 안함 6%, 보통 19.8%, 약간 동의함 18.5%, 매우 동의함 49.2%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성매매 상담기관의 경우 전혀 동의 안함 12.8%, 별로 동의 안함 5.6%, 보통 19.6%, 약간 동의함 12.8%, 매우 동의함 49.2%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기관의 경우 전혀 동의 안함 3.1%, 별로 동의 안함 6.2%, 보통 20%, 약간 동의함 21.5%, 매우 동의함 49.2%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화학적 거세 제도’ 예방대책 중요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카이스퀘어검정에 의해 알아본 결과 9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21.632$, $p<.001$). 매우 동의함이 성매매 상담기관에서 49.2%, 청소년 기관에서 49.2%로 성매매 상담기관과 청소년 기관이 같게 나타났으나, 약간 동의함이라는 응답이 성매매상담기관의 경우는 12.8%, 청소년기관의 경우는 21.5%로 청소년 기관이 8.7% 높게 나타났다. 보통의 경우는 반대로 성매매 상담기관이 19.6%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기관이 20%로 나타나, 청소년 기관이 0.4% 높게 나타났다.

‘성매수자에 대한 연구 및 진단방법 개발’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동의 안함 0.6%, 별로 동의 안함 2.8%, 보통 15.1%, 약간 동의함 23.3%, 매우 동의함 58.3%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성매매 상담기관의 경우 전혀 동의 안함 1.7%, 별로

동의 안함이 2.2%, 보통이 19%, 약간 동의함이 19.6%, 매우 동의함이 57.5%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기관의 경우 별로 동의 안함이 3.1%, 보통이 13%, 약간 동의함이 25.3%, 매우 동의함이 58.6%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성매수자에 대한 연구 및 진단방법 개발' 예방대책 중요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카이스퀘어검정에 의해 알아본 결과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0.173$, $p<.05$). 매우 동의함이 성매매 상담기관에서 57.5%, 청소년 기관에서 58.6%로 청소년 기관이 성매매 상담기관에 비해 1.1%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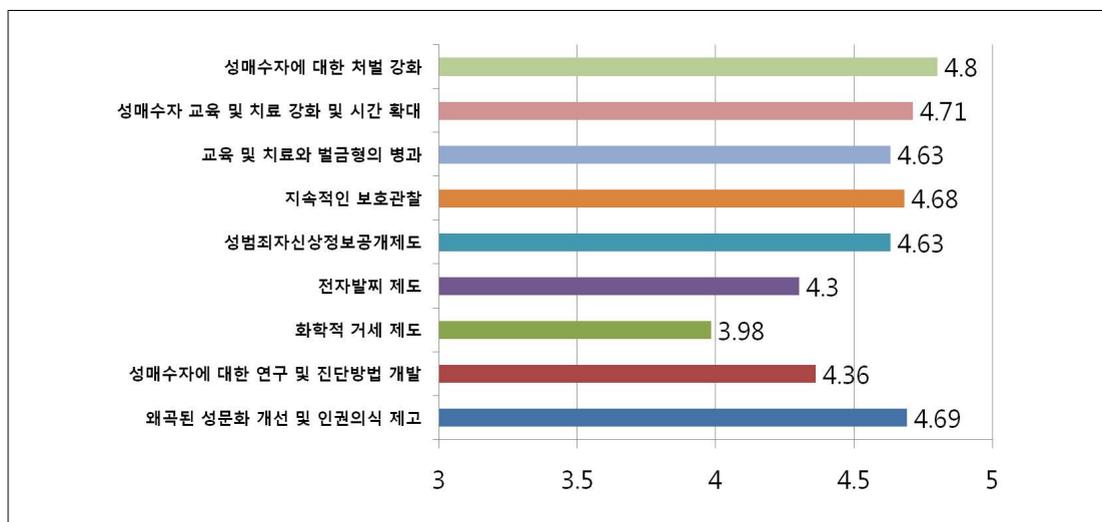
'왜곡된 성문화 개선 및 인권의식 제고'에서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동의 안함이 0.4%, 별로 동의 안함이 0.6%, 보통이 5.6%, 약간 동의함이 16.7%, 매우 동의함이 76.7%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성매매 상담기관의 경우 별로 동의 안함이 0.6%, 보통이 5.6%, 약간 동의함이 8.4%, 매우 동의함이 85.5%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기관의 경우 전혀 동의 안함이 0.6%, 별로 동의 안함이 0.6%, 보통이 5.6%, 약간 동의함이 21.3%, 매우 동의함이 71.9%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왜곡된 성문화 개선 및 인권의식 제고' 예방대책 중요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카이스퀘어검정에 의해 알아본 결과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5.394$, $p<.01$). 매우 동의함이 성매매 상담기관에서 85.5%, 청소년 기관에서 71.9%로 성매매 상담기관이 청소년 기관에 비해 13.9% 높게 나타났다.

표 IV-2-18 성매수자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 및 치료 등의 성매매 예방대책 중요정도

개선방안	기관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안함	보통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평균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 강화	전체	0 (0)	2 (0.4)	11 (2.2)	75 (14.9)	416 (82.5)	4.8	505	$\chi^2=11.338$ $p=.010^*$
	성매매 상담기관	0 (0)	0 (0)	8 (4.5)	19 (10.6)	152 (84.9)	4.8	179	
	청소년 기관	0 (0)	2 (0.6)	3 (0.9)	56 (17.2)	264 (81.2)	4.79	326	

개선방안	기관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안함	보통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평균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성매수자 교육 및 치료 강화 및 시간 확대	전체	2 (0.4)	2 (0.4)	20 (4)	94 (18.7)	385 (76.5)	4.71	505	$\chi^2=10.524$ $p=.032^*$
	성매매 상담기관	2 (1.1)	0 (0)	12 (6.7)	30 (16.8)	135 (75.4)	4.65	179	
	청소년 기관	0 (0)	2 (0.6)	8 (2.5)	64 (19.8)	250 (77.2)	4.73	326	
교육 및 치료와 벌금형의 병과	전체	1 (0.2)	9 (1.8)	25 (5)	106 (21.1)	362 (72)	4.63	505	$\chi^2=19.518$ $p=.001^{**}$
	성매매 상담기관	1 (0.6)	3 (1.7)	15 (8.4)	22 (12.3)	138 (77.1)	4.64	179	
	청소년 기관	0 (0)	6 (1.9)	10 (3.1)	84 (25.9)	224 (69.1)	4.62	326	
지속적인 보호관찰	전체	0 (0)	1 (0.2)	39 (7.7)	81 (16.1)	383 (76)	4.68	505	$\chi^2=1.939$ $p=.585$
	성매매 상담기관	0 (0)	1 (0.6)	13 (7.3)	28 (15.6)	137 (76.5)	4.68	179	
	청소년 기관	0 (0)	0 (0)	26 (8)	53 (16.3)	246 (75.7)	4.68	326	
성범죄자신상정보 공개제도	전체	3 (0.6)	7 (1.4)	34 (6.8)	86 (17.1)	373 (74.2)	4.63	505	$\chi^2=21.884$ $p=.000^{***}$
	성매매 상담기관	1 (0.6)	7 (3.9)	19 (10.6)	23 (12.8)	129 (72.1)	4.52	179	
	청소년 기관	2 (0.6)	0 (0)	15 (4.6)	63 (19.4)	244 (75.3)	4.69	326	
전자발찌 제도	전체	4 (0.8)	24 (4.8)	87 (17.3)	88 (17.5)	299 (59.6)	4.3	505	$\chi^2=11.892$ $p=.018^*$
	성매매 상담기관	4 (2.2)	10 (5.6)	35 (19.7)	23 (12.9)	106 (59.6)	4.22	179	
	청소년 기관	0 (0)	14 (4.3)	52 (16)	65 (20.1)	193 (59.6)	4.35	326	

개선방안	기관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안함	보통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평균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화학적 거세 제도	전체	33 (6.5)	30 (6)	100 (19.8)	93 (18.5)	248 (49.2)	3.98	505	$\chi^2=21.632$ $p=.000^{***}$
	성매매 상담기관	23 (12.8)	10 (5.6)	35 (19.6)	23 (12.8)	88 (49.2)	3.8	179	
	청소년 기관	10 (3.1)	20 (6.2)	65 (20)	70 (21.5)	160 (49.2)	4.08	326	
성매수자에 대한 연구 및 진단방법 개발	전체	3 (0.6)	14 (2.8)	76 (15.1)	117 (23.3)	293 (58.3)	4.36	505	$\chi^2=10.173$ $p=.038^*$
	성매매 상담기관	3 (1.7)	4 (2.2)	34 (19)	35 (19.6)	103 (57.5)	4.29	179	
	청소년 기관	0 (0)	10 (3.1)	42 (13)	82 (25.3)	190 (58.6)	4.4	326	
왜곡된 성문화 개선 및 인권의식 제고	전체	2 (0.4)	3 (0.6)	28 (5.6)	84 (16.7)	386 (76.7)	4.69	505	$\chi^2=15.394$ $p=.004^{**}$
	성매매 상담기관	0 (0)	1 (0.6)	10 (5.6)	15 (8.4)	153 (85.5)	4.79	179	
	청소년 기관	2 (0.6)	2 (0.6)	18 (5.6)	69 (21.3)	233 (71.9)	4.63	326	



【그림 IV-2-10】 성매수자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 및 치료 등의 성매매 예방대책 중요정도

성매수자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 및 치료 등의 성매매 예방대책 중요정도에 대한 기타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상담치료확대, 성매수자에 대한 효과성 있는 질적교육의 교육 확대
- 성매수자 발견 자체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유도수사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처벌강화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될 수 없다고 봄.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방교육과 치료에 좀 더 중점을 두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함.
- 현재의 아청법 따위의 현실성 없는 대책으론 불가능함.

(3) 처벌제도와 신고시스템의 성매매 예방대책의 효과정도

성매수자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 및 치료 등의 성매매 예방대책 효과정도에 대해 물은 결과 전문가들의 전체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전혀 동의 안함 3%, 별로 동의 안함 23.9%, 보통이 42.1%, 약간 동의함 23.9%, 매우 동의함 7.2%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성매매상담 기관의 경우 전혀 동의 안함 5.1%, 별로 동의 안함 23.6%, 보통이 47.2%, 약간 동의함 18%, 매우 동의함 6.2%로 나타났으며, 청소년기관의 경우 전혀 동의 안함 1.8%, 별로 동의 안함 24%, 보통이 39.4%, 약간 동의함 27.1%, 매우 동의함 7.7%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현재 처벌제도와 신고시스템이 성매매 예방대책으로써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는지를 카이스퀘어검정에 의해 알아본 결과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10.004, p<.05$). 보통이 성매매 상담기관에서 47.2%, 청소년 기관에서 39.4%로 성매매 상담기관이 청소년 기관에 비해 7.8% 높게 나타났다.

표 IV-2-19 처벌제도와 신고시스템의 성매매 예방대책의 효과정도

개선방안	기관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안함	보통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평균	빈도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현재 처벌제도와 신고시스템이 성매매 예방대책으로써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전체	15 (3)	120 (23.9)	212 (42.1)	120 (23.9)	36 (7.2)	3.08	505	$x^2=10.004$ $p=.040^*$
	성매매 상담기관	9 (5.1)	42 (23.6)	84 (47.2)	32 (18)	11 (6.2)	2.97	179	
	청소년 기관	6 (1.8)	78 (24)	128 (39.4)	88 (27.1)	25 (7.7)	3.15	326	

5) 종합적인 의견

종합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상청소년’의 표현을 삭제하고, 성매매피해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해야 하며, 이에 대한 범집행 관련인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청소년들이 좀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드롭인 센터가 꼭 필요
- 가해자 인권을 중요시 여기지 말고 피해자 및 사회약자의 인권을 먼저 지켜줬으면 좋겠음. 가해자 관련 법률을 강화하여 인식을 강화시켜야 함. 딸 낳기 무서운 세상이 된 것 같음.
- 기관의 전문성과 영역세분화가 필요함. 하지만 지역에 따른 차이가 있기에 청소년 유관기관의 상담원이 아동과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 지원 관련 교육을 받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아동 청소년성매매 예방, 피해지원 업무 전담 기관이나 전문가도 없고, 프로그램 지원을 해 줄 여건이 안 되는 곳이 많음. 따라서 전담기관이 없는 경우 유관기관에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사업비와 전문성 교육 필요함.
- 단순히 법이나 정책에 의해 보호하고 처벌하기보다 성장과정별 인권 교육 등이 먼저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사회전반에 걸쳐 아동, 청소년은 보호받아야 함을

합의해야한다고 봄. 어떠한 아동, 청소년이 당면한 문제의 유형으로 만들어진 체계 안에서의 보호가 아니라 그 자체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봄.

- 문제나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전시행정 같이 새로운 부서를 만들고 새로운 법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미 현재 이런 문제를 돕기 위해 마련된 기관들의 의견을 듣고 좀더 추가 보완되어야 할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돕고, 여기에서 추가적인 시설이 필요하거나 확충하는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함. 매년 새로운 기관이나 시설이 생기긴 하는 것 같은 데 솔직히 늘 상담을 하는 기관이나 도움을 주는 곳은 정해져 있고,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물어보아도 이런 문제에 닥쳤을 때 어디로 가야하는지 알고 있는 청소년들이 별로 없어서 기관과 정보에 대한 홍보도 필요할 것 같음.
- 미디어에 노출되는 각종 음란성/ 유해성 광고, 홍보물(이미지, 문구 모두 포함)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포털사이트 및 인터넷 매체의 강력한 규제가 반드시 함께 실시되어야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유입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관련 정책 등 학교폭력 모든 문제의 예방은 가정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함.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바른 가정을 위한 교육이 필요할 거 같음. 자녀출생 시점에서 부모교육이 필요함.
- 성매매 유입 청소년들은 대부분 가정과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가정과 분리되어 지낼만한 그룹홈이나 쉼터가 많이 부족한 듯하며 우울증을 앓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더욱더 입소할 만한 곳이 턱없이 부족함을 느끼며 학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안학교가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과 아울러 대안학교의 입학허가 절차가 좀 간소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임.
- 성매매 관련된 사항으로 가해자에 대한 법규정 및 사회적인 규제가 너무 약하다는 생각이 듦. 매수자 및 관계된 사람들에 대한 법규정을 더욱더 강화했으면 좋겠음. 그리고 사회전반에 걸친 성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함. 직장 및 가정에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사항으로 여겨짐.
- 성매매에 대한 정책은 무엇보다 고위관리들의 처벌의 확실성이 중요함. TV, 인터넷 등에서 보도는 크게 해놓고는 그들의 처벌에 대해서는 미미한 현실을 볼 때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만 처벌받고, 재수 없어서 걸렸다는 인식을 떨칠 수가 없음.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분명한

범죄행위이고 성을 상품화하는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을 상품화하는 그 어떠한 것도 처벌받는다라는 확실성이 보장되어야 할듯함.

- 성매매피해청소년의 경우 다른 위기청소년들과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움. 성매매청소년들만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좀 더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램임.
- 아동,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시기는 계속 저연령화 되고 있으나 대책이나 예방교육 조차 거의 없는 실정임. 따라서 현 실태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이에 따른 피해지원은 물론이고 전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기 성교육에서 성매매와 인권 부분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실시되어야하며, 현장 전문가들에 대한 양성과정과 처우개선이 함께 실시 되어야함.
- 아동, 청소년의 성매매가 스마트폰의 발달로 점점 더 확산되고 있지만 성매매라는 단어가 주는 불편함으로 예방교육조차 어려운 현실 앞에서 정책이 개선된다고 국민의 인식이 바뀌어질지 의문임.
- 어떤 법률이든지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일을 해보니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됨. 허황된 지원보다는 피해자가 직접 도움을 받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여성인권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나 유럽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창제도의 부활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주춧까까지 퍼져있는 성매매를 일정한 장소로 하여 성적욕구분출하게 하고 국가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일반인에 대한 성범죄피해를 줄이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봄.
- 요즘 청소년들의 특징으로 제도권 밖에서 마음대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써 시설에 입소하여 최소한의 규칙도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러한 특징으로 2013년 시설 입소율이 현저하게 낮아 운영에도 상당한 애로사항으로 또 다른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듯함.
- 의제강간에 대한 연령상향조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함. 현재 연령은 13세 미만으로 중학생 부터는 적용을 받지 못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생의 판단력이 그리 다르지 않으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성관계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에는 미성숙하기 때문에 의제강간에 대한 연령상향조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됨.

-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 등에 성관련 유해영상들이 너무 많이, 손쉽게 노출됨. 국가차원에서 유해영상 차단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되리라 생각됨.
- 요즘은 인터넷이나 보도방송 보다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더 손쉽게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함. 성매매피해 청소년도 치료와 보호가 필요하지만 성매매에 유입되지 않은 일반 가출청소년 들도 안전한 보호가 필요한데 현재 성매매 피해자 청소년이 보호될 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않다 보니 일반청소년쉼터에서 보호되는 경우가 많음. 충분한 치료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청소년쉼터에서 함께 생활하게 될 경우 기존 쉼터의 인력으로는 다른 문제가 있는 아이들과의 분리개입이 어렵고 오히려 성매매경험이 없는 아이들까지도 유입될 위험이 있음.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이 보호될 수 있는 시설이 성폭력피해자 시설처럼 지역마다 필요함.
- 초등학교 때부터 성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의무화 강화 - 학부모 및 교사 성교육 강화 - 교대, 사범대에서 교과목에 넣어 전 선생님들의 인성교육 및 올바른 성가치관 교육을 시켜 청소년들이 질문해 올 때 자연스럽게 답해줄 수 있도록 함.

6) 요약 및 시사점

지금까지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현장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알아보기 위해 성매매상담소, 성매매 피해여성 그룹홈, 성매매피해여성 시설 등의 성매매 관련 기관 및 시설 종사자와 청소년 성문화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관련시설 및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장종사자 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제 설문결과를 요약하면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위한 시사점을 몇 가지로 정리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회의 책임에 대한 현장전문가들의 생각은 그 상대적 중요도에 있어서 재원조달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이 첫 번째로 꼽혔다. 그 다음이 모든 국민의 아동청소년 보호, 선도, 교육을 위한 노력, 모든 국민의 사회환경 정비노력의 순이었다. 다시 말해 정책의 집행능력과 그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라고 본다. 현장에서는 적절한 피해자 지원과 유입예방 방안을 강구하고 싶어도 재정적 지원이 없이는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단계로 끝나버릴 위험이 상당히 높다. 정책의 중요성에 있어 아동청소년 보호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장에서는 재정적 어려움(예를 들어 기관운영비와 종사자 임금 등)을 호소하고 있는 바, 지속적이고 충분한 재원조달이 선결조건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성매매기관 및 청소년보호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활동들을 열거한 후 실효성의 측면에서 평가를 하도록 요청한 결과,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평가된 활동은 피해자지원 중에서 상담 및 심리치료, 법률지원, 의료지원 등인데 반해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 활동은 성매수자 재범방지 교육, 피해자 조기발견 체계구축, 피해자 학업서비스, 피해자직업교육 등이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성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서비스, 단기적 서비스는 비교적 잘 제공되고 있으나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예방과 피해자지원, 그리고 성매수자 처벌과 교육은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장기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조급한 평가일 가능성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즉각적인 개입은 열심히 하면서 다른 필요한 활동은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으므로 정책과 활동의 점검과 개선이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셋째, 성매매유입대책과 관련한 활동가들의 의견에서 성매매피해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특성들이 나타났다. 우선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경험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데 현장활동가의 약 68%가 동의하고 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경험을 가진 아동청소년들은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가출청소년들보다 훨씬 자존감이 낮고 치료도 오래 걸리며 가족 등 사회복귀를 위한 지지체계가 더 열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과 근친 성폭력 등에 대한 진단과 정책이 같이 이루어져서 성매매로 아동청소년들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입체적이고 병렬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명확해 보인다. 부모교육과 상담, 예비부부교육 등을 통한 장기적 정책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할 수 있겠다.

넷째, 가출 후 생존을 위해 학교를 그만두고 성매매로 유입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라고 할 수 있지만, 가출을 하지 않고 가정에 머무르고 학교생활을 하면서 친구나 선배의 강요에 의해 성매매를 하게 되는 유형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시 말해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서의 성매매가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또래 압력이나 강요, 그리고 학교선배들의 강요 등에 의해 원하지 않는 성매매를 하게 되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폭로를 미끼로 피해자를 엮어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은 학교현장에서 보다 세밀한 관찰과 관심이 필요한 영역이 되어야 한다. 학교전문상담사나 학교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에 의한 학교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상담과 치료가 즉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와 가해의 고리가 악순환 될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성매매로 이르는 경로 및 수단을 보면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한 조건만남이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인터넷이 주요 매개수단이었을 때에는 피시방이 가출 청소년들의 밀집장소로 인기가 있었고 피시방 단속 등 공간적 통제를 통해 성매매 유입을 막아보고자 했다면, 개별화된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폰 시대에는 이러한 공간적 대책의 유용성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현장종사자들이 언급한 최근 성매매의 변화된 특성을 보면 성매매 청소년의 저연령화와 죄의식의 약화, 성매매의 조직화 경향, 가출팸과 또래포주의 등장으로 요약된다. 현장종사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러한 성매매 경향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 현상들에 대한 대책은 매우 지체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저연령화와 죄의식의 약화 등은 성교육과 젠더교육 등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가출팸과 또래포주의 등장과 관련해서는 성매매의 불법성과 부도덕성을 인식시키는 작업과 함께 가출청소년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일곱째, 최근에 오피스텔과 원룸에 가출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보증금 없는 월세제도는 큰 목돈 없이, 하루하루 성매매 등을 통해 돈을 벌어 살아가기에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하철역이나 길거리 아웃리치(outreach)만이 아니라 가출청소년들이 모여 있을만한 원룸이나 오피스텔도 아웃리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동시에 사이버 아웃리치도 병행하여야 함을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다.

여덟째, 성매매수자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서는 거의 모든 응답자들이 성매매수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교육강화와 지속적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전자발찌나 화학적 거세 등의 방안에 대해서는 그 효과성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는 반응이

더 많았고, 이러한 기술적인 대처방안보다는 왜곡된 성문화 개선과 성매매도 성폭력으로 인정하는 인식변화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었다.

3. 면접조사 결과분석

1)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 관련 질문

(1) 처음 성매매를 하게 된 이유

처음 성매매를 하게 된 이유의 경우 생계비 차원의 경제적인 이유 측면에서 가출 후 생활비와 유흥비 마련이라는 응답은 22사례가 응답하여 가장 많았다.

사례14 “친구와 가출을 했거든요 가출 후 며칠 지나니까 생활비가 없어서 생활비가 필요해서 처음 하게 되었어요”

사례15 “돈이 너무 필요해서 알바를 해도 얼마 안 되고 애들하고 노는 돈이 필요하기도 하고 알바를 구하고 싶었지만 알바비용이 너무 적었어요. 주로 전단지 붙이는 일이 전부여서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됐어요.”

사례31 “가출하고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해서 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 순으로 가출하거나 성매매를 이미 하고 있었던 주변 친구나 선배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응답은 8사례 응답하였으며,

사례10 “제가 가출을 했는데 함께 지내는 친구가 하는 것을 보고 하게 됐어요. 돈도 나오고 해서...”

사례18 “친구들에게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돈이 필요해서 하게 됐어요.

사례20 “성매매 하던 친구가 무섭다고 같이하자고 해서 하게 됐어요.”

사고 싶은 물건이나 옷 구입에 필요하거나 유희비로 쓸 용돈이 부족해서 시작했다는 응답은 4사례 응답하였으며,

사례4 “돈 때문예요. 놀고 그러는데 돈이 필요해서요. 가출이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돈이 필요해서요.”

사례13 “엄마가 돈을 너무 안 줘서요. 사고 싶은 옷 등은 많은데 엄마가 용돈을 주지 않아서 가출은 안했어요.”

가정형편에 의한 생활비 마련이라는 응답은 4사례 응답하였다.

사례9 “집안 사정으로 나와 있다가 혼자 생활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돈이 없어서”

사례12 “집에서 가정이 어려워져요. 가정이 어려워 친구들이 하는 것을 보고 하게 되었어요. 친구도 용돈 때문에 했거든요”

그 밖에 외부적인 요인으로 보도방 사장에 의한 꼬임이라는 응답이 1사례가 있어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업소들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규제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사례22 “보도방 사장에 의한 꼬임에 넘어가서 하게 되었어요.”

(ㄱ) 처음 성매매 경험 연령

처음 성매매를 경험한 연령에 대한 응답으로 17세가 11사례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 순으로 15세가 10사례로 나타났으며, 16세는 8사례로 나타났으며, 18세는 6사례로 나타났으며, 14세는 4사례로, 19세는 사례35로 1사례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15세 부터 17세 사이에서 청소년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ㄴ) 성매매 방법

성매매를 하게 된 방법의 경우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한 조건만남이라는 응답이 23사례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례2 “그냥 인터넷에 랜덤채팅이라고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그냥 심심해서 의도했던 건 아니고 심심해서 들어가 본건데 만나자고 해서...”

사례3 “친구랑 중3때 가출해서 친구들과 문의해서 즐톡이라는 어플을 가르쳐 주었는데 전에는 성관계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었는데 거기에서 아무나 만나서 친구랑 가출 중인데 밥 먹게 3만원만 주시면 안 되냐고 하면 사람들이 밥을 사준다고 그 어플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하게 되었어요.”

사례12 “친구들이 다 어렵다가 보니까 저도 어렵고 해서 다 같이 알아보고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어 친구들이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알려 줬어요. 그래서 다 같이 하게 됐어요.”

사례37 “인터넷에서 만난 친구가 가출 후 생활비가 필요한 저에게 관계를 갖고 돈을 줬어요.”

그 다음 순으로 친구나 선배의 권유에 의해 시작했다는 응답은 16사례로 나타났으며,

사례1 “같이 사는 친한 친구가 있었던 말이에요. 이 친구가 하는 것을 보고 알바도 어렵고 거절당하고 해서 돈은 필요하고 할 때 친구의 소개로 하게 됐어요.”

사례4 “알고 지내던 언니의 소개로요 언니가 먼저 할래 하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하게 됐어요.”

사례11 “아는 오빠들이랑 친구들이랑 술 먹다 일이 벌어 저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냥 하게 돼 가지고...”

그 밖에 가출 후 만난 남자를 따라갔다가 성매매를 하게 된 경우도 1사례가 있었다.

사례38 “성인 남자 3명이 술을 사준다고 이야기해서 따라 갔어요 술을 사준다는 말만 믿어서 갔는데 관계를 하고 돈을 주고 갔어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어플 등을 이용한 채팅과 친구 소개가 주된 방법으로 거론되었다.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어플에 대한 철저한 운영관리 및 감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ㄷ) 자의성 여부 및 이유

자의에 의한 사례는 29사례로 나타나 자의에 의한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타의에 의한 사례는 11사례로 나타났다.

자의로 하게 된 이유의 경우 생활비나 용돈 등이 필요해서 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15사례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례2 “심심해서 채팅하다가 우연히...”

사례3 “생활비 때문에 친구들과 상의하다가 어플을 이용해서 하게 됐어요.”

사례6 “스스로 인터넷을 검색해서...”

사례10 “생활비가 부족해서요.”

사례14 “가출을 해서 생활비가 필요했고 옷도 사 입고 싶었어요.”

사례24 “집에 있기 싫었고, 갖고 싶은 게 많아서...”

사례25 “가출 후에 생활비와 놀 수 있는 유흥비 벌려구요.”

사례31 “돈이 너무 필요해서 했어요.”

사례37 “가출 후에 생활비 때문에”

그 다음 순으로 친구의 권유에 의해 하게 되었다는 응답은 6사례로 나타났으며,

사례4 “아는 언니가 제안하기도 했는데 제가 결정했어요.”

사례15 “친구가 자세히 알려 줘서 하게 됐어요.”

사례34 “친구 혼자 하는 것이 보니까 불쌍해서 같이...”

쉽게 돈을 벌 수 있어서는 2사례로 나타났다.

사례1 “친구가 알려주었는데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어요.”

사례20 “친구가 권하기는 했으나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해봤어요.”

그 외 가출 후 성폭력을 당하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하게 된 경우도 1사례 있었다.

사례11 “가출 후 아는 오빠들과 술 먹다가 성폭력을 당하고 자포자기 심정과 생활비 부족으로 하게 됐어요.”

타의로 하게 된 이유의 경우 친구나 선배의 협박으로 생활비나 용돈 마련이라는 응답은 9사례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례16 “강요는 아니고 그냥 하자고 했는데 나는 그냥 나가려고 했는데 무섭기도 하고 돈도 필요하다보니 거절하지 못했어요.”

사례21 “생활비가 필요했고 지인의 강압에 의해서...”

사례22 “아는 사람을 통해 조건 만남을 하게 되었는데 아는 사람의 요구도 있었고 돈도 벌 수 있어서..”

사례23 “무서워서 아는 사람이 무서워서 거절 할 수가 없었어요.”

사례27 “세이클럽에 친구들이 같이 하게 되었는데 저만 빠지면 혼자가 될까봐.”

사례29 “타의지만 돈이 필요해서...”

사례35 “친구들이 때리고 욕하고 소문냈어요. 무서워서 했어요.”

사례39 “쫓겨날까봐”

사례40 “때리고 협박해서...”

그 밖에 가출 후 술을 사준다는 말을 믿고 따라갔다가 성매매를 하게 된 경우는 1사례 있었다.

사례38 “술을 사준다는 말만 믿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유혹이 자의의 가장 큰 이유로, 성폭력 후 자포자기 등 (사전) 성폭력예의 노출이 타의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성폭력 단속 강화가 타의에 의한 성폭력 노출의 예방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자의적인 성매매의 경우는 아르바이트 기회 등을 경제적 생계 보조 방법에 대한 사회 전반의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성매매를 하는 동안 겪었던 어려움

성매매를 하는 동안 겪었던 어려움에 대한 응답으로는 임신이나 성병에 대한 두려움과 자책이 28사례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례2 “어려서 모텔에 들어갈 생각을 못하고 차에서 했어요. 돈을 받아야 하는데 안 주고 된다가나 이런 일이 많았죠. 돈이 필요한데 질에 염증 생긴 것 병에 대해서는... 하면서도 몸이 안 좋거나 돈이 좀 모이거나 하며는 안 하다가 내가 좀 어려우면 또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다 어플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소문이 나요 그러다보니 욕을 먹죠 내가 왜 이러나 생각도 하고...”

사례4 “몸이 아파요.”

사례5 “성병 그런 거랑 밑에 곰팡이 뭐 그런 거 생길 수 있다고 해서 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센터 있을 때 병원에 가봐야 한다고 해서 센터 소개로 산부인과에 다닌 경험이 있는데 조심해야 한냈어요.”

사례6 “활동하면서 아플 수도 있고 무서운 사람 만날까봐 걱정 했거든요, 병에 걸릴까봐, 임신할까봐 걱정이 됐었어요.”

사례10 “제 생각에는 그래도 내 몸인데 제대로 못 간수 하고 그런 게 좀 미안하고... 함부로 한 것에 대해 미안하고...”

사례13 “처음 할 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냥 한 번도 안 해본 걸 하니까 어른들이 하는 거잖아요. 어른들이 하는 걸 나이 어린 데 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있었어요. 성병도 무서웠어요.”

사례19 “임신할까봐, 부모님이 아시게 될까봐서 두려웠어요.”

사례24 “성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두려움도 있고요,
더럽혀졌으니깐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

사례37 “정신적으로나 신체로나 망가져 가는 게 느껴졌어요.”

사례40 “임신, 성병,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좌절감 같은 거...”

그 다음 순으로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9사례로 나타났으며,

사례3 “보통2시간에 10만원인데 15만원 준다고 했던 사람에게 기계사용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고 동영상을 촬영당하고 폭력을 당한일이 있어 사람을 만날 때 두려웠어요.

사례14 “무서운 사람을 만나 칼부림을 당해 본 적이 있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어요”

다른 사람(부모님 또는 친구)들이 알게 될 것 같은 두려움의 경우 5사례로 나타났으며,

사례12 “처음에 그냥 처음이니까 무서운 게 없었고요. 하면서 보니까 병 같은 것도 걱정
되고 부모님이 아실까봐 그런 게 걱정이 되죠.

사례17 “임신 뭐 그런 두려움이 있고 그런 일을 하면 남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사례36 “임신, 소문이나 그런 것 상대방이 나쁜 것 할까봐...”

생활비나 용돈 때문에 성매매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는 4사례로 나타났다.

사례27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만 둘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것이 두려워요.”

사례30 “계속 하다가 못 그만 둘까봐”

그 밖의 응답으로는

사례15 “나이를 속였다가 상대 남자한테 나이 속인 것을 걸렸을 때 신고할까봐 걱정
되었는데...”

질병, 임신 불안, 두려움, 정신적 고통, 대인 기피증세, 자살 충동 등이 성매매 청소년들이 겪는 증상으로 보인다.

(3) 성매매를 중단하지 못한 이유

성매매를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하게 된 이유로는 생활비와 용돈이 없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중독성 때문에 그만두지 못했다는 응답이 17사례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례14 “하고 있어요. 그만두고 싶은데 돈이 구할 수가 없어서 생각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요. 가출 중이라 알바 하기위해 부모 동의도 얻을 수가 없고 방법이 없어요.”

사례17 “하고 있는데 가출 중이라 어쩔 수 없고 돈이 필요해 그만 둘 수 없으니까. 아직 나이가 안 되서 일을 못하니까 그만둘 생각은 아직 못해 봤어요.”

사례27 “하고 있어요. 성매매를 통해 돈을 쉽게 벌 수 있어서 했는데. 지금은 무서운 사람에게 붙잡혀서 하기 싫어도 해야... 도망치다 붙잡혀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사례37 “가출 후 지낼 곳, 돈도 없었기 때문에”

사례39 “같이 사는 친구에게 벌어들이지 않으면 쫓겨 날까봐 계속 했었어요”

그 다음 순으로 협박이 무서워서가 2사례로 나타났으며,

사례35 “무서워서”

사례38 “남자친구가 이상한 사람 이었어요.”

경제적인 이유와 외부 강제가 계속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 신고 체계와 보호 체계에 대한 검토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ㄱ) 성매매 중단 노력

성매매를 그만 두기 위하여 스스로 결심한 경우는 9사례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 사례1 “남자친구가 생겨서요.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안 하기로 생각 했어요.”
- 사례3 “두 달 전 성병에 걸려 산부인과에서 수술 및 치료를 하게 되면서 결심했어요.”
- 사례7 “그냥 노력 같은 거 안하고 그냥 하기가 싫었어요. 하기도 싫고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 사례11 “친구가 그런 거 하다가 성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걸 보니 무서웠어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서로 하지 말자고 하고 그랬어요.”
- 사례24 “돈을 적게 써보려 했었는데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 사례30 “가출 했다가 집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안할 줄 알았는데 실패했어요.”

그 다음 순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어플 또는 친구들을 스스로 차단했다는 응답은 6사례로 나타났다.

- 사례8 “인터넷을 차단시키고 하니깐 인터넷을 안 하게 되니까 안하게 됐어요.”
- 사례10 “같이 하던 친구와 헤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중단하게 되었어요.”
- 사례13 “강요하는 애들 안 만나려고 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고 했어요. 메이크업 하는 것 좋아해서 혼자 연습하고 그랬어요.”
- 사례15 “그냥 휴대폰을 안 만지고 친구가 하더라도 거절하고 그랬어요. 돈이 일단 급하니까 거절이 쉽지 않은 거 같아요. 알바 자리를 개방해서 청소년도 할 수 있게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애들은 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 사례29 “스마트폰 어플을 삭제하고 연락 오는 사람들은 모두 차단하고 했어요.”

정상적인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았다는 응답은 4사례가 나타났으며,

- 사례2 “정상적인 알바를 구하려고 노력해요.”
- 사례5 “산부인과 질병이 겹나서 일자리 알아보고 있어요.”
- 사례33 “알바를 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어리다고 안 시켜줘요”

가족이나 주변 친구들과의 상담을 해보았다는 응답은 4사례로 나타났다.

사례16 “가출했는데 아빠가 찾아와 집으로 가자고 권유해 집에 들어오면서 그만 두었어요.”

사례35 “아빠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컴퓨터에 들어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사례39 “컴퓨터에 있는 친구에 도움을 받아 시설에 입소하게 되었어요.”

그 밖의 응답으로는 도망쳤다는 응답이 1사례 있었다.

사례27 “성매매를 시키는 사람들에게서 도망쳤어요.”

인터넷 차단, 다른 일자리 알아보기, 소비 충동 억제 등의 자발적 노력과 아울러, 짝막하지만 강한 “도망쳤다”라는 언급을 사회적인 경종을 울릴 언급이다. 아직도 이런 사회적인 강요에 의한 성매매가 청소년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사회 안전 담당 기관들의 뼈아픈 자성이 필요하다. 21세기판 올리버 트위스트가 대한민국에 존재한다.

(ㄴ) 성매매 중단 실패 이유

실패한 이유로 경제적인 이유와 함께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중독성 때문이라는 응답은 13사례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례5 “그만두려고 알바도해보고 했는데 어렵고 이게 제일 쉬운 일 같아서...”

사례12 “아르바이트는 일을 힘들게 하고 돈을 버는데 이걸 그냥 한 번 그냥 하고 돈을 버니까 또 하게 되요.”

사례22 “이미 나 때문에 소개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 큰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고 무섭기도 해서 도망을 가려고 했지만 날 찾아 낼 거라고 협박해서...”

사례24 “지출에 대해 이미 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고, 밖에 있어서 많이 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돈을 계속 많이 쓰다 보니 조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례25 “돈이 없으면 살지 못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져야 하는데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져야하다 보니깐 실패하게 되었죠.”

그 다음으로 청소년으로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서는 응답도 3사례로 나타났다.

사례2 “알바나 직업을 제대로 된 것을 구한다던지 막 말로 요즘 학교 때려 치우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애들이 알바 자리가 없으면 다들 이상한 데로 갈 수 밖에 없잖아요 돈은 필요하고...”

사례14 “알바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구하려면 뭐지 부모님 동의서 이런 게 필요한데...”

사례18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해보려고 했는데 나이가 어리니깐 할 수 없다고 해서 할 수 없이 그쪽으로 간 거죠.”

경제적인 이유와 청소년 일자리 부족, 구직기회의 부족 등 외부강제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ㄷ) 성매매 중단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성매매를 중단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정상적인 일자리나 시설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은 9사례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례2 “하면서든 정상적인 일을 하면서 이런 일은 그쪽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하는 거니까... 청소년이 할 수 있는 거는 제대로 된 직장이 아니라 알바잖아요. 그런 거라도 많이 할 수 있고 커트라인 좀 낮추어 할 수 있으면 알바 하면 좋죠.”

사례9 “서빙 같은 거 하면서 생각도 좀 정리하고 서서히 일자리 알아보고...”

사례15 “알바자리를 좀 개방했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도 할 수 있게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고 돈이 적어도 자리만 있으면...”

사례21 “쉽터 입소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 다음 순으로 자아존중감과 바른 생각을 키워야 한다는 응답은 8사례로 나타났으며,

사례1 “남자 친구한테도 미안하고 할머니랑 사는데 할머니한테도 미안하고 해서 생각을 바꾸었어요. 주변에서 말도 많이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게 좋아서 하는 애들은

없단 말이에요 다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너무 안 좋게만 보지 말고 위로도 해주고 말도 많이 해주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사례3 “두 달 전에 그걸 하다가 밑에 종기 같은 것이 나서 산부인과 가서 수술까지 받았거든요 원래 이런 것이 잘 씻지 않는다거나 성관계를 하거나 해서 생기는 거라고 해요. 주변에서 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이런 경험을 하거나 보면 많이 안하려고 하는데 이런 거 하는 애들이 대부분 다 형편이 안 좋거든요 돈은 필요하고 그래서 그만두기 어려운데 저처럼 이런 이야기 들으면 안하려고 하죠.”

사례13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좋아 하던 메이크업 배우는 일에 집중했어요.”

사례38 “저녁시간 외출을 자제하는 것. 남자랑 둘이 있는거 피하고...”

가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3사례로 나타났으며,

사례16 “가출을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사례31 “가출은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례33 “집에 들어가거나 아예 가출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경찰에 신고나 주위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응답은 3사례로 나타났으며,

사례23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례25 “주위에 도와 달라고...”

사례35 “아빠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어플 및 친구 차단이라는 응답은 2사례로 나타났으며,

사례19 “친구를 만나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사례26 “인터넷을 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 밖에 응답으로는

사례11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없는 것 같아요. 하지 말라고 해도 돈이 필요하니 하게 되요.”

사례17 “아직 나이가 안 되서 일을 못하니까 나이가 어려서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돈은 필요하니 할 수 밖에 없어요.”

사례22 “중단하긴 어렵고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했어요.”

대부분 알고 있지만 실천이 어려운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ㄹ) 성매매 중단을 위한 외부 도움(복수응답으로 분류)

성매매 중단을 위한 외부의 도움에 대한 응답으로는 지속적인 상담 및 병원치료라는 응답이 8사례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례1 “좋아서 하는 애들은 없단 말이에요 다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너무 안 좋게만 보지 말고 위로도 해주고 말도 많이 해주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사례9 “저도 그런 일을 했었고 주위에서 아는 사람들은 저한테 너 그러지 말라고 많이 했었고 많이 얘기 했지만 안 되는 줄 아니까 현실적으로 딱히 해줄 것이 없어요. 그 마음도 알고 그냥 같이 걱정하고 경험했었다 한 번 시작 하면 어렵다고 이야기 하는 것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례12 “그냥 상담 같은걸 많이 하고 애들이 그런 걸 하는 것이 가정 형편 때문이니까. 그냥 자기 의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쉽게 할 수 있는 알바가 많았으면 좋겠죠.”

사례14 “그냥 돈을 좀 주거나 심리적인 안정감을 줘야 할 것 같아요.”

사례26 “상담을 해주고 말을 들어주고 병원치료도 해주고.”

가족이나 주변의 관심이라는 응답이 8사례로 나타났으며,

사례5 “친구들이 계속 하지 말랬어요.”

사례13 “같이 배우자고해야 할 것 같아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었으면 될 것 같아요.”

사례16 “집에서 신경 써서 가출을 안 하게끔 하면 될 것 같아요.”

사례18 “음 가정에 있다하면 외출 금지하면 되지 않을까...”

사례19 “주변 사람들이 가족이 관심 가져 주고 이런 일 못하게 관심 가져 주고 친구들은 계속 설득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사례25 “성매매의 위험성을 정확히 제대로 알려주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할 것 같아요.”

사례29 “엄마가 한 달에 한 번은 산부인과에 데리고 가면 설명도 듣고 하니까 못 할 것 같아요”

경제적인 지원이라는 응답도 7사례로 나타났다.

사례21 “생활비, 목을 곳, 일자리 이런 것이 없는데...”

사례3 “가정 형편 어려운 애들은 엄마 아빠를 되게 그리워하거든요. 제 주변의 이런 일하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이혼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엄마 아빠가 좀 챙겨주고 관심 갖고 생활할 수 있게 해주면 안 할 아이들이 많거든요.”

사례17 “빌리는 것 말고 그냥 돈을 빌려주지 말고 그냥 제게 투자를 좀 해 주면 좋겠어요. 공부 손 떴지는 오래 돼갔고요. 하하하 다른 쪽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쉼터의 확대라는 응답은 4사례로 나타났으며,

사례36 “쉼터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사례37 “이런 기관 쉼터, 그런 것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법으로는 안되거든요. 뒤에서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다 할 것 같아요.”

사례38 “쉼터의 도움이 필요하죠.”

사례39 “이런 쉼터가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많이 알게 했으면 좋겠어요.”

경찰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4사례로 나타났다.

사례22 “조금의 관심으로 경찰에 신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사례31 “우리를 상대하려는 그 사람들을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밖에 건전한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사례로 나타났으며,

사례2 “청소년이 할 수 있는 거는 제대로 된 직장이 아니라 알바잖아요 그런 거라도 많이 할 수 있고 커트라인 좀 낮추어 할 수 있으면 알바 하면 좋죠.”

사례15 “그냥 알바자리를 개방 했으면 좋겠어요. 돈이 적어도 차라리 그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 밖의 응답으로는 외부의 도움 보다는 본인 스스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1사례 나타났다.

사례27 “중단은 스스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외부에서 아무리 도움을 줘도 본인의 생각이 없다면 해결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경험담 전과, 가정 내에서의 교육과 관심이 일차적이고, 가출 청소년들에 대한 생계형 아르바이트 기회 제공과 가정으로의 복귀 기회 제공, 성매매 사실에 대한 주변의 인지 시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신고대행 제도 등이 외부 도움으로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4) 성매매를 하게 되는 주된 방법

성매매를 하게 되는 주된 방법으로 인터넷 채팅사이트, 메신저와 스마트폰 어플이라는 응답이 26사례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례1 “지금은 폐쇄된 버디버디라는 인터넷 메신저로 했어요.”

사례2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요. 가출팸을 통해 하는 친구도 있긴 있어요.”

사례3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서요. 심심풀이라는 어플이었어요.”

그 다음 순으로 친구나 주변지인을 통해서라는 응답이 13사례로 나타났다.

사례4 “아는 사람의 연결로 직접 만남”

사례10 “친구소개나 길가다가 취객의 접근으로요. 인터넷 사이트도 있어요.”

사례11 “아는 오빠들과 어울려서, 조건 만남을 통해서...”

사례19 “처음엔 친구 소개로 시작했고요 그 후에는 인터넷으로 찾았어요.”

사례23 “스팸메일, 동네 애들”

그 밖에 늦은 시간에 방황하다가 접하게 되었다는 응답도 1사례 있었다.

사례38 “늦은 시간에 방황하다가 갈 곳이 없어서...”

인터넷과 친구가 주된 방법으로 지적되고 있다.

(5) 성매매 경험업소

성매매를 경험한 업소에 대한 응답은 노래방 도우미와 보도방이 2사례로 나타났으며,

사례23 “노래방 도우미를 하기 시작해서...”

사례22 “보도방, 노래방도우미”

모텔이라는 응답이 1사례로 나타났으며,

사례35 “모텔이요”

업소 외에 성매수자의 집이라는 응답이 3사례로 나타났다.

사례37 “상대의 집에서요 ”

사례38 “소개해준 남자친구의 집에서...”

보도방, 노래방 등의 채널이 주로 언급되고 있다. 무응답이 많은데 그 경우는 업소와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성매매 경험이 있는 아이들로 보인다.

(6) 성매매를 위한 만남의 장소

성매매를 위한 만남의 장소로 주로 이용하는 곳으로는 지하철역이라는 응답이 11사례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례8 “지하철 역...”

사례17 “상대방이 있는 곳을 알아보고 중간 지점의 지하철 만남의 장소나 카페에서 만나요.”

사례18 “친구가 같이 있고 서로 연락하다가 제가 있는 곳의 지하철역이나 주변 상가 이런 곳에서 만나서 가자는 곳으로 가요.”

사례23 “답십리역근처에서 주로 만나요.”

사례24 “지하철역이요 주로 중계역근처에서...”

사례25 “연신내역, 구산역, 화정역, 정발산역이런 역 주변에서...”

사례40 “지하철 역 부근, pc방에서 만나서 다른 장소로 가요.”

그 다음 순으로 집주변이 9사례로 나타났으며,

사례1 “저는 집에서 밖에 안 만났어요.”

사례2 “음 거의 모텔 아니면 그때그때 달라서 저는 거의 제 집 주변에서 만나요.”

사례3 “집 근처나 제가 있는 근처요 그냥 제가 만약에 있는 동네에 있으면 그쪽으로 오라고해서 주변 모텔이나 여관으로 가는 거예요.”

사례16 “주로 저희를 데리러 오거나 집 주변 안 보이는 쪽으로 태우러 와요.”

모텔 근처라는 응답은 7사례로 나타났으며,

사례6 “저희 집 근처요 모텔을 정하고 모텔 주변으로 오라고 해요.”

사례7 “모텔로 오라고 해요...”

사례19 “모텔 앞으로 오라고 하거나 주변의 슈퍼 앞으로 오라 해요.”

부르면 오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6사례로 나타났으며,

사례4 “차गत고 왔어요. 다 다른데.. 거의 오라는 데로 왔어요.”

사례5 “모텔이죠. 우리가 어디로 오라고 하면 데리러 와요.”

사례20 “그냥 때때별로 다른데 카페 같은 데는 안가고 슈퍼 앞이나 이렇게 눈에 띄는데... 일정하지 않아요.”

번화가 주변이 2사례,

사례10 “그냥 번화가 이런데서 만나고 이야기하다 가는 것 같아요. 모텔로...”

사례22 “대전, 롯데백화점 쪽에서 주로 만나요”

성매수자의 집이 2사례로 나타났으며,

사례37 “상대방의 집이요”

사례39 “대구, 아양교 근처 오거리 상대방의 원룸에서...”

그 밖에 주로 이용하는 PC방 근처와 공원이라는 사례가 각각 1사례씩 나타났다.

사례9 “이젠 PC방에서 채팅하고 그러니까 주로 이용하는 PC방 근처에서 만나서 다른 곳으로 가요.”

사례28 “공원이나 이런 곳에서 만나고 다른 곳으로 가요”

대부분 성매매 요구자들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도심 주변 지하철역, 카페, PC방 등에서는 상시 단속이 요구된다.

(7) 성매매가 이루어진 장소

성매매가 이루어진 장소로는 모텔이 34사례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례9 “PC방 근처에서 만나서 다른 곳으로 가요. 모텔이나 그런 곳으로...”

사례10 “룸카페 같은 데는 한 번씩 그냥 갈 때가 있는데 주로 모텔에 가요.”

사례11 “그냥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친구들이랑 만나서 술 먹고 모텔이나 친구 집으로 가요.”

그 다음 순으로 성 매수자의 집이 8사례로 나타났으며,

사례17 “노래방이나 클럽에 갔다가 상대방 집에서”

사례37 “상대의 집 ”

사례38 “소개해준 남자친구의 집에 가서”

자동차가 5사례로 나타났으며,

사례2 “초반에는 자동차에서 하다가 후반에는 모텔에서 하고...”

사례21 “모텔이나 자동차, 상대방의 집 그런데...”

룸카페가 3사례로 나타났다.

사례13 “룸카페 같은 데나 모텔 시내의 만남의 장소 같은 데서 만나서 가요.”

그 밖의 응답은 우리 집, 친구의 집, 인적 드문 계단으로 각 1사례씩 나타났다.

사례1 “저는 집에서 밖에 안 만났어요.”

사례24 “모텔, 자동차, 남자집이나 룸카페 계단 같은 곳 다 다른데요.”

주로 숙박업소와 성매수자 집, 자동차 등이 거론되고 있다.

(8) 가출경험

사례04, 사례15를 제외한 나머지 사례 모두에서 가출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가출한 후 주로 이용하는 장소 및 노는 장소

가출한 후 이용하는 장소에 대한 응답은 PC방이 17사례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례8 “찜질방이랑 친구 집이랑 그런데 PC방 그런데 가고 친구집이나 사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사례10 “그냥 카페 같은데 모텔 그런데 PC방도 갔어요.”

사례20 “길거리 PC방 이런데 가요 그냥 길에서 밤샘 하거나 친구 집에 가거나 먹는 건 거의 안 먹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 다음 순으로 노래방이 14사례로 나타났으며,

사례3 “같이 가출하는 친구들이 있어 노래방이나 변화가 주변 배회”

사례9 “대부분 PC방이나 노래방이고 먹고 자고는 여관 생활 했어요”

사례12 “그냥 노래방도가고 게임방에 갔어요. 잠 잘 때가 없으니까 24시간 하는 엔젤~ 같은 데 가고 길거리도 걸기도 하고”

길거리 배회는 11사례로 나타났으며,

사례14 “그냥 성매매에서 돈 받으니까 그냥 살만 해요 모텔에서 살고 그냥 심심하면 길거리 그냥 돌아 다녀요.”

사례16 “낮에는 돌아다니고 밤에는 친구 집에 가거나 거리를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돈을
옷 사는데 다 써버려 가지고...”

친구 집은 4사례로 나타났으며,

사례2 “친구집이나 PC방이었죠. 친구랑 같이 살았었어요.”

사례19 “친구집에 가거나 길거리 같은 데 돌아다니거나 그래요 일단 돈이 없으니까 최대한
돈을 안 쓰는데로...”

사례38 “pc방, 노래방, 친구집 그런데..”

카페는 3사례로 나타났다.

사례13 “그냥 24시간 카페나 친구들과 새벽에 나와서 길거리 다니기도 하고 친구 엄마가
밤에 일 나가시면 친구네 집에서 먹고 자고...”

그 밖의 응답으로는,

사례1 “엄마가 교회 집사님이라 교회 목사님께 부탁해서 교회에서 지내게 해 줬어요.”

사례39 “노래방이나 술집”

사례36 “당구장에서 시간 보내요”

PC방, 노래방, 길거리 배회(낮) 등이 주로 언급되고 있다.

(ㄴ) 숙식장소

숙식장소로 친구 집이 17사례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례8 “찜질방이랑 친구 집이랑 그런데 PC방 그런데 가고 친구집이나 사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사례20 “길거리 PC방이런데 가요 그냥 길에서 밤샘 하거나 친구 집에 가거나 먹는 건 거의 안 먹어요. 돈이 없으니까.”

사례26 “남자친구네집이나 친구네 집에 있어요.”

사례35 “아는 오빠의 집”

모텔이라는 응답은 16사례로 나타났으며, 찜질방이 7사례로 나타났으며,

사례3 “돈 없으면 거리에서 자고 술 마실 상대를 물색해 여관에 가기도 하죠.”

사례14 “그냥 성매매에서 돈 받으니까 그냥 살만 해요 모텔에서 살고 그냥 심심하면 길거리 그냥 돌아 다녀요.”

길거리 배회가 5사례로 나타났으며, 25시간 카페가 2사례로 나타났으며,

사례12 “25시간 카페나 친구들과 길거리를 돌아다녀요”

사례16 “친구 집이나 여의치 않으면 거리에서 밤을 새워요. 그렇게 번 돈은 옷이나 화장품을 사는데 써요.”

사례18 “길거리”

25시간 카페가 2사례로 나타났으며,

사례13 “그냥 24시간 카페나 친구들과 새벽에 나와서 길거리 다니기도 하고 친구 엄마가 밤에 일 나가시면 친구네 집에서 먹고 자고...”

사례10 “그냥 카페 같은 데 모텔 그런데 PC방도 갔어요.”

성매수자의 집이 2사례로 나타났으며,

사례17 “성매매해서 돈이 있으면 밥을 사먹고 잠은 상대방의 집에서 자고 그런 거죠.”

사례25 “모텔이나 헌팅하는 사람들의 집에서 잠을 자는 거죠.”

그 밖의 응답으로는

사례37 “공원벤치”

사례1 “교회”

사례21 “찜질방, 돈이 생기면 모텔이나 고시원이나...”

친구집, 여관, 찜질방, 모텔, 고시원, 카페, 성매수자의 집 등이 거론되고 있다. 여관, 25시간 카페, 모텔 등 숙박업소에 가출팸이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9) 가출이 성매매 경험에 미치는 영향

가출이 성매매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응답은 37사례가 대부분이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가출 후 생활비 마련 때문에 성매매를 하게 된다는 응답이 많았다. 가출은 성매매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사례5 “용돈의 부족으로 가출을 하게 되고 가출로 인해 생활비가 없어 성매매를 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사례7 “가출 경험이 성매매에 대한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사례10 “가출을 하면 돈이 없어 돈을 구해야 하는데 가장 쉽고 많이 버는 방법이 성매매예요.”

사례11 “가출하게 되면 생활비가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하게 되어요. 영향이 크다고 봐요.”

사례12 “가출하면 먹고 자는 생활비 마련 때문에 하게 되요.”

사례14 “바로 직결 된다고 생각해요. 가출을 하면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니까...”

사례37 “영향이 미친다고 생각해요. 가출하면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게 되고 또 몸을 가볍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했던 남자친구였다고 자기 합리화하는 경향도 있어요.”

(10) 가출팸과 생활한 경험

가출팸과 생활한 경험에 대한 응답은 있다가 10사례로 나타났다. 1/3 에서 절반정도는 가출팸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례17 “인터넷 사이트에서 모르는 가출한 사람들이 만나게 됐어요. 한 적으면 3~4명 많으면 6~7명이 생활 하고 찜질방 가거나 아니면 길에서 생활해요.”

사례18 “가출 팸은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로 중심으로 모여서 6명 정도 방을 얻어서 어른분이 계셔서 도와주고 그래서 생활 하게 됐는데...”

사례20 “인터넷으로 쳐서 모아서 같이 다녔는데 ~여자가 대부분 이고 남자가 2명 있었어요. 처음에는 방을 얻어서 있다가 돈이 없으니까 길거리에서 생활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ㄱ) 가출팸 구하는 방법

가출팸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응답으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어플을 통한 가출팸 모집은 9사례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변 친구들끼리 모여 지내는 경우는 3사례로 나타났다. 인터넷 카페와 친구가 주된 방법이다.

사례2 “인터넷에 있어요. 사이트가..”

사례14 “친구가 해본 경험이 있는데 어플을 통해 만났다고 들었어요.”

사례18 “가출 팸은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서 거기로 중심으로 모여서 6명 정도 방을 얻어서 어른분이 계셔서 도와주고 그래서 생활 하게 됐는데...”

(ㄴ) 가출팸의 구성

가출팸의 구성인원에 대한 응답으로는 3~7명 내외가 구성단위로 나타나고 있다.

사례19 “친구가 가출 팸에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때에 따라 다른데요. 10명 정도 같이 생활하게 됐어요. 남자가 2~3명 있었어요.”

사례17 “인터넷 사이트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생활 하는데 적으면 3~4명 많으면 6~7명 하며는 돈이 생기잖아요. 남자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찜질방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랑 길썸 해요”

사례9 “5~6명 정도 무리 지어 다녀요.”

사례20 “인터넷으로 쳐서 모아서 같이 다녔는데 여자가 대부분 이고 남자가 2명 있었어요. 처음에는 방을 얻어서 있다가 돈이 없으니까 길거리에서 생활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ㄷ) 가출팸 혼숙 여부

남녀 함께 생활했다는 응답은 6사례로 나타났다. 상당수가 대체로 남녀 함께 생활을 거론하고 있다.

사례17 “인터넷 사이트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생활 하는데 적으면 3~4명 많으면 6~7명 하며는 돈이 생기잖아요. 남자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찜질방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랑 길썸 해요”

사례19 “친구가 가출 팸에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때에 따라 다른데요. 10명 정도 같이 생활하게 됐어요. 남자가 2~3명 있었어요.”

사례20 “인터넷으로 쳐서 모아서 같이 다녔는데 여자가 대부분 이고 남자가 2명 있었어요. 처음에는 방을 얻어서 있다가 돈이 없으니까 길거리에서 생활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11) 가출팸과 생활한 거주지

모텔이라는 응답은 9사례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찜질방이라는 응답이 2사례로 나타났다. 그 밖의 응답으로는 아시는 분이 방을 얻어주셨다는 응답과 확정된 거주지가 없어 배회한다는 응답이 각각 1사례씩 있었다. 찜질방이나 길거리에서, 경제적 조건이 되는 경우 거주지가 숙박업소로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례9 “애들도 아마 여관이나 모텔 같은 데서 생활하거나 돈 많이 모아서 원룸 같은 곳에서 생활하거나 그럴 거예요.”

사례13 “돈 있는 애들끼리 돈 모아서 어디 모텔에서 잔다고 들었어요.”

사례17 “인터넷 사이트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생활 하는데 적으면 3~4명 많으면 6~7명 하며는 돈이 생기잖아요. 남자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찜질방 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랑 길썰 해요”

사례19 “일단 아는 오빠들 만나면서 오빠들이 돈이 있으니까 모텔 같은 데 가기도 하고 우리끼리 있으면 돈이 없으니까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집 비는 친구들 집에 가서 지내기도 하고 그래요.”

사례20 “처음에는 찜질방 갔다가 나중에는 돈 모아서 원룸으로 갔다가 원룸에서 쫓겨나면 길거리에 있었어요.”

사례21 “확정된 거주지가 없이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12) 가출팸 생활이 성매매에 미치는 영향

영향이 있다는 응답은 14사례로 나타났다. 가출팸 생활 시 생활비 마련 때문에 성매매를 하게 된다고 응답하였다. 가출팸을 경제적인 이유로 또는 생활방식으로 성매매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9 “네. 영향이 있죠. 남자는 하는 일 없이 여자애들 시키는 걸로 들었어요.”

사례13 “네. 가출하면 할 것도 없고 심심하고 돈도 없고 그래서 하게 되요. 그리고 나가면 사게 되고 막 사고 싶은 것도 있고 해서요.”

사례16 “네. 좀 많은 것 같아요. 가출하다보니까 생활비도 필요하고 친구들 때문에도 그렇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사례17 “가출팸이랑 생활하다가 하게 된 적은 있긴 해요. 남자애들이 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같이 있다 보니 경험 얘기도 하게 되고 그래서 하게 됐어요.”

사례19 “네. 일단 가출을 하면 다 같이 돈이 없는 거니까 한사람이 하자고 하면 흑해가지고 다 같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3) 원치 않은 신체적 폭력이나 성적인 폭력 피해 경험

원치 않은 신체적 폭력이나 성적인 폭력 피해 경험이 있었다가 18사례로 나타났다. 절반이상이 신체적 폭력이나 성적인 폭력피해가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사례1 “알바하면서 사장님이 성희롱 같은 거 했어요. 제 친구랑 알바를 같이했는데 친구는 퇴근이 저보다 빠르고 저는 좀 늦는데 사장님이 그때 술을 좀 드셔서 제 볼에 뽀뽀를 했어요. 그래서 많이 놀랐었어요. 사장님이 저를 너무 만만하게 보셔서 그런 거 같아서 알바 그만두고 고소도 하려고 했는데 그 사장님도 갓난 애기 딸이 있어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긴 했었어요. 근데 동네에다가 소문을 내고 다녀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사장님한테 전화로 막 화내다가 그냥 그렇게 끝났어요.”

사례2 “네. 초등학교 5학년 때나 6학년 넘어갈 때쯤이요. 모르는 사람이 그랬어요. 저희 집이 방이 세 개였는데 창고로 쓰고 있는 방에서 그냥 당한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사별하셔서 어머니는 같이 사는데 그땐 남동생은 너무 어렸고 상대는 외부인이었던 거 같아요.”

사례6 “술 마셨을 때 아는 오빠한테 한 번 당했었어요.”

사례11 “네. 아는 오빠들한테 당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었는데 당했어요. 그 뒤로는 제가 처음도 아니고 하니까 돈도 모아야하고 애들끼리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사례17 “저번에 한 번은 강제적으로 당한 적이 있어요. 모르는 남자 선배한테서”

사례36 “성폭력은 없어요. 성희롱은 있었어요.”

사례37 “아빠가 자꾸 폭력을 휘두르는 걸 견딜 수 없어 가출을 했거든요.”

사례39 “아빠와 새엄마의 폭력. 학교에서 왕따 당하기도 하고...”

(ㄱ) 신체적 폭력 혹은 성적 폭력을 당한 이후 달라진 점

정신적인 충격과 두려움, 불안감이 생겼다는 응답이 7사례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순으로 남자들에 대한 경계심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다는 응답이 4사례로 나타났으며,

자신이 더러워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응답은 4사례로 나타났다. 그 밖에 화가 나면 감정을 조절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응답도 1사례 있었다. 경계심과 당혹감, 무서움, 포기로 인해 성매매로의 더 깊은 이입 등이 거론되었다.

사례1 “고소하려했으나 참았어요. 남자를 경계하게 되었고 얼마 구할 때 사장님이 같이 근무하면 꺼리게 되었어요.”

사례11 “달라진 거는 당한 생각하면 맨날 무섭고, 그때 시간을 돌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사례27 “정신적 충격 때문에 사람을 잘 믿지 못하게 되요.”

사례29 “무서워서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례37 “아빠가 화를 내면 두려워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게 되요. 새로 만난 사람 눈을 제대로 못 맞추게 되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자살기도도 했어요.”

사례13 “남자를 멀리해야 된다는 생각은 드는데 막상 행동은 그렇게 안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 계속 하게 되요.”

사례25 “나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른이 원래 이렇게 폭력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사례8 “성폭행 당한 이후에 성매매를 하게 되었어요.”

사례40 “자신을 더럽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례39 “성격이 많이 변했는데 화날 때 못 참고 괜히 화가 나기도 하고...”

(ㄴ) 신체적 폭력이나 성적 폭력과 가출 및 성매매의 관계

영향이 있다는 응답은 16사례로 나타났으며, 영향이 없다는 응답은 8사례로 나타났다. 영향이 있다는 이유로는 성폭력을 통한 성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5사례로 나타났으며, 성폭력으로 자포자기하게 되어서라는 응답이 1사례로 나타났다. 일부는 경제적인 이유가 돈이라고 지적하고, 대부분은 신체적 폭력 혹은 성적 폭력이 본인이 가출하거나 성매매를 하게 된 영향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사례10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걸 즐기게 되는 애들도 있기도 하고 돈이 급한 애들도 있고 집에 있기 싫은 애들도 있고 하니까요.”

사례13 “혼자 있을 때 성폭력을 당할 수 있고 그것이 성매매로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사례32 “한 번하게 되면 영향을 미치죠. 다음엔 쉬워지니까.”

사례40 “성적 폭력으로 시작해서 성매매를 알게 되어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해요”

사례2 “네. 있었어요. 자포자기하는 마음도 있었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집을 나왔던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 하게 되었어요.”

(ㄷ) 신체적 폭력이나 성적 폭력 피해청소년의 가출 및 성매매 차단 대책

쉼터나 상담소 등의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가출이나 성매매로 연결되는 고리를 차단할 수 있다는 응답이 6사례로 나타나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순으로 가출을 하지 않도록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사례로 나타났으며, 경제적인 도움이나 거주지 제공이라는 응답은 3사례로 나타났으며, 기관에서 부모님과 관계 회복 등의 가정문제를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3사례로 나타났으며, 상담 및 심리치료를 통해 고리를 차단할 수 있다는 응답이 3사례로 나타났으며, 조건만남 관련 어플이나 채팅사이트, 업소 등의 폐쇄라는 응답은 3사례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대부분 관심과 조언, 경제적인 도움은 성매매 차단에 큰 효과를 발휘한다고 볼 수 있다.

사례1 “일단 청소년 상담센터 같은 거 많잖아요. 학교에서도 상담 같은 것도 신경 써서 해주시고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 데요. 부모님들도 좀 더 자기 자식들과 대화도 많이 나누고 그러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사례10 “찾아다니면서 전화번호를 줘서 상담 같은 거 하고 상담한 다음에 그 아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 보인다면 경제적 부담을 좀 덜어주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40 “도와줄 친절한 쉼터가 있으면 최고이죠. 또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장소가 제공 되면 좋겠어요.”

사례16 “가출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집에서 신경을 써주거나 친구들이 신경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19 “일단은 돈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금전적인 게 제일 필요한 거 같아요. 다들 돈 때문에 하는 거니까요.”

사례21 “주의 사람들과 차단시켜 어울리던 친구들이 모르는 거주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례15 “어플이나 인터넷 채팅 같은 그런 것들 없애고 애들이 그런 건 못하게 금지 해야 해요.”

사례36 “정신적인 치료가 먼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말을 들어 주는 것을 바라거든요.”

사례37 “가정 쪽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례39 “거의 집안 문제로 인해 발생하므로 평온한 집안 분위기 조성과 자녀에 대한 이해 필요한 것 같아요.”

2)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 관련 질문

(1) 성매매 경험 후 도움을 받은 사람이나 기관

쉼터에서 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은 9사례로 나타났으며, 1388에서 상담을 받았다는 응답은 7사례로 나타났으며,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상담과 심리치료의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이 5사례로 나타났으며, 기관의 도움은 아니었지만 친구의 상담과 조언도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도 2사례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쉼터, 1388, 청소년 지원센터 등 관련기관들의 더 활발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21 “새날을 여는 청소년 쉼터에 와서 성매매를 할 필요성이 사라졌어요.”

사례24 “쉼터에서 지내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는데 도움이 되요.”

사례25 “가출청소년 쉼터에서 미술치료와 상담을 같이 하면 마음이 가라앉는 것 같아요.”

사례38 “교회 사모님소개로 수지의 집에서 상담한 뒤 수지의 집에서 지내며 용돈, 학비, 학원비, 옷을 해주셔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사례40 “새날을 여는 청소년쉼터에서 여러 가지를 도와주세요.”

사례15 “1388상담하고 친구와도 상담하며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부모님께 연락해요.”

사례1 “받았었어요. 부산 청소년 지원센터에서요. 그게 나쁜 것이라는 것과 그거는 모르는 사람에게 몸을 주는 건데요. 제 몸의 소중함 그런 것도 알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를 많이 깨달았어요.”

사례27 “대구여성회위기청소년육센터 상담과 캠프가 도움이 됐어요.”

사례28 “강원위기청소년교육센터가 도움이 됐어요.”

사례35 “대구 여성 성폭력 센터 예요”

사례16 “경험 있는 친구가 나쁘다고 자꾸 얘기 해 준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친구가 이야기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2) 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관 인지 여부

기관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가 23사례로 나타났으며, 알고 있다는 응답은 15사례로 나타났다. 인지, 비인지가 반반으로 보인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시 홍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7) 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관 홍보방안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한 홍보가 12사례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전달하거나 직접 홍보해주는 방법으로 7사례로 나타났으며, 전단지를 통한 홍보는 3사례로 나타났으며, 학교를 통한 홍보는 2사례로 나타났다. 그 밖에 실외광고를 이용한다는 응답과 지금과 같은 설문을 통한 홍보라는 응답이 각각 1사례씩 나타났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성매매 상담 도움기관을 의무적으로 게시할 수 있게 하는 조치가 매우 효과적으로 청소년들에게 도달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 교문 앞에서의 하교 시 홍보도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사례1 “학교에서는 좀 그러니까요 뉴스 같은 데가 괜찮을 것 같아요. 방송매체를 통해서요”

사례2 “방송이라든지 인터넷 같은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21 “성매매피해 청소년들 접하기 쉬운 사이버를 통하여 홍보 하는 것이 좋겠죠.”

사례37 “가해자가 또 다시 찾아올지 모르니 피해자들에게만 말이 돌지 않겠끔 조용히 알렸으면 좋겠어요.”

사례14 “전단지나 티비 공익광고” 통해서요.

사례25 “학교를 다닌다면 학교 상담선생님을 통해서 알리면 될 것 같아요.”

사례31 “지금 하는 설문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하면 될 것 같아요”

(ㄴ) 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

기관에 있는 친구 또는 선배들과의 관계가 쉽지 않아서라는 응답은 5사례로 나타났으며, 수치심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5사례로 나타났다. 그 밖에 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라는 응답과 부모님께 연락이 갈까봐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나타났다. 수치심과 가족이 알게 되는 두려움이 가장 크게 언급되었다.

사례12 “기관에 들어가면 집에서 알게 되고 같은 일을 한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어 더 성매매를 하게 될 것 같아서”

사례25 “양아치들만 있는 곳인 줄 알았고 내가 있다는 사실을 남이 알게 되면 나를 무시할까봐 싫었어요.”

사례35 “시설 입소 생활이 싫어서. 시설에 있으면 나쁜 애들이 갈데없어서 들어온 거 같은 데 왕따 당하면서 살 수 없으니까 싫어요. 선생님께서는 우리더러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게 되면 싸우게 되고...”

사례40 “쉼터에 사는 언니들의 텃세가 심해요.”

사례4 “그냥 말하기 싫고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사례32 “조건 만남이 불법이니까요.”

사례20 “엄마한테 전화한다고 하던데요. 거기가면 담배 같은 것도 못 피게 하고... 그런 게 싫어요.”

사례8 “들어본 적은 있는데 못 갔어요. 그게 정확히 어디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기관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요.”

(3) 성매매 피해자 지원기관에 바라는 점

성매매와 관련하여 도움을 주는 기관에 대해 좀 더 도움을 받고 싶거나 바라는 점은 기관에서 상담 및 지원을 자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12사례로 나타났으며, 기관 내 규율 완화 응답의 경우 4사례로 나타났으며, 거주지 및 경제적 지원 제공 응답은 3사례로 나타났으며, 기관 내 프로그램, 행사의 다양화는 4사례로 나타났으며, 성매매 관련 교육의 실시는 2사례로 나타났다. 정신적 도움, 병원 치료, 생활비 보조, 부모와 연계 등을 도움 필요내용으로 말하고 있다.

사례2 “안 좋게만 보지 말고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사례3 “기관에서 성매매를 하는 친구들을 찾아가주고 병원치료가 필요할 때 같이 동행해주고 상담해 주면 좋겠어요.”

사례4 “상담을 자주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사례11 “캠프를 많이 하고 상담 시간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례14 “가출 자체가 문제이므로 가출 청소년을 상담하고 부모와 연계해서 가출을 막아야 하겠죠.”

사례29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면 좋겠어요.”

사례31 “다른 아이들이 가출을 안 하게끔 신경써주었으면 좋겠어요.”

사례36 “정신적 치료를 위해 상담을 자주하고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사례20 “부모님께 연락을 안 하고 술이나 담배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어요.”

사례35 “선생님들이 핸드폰을 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입소한 아이들 모두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례37 “휴대폰을 주셨으면 해요. 이해는 하지만 들어오면 폰을 사용을 못하게 하니깐 답답해요. 그리고 학업지원을 해주시기는 하지만 실용음악(보컬)과목은 없어요. 학원을 다니려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데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해요.”

사례39 “규칙이 너무 엄격해요. 눈높이에 맞게 낮춰줬으면 좋겠어요. 피복비와 용돈이 너무 부족해요.”

사례13 “쉼터에서 생활 할 수 있게 해주고 생활비 보조해줬으면...”

사례33 “생활이 부족한 애들에게 생활할 집을 줬음 좋겠어요.”

사례34 “생활할 돈을 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25 “청소년 위기 캠프 같은 행사를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기관이 서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청소년지원시설이 있으니깐 청소년 위기 캠프 같은 행사를 자주 열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례38 “기관 주변시설을 개선. 용돈도 올려주고 문화체험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기관의 담당선생님이 사생활 보호나 익명성 보장에 대한 안내를 받거나, 동의서를 작성한 적이 있는지 묻은 결과, 동의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 응답은 15사례로 나타났으며, 동의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7사례로 나타났다.

한편 성매매와 관련된 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 성인 피해여성과 함께 이용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함께 이용함으로써 불편한 점이 있었는지 묻은 결과, 성인 피해여성과 함께 이용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은 있다가 1사례로 나타났으며, 없었다는 응답은 23사례로 나타났다. 대체로 그런 일은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사례9 “성인이 있기는 했지만 성인들이랑 마주친 적은 없었어요.”

사례23 “그런 적 없어요”

(4) 기관특성에 따른 장단점

도움을 받은 기관이 성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예: 성매매상담소, 성매매 피해쉼터)이었습니까? 청소년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쉼터)이었는지 묻은 결과, 도움을 받은 기관이 청소년 기관인 경우가 9사례로 나타났으며, 도움을 받은 기관이 성매매 기관은 3사례로 나타났다. 2기관이 모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 다 이용한 경험이 있다면 양자의 장단점은(복수응답으로 분류) 청소년 기관의 장단점의 경우,

사례11 “1388이 일단 재미있었고 그런 거 한 사람들끼리 같이 만나서 캠프 하는 거니까
각자 경험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런 점이 좋았어요.”

사례9 “울산에 갔을 때와 다 이용해보니까 비교는 할 수 없고 그냥 다 좋았어요.”

사례34 “밥 주고 재워주지만 빨리 자지 않으면 뭐라 하고 싸움이 많이 일어나고 외박이나
놀러 나갈 수가 없어서 불편해요.”

사례15 “상담 시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됐어요.”

사례39 “청소년쉼터는 탈주 예방이 잘되어 있어서 나갈 수가 없어요.”

성매매 기관의 장단점의 경우,

사례39 “성매매피해쉼터는 병원 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고 상담도 많이 해주는 편 인거
같아요.”

(5) 성매매를 경험하고 가장 괴로웠거나 현재까지 괴로운 점은 무엇입니까?

성매매를 경험하고 가장 괴로웠거나 현재까지 괴로운 점에 대해 잊히지가 않는다는 응답이 9사례로 나타났으며, 실제로 몸이 안 좋아졌다는 7사례로 나타났으며, 죄책감과 후회라는 응답이 5사례로 나타났으며, 정신적인 충격에 시달린다는 5사례로 나타났으며, 주변사람이 알게 될까 두렵다는 응답이 4사례로 나타났으며, 임신과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4사례로 나타났으며, 사람에게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는 응답은 3사례로 나타났다.

사례12 “그냥 느끼는 게 나중에 커서 후회할 거 같아요. 결혼하면 남편이랑 살아야 하는데
땃땃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거요.”

사례15 “처음 했을 때 아팠던 것 그거밖에 없어요. 아팠던 기억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요.”

사례22 “낙태경험이 있어요. 아직도 잊지 못할 것이고,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내 최고의 상처라고 해야 하나...”

사례35 “내 몸이 더러워지는 것 같았어요. 잊고 싶는데 잘 안 잊혀져요.”

사례36 “기억이 난다는 점이 괴롭고 친구를 잃는 것이 힘들어요.”

- 사례4 “처음 했으니까 처녀막이 상해서 일주일 동안 걸음도 못 걸었던 거요.”
- 사례9 “그냥 몸적으로는 몇 달 동안 병원 치료받고 있어요. 정신적으로는 크게 괴로웠던 점은 없어요.”
- 사례18 “아파서 한 며칠 고생한 거 때문에 좀 그래요. 하게 되면 괜히 몸살 난 것처럼 아프고 일주일정도 계속 아프고 몸도 가누기가 힘들고 그랬어요.”
- 사례37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느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
- 사례39 “자신이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가장 괴롭다”
- 사례25 “정말 이걸 할 것이 못 되요. 그걸 했던 걸 남이 알게 된다면 수치스럽고 괴로우니까”
- 사례19 “일단 처음에는 무서워서 그랬구요. 지금은 살아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긴 해요. 처음에는 임신할까봐 그런 것도 있었고 부모님이 알게 되면 혼날까봐 그런 것도 있었고 처음이니까 무서웠던 게 제일 컸던 거 같아요.”
- 사례40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 남자에게 들키면 어떡 하나라는 생각이 괴롭죠.”
- 사례38 “남자들이 술 먹자고 하면 무서워요”

(ㄱ) 신변안전에 대한 생각과 욕구

불안해서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12사례로 나타났으며, 신변 안전과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비공개가 주로 언급되고 있다.

- 사례2 “사실 뭘 하던 간에 저흰 미성년자잖아요. 성인이라도 불법이긴 한데 그런 것들이 불안하고 그래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돈은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하는 거라 서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도 안 갖춰져 있고 일자리 커트라인은 높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여자애들은 이런 거 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하고 싶은 알바가 있어도 커트라인이 너무 높으니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이가 걸리고 학력이 걸리고 면접 보러 갔는데 제가 왜소한 편이라 힘을 어떻게 쓰냐며 죄송한데 안 된다고 하고 또 아파보인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기도 하구요.”
- 사례15 “노출된 것 같아 걱정되기는 해요. 그냥 서로 말을 조심해서 계속 번져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사례18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연락 올까봐 걱정 되요. 그런 거 보호해줬으면 좋겠고 쉽게 말을 할 수없는 그런 것들 상담 좀 많이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사례25 “공개 쉼터보다 비공개 쉼터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매매 상담소, 피해센터 같은 게 더 많았으면...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비공개거든요 정말 좋아요.”

사례29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는 것. 혼자 다니지 않게 여러 명이 다니게 해 주는 것...”

사례34 “칼 들고 다녀요 불안해서”

사례35 “노출돼서 불안해요. 더 이상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례39 “조금 불안 하죠 비밀 보장 약속을 지켜주었으면 좋겠어요.”

(ㄴ) 주거확보에 대한 욕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과 생활에 대한 욕구는 13사례로 나타났으며, 독립할 수 있도록 거주지를 지원에 대한 욕구는 7사례로 나타났으며, 친구들과 생활은 2사례로 나타났다. 모두 부모와 같이 함께 살기를 원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주거공간의 경우는 현재 가출한 상황에서 주거가 불안정한 경우에 대체로 희망하고 있었다. 일시적인 수용시설이 제공된다면 가정으로 돌아가는 길이 더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례6 “집에는 들어갔어요. 여동생이랑 생활하고 있구요. 여동생이랑은 사이가 안 좋아서 불편해요. 아빠는 하남에 계셔서 같이 안 살아요.”

사례7 “부모님이랑은 같이 안 살아요. 할머니랑 삼촌이랑 같이 살아요. 부모님이랑 살고 싶은 생각은 있긴 해요.”

사례9 “할머니 집에 잠시 있어요. 불편하긴 한데 밖에도 있다가 친구네도 갔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는 싶어요.”

사례12 “지금은 집에 들어가 있어요.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어요. 부모님은 이혼하셔서 따로따로 살고 있어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걸 항상 생각하긴 했는데 그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사례14 “지금 친구가 자취하는데 거기서 같이 살고 있어요. 친구랑 같이 생활 하는 게 조금 불편하기는 해도 혼자 생활하면 더 무서워서요. 집에 가고 싶은데 엄마아빠가 성매매 한걸 알거 같기도 하고 그게 더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사례20 “가출한 상태. 가출 청소년은 돈이 없으니 국가에서 집을 구할 수 있게 지원해 주면 좋겠어요.”

사례37 “아빠 성격 봐서는 아르바이트도 못하게 하고 밖에도 못나가게 할 것 같아서 원룸을 구하고 싶어요.”

사례38 “쉽터에서 나가면 아빠 집에서 살게 되는데 아빠가 때려서 불편해요. 쉽터 나가면 갈 곳이 없어요.”

사례39 “졸업 때까지 쉽터에 있다가 졸업 후 퇴소하여 취직하고 독립할 생각이예요”

사례10 “친구 집에서 살고 있는데 친구도 학교가야 하는 상황이라 저도 친구 집에서 나와야 할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기는 좀 그래요. 부모님도 저를 안 찾으시고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하긴 한데 친구한테 알아보면 가출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개네랑 같이 구하거나 하려고요.”

사례35 “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어요. 살고 있는 동네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ㄷ)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치료에 대한 욕구

정신적 건강에 대한 치료 욕구는 9사례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치료에 대한 치료 욕구는 5사례로 나타났다.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 우울증과 불안 치료 등이 강하게 거론되고 있다. 국가가 운영하는 보건소 등에서 연령이나 개인정보 노출 없이 청소년인 경우 성적인 질병 및 정신적 치료를 보장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사례1 “저는 원래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우울증이 좀 있었어요. 예전에는 중학교 때는 약까지 먹고 그랬었는데요. 지금은 괜찮아요. 옛날에는 그 일이 아니라 그냥 좀 자살하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기도 했었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도 좀 힘들었어요. 그치만 치료는 안 받고 싶어요.”

사례4 “처음에는 정신적으로 불안하거나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사례5 “몸은 괜찮아졌는데요 정신적으로는 불안한 상태예요. 안정을 찾고 싶어요.”

사례35 “몸에 힘도 없고 소화도 잘 안 돼요. 산부인과 검진만 받았어요! 왜 힘이 드는지 검진 받고 싶어요.”

사례36 “정신과 치료를 받고 싶어요.”

사례37 “정신과 상담을 받고 싶어요.”

사례39 “병원에 가기가 눈치가 보여요 편하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ㄹ) 부모나 그 외 보호자와의 안정적인 관계에 대한 욕구

부모님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욕구는 13사례로 나타났으며, 부모님에게 바라는 점이 없고 만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7사례로 나타났으며, 현재에 만족한다는 의견도 4사례로 나타났다. 결손가정의 아픔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욕구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사례8 “부모님이 이혼하셨는데 합쳤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셔가지고 부모님이랑 같이 안 살아요.”

사례11 “제가 좀 늦게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엄마가 뭐라고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엄마랑 맨날 싸워가지고 그때마다 애들이랑 나가서 놀아요. 엄마가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례15 “오빠가 있는데 제가 밖에서 노느라 외박을 자주해요. 밖에서 놀고 그런다고 오빠가 자꾸 뭐라 하니깐 구속받는 기분도 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해요. 오빠가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례19 “아빠는 안 만나고 있고 엄마는 가끔 만나고 있어요. 일단은 자주 만났으면 좋겠어요.”

사례20 “집이 싫어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고 바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냥 부모님들 맘대로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례25 “아빠랑 말이 좀 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스마트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례26 “부모님이랑 만나보고 싶을 뿐 다른 생각은 없어요.”

사례39 “아빠와의 관계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친엄마를 찾아 만나고 싶다”

사례3 “전 가정에 문제가 많았어요. 부모님도 이런 사실을 알고 계세요. 서로 말 못했던 거 하라고 하시기도 하고 저도 이렇게 힘들다는 거 서로 말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도 가정에서 있었던 안 좋은 기억들이 너무 많이 남아 몇 년 동안 변함 없이 없어요. 부모님은 오래 안보면 보고 싶기는 하는데 같이 있으면 말을 걸지 않아도 막 짜증나고 그래서 가출도 하고 그랬거든요. 좀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게 좋아요. 집 경제사정은 평범한 거 같긴 한데요. 부모님은 형편이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사례10 “부모님이 관심도 없구요. 들어오기를 바라지도 않아요. 저도 바라는 거 없어요.”

사례17 “방학하고 나서 본적 없어요. 만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어요. 엄마랑 싸우는 것도 너무 많았고 그래서 둘이 있는 것도 싫고 집에 있는 것도 싫고 해서요.”

사례37 “부모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시기는 다 지난 것 같아요. 새엄마도 남 같고요. 친엄마는 연락이 닿질 않아요. 어렸을 땐 친엄마를 원망했지만 지금은 엄마를 이해해요.”

사례38 “엄마는 새엄마고 친엄마는 연락이 안 돼요. 친엄마는 보고 싶기는 하지만 같이 살기는 싫어요.”

사례35 “엄마, 아빠 이혼하셨지만 저랑 아빠랑은 그래도 사이는 좋아요.”

(ㄱ) 그 밖의 바라는 점

경제적 지원에 대한 응답은 3사례로 나타났다. 학교와 친구, 정상가정 그리고 직업을 위한 준비 교육 등에 대해 바람이 있었다.

사례1 “메이크업을 배우고 싶은데 도움이 필요해요”

사례36 “댄스스포츠를 계속 배우고 싶은데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해요”

사례37 “쉼터에서 벗어난 후 갈 곳이 없는 애들이 있고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례16 “학교생활도 예전에는 친구들이랑도 많이 싸우고 선생님들이랑도 사이가 안 좋았는데요. 나중에 가출을 하고나서 학교를 안 다니다 보니까 선생님도 친구들도 학교 한 번 오라고 해서 오랜만에 갔어요. 놀다보니까 다들 잘해줘서 너무 좋았어요.”

사례18 “자기가 왜 그런 짓까지 하면서 돈을 버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다시는 하지 않도록 생각도 해보고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례19 “이혼하시는 부모님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다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례25 “시설 평가원들이 좀 힘들긴 하겠지만 전국에 있는 쉼터들이 정상적인지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3)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자 관련 질문

(1) 또래 포주에 대한 생각

(ㄱ) 또래 포주를 알게 된 경로 및 이들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는 이유

또래포주에 대한 의견으로는,

사례23 “신고 해야 해요.”

사례25 “어쩌다 저렇게 되었을 까란 생각이 들고 이 사람도 친구 따라와서 이렇게 되었을 거란 생각도 들어요.”

사례27 “돈에 환장한 사람들...”

사례39 “너무 쉽게 돈을 벌려는 습관이 되어 버린 애들이죠.”

사례40 “어쩔 수 없는 피해자. 자신이 하기 싫어시키는 피해자인 것 같아요”

또래 포주를 알게 된 방법은,

사례35 “놀이터에서 알게 되었는데 무서워서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사례23 “학교에서 알게 되었는데 무서워서 제안을 거절할 수 가 없었어요.”

학교에서의 일부 학생들에 대한 사전 생활지도가 청소년을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는 좋은 대안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ㄴ) 또래 포주들을 근절하는 방안

신고나 법적 처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5사례로 나타났다. 취업기회를 통해 청소년이 어쩔 수 없이 포주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거론되었다.

사례33 “신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례35 “처벌해야죠.”

사례40 “컴퓨터에 입소시키거나 하는 강제조치가 필요하죠.”

(2)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하는 성인들에 대한 생각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 하는 성인들에 대한 생각으로 17사례가 나쁘다고 응답했으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사례로 나타났다. 도덕 불감 사회 풍토와 처벌 강화, 생리적 거세 등이 언급되었다.

사례1 “그 중에는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정말 인간으로써 할 것이 못하는 거 같아요. 만약에 그 사람들 자기 자식들이 있으면 자식들 또래랑 하는 거잖아요. 남자들은 성에 눈이 떠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 발전한 것 같아요”

사례2 “이런 것까지 해야 할 정도로 여자가 없나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요즘엔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인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례10 “솔직히 그런 면도 있기는 하는데 그래도 저희에게 돈이 들어오니까 아무말, 아무생각 없는 것 같아요. 나쁘다는 생각은 들지만 돈이 들어오니까 불만은 크게 없어요.”

사례16 “그냥 참 한심하다는 생각 들어요.”

사례28 “생각을 고쳐야 되고 남자들의 그 부분을 없애야 할 것 같아요.”

사례39 “어린아이들 보다 못한 인간들이예요”

사례14 “불법이니깐 다 신고해서 처벌 받게 해야 하죠.”

사례24 “무기징역이요. 성폭행과 같은 처벌...”

사례25 “성매매를 구하는 아동, 청소년도 잘못되기는 하였지만 성인들은 어떤 죄를 받는지 알면서도 하고 젊고 탱글탱글하다고 자기 성욕구를 푼다는 건 정말 쓰레기라고 생각해요. 사형은 좀 심하고 징역10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12 “성매매를 할 당시에는 어른들이 돈을 주니까 나쁘다는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사례21 “매수자들이 없었다면 성 피해자들이 잠자코 집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며 그런 성인 또한 나쁘지만 성 피해자들에게겐 간절하게 돈이 필요 했을 건데요.”

사례33 “막을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신고를 한다 해도 어떻게든 할텐데...”

(3) 성매수를 예방할 방법

성매매 관련 처벌 강화해야한다는 5사례로 나타났으며, 성매수자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사례로 나타났으며, 성매매 단속을 강화해야한다는 3사례로 나타났으며, 각 해당 기관 도움이 필요하다는 1사례로 나타났다. 그 밖에 없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응답도 4사례로 나타났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피해발생이 지적되었으며, 강력한 처벌과 상시 단속 등이 거론되었다.

사례37 “처벌이 가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폭력, 강간 이런 거랑 같이 했으면 솔직히 처벌이 높지 않으니까 또 하는 거죠.”

사례39 “법이 더 강화되어 처벌을 세게 받으면 좋겠어요.”

사례18 “그런 어른들한테 말을 해주고 싶어요. 자기 자신도 보고 자기 가정이 있으면 자기 가정도 한 번 보라고 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쓸 돈으로 가정의 아이들이나 아내들한테 돈쓰고 봉사활동 같은 데도 좀 가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사례1 “일단 아까 말한 메신저 같은 그런 걸 다 없앴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스마트폰들 많이 하잖아요. 채팅 같은 그런 것들 다 없애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10 “이런 청소년 기관들에서 청소년을 많이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3 “저랑 싸우신 분은 여자 친구 랑도 이렇게 까진 안하는데 내가 왜 돈 주고 너랑 하겠냐고 했었어요. 그런 남자들이 있으면 해결방안이 있어도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자기 욕구만 채우려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4)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유인행위 처벌 및 신고시스템 인지 여부

모른다는 응답은 30사례로 나타났으며, 안다는 응답은 6사례로 나타났다. 소수만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사례19 “자세하게는 안 들어 봤어요. 친구들 중에는 경찰서에 직접 가서 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인터넷으로 하는 친구들도 몇 명 보긴 봤었던 것 같아요”

사례37 “처음 들어요.”

사례39 “이용한적 없는데 들은 적 없어요.”

사례2 “네.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거 있어도 별로 효과 없는 거 같아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남자들은 여자애들의 야한 말 같은 거 좋아하고 여자들은 남자들이 어느 정도 받아주면 하는 거고 싫어하면 안 만나면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사례11 “이용해본적은 없고 들어보기는 했어요. 주변 애들이 그런 거를 신고한 적이 있어서요.”

4) 종합적인 의견

(ㄱ) 가정에 바라는 점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23사례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안정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3사례로 나타났으며, 독립적인 생활이 필요하다는 3사례로 나타났다. 용돈, 가출방지, 평소 관심, 부모들의 가정에 대한 책임감, 대화 자녀와 추억만들기 등이 거론되었다.

사례1 “가정에서는 요즘 맞벌이 부모님들이 많잖아요. 자기 자식들이랑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 나누는 부모님들도 많고 적어도 자기애가 학교를 다녀왔으면 저녁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서 가족끼리 모여서 이야기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사례3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너무 발달해서 어린애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어플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부모님들이 계속 어린애들과 같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최소한 딸 가진 엄마라면 한 달에 한 번씩은 산부인과도 데려가고 검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몸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도 해보고 그런 경험이 있는지 확인도 해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례11 “애들 이해 좀 많이 해주고 그리고 밤늦게 오빠들 만나고 하는 거 하지 말라고 교육을 잘 시켜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사례12 “부모님들 이혼하는 가정 없어졌으면 좋겠고 애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사례16 “집에서 애한테 가출 안하도록 신경 좀 써줘야 해요. 부모님들도 애들 얘기를 잘 들어줘야 할 것 같아요.”

사례22 “아이들을 포기하지 말고 붙잡고 있어야 하는데 이해하는 부모가 있으면 돌아갈 수 있어요.”

사례25 “일하고 왔다고 아이들에게 소홀해지지 말고, 되도록이면 아이들과 잘 지내고 좋은 모습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사례31 “부모님들이 저희에게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례37 “성교육을 제대로, 부끄럽다고 생각하시기도 하지만 학교에서 하는데 학교에서도 부끄러움이 많은 애들은 그냥 안 듣거든요. 엄마가 자세히 얘기해주면 좋겠어요”

사례8 “저희 부모님이 너무 무관심하세요.”

사례29 “내가 뭘하던 신경 안 썼음 좋겠어요”

사례36 “되풀이하여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잔소리는 힘들어요.”

(ㄴ) 학교에 바라는 점

상담을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9사례로 나타났으며, 상담을 해주고 비밀도 보장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응답은 5사례로 나타났으며, 학교에서 성폭력, 성희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사례로 나타났다.

선생님의 비밀스런 성매매 관련학생에 대한 도움이나 상담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사례7 “학교에서도 상담선생님들과의 상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례19 “상담 같은 거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학교 상담실은 그런 친구들은 많이 이용은 안 해요. 아마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어려워서 인 것 같아요.”

사례20 “상담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례3 “학교에서는 들쳐보고 하는 것 없을 것 같은 데 상담실 이런 데는 상담선생님이 비밀보장도 해주시니까 좋아요. 애들이 물어보기도 하고 친구들도 데리고 오고 안심시켜주고 하는 상담선생님이 보건선생님보다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례18 “보건선생님이 한 번 신체검사 같은 거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걸 했다는 거 나오는 게 있으면 몰래 불러서 상담해주거나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사례36 “소문이 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사례2 “학교에서는 성매매가 나쁘다, 성폭력이 나쁘다 이렇게들 얘기 하는데요. 학교나 특히 대학교에서는 이상한 말해서 문제되는 거 많이들 나오잖아요. 그런 교사부터 없애야 할 것 같아요. 실력이 좋든 안 좋든 어쨌든 성희롱이니까 없애야 해요.”

사례37 “남자애가 여자애들에게 성적인 것이나 욕, 성희롱인데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당한 여자애가 바로바로 말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잘 지도했으면 좋겠어요.”

(ㄷ) 사회와 국가에 바라는 점

유해업소 및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7사례로 나타났으며, 성매매에 대한 처벌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6사례로 나타났으며, 상담, 쉼터 등의 관련기관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5사례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지원과 지낼 곳을 마련해줬으면 한다는 의견은 5사례로 나타났다. 적극적 구제 이외에 현재상황에서의 일시적인 현실적 대책도 같이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1 “스마트폰을 요즘에 많이 하니까 안 좋은 것들을 많이 없앴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런 거 이용해서 많이들 하잖아요. 가게서 하는 것도 있는데 좋아서 하는 언니들도 있지만 안 좋아서 하는 언니들도 있으니까 경찰이 지금보다 순찰도 더 많이 하고 신경 좀 많이 써줬으면 좋겠어요.”

사례15 “그런 어플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 조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플이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사례37 “업소 같은 것 단속강화하고 밤늦게 청소년 피씨방, 노래방 단속 해야 해요. 주인이 눈치로만 판단하지 말고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14 “국가에서 가출하는 애들이 좀 못 사는 애들이잖아요. 돈을 좀 주든가 생활형편을 좀 낮게 해주던가 하는 게 필요해요.”

사례28 “남자거세...”

사례10 “가출청소년이나 그런 거 하는 애들한테 정신적으로 상담하는 거나 생활비용 같은 걸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례16 “자기 말을 잘 들어주고 이야기도 많이 해보고 할 수 있는 상담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례20 “지금 하고 있는 거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설문조사나 상담 같은 거요.”

사례5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으면 좋겠어요.”

사례18 “성매매를 예방하는 일도 피해 청소년을 돕는 일도 다 경제적 지원이 필요해요. 병에 걸리면 치료하는 것도 지원해 주면 좋겠어요.”

사례36 “비판만 하지 말고 이해를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아이들은 죽을 수는 없잖아요.”

(ㄹ) 기타 의견

경제적인 지원이나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3사례로 나타났다.

사례6 “지금 조사 하고 계시는 곳은 서울이잖아요. 저희는 부산에서 살고 있으니 부산 쪽으로도 보내주셔서 도움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몸을 치료할 수 있는 도움 같은 것들도 필요해요.”

사례17 “애들 성매매하는 것도 돈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중고등학생들도 할 수 있는 알바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사례36 “가족들에게 미안해요”

사례35 “기관 선생님들이 안 되는 건 아는데 아빠한테 폰 맡기고 추석 때 집에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사례37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정상적인 커플처럼 사랑받으면서 지내면서 위안을 받고 있어요.”

5) 집단면접 조사결과

성매매를 경험한 아동·청소년 중에서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과 쉼터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 간에 특성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기 위해 두 그룹을 나누어 집단면접을 실시했다. 그 결과 길거리에서 섭외한 아이들도 쉼터에서 생활했던 경험이 있고, 쉼터에서 섭외한 아이들도 거리에서 생활했던 경험을 모두 갖고 있어 이 아동·청소년들 사이에서는 특징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두 그룹의 집단면접 결과를 함께 기술하고자 한다.⁷⁶⁾

먼저 성매매를 하게 된 동기는 공통적으로 가출하여 생활비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했고, 가출한 애들끼리 모여 가출팸을 만들어 생활했다고 한다. 가출팸 생활을 하면서 돈이 필요하니까 서로 나도 하니까 너도 하라고 하면서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성매매를 하면서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은 곳은 1388 청소년전화와 가출청소년 쉼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화와 쉼터의 이용을 선호하지는 않는데, 그 이유는 부모님에게 연락을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쉼터에서 의식주를 해결해주는 것은 장점이지만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용을 꺼리게 되니까 가출청소년이나 성매매청소년을 정말로 도와주고 싶으면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많았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에 대한 홍보 방법으로는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홍보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가출청소년쉼터보다는 청소년들끼리 생활할 수 있는 주거지를 제공해주면 좋겠다는 요구도 높았다. 가출팸 생활을 할 때 주로 거주했던 장소는 모텔, 원룸, 고시원이었고, 가출팸 생활을 하면서 성매매를 강압적으로 시켰다고 말한 청소년도 있었다. 또한 집단면접에 참여한 대부분의 청소년이 가출 이전부터 신체적 폭력이나 성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6)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의 면접조사는 크게 심층면접과 집단면접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심층면접에서는 총 40명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면접을 실시했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피해자가 경험한 과거 성매매 원인 및 유입 동기, 경로, 욕구, 가출원인, 성매매 중단 노력 등에 대해 초점을 두어 다각적으로 조사하였다. 전체 40명의 여자 성매매 아동·청소년 중 성매매 피해자 쉼터에서 만난 아동·청소년은 18명이었고, 길거리 섭외를 통해 만난 성매매 아동·청소년은 21명이었다. 가출 청소년 쉼터를 통해 심층면접을 실시한 피해 아동·청소년은

76) 구체적인 면접내용은 '부록 4 : 집단면접 녹취록' 참조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집단면접에서는 아동·청소년을 그룹 별로 나누어 참가자들이 성매매에 대해 서로 솔직하게 자신의 성매매 유입 경로 및 사후 대처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심층면접과 달리 집단 역동성을 통해 성매매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이 경험한 과거 상황을 어떻게 표출하고, 기억하는지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 집단면접을 추가로 실시한 것이다. 그룹 1에서는 길거리 섭외를 통해 접촉하게 된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집단면접 그룹을 만들었고, 그룹 2에서는 쉼터 거주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여 독립된 집단면접 그룹을 만들었다. 집단면접 전체 그룹 내에서 논의된 개인의 신상과 성매매 피해경험에 대해서는 철저히 집단 밖에서 서로 비밀을 지킬 것을 참가자 모두가 사전에 선서하였다. 그리고 사전 동의하에 연구의 목적으로만 토의 내용이 활용되고, 본 연구에서 밝혀진 개별 사항은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됨을 참가자들에게 고지하였다. 면접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아동·청소년 성매매 동기를 살펴보면 가출로 인한 빈곤과 생계비 마련이 가장 큰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개별 심층면접 결과, 전체 응답자의 55%(22명)가 가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숙식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를 시작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체 응답자의 20%(8명)가 주변 친구들의 권유나 부탁으로 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결국은 가출패 등으로 함께 생활하던 친구가 함께 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제로 요구하거나 시킨 경우가 있어 실제 대다수의 아동·청소년이 가출 후 경제적인 이유로 성매매를 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0%(4명)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가정형편이 어려워 부모님 몰래 성매매를 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아동·청소년이 비록 가출은 하지 않았지만, 부모의 통제나 관심 및 경제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성매매 유입 경로를 보면 가장 많은 경우가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어플을 통한 조건만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57.5%(23명)가 인터넷 내의 랜덤채팅이나 즐톡, 즐픽 등의 어플을 통해 성매수 남성과 만나게 된 것으로 응답했다. 심층조사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채팅사이트나 스마트폰의 어플을 통해 성매매 대상자를 만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전체의 40%(16명)가 주변의 친구나 선배 권유로 아는 사람을 통해 성매매 남성을 소개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로서 안정적인 직장이나 고정된 수입의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먼저 성매매를 친구나 선배가 권유하면, 아동·청소년들을 그것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소개자와 함께 성매매를 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성매매 결정이 아동·청소년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22.5%(9명)가 강요와 협박에 의한 “타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응답했다. 즉, 가출 후 또래 포주나 성인 남성이 피해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협박하고 폭행하여 어쩔 수 없이 여자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를 하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함께 가출 생활을 하던 청소년들이 폭력을 행사하며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여 또래 성매매 포주에 대한 처벌 및 제범 억제 방안이 가장 시급한 문제의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응답자의 72.5%(29명)가 성매매 행위를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응답했다. 주변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협박은 없었기에 아동·청소년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결정한 행동이라고 인식한 것이다. 그러나 심층면접 결과, 대다수의 응답자가 가출 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최초 성매매 결정이 외부의 강제나 폭력에 의한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출 후 먹고 마실 것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선택한 “생계형 성매매”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여자 아동·청소년은 일단 가출을 하게 되면, 신체적인 면에서 남자 청소년보다 더 안정적인 파트타임 일을 구하기 어려워진다. 연령이나 학력에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일부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주유소, 배달 일들 역시 모두 건전한 남자 청소년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심층면접 결과, 본 연구에서 여자 아동·청소년은 가출 후 돈을 모으기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고, 비록 스스로 자발적인 성매매라고 인식하는 경우에도 실제로는 “비자발적인” 성매매인 경우가 많아 가출 후 선택의 여지가 없어 택하게 된 성매매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매매 이후의 신체적·심리적 문제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70%(28명)가 성매매 이후 신체적으로 임신이나 성병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관계를 자동차 안에서 하거나 모텔에서 강제로 하게 되면서,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여자 아동·청소년이 질염이나 성병으로 병원 진료를 받거나 큰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응답자의 22.5%(9명)는 성매수 남성의 폭력 및 가학행위로 성매매 이후에도 심각한 신체적·심리적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관계 시 강제적으로 기계를 사용하여 신체적인

고통을 가하기도 하고, 칼과 같은 흉기를 사용하여 폭력행위를 가하기도 하며, 아동·청소년의 성행위 모습을 촬영하여 성매매 이후에도 협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으로 성매매 아동·청소년들이 성매수 남성들이 사후에 자신을 협박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경찰에 신고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신의 성매매 사실이 가족이나 주변 친구들에게 알려질까 심각한 불안감을 갖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남성들에 대한 불신과 성인들에 혐오 등이 심각한 대인기피증으로 이어지고, 결국 자살 충동이나 우울증 등의 문제를 겪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전체 응답자의 22.5%(9명)가 성매매를 중단하기 위해 스스로 강한 결심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의 특별한 도움 없이 스스로 결심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마다 다소 다양했다. 자신의 성병이나 친구의 성병 감염을 보고 건강상 이유로 그만두기로 결심한 경우도 있었고, 그냥 그만 두어야 한다는 의지가 생겨 결심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다음으로 일부 응답자는 성매매를 권유하던 친구들과 헤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도 성매매를 그만 두게 되었다고 응답했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을 중단하면서 성매매를 하지 않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전체의 10%(4명)는 평범한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하면서 성매매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본 연구에서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의 도움으로 성매매를 그만 두게 된 경우는 전체의 10%(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조사 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심층면접 및 집단면접을 통해 성매매 아동·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성매매 유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의 반복적인 성매매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사후 개입정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아동·아동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 랜덤 채팅이나 스마트폰 어플, 조건만남, 가출팸 사이트 등을 통해 성매수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향후 성매매 채팅방이나 가출 아동·청소년들 관련 사이트 등을 사전에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성 구매자를 강력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약 20%가 최초 성매매를 또래 포주의 폭력과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또래 포주들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방안 역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성매매 재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가출 후 여자 아동·청소년이 겪게

되는 과정을 철저히 분석하여, 그들의 욕구와 필요를 사전에 해결해 주는 노력이 가장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응답 내용을 보면, 생계형 성매매가 대다수로 남자 가출 청소년보다 돈을 벌기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자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는 어쩔 수 없는 강제적인 선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출 여자 아동·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거주지와 익명성이 보장되는 생활여건, 그리고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자립형 환경기반과 가족관계 개선 및 정서적인 지지 및 상담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

제 5 장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1.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 방지 대책
2.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
3.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자
대책
4. 정책방안 추진계획(안)

제 5 장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⁷⁷⁾

1.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 방지 대책

1)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 방지 일반대책

(1) 성매매 원인별 유입방지전략 차별화

성매매 청소년의 다양화에 따라 그들의 성매매 유입방지를 위한 전략도 차별화 되어야 한다. 저연령화,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경험, 학교폭력으로서의 성매매 강요 등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현장활동가와 전문가들은 최근에 와서 가출·성매매 아동·청소년의 특성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들의 경험을 요약하면 가출인의 연령이 낮아지고 따라서 성매매 참여 아동·청소년의 연령도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가정에 머무르고 학교에 다니며 용돈이 필요하거나 성형비 마련 등의 이유가 발생할 때 성매매를 하는 아동·청소년, 그리고 학교폭력의 피해자로 친구나 선배의 강요로 강제적인 성매매를 하는 경우 등 성매매에 유입되는 동기와 과정이 더욱 다양화되고 있다고 한다. 성매매에 참여하는 아동·청소년의 특성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말은 그들이 성매매에 유입되는 동기와 과정도 다양화되고 있다는 의미이며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유입과 재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이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77) 이 부분은 이유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옥경(경기대학교 교수), 조운오(동국대학교 교수), 강지명(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이 공동으로 집필하였음.

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보다 다양한 전략과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점차 아동·청소년의 성관계, 성매매에 대한 생각도 일반인들과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 조사와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는 바⁷⁸⁾ 무조건 성적인 욕구와 표현을 억누르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으로 성교육의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로서의 경험은 가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유입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이들의 이러한 피해경험은 자존감 감소, 여러 가지 정신장애, 사회성 부족, 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더불어 성폭력을 하나의 애정관계의 발현으로 받아들이는 인지 왜곡까지 나타낸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여 성매매의 세계에 주저앉지 않도록 도와주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만일 성매매 참여가 학교폭력의 한 방편으로 이용된다면 이것은 성폭력이며 범죄이다. 또래나 선배 등의 강요로 성매매를 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상에 대한 이해가 우선 선행되어야 하며 학교폭력 단속과 처벌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경찰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2) 가정폭력 방지교육 등 부모교육 실시

부모교육과 가정폭력 방지교육 등 적극적으로 부모역할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가출의 가장 큰 원인은 가정, 특히 부모의 역할과 양육태도에 기인하므로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와의 의사소통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많은 가출청소년들이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학대와 폭력 때문에 집밖생활을 하고 있고, 이들을 집으로 귀가시키는 것은 이들에게 부모로부터 학대와 폭력을 견디라는 말과도 같다.

부모의 폭력(성폭력 포함)은 성별에 관계없이 나쁜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력의 강도는 성별로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그 영향력은 여아와 여자청소년들에게 더 크다. 왜냐하면

78) 정혜원(2011b:72)의 연구에 따르면 “가출청소년에게 ‘성관계,’ ‘성폭행,’ ‘성매매’의 간극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크지 않고 경계를 넘나든다.”

긍정적인 타인과의 관계맺음에 대한 열망과 기대는 여성들의 존재의미와 자존감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와의 부정적인 관계는 여아와 여자청소년의 이후 태도, 의식,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도 이러한 면이 잘 부각되고 있는데, 가정폭력 피해를 경험하거나 가족으로부터의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가출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가출청소년에 비해 자존감이 훨씬 낮으며 이들은 거리에서의 (성)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애정의 또 다른 형태로 이해하기도 한다고 한다. 또 이들 피해청소년들은 애정결핍, 행동장애, 인격장애 등 정신과적 장애를 가지고 있고 사회성이 떨어지는 특성을 보인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들을 볼 때, 가출과 성매매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부모에 대한 개입전략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한 필요도 없이 중요하다. 이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예비부부들,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3) 성인지적 관점의 성교육 및 성평등교육 확대

보다 장기적으로 광범위한 대상에 대한 성교육과 성평등교육이 필요하다. 본 연구조사에 참여한 많은 활동가와 전문가들은 기존 성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규모 강당교육, 생물학적 지식에 치우친 성교육 등을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청소년성매매의 저연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 초등학생들에게 피임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그들의 성개방화를 부채질할 것이라는 염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현실을 보면 성관계의 첫경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이러한 성경험의 저연령화 현상에 맞는 성교육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성경험의 저연령화는 성매매에 대한 관용도를 상승시키고 이러한 관용도의 상승은 성매매를 장기간 지속하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여기에 왜 현실적인 성교육의 도입이 필요한 지에 대한 근본이유가 있다.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대 성매수자의 비율이 30대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성매매는 수요의 측면에서의 근절대책이 공급측면의 근절대책보다 더 필요하고 본질적인 것이다.

성매매가 발생한 이후에 존스쿨 교육⁷⁹⁾ 등을 통해 성매수자들의 생각을 교정하겠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성매매에 대한 관용도는 이미 훨씬 이전에 형성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사후관리책보다는 사전 예방적인 의미의 교육이 장기적으로는 성매수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젊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과 성매수 방지교육 등을 학교와 직장뿐 아니라 군인, 공익요원 등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연관되어서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은 성매매에 대한 관념과 허용도는 그 사람의 양성평등의식과 깊은 관계가 있다. 다른 성을 돈을 주고 구매할 수 있다는 생각은 다른 성에 대한 대상화와 물상화가 그 근본원인이라 할 때, 성매수 방지교육은 양성평등 교육에서 출발하여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4) 스마트폰 성매매 대책 수립

스마트폰을 통한 성매매의 증가와 이로 인한 성매매의 개별화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전자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은 성매매 지형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예전에는 성매매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pc방을 거점으로 해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조건만남과 애인대행 사이트에 접속해서 성매매가 성사되는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이 컴퓨터를 대체해가는 과정이며,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이 무차별적으로 청소년들의 성매매를 조장하고 매수자와 매매자를 연결시키는 통로가 되고 있다. 우선 시급한 것이 성매매를 위한 채팅앱에 청소년들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다.

스마트폰을 통한 성매매의 증가는 성매매의 개별화를 초래하게 된다. 각자 자신의 스마트폰을 통해 조건만남을 성사시키기 때문에 예전처럼 pc방에서의 감시 등을 통한 예방은 힘들어지고 있다. 더불어서 성매매의 개별화는 거리에서 물리적으로 마주치는 가출·성매매 청소년의 수를 줄어들게 만들고 있고 이에 따라 거리 중심의 아웃리치도 그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다. 거리중심의 아웃리치가 너무 소모적이라는 지적⁸⁰⁾을 아웃리치를 담당하고 있는 현장실무가도 인정하였음을

79) 성인대상으로 성매매를 할 경우에는 상당수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를 받고 존스쿨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교육만 받을 경우 성매매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대부분의 성매매가 아동·청소년 대상보다는 성인 대상으로 시작되어 아동·청소년까지 넓혀가게 되므로 초범일 때 범죄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음.

80) 한 현장활동가는 현재 아웃리치 활동이 지나치게 형식과 절차에 얽매어 있으며 보여주기식 형식적 홍보활동에 머물러 있다고

불 때 성매매가 물리적 공간을 떠나 사이버 상으로 이동함에 따라 가출청소년을 위한 아웃리치도 사이버 아웃리치 중심으로 재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새날을 여는 청소년쉼터가 2011년부터 하고 있는 사이버포대상담실⁸¹⁾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5)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제고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아동착취, 또는 폭력이라는 강력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오늘날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은 당연히 폭력이라고 생각하지만 몇 십 년 전만 하더라도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은 엄격하지 않았다. 어떤 행동에 대한 사회적 공분과 처벌요구는 그 행위 자체의 심각성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특정행위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아동성폭력이 최근에 와서 새로이 나타나기 시작한 사건이 아니지만 우리사회의 공분과 강력처벌에 대한 요구는 최근에 더 강력해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성매매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사회의 인식은 그리 부정적이거나 공분의 대상이 아니다. 여전히 학교나 경찰에서 성매매는 몇몇 ‘질 나쁜’ 청소년들의 개인적 선택이고 개인적 비행이라는 생각이 강하다. 성매매아동·청소년은 자신들이 성인매수자로부터 폭행이나 성폭력을 당해도 경찰에 가서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 호소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경찰들이 성매매 소녀들을 대할 때 피해자로서 보기 보다는 성매매라는 나쁜 짓을 한 범죄자로 보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비단 경찰이나 교사들의 생각이 이런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일반 대중들도 아직까지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인식이 변화하지 않는 한 성매매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라는 것에 성폭력뿐 아니라 성매매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인식전환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지적하였다. 다른 활동가들은 아웃리치 활동이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실상 아웃리치가 필요한 야간에는 거리상담과 지원을 하기가 어려운 현실을 호소하였다.

81) 사이버포대 상담실은 성매매경험이 있는 언니가 청소년사이트에 들어가 직접 상담을 하고 쉼터 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이버 아웃리치의 한 유형이다.

(6) 학교 내 상담사 및 복지사 역할 활성화

학교현장에서 전문상담사나 학교 사회복지사의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에 와서 성매매가 학교폭력의 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친구나 선배의 강요에 의해 원치 않는 성매매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자들을 초기에 찾아내고 이들에게 심리적, 의료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조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학교현장에서 담당할 전문인들이 확보되어야 한다.

(7) 가출팸 감독 및 관리 강화

가출팸들이 거주하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대한 감독과 관리가 필요하다. 가출한 청소년들이 혼자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위험과 불편을 해소하고 유사가족과 같은 애정과 유대관계를 통해 서로 의지하는 가출팸의 등장은 양면적이다. 한편으로는 가출청소년들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래포주를 중심으로 한 성매매조직의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가출팸에서는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버는 청소년과 이들을 관리하고 벌어들인 돈을 갈취하는 청소년으로 나뉘어 착취고리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알려지기로는 보증금 없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함께 기거하면서 성매매 조직처럼 움직이는 가출팸들이 있다고 한다. 이들에 대한 단속과 감시를 위해서는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에 대한 집중적인 감독과 관리가 필요하다.

2)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 단계별 예방대책

(1) 성매매 이전의 1차 예방: 초기 가출 예방 및 왜곡된 성인식 개선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 대책은 아동·청소년의 가출 문제와 직결된 사안이다. 실제로 본 연구의 심층면접 결과, 우리나라에서 대다수의 여자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가출 이후의 생계유지형 성매매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매매가 발생하기 이전에 고위험

아동·청소년의 가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범죄 및 비행을 다루는 1차 예방활동은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보통 아동·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에 성매매 이전의 1차 예방활동 역시 아동·청소년의 가출을 방지하고, 가출 이후의 상황에 대해 아동·청소년에게 미리 명확히 알리는 계몽활동에 모아져야 할 것이다. 앞서 이미 살펴본바와 같이 캐나다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 경계 프로그램”(Videotron’s Vigilance on the Net program)은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가출 이후의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아동·청소년에게 사실적으로 알려주는 범죄예방 프로그램이라고 하겠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청소년이 쉽게 만나게 되는 포레포주 및 성인 남성들이 실제 어떤 마음을 갖고 거주공간과 용돈 등을 아동·청소년에게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는지 사례를 들어 아동·청소년에게 교육하고 있으므로 성매매 1차 예방으로써 그 효과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⁸²⁾

이와 함께 1차 예방활동으로써 일반 성인 남성 및 청소년 포레 집단에 대한 건전한 성인식 및 성역할 교육에 대한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캐나다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초기 성매매 유입을 막기 위해 캐나다 아동보호 센터(Canadian Center for Child Protection)를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성인들의 왜곡된 성 인식 변화 캠페인과 미디어에 의한 과장된 성 산업 변화 활동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Standing Senate Committee on Human Rights, 2011: 26).

본 연구의 심층면접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청소년이 가족해체나 빈곤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되면서, 학교 부적응 문제를 겪게 되면서 부모나 학교의 정상적인 관심과 훈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비행교우들과의 접촉을 계기로 쉽게 가출을 결심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에 무단결석이나 학교 부적응, 가족갈등 등의 문제를 갖고 있는 위험 아동·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이들에게 1차 예방 차원의 상담과 지도를 실시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것이다. 일반 아동·청소년이 갈등상황에서 막연히 가출을 문제해결의 답으로 여길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학교 교육을 통해 가출 이후의 상황이나 온라인 내에서 성매매 접근 사례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할 것이다.

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SERA Model” 내 Level 1에 해당하는 활동도 결국 성매매 유입을 막기 위한 1차 예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이 일시적 가출이나 무단결석 등의

82) <http://www.vigilancesurlenet.com/en/home/index.phpv> 최종확인 2013년 8월 5일.

행동을 보이고, 알 수 없는 누군가로부터 선물이나 돈을 받는 행위가 포착된다면 가출과 성매매를 막기 위해 사전에 적극적으로 가정과 학교에서 상담 및 지도활동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고위험 단계에 이르기 전부터 일반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에서 가출이나 무단결석 등을 막기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보다 신속하게 청소년 성매매 유입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2) 성매매 이전/이후의 2차 예방 강화: 초기 성매매 선별·평가 작업 강화

이번에는 2차 예방적 시각에서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 방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여자 아동·청소년의 가출 이전(또는 이후)의 성매매를 막기 위해 미국의 보건사회복지부(2008)가 사용하고 있는 성매매 피해 아동 선별도구를 우리나라에서도 적극 활용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2차 예방이란 어느 정도 성매매 위험성이 인지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방활동을 말한다. 과학적인 사전 스크리닝 도구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성매매 고위험 아동·청소년을 선별해 낼 수 있다면, 제한된 범죄예방 자원을 고위험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는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어느 날 갑자기 아동·청소년이 누군가로부터 합당한 이유 없이 고가의 선물이나 돈을 받기 시작하거나, 외모에 특히 더 신경을 많이 쓰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의심스러운 태도가 보이기 시작한다면, 조기에 진단도구를 활용하여 성매매 및 가출 위험 청소년을 보다 신속하게 발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심층면접 결과, 전체 응답자의 약 20%가 최초 성매매를 포래 포주의 폭력과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소 학교폭력 피해 여부나 갈등적 교우관계 등을 상세히 살펴 고위험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이전에 파악해 낼 필요가 크다고 하겠다.

실제, 캐나다에서는 성착취 피해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상으로 가출 아동·청소년과 거주부정자 노숙 아동·청소년을 지목하기도 했다(Standing Senate Committee on Human Rights, 2011:10). 가출한 이후 친구 집에 돌아다니며 생활하거나, 가출팸을 형성하여 생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은 성매매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고위험 집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일시적으로 국가 청소년 보호시설 내에 있다가 다시 사회로 이탈해 나간 아동·청소년 역시 성매매에 취약한 대상일 수 있다고 보았다.

보통 이들은 정상적인 아동·청소년과 비교하여 안정적 거주공간이 없고,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통상적인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성매매 유혹에 비교적 쉽게 넘어갈 수 있고, 성매매 중단 후에도 다시 성매매 행위에 재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국 및 캐나다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가출 이외에도 정신지체 및 약물·알코올 중독을 성매매 고위험 요인으로 간주하였다. 아동·청소년이 가출하지 않은 상태에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고 약물 의존성이 높은 상황에 있다면, 성매매 취약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다시 말해 캐나다에서 신체, 정신 장애 아동·청소년과 약물·알코올 의존 청소년, 그리고 일부 캐나다 원주민은 스스로를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피해 발생 후에도 성착취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정확히 보고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성착취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취약 아동·청소년으로 다루어진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도 성매매 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 아동·청소년 계층을 사전에 선별해 낼 수 있는 관련 도구를 개발해 내는 작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성매매 이후의 3차 예방: 성매매 재유입 억제방안 강화

성매매 유입이 일어난 이후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재유입을 막기 위한 3차 예방활동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차와 2차 예방이 아직 성매매를 저지르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3차 예방은 이미 성매매를 저지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재유입 방지활동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핵심적으로 성매매 여자 아동·청소년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심리적·신체적·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줄 필요가 있다. 즉,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타인과의 정서적 유대 및 애착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면, 여자 아동·청소년은 또래 포주들이 보이는 트라우마 유대감을 자신이 갖고 있는 유일한 애착관계로 착각하여 다시 포주와의 억압적 관계로 돌아갈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 본 연구에서도 심층면접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갖고 있는 성병이나 임신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돈을 벌기 위해 다시 성매매의 굴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성매매 또래포주와의 관계를 끊지 못해 다시 성매매 굴레에 갇히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철저한 익명성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재유입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즉, 성매매 여자 아동·청소년이 다양한 의료 서비스에 보다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존의 서비스 전달 방식을 개선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 방법을 홍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출 이후의 성매매가 일자리를 합법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되어지는 생계형 성매매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여자 아동·청소년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안정적인 주거지와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 그리고 스스로 가출과 성매매를 단절시켜주는 정서적 지원 및 상담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가출 여자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재유입을 보다 신속하게 막을 수 있을 것이다.

2011년부터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북극성 프로젝트”의 내용을 보면,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과 재유입을 막기 위해 철저하게 가출 청소년의 “신변 안전”에 가장 큰 신경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매매의 굴레에서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빠져 나오기 위해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관련 사실을 철저한 익명성으로 보장해주면서, 우선적으로 다른 성매매수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3차 예방 차원에서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위한 피해자 쉼터 운영방식이 기존의 방식과는 완전히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미국의 경우, 일반 비행청소년을 위한 쉼터가 다소 강압적인 규칙이나 훈육을 강조하는데 반해,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위한 일종의 “천국의 문”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즉, 미국의 경우 성매매 아동·청소년 쉼터 운영방식에서 강력한 훈육이나 통제는 결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경험했던 성인 남성이나 또래 포주와의 강압적인 관계를 연상시키지 않기 위함이다. 즉, 철저한 피해자-중심적 시각(victim-centered approach)에서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실현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일반 비행청년 쉼터와 달리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위한 쉼터 시설은 피해 생존자의 자유와 편안함이 강조되는 중간 휴양소 개념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고,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단절된 학습기회를 되돌려주며, 장래 직장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비 경력 준비

단계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실제 우리나라 성매매 셧터 시설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면, 성매매 재유입이 보다 효과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2.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

1)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서비스 강화방안

(1)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피해지원 시스템 구축

조사대상이 된 현장전문가 중 약 67.3%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경험과 성매매의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들의 경험에 의하면 가정폭력·성폭력 경험을 가지고 가정을 “탈출”하여 거리생활을 하는 피해청소년들(탈출형성매매)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자신의 몸에 대한 소중함을 상실하여 ‘이미 버린 몸’ 또는 ‘더러운 몸’으로 인식하는 등 자존감이 매우 낮으며 장래를 포기하고 성매매에서 빠져나오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또한 성폭력, 성관계, 성매매에 대한 구별을 못하는 등 성에대한 민감성이 둔화되어 제2, 제3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청소년들은 가족지지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려워 성매매 유입과 재유입의 악순환에 내몰리게 되기도 한다. 애정결핍, 행동장애, 인격장애 등 정신과적 장애로 고통 받으며 사회성이 떨어지는 특징도 보인다고 한다. 따라서 피해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등 개별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성매매 아동·청소년 중 가정폭력·성폭력과 연관성을 가지지 않은 집단들도 있다.

먼저 집에 머물거나 학교를 다니면서 성매매에 유입되는 소위 ‘자발적’ 성매매 아동·청소년들은 용돈이나 생활비 또는 성형수술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를 선택하는 부류이다. 이들은 가족의 지지나 학업복귀, 취업 등을 통해 성매매 생활을 그만둘 수도 있는 집단이다.

좀 더 심각하게 우려되는 집단은 학교폭력의 일종으로 “강요된” 성매매를 하는 피해청소년 집단이다. 학생사회에서의 권력관계의 위계에 따라 권력을 가진 선배나 동료친구가 힘없는 학생들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활용하는 유형으로 그 범죄성이나

피해의 심각성이 크다. 성매매를 하면서도 번 돈은 자신이 가지지 못하고 상납해야 하고, 이들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폭력과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피해자들은 무기력과 절망에 휩싸이게 된다. 이 같은 학교폭력으로서의 성매매를 밝히려면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여기에 학교상담사나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여러 가지 유형의 성매매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쉼터와 상담소 위주의 피해지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현장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현재의 피해지원 업무의 실효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상담 및 심리치료, 법률지원, 피해자 연계, 의료지원, 숙식제공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지만 피해자 조기발견 지원체계 운영이나 피해자 학업서비스와 직업교육, 경제적 지원 등은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피해자 조기발견 지원체계의 미비의 이유는 이처럼 이질적인 특성을 가진 성매매 피해청소년 집단을 단일집단으로 상정하고 동질적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제는 공통사항 중심의 지원보다 차별화되고 개별적인 욕구를 찾아내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피해자 지원이 발전되어야 한다.

한편 현행 정책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어 성인 피해여성과 달리 피해청소년쉼터 시설만 운영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을 위한 상담소나 자활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보호 중심, 시설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위한 취업·인문교육 활성화

장기가출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위한 취업교육과 인문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가출아동·청소년들은 장기간의 학교중단과 이로 인한 학력부족으로 인해 지금 당장 적절한 취업이 어려울 뿐 아니라 미래를 위한 진로계획을 세우기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성매매나 노래방 도우미로 버는 금액에 익숙해지면 다른 직종의 일들에 대한 선호가 떨어지게 된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수입이 좋은 직종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과 노동의 중요성, 일을 통한 자기성취의 중요성, 노동의 신성함에 대한 가치 등을 일깨우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노숙자나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교육이 성매매 아동·청소년들

에게도 행해질 필요가 있다. 내가 왜/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내가 왜/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 지에 대한 고민과 사색이 이들에게 일로서의 성매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가출소년들을 위한 인턴십을 운영하는 새날킵터의 사례나 그룹홈 살림의 공동작업장 연계활동은 좋은 사례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이 자활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군을 다양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미용이나 네일아트, 제빵에 집중되어 있는 직업훈련의 다변화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3) 성매매청소년을 피해자로 보는 인식도 제고

성매매청소년을 “피해자”로 보는 인식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며 이를 위해 법적 규정의 명확화와 실무관행상 변화가 요구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폭력이라는 인식이 확고해야 이들을 온전히 피해자로서 간주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여전히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성매매아동·청소년에 대한 법률상의 규정에서도 이러한 불명확한 입장은 확인된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성매매를 규제하는 법은 아동·청소년성보호를 위한 법률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두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법률에서 성매매아동·청소년에 대한 규정에 차이가 있다.

먼저 아동청소년성보호를 위한 법률 제2조는 “피해청소년”과 “대상청소년”을 구별하고 있다. 먼저 제2조 6항에서 “피해아동청소년”은 아동대상성범죄(강간, 강간상해치사, 강간상해치상)와 음란물, 청소년 매매 강요행위의 피해자가 된 아동·청소년이라고 되어 있고, 제2조7항에서, “대상청소년”은 제13조 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다. 간단히 말해 성매매 아동청소년은 피해청소년이 아니라 대상청소년이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에 포함시키지 않고 대상청소년으로 규정한 기저에는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선택한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다고 보여진다. 앞서 이론적 논의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표면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선택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의 성매매는 개인적인 선택으로 보기 어려운 구조적 강제의 측면이 공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법에서 보호해야 하는 성에서 성매매는 제외했다는 것은 기성세대들의 성매매 이해의 깊이가 얼마나 얕은지를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한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성매매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도 묵시적으로 “자발성”에 대한 전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인된 자는 피해자이지만 자기 스스로 성매매를 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말이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법률에서 조차 성매매아동청소년을 본질적으로 피해자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성에 기초해서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성매매 아동청소년은 동의에 상관없이, 자발성에 상관없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법률상의 불명확성뿐 아니라 청소년시설이나 경찰의 인식도 매우 중요한데, 경찰의 경우 조건 만남의 피의자로 성매매청소년을 조사하는 일이 다반사이며, 원스톱 센터 이용 시에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은 피해자로 인식되지 않는다.

이처럼 법률상, 실무관행상 여전히 성매매 아동청소년은 폭력의 피해자, 착취의 피해자가 아니라 돈을 쉽게 버는 수단으로 자신의 몸을 파는 사람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이 변화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기 쉽다. 따라서 성매매피해를 성폭력의 범주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의식적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4) 범죄피해자로서의 가출청소년 보호방안 마련

거리청소년들이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는 것도 예방해야 하지만 이들이 잠재적으로 범죄 피해자이기도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출동기가 어떻든간에 집을 나와서 거리에서 생활을 하는 노숙청소년, 거리청소년이 되다보면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 절도를 하거나 강도를 하거나 성매매를 하게 된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인식되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이들이 동료거리청소년들이나 성인들로부터 갈취나 폭행, 성매매 강요 등의 피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가출하여 거리에서 사는

아동·청소년들은 정글 같은 거리에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들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피해를 당하기 전에 내가 남에게 피해를 먼저 주어야 살아남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개별적인 생활이 피해를 키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출팸을 만들고 조직화하여 대응하는 전략을 구사하기도 한다. 범죄의 가해와 피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모호하고 경계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가출아동·청소년, 성매매청소년이 지역사회 안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이들을 범죄피해로부터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를 해줄 수 있는 기관-경찰, 쉼터, 청소년상담센터 등-들이 지역사회의 치안 확보와 범죄예방을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5) 사례별 조사분석과 지원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성매매피해청소년의 교육현황을 통해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의 형사사법기관 인지건수가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매매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형사사법기관의 인지비율이 늘어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따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매매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형사사법이 인지하는 성매매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모든 문제해결의 출발점은 문제의 파악이다. 현 아동·청소년 성매매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실태파악에 더욱더 경주해야한다. 하지만 2010년 청소년대상 성매매 최초경로가 인터넷채팅의 경우가 78.4%에 달했다는 데이터는 성매매수자와 성매매대상아동·청소년의 실태파악이 쉽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정보통신의 발달과 스마트폰, 테블릿pc 등 기기의 보급,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성숙도, 아동·청소년의 금전욕구와 같은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원인연구가 선행되어야한다. 이는 일회성 책상연구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매매피해청소년의 성매매원인, 동기 등에 대한 실질적 분석을 데이터화되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 해마다 존재하는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원인을 사례별로 다각 조사 분석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각각의 성매매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를 통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형사사법기관에 인지된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케이스워크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한다. 단체로 캠프를 하고 사회성 발달을 위한 교육을 받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개개아동·청소년에 대한 원인의 진단과 처우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에 효과적으로 복귀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때까지는 사례관리 등을 통해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장애아동·청소년의 성매매는 실태 파악을 통해서 꾸준히 관찰해서 성매매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주된 대응책인 위탁교육은 청소년성장 캠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애청소년의 경우 서울의 평화의 샘 한 곳에서만 지원 가능한 실정이다. 성매매피해 장애아동·청소년의 경우에도 주거지 가까운 곳에서 위탁교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성별 특성에 근거한 CYS-Net 지원⁸³⁾

CYS-Net의 허브기관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사회적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가부장적 사회구조 속에서 남자청소년과 여자청소년이 다른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며, 위기경험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서비스 설계에서부터 고려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성별 위기 경험과 서비스 지원요구 등의 수요측면에서의 성별 차이를 파악하고, 아울러 서비스 결과에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CYS-Net 관련하여서 성별 통계의 생산과 활용에 좀더 정책적 유의가 필요하다. 앞으로의 숙제는 CYS-Net을 통해 여자 청소년들이 임신, 낙태, 출산, 성폭력 등과 관련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이를 홍보하여 여자 청소년의 CYS-Net 접근 기회를 늘려야 한다. 또한 위기청소년 지원에 있어서 여자 청소년의 ‘다른’ 경험에 대응하는 다른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83) 이 부분은 류기옥(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과장)으로부터 자문을 받았음.

2)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인프라 강화방안

(1) 가출청소년 이용업소와의 협력활동 강화

가출청소년들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업소와의 연계를 통해 잠재적 피해자를 찾아내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활동이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출아동·청소년들은 이제 물리적 공간을 중심으로 모이기보다는 개인대 개인의 만남으로 개별화된 행동을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pc방이나 찜질방은 가출아동·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장소가 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신들의 지역 업소와의 협력을 통해 가출한 아동·청소년들이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쉼터나 시설, 상담지원이나 의료지원 등 필요한 욕구에 맞는 지원을 연계해 줄 수 있도록 쉼터홍보 게시물 부착을 협조 받거나 또는 성매매를 하려고 하는 청소년들을 상담으로 이끌 수 있는 연계활동을 도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가출청소년쉼터의 다양화

거리청소년을 위해 청소년쉼터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가출아동·청소년의 일부는 집이나 쉼터 어디에도 머물고 싶어 하지 않고 그냥 거리에서 노숙을 하거나 조건만남이 성사되면 모텔 등에서 하룻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생활한다. pc방이나 찜질방, 노래방에 열시이후 청소년 출입을 금지하는 정책은 청소년들의 귀가나 쉼터입소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숙식을 위해 아동·청소년을 성매매로 밀어 넣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귀가나 쉼터입소를 거부한다고 해서 그들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고 각종 위험과 피해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사회의 책임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다. 변미혜(2012: 74)는 야간시간 청소년들이 아무 조건 없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일시쉼터의 기능과 유사하지만 귀가나 쉼터입소를 목표로 하지 않고 기본적 욕구를 해결해 주고 위험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말한다. 이와 유사하게 최순중(2011: 262)은 “기존 쉼터가 원활한 귀가조치를 목적으로 보호나 양육, 자립지원만의 기능을 강조하다보니 노숙

및 배회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역할은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호하고 범죄의 가해 및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칭 “묻지마쉼터”를 제안하였다.

다른 한편 가출아동·청소년의 욕구와 피해정도, 성매매기간 등이 모두 다양하므로 특화된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학업, 취업, 약물, 임신 등 개별적 욕구와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시설의 설치도 필요하며, 이렇게 되면 모든 시설에서 모든 욕구를 제공해야 하는 어려움에서 보다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쉼터 다양화 논의에서 추가할 점은 여러 전문가들이 성매매 피해청소년과 일반가출청소년이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청소년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이 부족하므로 일반 청소년 쉼터나 그룹홈 등에 성매매 피해청소년이 입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경우에 일반청소년들이 성매매 경로 및 방법을 공유하게 되어 일반청소년도 성매매로 유입될 위험성이 높아지고, 또 성매매피해청소년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어렵게 된다는 점에서 성매매청소년과 일반가출청소년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3)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기관의 통합과 지역단위의 원활한 소통과 연계가 필요하다. 조사에 응답해준 현장활동과 전문가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청소년 지원정책 담당기관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의 권익증진과에서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면 지원대상이 되는데 반해, 성보호과에서는 청소년성매매 관련 상담지원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종합지원센터나 위기지원센터 등 위기청소년을 위한 활동을 하는 시설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져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위기청소년과 성매매청소년에 대한 정책은 이원화되어 있으나 사실상 지원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은 이원화되어 있지 않은 데서 나오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 지역단위에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활동가들은 성매매 피해와 그 지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어서 충분하고 적절한 지원을

연계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통합과 법의 일원화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지역단위에서 사례회의와 워크숍 등을 통해 소통과 연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4) 아동·청소년보호정책으로서의 정체성강화

집창촌의 성매매피해자를 대상으로 시작한 ‘시설입소와 직업교육’이라는 성매매피해자지원 및 보호정책의 기본틀은 아동·청소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않아서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예방 및 피해지원 정책으로 적합하지 않은 실정이다.

2010년부터 시작된 대안교육 위탁 운영의 수요의 증가는 청소년성매매피해자에 대한 개별 분석·지원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성매매피해자지원에 대한 정책이 청소년성매매피해자에 특화되어 사례별로 수립되지 않은 이유를 청소년의 성매매피해자의 수가 성인에 비해서 적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매매피해자에 대해서는 단 한 명이 형사사법기관에 인지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시스템은 존재해야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형사사법기관에 인지된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의 수가 실질적인 성매매의 수를 가늠할 수 있는지, 성매매피해청소년을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아동·청소년보호정책에 입각한 대표적 대응책인 대상아동·청소년을 보호처분하는 제도는 별도의 통계조차 잡히고 있지 않고 있다. 이것은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하였을 때 ‘성매매’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보호처우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무부와 경찰청에서 관련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5) 아동·청소년 성매매 업무 체계 일원화

아동·청소년성매매 업무는 타위기관이 필요하다. 성매매를 한 대상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구매한 아동·청소년 모두 다양한 부처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 어느 한 정책부서가 전담할 수는 없다. 대상아동·청소년이라도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가 기본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으며 아동복지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업무와도 관련이 되어 있다. 대상아동·청소년이 소년보호사건 처리절차를 거쳐야할 경우 가정법원에서 이를 담당한다. 다시 말해서 아동·청소년성매매관련 업무는 성매매예방 및 대책의 주제 범주에서 다루기보다는 ‘아동·청소년’이라는 인적 자원을 관장하는 타위기관에서 개입의 정도와 단계를 조율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6) 인터넷 성매매파악을 위한 전담형사사범수사팀의 구축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성매매의 비율을 감안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지원 대책의 첫단추는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에 있다. 하지만 이것은 형사사법기관의 인지가 불가능에 가까운 암수범죄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함정수사 등의 형사정책적 범죄예방요소도입을 검토해야할 것이다. 파악된 성매매아동·청소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여성가족부의 몫이지만 성매매수자에 대한 처벌은 법무부와 경찰청의 몫일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성매매를 파악하는 것은 형사사법기관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2012년에 여가부 중앙점검단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단속실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부처의 업무해태가 아니라 일선 형사사법기관으로 그 역할이 이양되고 일선의 역할이 강화되었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매매 업무가 경찰의 주된 업무내용이 아니며 특히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형사사법기관에 인지될 수 없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사이버수사대를 보유한 경찰조직에 인터넷 성매매파악을 전문적으로 하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를 전담하는 사이버수사팀을 구축하여 상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 한 건이라도 발생된다면 아동·청소년성매매전담 사이버수사팀은 존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7) 아동·청소년 성매매 통계자료 구축

청소년성매매수 유인과 같이 최근에 법제화된 정책은 우선 순위로 통계데이터의 정리 및 구축을 통해 정책평가가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성매매대상청소년이 아동·청소년의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상청소년으로 분류되어 보호사건처리절차를 거쳐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기타의 범죄와는 통계분류가 되어야 한다. 현재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을 받는 미성년자와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는 미성년자만 통계가 잡혀져 있기 때문에 성매매를 통해서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소년의 인원수를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여성가족부 대안교육위탁생의 수를 통해서 가늠할 수 있을 따름이다.

(8) 체계적인 사례관리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대책은 지역사회 내 청소년서비스 기관 간의 협조를 통한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성매매에 이르게 된 유입 경로가 결코 아동·청소년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가출 이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거나, 또래 포주들에 의한 폭력과 강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들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직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대부분의 여자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가 임신, 성병 등의 건강문제를 갖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자 가출청소년보다 여자 가출청소년이 가출 이후 오토바이 배달이나 주유소 근무, 편의점 아르바이트에서 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으므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재정적인 경제 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례관리 계획을 수립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다 가출하여 성매매를 접하게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업수행 능력 향상, 안정적 주거지 제공, 가족관계 회복, 질병치료 개입, 정신건강 관리 등에서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앞서 제시한 미국 일리노이즈 주의 “성매매 아동·청소년 사례관리 체크리스트”를 보면, 초기 인테이크에서 지켜야 할 익명성 보장 약속과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욕구평가가 얼마나 광범위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다. 그 세부내용을 보면, 신변안전 보장 및 의식주 관련 생필품 제공, 스마트폰 및 인터넷 사용 관리, 부모 및 보호자 지원, 의료 및 구강검사 등 복잡한 아동·청소년의 욕구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다루는 관계 기관 담당자들 역시 피해 아동·청소년의

육구와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그들의 성매매 재유입을 막기 위한 진정어린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작은 매춘부”로 봐서는 안 되고, 아동·청소년이 포주나 남성들과 맺고 있는 트라우마적 유대감을 피해자의 자발적인 성매매 원인행위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미국에서 의무적으로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다루는 모든 관계 기관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사전 이해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한 것은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흥미로운 것은 현장의 실무자들이 10대 초반의 어린 아동 성매매자에게는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취하면서, 10대 후반의 여자청소년들에게는 엄격한 이중 잣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미국 당국이 명확히 공무원들이 경계해야 할 잘못된 태도라고 천명했다는 점이다. 어린 아동의 경우에는 성매매수자의 책임이 더 크고 피해아동은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나 10대 후반의 여자청소년은 어느 정도 남성에게 고의적으로 청소년이 접근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된 실무자들의 태도라고 명확히 규정해 놓은 점은 우리나라에서도 실무자들이 다시 한 번 귀 기울여야 할 점이다.

관계 공무원들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유입경로와 피해자의 행동패턴, 그리고 복잡한 개별 육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피해자 중심적 시각”의 아동·청소년 보호정책은 실현될 수 없다. 그리고 성매매 여자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비난하지 않는 효율적인 정책은 마련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다루는 모든 관계 공무원들이 철저한 범죄피해 생존자로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바라 봐야만, 종국적으로 아동·청소년 스스로도 자신에게 일어난 성매매 상황을 일종의 범죄피해 상황으로 인식하게 되고, 사후에 성매매가 발생했을 때 숨김없이 다른 성인이나 외부에 보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고 하겠다.

3.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수자 대책

본 연구의 질문지에 응답한 현장활동가 대부분은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업무 중에서 가장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성매매수자에 대한 처벌과 재범방지 교육을 꼽았다. 무려 70% 정도의 응답자가 이 부분이 효과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 부분은 성매매수자의

처벌을 더 엄격히 하고 교육시간을 늘이는 등 법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른 한편 전자발찌나 화학적 거세제도는 그 중요도와 효과면에서 큰 점수를 받지 못했다.

1) 성매매 예방교육의 강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자에 대한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연령별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사범은 20~30대가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40대의 인원도 적지 않았다. 현재 각 기관을 통해서 성매매예방 교육을 하고 있으나 실직 또는 자영업자의 경우 성매매예방교육을 받을 기회는 없다. 대표적인 성구매자인 남성에게 대한 집합교육이 가장 효율적인 기관은 국방부이다. 따라서 성구매 주요 연령이 밀집될 수 있는 ‘현역군, 예비군, 민방위’에 대한 성매매예방교육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20대가 밀집되어 있는 현역사병에 대한 성매매예방교육을 강화하고 30~40대 예비군훈련 시 성매매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제안한다. 민방위에서도 성매매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성매매예방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하겠다. 20세 미만에게는 성교육을, 20~40세까지는 지속적인 성매매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으면 40세 이상이 되어서 군이 성매매예방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성매매에 대한 시각은 확연하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의 성매매예방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면, 성군기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성매매·성폭력예방교육이수를 각각 연 1회 이상 하고 있다. 군의 특성에 맞는 교육자료를 2013년 말까지 개발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동시교육이 가능하도록 강사진을 구성하고 있어⁸⁴⁾ 일회적이고 요식적인 교육으로 끝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매 휴가, 외출 및 전역 시 성매매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하는 교육 또는 내용의 확인을 거치는 절차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매 휴가 및 외출, 전역 시 관련내용이 든 유인물을 배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군의 특성상 도서오지에는 전문강사가 투입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를 고려한 전문강사의 투입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3년 용역을 통해서 군의 실정에 맞는 성희롱·성폭력·성매매예방교육 교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전문강사의 투입과 군 특성을 고려한

84) 국방부 정보공개청구(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 이용 접수번호 2166698)

교안의 마련을 통해서 성매매예방교육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방부에서는 최근 지침을 통해서 성희롱·성폭력·성매매예방교육을 전상상으로 통계를 살펴볼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상 기록을 마련한다고 한다. 교육이나 훈련과정에서 빠질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성매매예방교육 미이수자를 발굴하여 교육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이 일선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되기 위한 방침으로 인사상 가점을 적립해주기도 하였으나 인사고과에 반영되거나 수당에 반영되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었다. 따라서 성희롱·성폭력·성매매예방 교육의 미이수 시 패널티가 적용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아동·청소년성매매에 관한 내용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유인은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성범죄 및 성매매 예방교육 자료에서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2) 성매수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및 처벌강화

(1) 비자발적 성매매아동·청소년 성구매자의 신고 유인책 마련⁸⁵⁾

모든 정책이 엄벌 일변도로 갈 수는 없다. 아동·청소년성구매시 극형인 사형을 부과한다고 해서 아동·청소년성매매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는 국가가 개입해야할 중요한 범죄행위이지만 범죄행위를 포착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따라서 형사사법 기관에만 기대어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를 근절할 수는 없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당사자에 대한 정책,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중사자에 대한 정책이 우선 되어야한다. 물론 일반인들에 대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인지 시 신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비자발적 성매매아동·청소년에 대한 국가개입 및 발굴이 시급하다. 성구매자를 처벌하는 것보다는 비자발적 성매매아동·청소년을 찾아서 건전한 성인으로 육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비자발적 성매매아동·청소년에 대한 성구매자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이 마련되어야한다. 성매매유인·권유과정, 성매매의 과정에서 '비자발적' 성매매아동·청소년에

85) 현재 성매매 신고 유인책으로는 신고포상금제도를 2012년부터 법으로 규정하여 실시하고 있고, 비자발적 성매매 아동·청소년이 신고할 수 있도록 웹매거진 등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으나 보다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함.

대한 성구매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강력 처벌함과 동시에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여 널리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신고할 시에는 가중처벌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당근책이 될 수 있다. 또한 형벌을 피할 수 있는 형사정책적 보안처분의 마련도 하나의 방법이다. 17~19세의 청소년과의 성매매에 있어서는 청소년인지 아닌지에 대한 인식이 쉽지 않아서 가중처벌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성구매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매매뿐만 아니라 비자발적 성매매에 대한 신고 당근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비자발적 성매매아동·청소년에 대한 성구매자의 처벌강화

성매매 강요뿐만 아니라 포주, 보도방을 통한 비자발적 성매매아동·청소년을 접할 시 신고의무를 법적으로 부과하고 성매매대상아동·청소년이 비자발적임을 인지 시 가중 처벌한다. 비자발적 성매매의 범주에는 성매매금품을 나누어가지는 공범, 성매매의 과정을 원활히 하는 조력인의 존재가 포함된다.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인터넷이 주요 공급루트이다. 1:1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자발적 성매매로 간주한다. 자발적 성매매과정 위탁이라고 할지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도와주는 사람의 존재는 존재자체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학대로 간주되어야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도와주는 사람의 존재를 가장 잘 인식할 수 있는 성구매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가중 처벌하는 것이다.

(3) 특정사회봉사명령의 부과(인터넷 성매매 예방 글 유포 알리미봉사)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성매매아동·청소년에 대한 성구매자에게 성매매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매매예방 글을 보내도록 하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비롯하여 성매매의 가능성이 있는 채팅사이트나 여러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성매매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글을 남기게 하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여 성매매예방에 일조하게 한다. 이는 성구매자에 대한 재범의 가능성을 낮출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사이트에 접근하는, 성매매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매매조건만남을 원하는' 사람에게 감시의 눈초리가 존재함을 알릴 수 있다. 2008월에서 2013년 8월까지 성매매사범이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0세 이하의 성매매 사범의 인력을 '인터넷 성매매 예방 글 유포 알리미'로 봉사하게 한다면 연간 2만 명 이상의 인터넷 활동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성매매 초범은 기소유예를 조건으로 존스쿨을 수강하고 있다. 이에 대한 부가처분으로 특정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4) 성매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단속

본 연구의 심층면접 결과, 성매매 아동·청소년 대다수가 남성 성매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단속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이후 남성이 다시 자신을 협박하거나 자신의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까봐 두렵다고 말한 아동·청소년도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나 무엇보다도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이 제대로 알려져야 할 필요가 크다고 하겠다.

남자 성매수자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과의 성매매로 인해 공식적인 처벌을 받게 된다고 인식하게 되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단절과 신고, 외부 도움 요청 등의 행위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미국 연방 차원에서 모든 형태의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고, 팔레르모 의정서에 입각하여 아동·청소년 성 약취자 기소(Prosecution)를 하나의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아동·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응한 경우에도 무조건 남성 성매수자를 기소하여 강력하게 형사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위 그루밍 법을 기초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발생 이전에 적극적으로 국가가 아동·청소년을 유인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성매수자 단속 및 처벌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청소년 성매수자에 대한 사전 단속 및 유인행위 처벌에 국가가 보다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고, 사후 처벌 양형 수준 역시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밖에 성매수자 관련 대책을 제안하면, 첫째, 성관계 동의의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현행 13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변경하고 아동·청소년과의 어떠한 성적 접촉도 성폭력/성착취로 간주하고 처벌해야 한다. 둘째, 미온적인 성매수 유인행위에 대한 경찰의 수사나 처벌관행에

변화가 필요하다. 경찰은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을 선호하고, 또 피해자의 보호자가 동석하지 않으면 오히려 성매매 대상청소년으로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수사태도와 관행은 변화되어야 한다. 셋째, 성매매로 유인하거나 조장하는 게시물에 대한 신고자 포상제도를 마련하여 네티즌 모두가 성매매 방지와 성 매수자 탐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경찰청에서는 안전드림사이트를 마련하여 인터넷신고체계구축에 힘쓰고 있으나 가출아동·청소년뿐 아니라 활동가들조차도 이 사이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홍보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외국사례에서 본 것처럼 유도수사 기법을 활용하여 성매수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하는 적극적인 예방정책이 필요하다.

4. 정책방안 추진계획(안)

앞의 절에서 제안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들은 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뿐 아니라 성매매정책, 교육정책, 형사정책 등 관련 정책들 간의 긴밀한 연계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정책 과제의 시급성이나 정책 추진의 용이성, 조정 및 추가 검토의 필요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다음 표와 같이 정책추진을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V-4-1 정책방안 추진계획(안)

정책방안	추진시기(안)			관계부처	관련법	
	단기 (2014)	중장기				
		2015~ 2017	2018~			
1.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 및 재유입 방지 대책	(1) 성매매 원인별 유입방지전략 차별화		○		여성가족부 교육부	가정폭력법 성폭력법 성매매법 아청법 학교폭력법
	(2) 가정폭력 방지교육 등 부모교육 실시	○			여성가족부 교육부	학교폭력법
	(3) 성교육 및 성평등교육 확대	○			여성가족부 교육부	아청법
	(4) 스마트폰 성매매 대책 수립		○		여성가족부	아청법
	(5)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제고	○			여성가족부	-
	(6) 학교내 상담사 및 복지사 역할 활성화		○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7) 가출패م 감독 및 관리 강화		○		여성가족부 경찰청	청복법
	(8) 성매매 이전의 1차 예방: 초기 가출 예방 및 왜곡된 성인식 개선	○			여성가족부	아청법
	(9) 성매매 이전/이후의 2차 예방 강화: 초기 성매매 선별·평가 작업 강화		○		여성가족부	아청법
	(10) 성매매 이후의 3차 예방: 성매매 재유입 억제방안 강화			○	여성가족부	아청법
2.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	(1)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피해지원 시스템 구축			○	여성가족부 교육부	성매매법 학교폭력법
	(2) 성매매 피해 청소년을 위한 취업·인문교육 활성화		○		여성가족부	아청법 청복법
	(3) 성매매청소년을 피해자로 보는 인식도 제고	○			여성가족부	-
	(4) 범죄피해자로서의 가출청소년 보호방안 마련	○			여성가족부	청복법
	(5) 사례별 조사분석과 지원		○		여성가족부	아청법

정책방안	추진시기(안)			관계부처	관련법	
	단기 (2014)	중장기				
		2015~ 2017	2018~			
2. 아동·청소년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	(6) 가출청소년 이용업소와의 협력활동 강화		○		여성가족부	-
	(7) 가출청소년쉼터의 다양화		○		여성가족부	청복법
	(8)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	여성가족부	성매매법 아청법 청복법
	(9) 아동·청소년보호정책으로서의 정체성강화		○		여성가족부 법무부 법원	성매매법 소년법
	(10) 아동·청소년 성매매 업무 체계 일원화		○		여성가족부 법무부 법원	성매매법 소년법
	(11) 인터넷 성매매파악을 위한 전담형사사법수사팀의 구축	○			경찰청	-
	(12) 아동청소년 성매매 통계자료 구축	○			여성가족부 경찰청	-
	(13) 체계적인 사례관리	○			여성가족부	-
3.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자 대책	(1) 성매매 예방교육의 강화		○		여성가족부 국방부	아청법
	(2) 비자발적 성매매아동·청소년 성구매자의 신고유인책의 마련		○		여성가족부 경찰청	아청법
	(3) 비자발적 성매매아동·청소년에 대한 성구매자의 처벌강화	○			여성가족부 법무부	아청법
	(4) 특정사회봉사명령의 부과(인터넷 성매매 예방 글 유포 알리미봉사)		○		여성가족부 법무부	아청법
	(5) 성매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단속		○		여성가족부 경찰청 법무부	성매매법 아청법

* 단기 정책방안은 기존 정책 내에서 즉시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과제이며, 중장기 정책방안은 조정·연계·신규 추진이 요구되는 과제로, 후속연구를 통해 실천전략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관련법 약칭 : 가정폭력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법(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청복법(청소년복지지원법)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국가청소년위원회(2006), **국가청소년위원회 정체성 제고 및 성과관리 전략 기본계획 수립**. 서울: 국가청소년위원회.
- 김고연주(2011). 성매매 경험이 있는 십대여성들의 인권침해 사례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11(1), 189-215.
- 김민아(2006). **성매매 관련 해외 정책사례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2006, 15-22.
- 김연주(2011). 성매매경험이 있는 십대 여성들의 사회적 배제연구-폐쇄적 사회 관계망을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11(2), 239-273.
- 김용세(2012). **피해자학**(제5판). 서울: 형설출판사.
- 김혜원(2011). 청소년성매매의 현황 및 특징분석. **청소년학연구**, 18(4), 301-327.
- 민가영(2009). 성매매 청소년의 자발성 논쟁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청소년연구**, 20(1), 173-202.
- 박선영·박찬결(2012). **동남아시아 아동 성매매 관광의 현황과 대책**.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윤환·정혜원(2013). **수도권 청소년 성매매 공간패턴에 관한 연구-탐색적 공간자료 분석의 활용을 중심으로**. 미간행 대한범죄학회 발표자료.
- 박찬결(2009). 청소년성매수 관련 범죄의 개념에 관한 고찰. **소년보호연구**, 13, 249-284.
- 박찬결(2012).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피해자 규정에 대한 검토. **피해자학연구**, 20(1), 317-357.
- 박찬결·송주영(2013).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John School)의 개선방안. **홍익법학**, 14(2),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465-497.
- 변미혜(2012). **청소년성매매 예방을 위한 환경조성 방안**. 2012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 자료, 서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71-76.
- 변화순 외(2011), **성매매방지 종합대책 추진과제 평가·정비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부정주(2010).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의 수사과정과 성구매자 처벌의 현실. **여성과 인권**, 3, 24-33.
- 서울시청 보도자료(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담당) 2013년 4월 25일 조간용.

- 여성가족부(201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서울: 여성가족부. 332.
- 원소연(2012). **사후적 입법평가 사례연구 -독일 성매매종사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중심으로**.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53-55.
- 윤선미·이나영(2012). **창소년의 가출후 경험연구**. **한국여성학**, 28(4), 119-171.
- 이송희(2009).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구**. 군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1.
- 이유진, 강지명, 윤옥경, 조운오(2012).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 I: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은애·김재광(2006). **유럽 10개국 성매매 관련법제 비교연구**.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82-85.
- 이자림(2008). **성매매 피해경험 청소년의 생애사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0(1), 69-92.
- 이춘화 외(2007). **청소년 성보호관련 법제체계 정비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정혜원(2011a). **가출청소년 성매매 유입예방 및 지원방안 I: 가출청소년의 성매매 유입과정**. 서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정혜원(2011b). **가출청소년 성매매 유입예방 및 지원방안 II: 가출청소년 성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서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정혜원, 박윤환(2012). **성매매 피해청소년의 공간패턴 연구**. 서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최순중(2011). **가출청소년 컴퓨터의 새로운 기능에 대한 정책적 모색**. **한국청소년학연구**, 18(6), 247-270.
- 홍봉선(2010). **청소년 성매매의 환경적 요인과 사회적 대체방안**. **여성과 인권**, 3, 8-23.
- 홍봉선·남미애(2009). **성매수 피해청소년의 현황과 사회적 지원체계 점검**.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국방부 정보공개청구(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 이용 접수번호 2166698).
- 법무부 정보공개청구(2011. 10. 21). **성매매신고보상금 운영실적(접수번호 1477465)**
- 유승희 국회의원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보도자료(2013.10.11).
- Agustin, L. M. (2001). Sex workers and violence against women: Utopic visions or battle of the sexes? *Development*, 44, 107-110.
- Canadian Center for Child Protection (2011). Child sexual abuse: It is your business. Canadian Center for Child Protection. Canadian Center for Child Protection.
https://www.cybertip.ca/pdfs/C3P_ChildSexualAbuse_ItIsYourBusiness_en.pdf

- Cloitre, M., Stolbach, B., Herman, J., Kolk, B., Pynoos, R., Wang, J., & Petkova, E. (2009). A developmental approach to complex PTSD: Childhood and adult cumulative trauma as predictors of symptom complexity.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2*, 399-408.
-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 Home Office(2010). *Safeguarding children and young people who may be affected by gang activity*. London: HMSO.
-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2009). *Safeguarding children and young people from sexual exploitation*. London: HMSO.
- Estes, R. J., & Weiner, N. A. (2001).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n the U.S., Canada, and Mexico*. Philadelphia, PA: University of Pennsylvania.
- Hardy, V. L., Compton, K. D., & McPhatter, V. S. (2013). Domestic minor sex trafficking: Practice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professionals. *Journal of Women & Social Work, 28*(1), 8-18.
- Harris, A., & Hanson, R. K. (2004). *Sex offenders recidivism: A simple question*. Ottawa: Solicitor General Canada.
- Herman, J. (1992). Complex PTSD: A syndrome in survivors of prolonged and repeated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5*, 377-391.
- HM Government. (2009). *Safeguarding children and young people from sexual exploitation: Supplementary guidance to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 and Families.
- Home Office(2010). *Statutory Guidance: Injunctions to Prevent Gang-related Violence* London: TS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Adolescents, Center for the Human Rights for Children, Loyola University Chicago. (2011). *Building child welfare response to child trafficking handbook*. Chicago, IL: Author.
- Kalegris, K. (2009). A passionate practice: Addressing the needs of commercially sexually exploited teenagers. *Affilia, 24*, 315-324.
- Kotrla, K. (2010). Domestic minor sex trafficking in the United States. *Social Work, 55*, 181-187.
- Lolyd, R. (2011). *Girls like us: Fighting for a world where girls are not for sale, an activist finds her calling and heals herself*. New York, NY: HarperCollins.

- Michell Kimberly J., Janis Wolak and David Finkelhor(2005). Police posing as juvenile online to catch sex offenders: is it working?. *Sexual Abuse*, 17. 241-267.
- National Works and Government Services Canada(2007). 2006-2007 Formative Evaluation of the National Strategy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from Sexual Exploitation on the Internet. Public Works and Governemtn Services Canada Project number 570-2651.
- Palmer, N. (2010). The essential role of social work in addressing victims and survivors of trafficking. *Journal of International & Comparative Law*, 17, 43-56.
- Pearce, J. J., & Pitts, J. M. (2011). *Youth gangs, sexual violence and sexual exploitation*. University of Bedfordshire.
- Polaris Project. (2011). Comprehensive human trafficking assessment. Washington DC: Author.
- Rand, A. (2009). It can't happen in my backyard: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girls in the United States. *Child & Youth Services*, 31, 138-156.
- Standing Senate Committee on Human Rights(2007). *Children: The silenced citizens*. Standing Senate Committee on Human Rights.
<http://www.parl.gc.ca/Content/SEN/Committee/391/huma/rep/rep10apr07-e.pdf>.
- Standing Senate Committee on Human Rights(2011).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in Canada: the need for national action*. Standing Senate Committee on Human Rights.
<http://www.parl.gc.ca/Content/SEN/Committee/411/ridr/rep/rep03nov11-e.pdf>.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Campaign to Rescue and Restore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2008). Screening tool for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Hardy et al. 17.
[http://www.justice.gov/usao/ian/htrt/law_screen_questions%20\(2\).pdf](http://www.justice.gov/usao/ian/htrt/law_screen_questions%20(2).pdf). (2013. 8. 12).
- U.S. Department of Justice. (2010).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10th ed.). Retrieved from <http://www.state.gov/documents/organization/142979.pdf>.
- Warrington, C. (2010). From less harm to more good: The role of children and young people's participation in relation to sexual exploitation, Youth Policy no 104 June 2010 Special Issue, *Sexual exploitation and trafficking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Contemporary debates(eds)* Pearce J and Melrose M: 62-80.

- 警察庁(2009). 平成20年中のいわゆる出会い系サイトに関係した事件の検挙状況について.
[http://www.npa.go.jp/cyber/statics/backup/h19/pdf02.\(2013.4.22\).](http://www.npa.go.jp/cyber/statics/backup/h19/pdf02.(2013.4.22).)
- 宮台真司(1998). 援助交際. 学陽書房.
- 東京都生活文化局(1996). 中学・高校生の生活と意識に関する調査(中間報告). 東京都生活文化局.
- 文部科学省(2009). 子どもの携帯電話等の利用に関する調査.
[http://www.mext.go.jp/component/b_menu/houdou/_icsFiles/afieldfile/2009/05/15/1266544_2_1.pdf\(2013.4.22\).](http://www.mext.go.jp/component/b_menu/houdou/_icsFiles/afieldfile/2009/05/15/1266544_2_1.pdf(2013.4.22).)
- 福富護(1997). いわゆる『援助交際』に対する女子高校生の意識及び背景要因の分析的研究.
 (財)女性のためのアジア平和国民基金.
- 上野行良・上瀬由美子・松井豊・福富護(1994). 青年期の交友関係における同調と心理的距離.
 教育心理学研究, 42, 21-28.
- 石橋昭良ほか(1997). デートクラブ等に入出入りする少女の実体と性意識. 犯罪心理学研究, 35(2), 48-59.
- 松本良枝(1995). 非行少女の立直り. 大日本図書.
- 矢島正見・宮台真司(1997). 現代若者文化と性行動-援助交際をてがかりに-. 犯罪心理学研究, 35, 154-157.
- 深谷和子・三樹恵子・小原孝久(1998). 援助交際. モノグラフ・高校生98, 52, 13.
- 日本青少年研究所(2008). 高校生の消費に関する調査. 日本青少年研究所.
- 田村雅幸・米里誠司・麦島文夫(1996). 中学・高校生のテレホンクラブへの接触と社会 適応状況
 科学警察研究所報告防犯少年編, 37(1), 48-59.
- 内閣府(2011). 子ども・若者白書. 内閣府.
- 内山純子(1996). 性の商品化についての少女の意識に関する研究. 科学警察研究所報告
 防犯少年編, 37(1), 69-81.
- 総務省(2009). 通信利用動向調査.
[http://www.soumu.go.jp/johotsusintokei/statistics/data/100427_1.pdf \(2013.4.22\).](http://www.soumu.go.jp/johotsusintokei/statistics/data/100427_1.pdf (2013.4.22).)
- [http://en.wikipedia.org/wiki/Child_grooming \(2013. 8. 12\).](http://en.wikipedia.org/wiki/Child_grooming (2013. 8. 12).)
- [http://kassandra-nbg.de/opera/, \(2013. 5. 24\).](http://kassandra-nbg.de/opera/, (2013. 5. 24).)

- <http://kassandra-nbg.de/uber-uns/>, (2013. 5. 24).
- <http://www.bmfsfj.de/BMFSFJ/gleichstellung.did=168444.html>. 독일 여성가족부. (2013. 5. 24).
- <http://www.bmfsfj.de/BMFSFJ/gleichstellung.did=97962.html>. 독일 여성가족부. (2013. 5. 23).
- <http://www.diwa-berlin.de/>, (2013. 5. 23).
- <http://www.ema.or.jp/ema.html>(2013.4.22).
- <http://www.i-roi.jp/about/purpose.html>(2013.4.22).
- <http://www.iwf.org.uk/>. 인터넷감시재단-Internet Watch Foundation 2006년 (2013.4.22).
- <http://www.justice.gc.ca/eng/rp-pr/jr/jr13/p5d.html>. 캐나다 법무부. (2013. 8. 5).
- <http://www.justice.gc.ca/eng/rp-pr/other-autre/clp/faq.html> (2013. 8. 5).
- <http://www.moget.go.kr/>. 여성가족부. (2013. 6. 10).
- <http://www.npa.go.jp/hakusyo/h21/honbun/>. 일본경찰백서 2009. (2013.05.13).
- <http://www.npa.go.jp/hakusyo/h23/honbun/>. 일본경찰백서 2011. (2013.05.13).
- <http://www.pink-baden.de/wirfueruns.htm>, (2013. 5. 24).
- <http://www.pref.gifu.lg.jp/police/horei-shiryō/kitei/tsutatsu-tsuchi/shonen/index.data/tu-h16-syonen459.pdf#search=%E5%85%90%E7%AB%A5%E5%A3%B2%E6%98%A5%E3%81%AB%E4%BF%82%E3%82%8B%E8%A2%AB%E5%AE%B3%E5%85%90%E7%AB%A5%E3%81%AB%E5%AF%BE%E3%81%99%E3%82%8B%E7%AB%8B%E7%9B%B4%E3%82%8A%E6%94%AF%E6%8F%B4%E3%81%AE%E5%BC%B7%E5%8C%96%E3%81%AB%E3%81%A4%E3%81%84%E3%81%A6>. 警察庁生活安全局少年課. (2013.05.13).
- <http://www.rcmp-grc.gc.ca/ncecc-cnccc/index-accueil-eng.htm> (2013. 8. 5).
- <http://www.thinkuknow.co.uk/>. CEOP 인터넷 사이트 (2013. 10. 3).
- http://www.unodc.org/documents/Global_Report_on_TIP.pdf (2013. 8. 5).
- <http://www.vigilancesurlenet.com/en/home/index.phpv>. 인터넷 경계 프로그램. (2013. 8. 5).
- http://www1.g-reiki.net/ishikawa/reiki_honbun/ai10111621.html. (2013.4.22).

부 록

1. 현장전문가 의견조사지(예비조사)
2. 현장전문가 의견조사지(설문조사)
3. 피해 아동·청소년 면접조사지
4. 집단면접 녹취록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수립을 위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각종 조사연구와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연구의 일환으로 성매매 및 위기청소년 관련기관의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기관 유형별로 1명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조사를 의뢰하였사오니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신 가운데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 4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http://www.nypi.re.kr>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 이유진 박사(선임연구위원)

조사담당자 : 이상희 연구원 (02)-6913-8920

※ 다음 모든 문항에 대한 응답은 칸이 모자랄 경우 늘려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I. 기관 현황

1. 현재 귀 기관이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업무를 모두 적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만을 위한 업무가 아니고 연령 구분 없이 아동·청소년을 포함하는 업무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적어 주십시오)
2. 현재 귀 기관이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실효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업무를 적어 주시고 그 이유도 함께 적어 주십시오.
3. 현재 귀 기관이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실효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업무를 적어 주시고 그 이유도 함께 적어 주십시오.

II.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 대책

4. 선행연구에서 가정폭력, 성폭력과 성매매의 중첩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체감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특성과 관련하여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5.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경로로서 인터넷 조건만남이나 학교폭력 피해의 일환으로써의 성매매, 청소년성매매 조직으로의 유입, 가출 및 가출패밀리의 생활비 조달목적 등이 있는데, 이 외에도 다른 경로가 있다면 적어 주시고, 어떤 것이 주된 경로이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적어 주십시오. 특히 가출청소년의 성매매 유입방지를 위한 조기개입으로써 아웃리치 활동이나 청소년쉼터 홍보 등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6.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 예를 들면 PC방이나 노래방, 찜질방 같이 가출한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라든가 성매매를 위한 만남의 장소로 지하철역 인근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 장소적 특성을 반영한 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7. 성매매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이 다시 성매매로 재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8. 현재 CYS-Net이나 청소년쉼터, 청소년동반자 등 가출청소년을 포함한 위기청소년 정책과 성매매 정책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성매매 정책과 위기청소년 정책간의 연계 필요성과 인프라 등의 연계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Ⅲ.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 대책

9.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경우 성인여성 피해자와는 구별되는 차별화된 서비스(아동·청소년만을 위한 별도의 시설이나 지원기관, 학업이나 취업을 위한 서비스 등)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10. 최근 들어 성매매 연령이 초등학생까지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도 체감이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11. 최근 들어 남자 아동·청소년의 '역 원조교제'에 대한 우려가 늘어가고 있는데 현장에서도 체감이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12. 성매매 관련 법률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된 체계입니다. 이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Ⅳ.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자 대책

13.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자에 대해 재범방지 교육 및 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성매매 예방대책으로써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매수자 대책으로써 이외에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14. 현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유인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한 신고 체계로써 '경찰청 안전드림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제도와 신고 시스템이 성매매 예방대책으로써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매매 예방대책으로써 이 외에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의견을 적어 주십시오.

Ⅴ. 종합적인 의견

15. 이 연구의 일환으로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조사의 질문지 구성을 위해 이번 자문결과를 반영하고자 하오니 이상의 질문항목 외에 의견수렴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써 누락된 질문이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16. 그 밖에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관련 정책이나 사업 전반에 대해 건의 및 요구 사항이 있으면 상세히 적어 주십시오.

※ 응답자 특성

성별	
연령(만)	
소속 및 직위	
근무경력(년)	

부록 2 : 현장전문가 의견조사지(설문조사)

ID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수립을 위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각종 조사연구와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의 일환으로 성매매 및 위기청소년 관련기관의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정확한 의견을 개진해주시면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이 조사에 대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해주시고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3년 7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http://www.nypi.re.kr>

주관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 이유진 박사(선임연구위원) 조사담당자 : 이상희 연구원 (02)-6913-8920
조사대행기관 : 마켓비전 컨설팅그룹	실사담당자 : 박나영 (02)-515-7114 회신용이메일 : epoll@daum.net 회신용 팩스 : 0505-810-3291

일반적 질문

소 속 기 관	① 성매매상담소 ③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시설 ⑤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센터 ⑦ 청소년성문화센터 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② 성매매 피해여성 일반지원시설 ④ 성매매 피해여성 그룹홈 ⑥ 성매매 피해여성 대안교육 위탁기관 ⑧ 청소년쉼터
재 직 기 간	()년 ()개월 = 총 ()개월	
직 위	① 기관장 ② 간부(실장, 팀장 등) ③ 직원	
학력 및 전공	① 고졸 이하 ② 대졸 ③ 대학원졸 (전공 :)	
성 별	① 남자 ② 여자	
연 령	만 ()세	

※ ‘아동·청소년 성매매’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말한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연 나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정의를 토대로 이하의 문항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I. 관련 정책과 업무

1. 다음 문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사회의 책임을 열거한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해서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되어 있는 항목 외에 추가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책무가 있으면 기타 의견란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개 선 방 안	우선순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사 및 연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교육 및 계도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자원조달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범죄인 인도 등 관련 국제협력 강화	
⑤ 모든 국민의 사회환경 정비 노력	
⑥ 모든 국민의 아동·청소년 보호, 선도, 교육 노력	
◆ 기타 의견 :	

2. 다음 문항은 성매매 관련기관에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열거한 것입니다. 이러한 업무들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정도를 찾아 ○표해 주십시오.

개 선 방 안	전혀 없음	없 는 편	보 통	있 는 편	매우 있 음
①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② 경찰조사 개입 및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③ 아웃리치 등 피해자 조기발견 지원체계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④ 성매수자 재범방지 교육 실시	①	②	③	④	⑤
⑤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①	②	③	④	⑤
⑥ 성매매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①	②	③	④	⑤
⑦ 피해자에 대한 산부인과 치료 등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⑧ 피해자 보호 및 숙식제공	①	②	③	④	⑤
⑨ 피해자 직업교육 및 취업정보 제공, 공동작업장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⑩ 피해자 교과교육 및 취학서비스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⑪ 의식향상교육, 성교육, 인권교육, 문화활동 등 프로그램 제공	①	②	③	④	⑤

개 선 방 안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안함	보통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① 가정폭력 및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② 성교육 및 성평등 교육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③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치료	①	②	③	④	⑤
④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대안학교 및 자립생활관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⑤ 위기가정 개입 및 가해 가족 분리조치	①	②	③	④	⑤
⑥ 쉼터 등 시설입소 외 의식주 지원방안의 다양화	①	②	③	④	⑤
⑦ 학교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인자 요인검사 실시	①	②	③	④	⑤
⑧ 직장 및 군부대, 공직요원 대상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	①	②	③	④	⑤
⑨ 자녀 출생신고, 자녀 초·중고 입학 시 부모교육 의무화	①	②	③	④	⑤
◆ 기타 의견 :					

4. 다음 문항은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원인 및 방법을 열거한 것입니다. 주된 경로라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되어 있는 항목 외에 다른 경로가 있으면 기타 의견란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4-1.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원인

유 입 원 인	우선순위
① 가출 후 생활비 마련	
② 가출패밀리의 생활비 마련	
③ 임신중절이나 성형수술비 마련	
④ 유흥비 마련	
◆ 기타 의견 :	

개 선 방 안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안함	보통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① 건강한 피임법 등 현실에 맞는 성교육 실시	①	②	③	④	⑤
② 성매매 유입특성을 고려한 상담 및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③ 사이버 상담 및 사이버 아웃리치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④ 유흥업소 및 보도방 단속·처벌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⑤ 인터넷 성매매 전담수사팀 및 모니터링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⑥ 유해사이트 차단 및 신고인센티브제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⑦ 인터넷 유해게시물 삭제 등 업체의 자율정화 노력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⑧ 아웃리치 전담인력 보강 및 경찰의 협조	①	②	③	④	⑤
⑨ 가출 집결지에 대한 지속적인 아웃리치 실시	①	②	③	④	⑤
⑩ 드롭인센터 확대 및 쉼터의 다양화	①	②	③	④	⑤
⑪ 가출청소년쉼터에 대한 공식적인 홍보 실시	①	②	③	④	⑤
⑫ 가출청소년쉼터의 입퇴소 절차 및 규칙 간소화	①	②	③	④	⑤
⑬ 숙박시설 출입 및 원룸이나 오피스텔 임대시 부모동의 의무화	①	②	③	④	⑤
◆ 기타 의견 :					

5. 다음은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소적 특성을 반영한 대책을 열거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책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유입을 막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동의하는 정도를 찾아 ○표해 주십시오. 제시되어 있는 항목 외에 추가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기타 의견란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개 선 방 안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안함	보통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① 가출 집결지 길거리 상담 및 심야 아웃리치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② 원룸 등 아웃리치 장소의 다양화	①	②	③	④	⑤
③ 가출 집결지 현황조사 실시	①	②	③	④	⑤
④ 지하철역 인근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롭인센터 확충	①	②	③	④	⑤
⑤ 이동 상담버스 확충	①	②	③	④	⑤
⑥ 청소년에게 24시간 개방된 문화공간 확충	①	②	③	④	⑤
⑦ 빈집 등 우범장소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경찰의 순찰	①	②	③	④	⑤
⑧ PC방 등 업소에 청소년쉼터나 상담전화 안내문 게시 의무화	①	②	③	④	⑤
⑨ PC방 등 업소에 대한 교육·홍보 및 자율정화 노력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 기타 의견 :					

6. 다음은 성매매 피해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이 다시 성매매로 재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정, 학교, 지역사회, 국가 차원에서 해야 할 노력을 열거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책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로의 재유입을 막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동의하는 정도를 찾아 ○표해 주십시오. 제시되어 있는 항목 외에 추가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기타 의견란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개 선 방 안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안함	보통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①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가족상담 및 부모교육 실시	①	②	③	④	⑤
② 가정복귀가 어려운 아동·청소년에 대한 주거지원	①	②	③	④	⑤
③ 학교에서의 낙인 및 2차 피해 예방	①	②	③	④	⑤
④ 상담교사나 학교사회복지사의 지속적인 관심 및 1:1 사후관리	①	②	③	④	⑤
⑤ 지역사회 청소년 이용공간 확충	①	②	③	④	⑤
⑥ 지역사회 공동체 기능 회복	①	②	③	④	⑤
⑦ 왜곡된 성의식 및 성문화 개선	①	②	③	④	⑤
⑧ 지역사회 유해업소 단속 및 정화	①	②	③	④	⑤
⑨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자활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⑩ 청소년쉼터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⑪ 성매매 단속 및 성매수자 처벌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⑫ 성매매 아동·청소년에 대해 피해자로서 처우	①	②	③	④	⑤
◆ 기타 의견 :					

7. 다음 문항은 현재 분리 운영되고 있는 CYS-Net이나 청소년쉼터, 청소년동반자 등 가출청소년을 포함한 위기청소년 정책 간의 연계방안을 열거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책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찾아 ○표해 주십시오. 제시되어 있는 항목 외에 추가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기타 의견란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개 선 방 안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안함	보통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① 위기 아동·청소년 및 성매매 관련 법률의 통합	①	②	③	④	⑤
② 위기 아동·청소년 및 성매매 관련 정책부서의 통합	①	②	③	④	⑤
③ 아동·청소년의 위기상황에 따른 단계별 지원시스템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④ 관련기관 실무자 사례회의·워크숍을 통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⑤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기관의 성매매 이해도 제고	①	②	③	④	⑤
⑥ 각 지역 단위의 성매매전담요원 양성·배치	①	②	③	④	⑤
⑦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를 통한 협력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 기타 의견 :					

Ⅲ.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 대책

8. 현재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중에 성인여성 피해자와 구별하여 아동·청소년 피해자만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는 시설은 성매매 피해청소년 지원시설뿐입니다. 다른 성매매 관련기관들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 피해자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청소년 성매매상담소, 성매매 피해청소년 자활지원센터 등)

- ① 전혀 필요 없음 ② 별로 필요 없음 ③ 보통 ④ 약간 필요함 ⑤ 매우 필요함
9. 최근 들어 성매매 연령이 초등학생까지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어느 정도 체감이 있습니까? 동의하는 정도를 찾아 ○표해 주십시오.
- ① 전혀 동의 안함 ② 별로 동의 안함 ③ 보통 ④ 약간 동의함 ⑤ 매우 동의함

9-1. 다음 문항은 성매매의 자연령화 현상에 대한 대책을 열거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책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찾아 ○표해 주십시오. 제시되어 있는 항목 외에 추가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기타 의견란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개 선 방 안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안함	보통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① 조기 성교육 및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①	②	③	④	⑤
② 조기 미디어 교육 실시	①	②	③	④	⑤
③ 인터넷에서의 아동보호를 위한 다기관협력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④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활성화를 통한 공동체 기능 회복	①	②	③	④	⑤
⑤ 의제기간 연령 상향조정(13세미만→16세 또는 18세 미만)	①	②	③	④	⑤
⑥ 학대아동의 부모 분리조치 및 친권박탈	①	②	③	④	⑤
◆ 기타 의견 :					

10. 최근 들어 남자 아동·청소년의 '역 원조교제'에 대한 우려가 늘어나고 있는데 현장에서 어느 정도 체감이 있습니까? 동의하는 정도를 찾아 ○표해 주십시오.

- ① 전혀 동의 안함 ② 별로 동의 안함 ③ 보통 ④ 약간 동의함 ⑤ 매우 동의함

11.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법률 규정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된 체계입니다.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 관한 사항인 경우 하나의 법률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 없음 ② 별로 필요 없음 ③ 보통 ④ 약간 필요함 ⑤ 매우 필요함

11-1. 이원화된 법체제로 인해 현장에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데 애로사항이나 불편함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

Ⅳ.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자 대책

12.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자에 대해 재범방지 교육 및 치료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성매매 예방대책으로써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의하는 정도를 찾아 ○표해 주십시오.

① 전혀 동의 안함 ② 별로 동의 안함 ③ 보통 ④ 약간 동의함 ⑤ 매우 동의함

12-1. 다음 문항은 아동·청소년 성매매 대책으로써 성매수자 대책을 열거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책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찾아 ○표해 주십시오. 제시되어 있는 항목 외에 추가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기타 의견란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개 선 방 안	전혀 동의 안함	별로 동의 안함	보통	약간 동의함	매우 동의함
①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② 성매수자 교육 및 치료 강화 및 시간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③ 교육 및 치료와 벌금형의 병과	①	②	③	④	⑤
④ 지속적인 보호관찰	①	②	③	④	⑤
⑤ 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제도	①	②	③	④	⑤
⑥ 전자발찌 제도	①	②	③	④	⑤
⑦ 화학적 거세 제도	①	②	③	④	⑤
⑧ 성매수자에 대한 연구 및 진단방법 개발	①	②	③	④	⑤
⑨ 왜곡된 성문화 개선 및 인권의식 제고	①	②	③	④	⑤
◆ 기타 의견 :					

13. 현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유인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한 신고체계로써 '경찰청 안전드림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제도와 신고시스템이 성매매 예방대책으로써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의하는 정도를 찾아 ○표해 주십시오.

- ① 전혀 동의 안함 ② 별로 동의 안함 ③ 보통 ④ 약간 동의함 ⑤ 매우 동의함

V. 종합적인 의견

14. 그 밖에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관련 정책이나 사업 전반에 대해 건의 및 요구 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적어 주십시오.

♡ 감사합니다 ♡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조사

조사에 대한 안내

안녕하십니까?

이 조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책」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각종 조사연구와 정책개발 업무를 담당·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면접조사입니다. 정확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해주신 내용은 연구에만 활용되고, 개인적인 신상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I.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입 관련 질문

1. 처음 성매매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가출 후 생활비, 가출패밀리 생활비, 임신중절 비용, 성형수술 비용, 유흥비 마련 등)
 - 그 당시 연령은?
 - 어떤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게 되었는가?
 - 그것은 자의에 의한 것이었는가? 자의적인 것이라면 성매매가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 타의에 의한 것이라면 거절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2. 성매매를 하는 동안 겪었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임신, 성병에 대한 두려움,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두려움 등)
3. 성매매를 중단하지 못하고 계속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성매매를 그만 두기 위하여 본인은 무엇을 해보았는가? 그러한 방법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 성매매를 중단하기 위해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 성매매를 중단하기 위해 필요한 외부의 도움은 무엇인가?
4. 성매매를 하게 되는 주된 방법은 무엇입니까? (인터넷 조건만남, 성매매조직, 업소, 인터넷 사이트, 스마트폰 어플, 스팸메일 등)
5. 성매매 경험업소는? (보도방, 키스방, 대딸방, 마사지업소, 노래방도우미 등)
6. 성매매를 위한 만남의 장소로 주로 이용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홍대주변 등 구체적인 지역이나 지하철역 같은 장소)
7. 성매매가 이루어진 장소는? (모텔, 자동차, 성매수자의 집, 룸카페 등)
8. 가출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가출한 후 주로 이용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주로 노는 장소와 주로 숙식하는 장소는? (PC방, 노래방, 찜질방, 모텔, 원룸 등)
9. 가출이 성매매 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0. 가출팸과 생활한 경험은? 어떻게 가출팸을 구하는가? 몇 명 정도로 구성하는가? 남녀가 함께 생활했는가?
11. 가출팸과 생활한 거주지는? (원룸, 모텔, 고시원, 단독주택 등)
12. 가출팸 생활로 인해 성매매 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3. 그동안 살아오면서 원치 않은 신체적 폭력이나 성적인 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 신체적 폭력 혹은 성적 폭력을 당한 이후 본인에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 신체적 폭력 혹은 성적 폭력이 본인이 가출하거나 성매매를 하게 된 것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신체적 폭력 혹은 성적 폭력 피해청소년들에게 어떤 도움이나 대책이 주어진다면 가출이나 성매매로 연결되는 고리를 차단할 수 있다고 보는가?

II.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 관련 질문

14. 성매매를 경험하고 이 일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사람이나 기관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나 기관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았습니까?
15. 성매매 피해 여성을 돕기 위하여 각 지역마다 성매매보호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요?
- (이러한 기관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라면) 어떤 방법을 통한다면 이러한 기관들이 있다는 것을 성매매피해 청소년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요?
 - (시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16. 관련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기관의 담당선생님이 사생활 보호나 익명성 보장에 대한 안내를 받거나, 동의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까?
17. 성매매와 관련하여 도움을 주는 기관에 대해 좀 더 도움을 받고 싶거나 바라는 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18. 성매매와 관련된 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 성인 피해여성과 함께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함께 이용함으로써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까?

19. 도움을 받은 기관이 성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예: 성매매상담소, 성매매 피해쉼터)이었습니까? 청소년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쉼터)이었습니까? 둘 다 이용한 경험이 있다면 양자의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20. 성매매를 경험하고 가장 괴로웠거나 현재까지 괴로운 점은 무엇입니까?
21. 그 밖에 도움이 필요한 점이 있습니까?
- 자신의 신변안전에 대한 생각과 욕구
 - 주거확보에 대한 욕구
 - 신체적, 정신적 건강 및 치료에 대한 욕구
 - 부모나 그 외 보호자와의 안정적인 관계에 대한 욕구
 - 그 밖의 바라는 점

Ⅲ.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자 관련 질문

22. 또래 포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또래 포주를 어떻게 알게 되었으며, 이들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또래 포주들을 근절하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3.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하는 성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을 예방하려면 이런 성인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4. 현재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유인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한 신고체계로써 '경찰청 안전드림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와 신고시스템에 대해 알고 있거나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25. 그 밖에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관련 정책이나 사업 전반에 대해 건의 및 요구 사항이 있으면 상세히 말씀해주시요.

부록 4 : 집단면접 녹취록

1) Group 1 : 성매매를 경험한 아동·청소년 그룹 1 (길거리 섭외)

진행자: 지금부터 우리가 토론회 하겠습니다. 거수로 손을 들고 명수를 헤아리고 넘어갈게요.

처음 성매매를 하게 된 이유? 생활비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참여학생: 모두 손들었음. 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진행자: 가출을 해 본 사람?

참여학생: 모두 다

진행자: 가출해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해 본 사람? 가출하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누구랑 같이 살았어요? 가출했을 때 어떻게 살았어요?

참여학생3: 그냥 친구랑 같이 살았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많이 지냈고

진행자: 친구라면 여자 친구들?

참여학생2: 가출한 여자애들도 있었고 남자애들도 있었어요.

진행자: 그러면 어디서 살았어요?

참여학생5: 돈이 있을 때마다 여관이나 모텔 같은 곳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진행자: 대부분 가출했을 때 친구들이랑 같이 살았어요?

참여학생: 네.

진행자: 2번째 학생은?

참여학생2: 저도 여기 있는 친구들과 같이 살았어요.

진행자: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은?

참여학생1: 그냥 가출한 애들이랑 같이 돈 모아서 잘 곳 구해서 살았어요.

진행자: 가출해서 친구랑 살지 않고 남자친구들과 무리 지어서 살아 본 사람은?

참여학생4: 저요. 애랑 저랑 모르는 사람들이랑 같이 지냈었거든요. 가출팸 생활을 했거든요

진행자: 가출팸 생활을 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였어요?

참여학생4: 돈이 없는 거요. 돈이 항상 필요하니까

참여학생2: 돈 마련해야 하는 거요.

진행자: 그러면, 그거는 남자애들이 시킨 거야?

참여학생3: 그냥 서로서로 나도 했으니까 너도 해라 이런 식이었어요.

참여학생2: 아니요. 돈 벌려고 남자들 몰래 한 거였어요. 남자애들이랑 같이 지내는데 그런 걸 알면 남자애들한테 창피하니까 남자애들 몰래 한 거예요. 잠시 어디 갔다 온다고 하고 했어요.

참여학생6: 남자애들 몰래 한 거예요. 잠시 어디 갔다 온다고 하고 했어요.
남자애들한테 창피하니까

진행자: 그러면 그 남자애들이랑 같이 살 생활비 마련을 위해서?

참여학생1: 아니요. 우리 각자 먹고 살 길을 위해서 그랬어요.

참여학생3: 각자

진행자: 이런 성매매와 관련해서 도움을 받은 사람이나 기관은? 내가 가출했거나 어려움에 빠졌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은?

참여학생2: 처음에 1388에서 도움을 받았어요.

진행자: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게 1388이었어요?

참여학생1: 그랬던 것 같아요.

참여학생2: 저는 아니요. 1388은 부모님에게 다 연락하잖아요. 쉼터랑 기관에서 원래 다 연락해요.
그래서 못 가는 거죠.

참여학생5: 비밀을 보장해줘야 가는데

진행자: 쉼터도 연락을 해요?

참여학생3: 네. 쉼터도 연락 다 해요. 하지 말래도 몰래 해요.

진행자: 그래도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가장 도움이 됐던 기관을 이야기 해보면 1388이나 쉼터가 도움이 됐다는 거죠.

참여학생: 네.

진행자: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해서 각 지역마다 보호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참여학생: 몰라요.

진행자: 어떡하면 보호시설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참여학생2: 홍보요.

참여학생2: 홍보요. 길거리에서 하는 거요.

진행자: 그 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홍보를 할 수 있을까?

참여학생3: 여고 앞에서 홍보하는 거요. 사람들 많은 곳에서 홍보하는 거요.

참여학생5: 나는 그런데서 전단지 쥐도 다 버리는데.. 사람들이 와서 설명을 해주고 그래야할 것 같아요.

참여학생4: 설문조사가 좋을 것 같아요.

참여학생1: 사탕이나 먹을 것 준다고 하면 애들 거의 다 할 것 같아요. 어린애들은 사탕 준다고 하면 다 할 것 같아요.

참여학생2: 어린애들 아니더라도 우리학교 앞에서는 그냥 다 하던데

진행자: 여고시설 앞에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런 시설들이 있으니까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이용할 수 있다는 홍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경험자 입장에서 여고시설이나 학교 앞에서 홍보를 한다면 들을 것 같아요?

참여학생5: 들어요. 대부분 다.

진행자: 들을 것이다 손드세요.

참여학생: 6명 중에 2명 손들었음.

진행자: 나머지는 안 들었네요?

참여학생2: 사탕 받고 그냥 갈 것 같아요.

참여학생3: 그래도 기억은 날 것 같아요.

참여학생2: 그때는 그냥 가더라도 나중에 기억은 날 것 같아요.

참여학생6: 아니야. 사탕 준다고 해서 설문조사하면서 모여 있으면 애들끼리 궁금해서 다 부르고 모일 것 같아.

진행자: 그럼, 구제기관이 있다는 걸 홍보하면 그 구제기관에 용기를 내서 갈 수 있어요?

참여학생: 안 갈래요.

진행자: 왜요? 위험에 빠지는 것보다는 낫잖아.

참여학생2: 창피해서요.

참여학생5: 믿을 만하지도 않구요.

진행자: 믿을 만하지 않다고?

참여학생2: 어머니 가족들에게 연락할 수 있으니까

참여학생1: 그 쪽에서 가족들에게 다 말해버리니까 그게 싫어서요. 우리를 보호해주려고 있는 시설인데 부모님에게까지 연락하는지 모르겠어요.

진행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모님, 보호자에게 꼭 연락을 하게 되어있어요.

참여학생2: 그래도 성매매 한 걸 부모님에게 말하는 건 좀 싫어요.

진행자: 부작용이 다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도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부모님에게 알려질까 봐서 인가요?

참여학생: 모두 네. 거수 6명 모두

진행자: 관련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 있는데 그 기관 담당자나 선생님이 사생활 보호나 익명성으로 안내를 받거나 동의서를 작성해준 적이 있어요? 익명을 보장해준 적이 있어요?

참여학생2: 1388에서요. 성매매는 비밀로 해줘요

진행자: 실질적으로는 그걸 밝히지 않고 도와주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 도움만 받고 이게 근절이 되지 않잖아요. 비밀로만 하게 되면 비밀로 도와주고 한 번 도움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습관이 되지 않을까? 습관이 될까봐 부모님께 연락하는 거예요. 성매매나 그런 쪽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본다면 좋잖아요. 그런데 비밀로 하게 되면 그걸 계속 비밀로 이용하게 될까봐 부모님께 연계하는 거거든.

참여학생2, 3, 1, 5: 그렇지만 저희는 그게 싫은 거예요. 다시는 그쪽으로 안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더 못 믿게 되죠. 그러면 또 가출하게 되는 거죠.

진행자: 비밀로 안 해주면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부모님과 갈등이 커지게 되고 못 믿고
가출하게 되고, 1388을 이용하지 않게 되고 악순환이 계속 된다는 말이지?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

참여학생: 모두 동의

진행자: 가출패를 형성하면 여관이나 고시원, 원룸에 가서 살 때 그러면 원치 않는 폭력이나
성적인 피해를 당해본 적이 있는 사람?

참여학생: 세 사람 손들었음.

진행자: 그 폭력의 대상자가 누구였어요? 모르는 사람이었던 사람 손들어보세요.

참여학생: 네 사람 손들었음.

진행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거네요? 신고했어요?

참여학생1: 아니요. 저는 그때 안한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돈 벌러 온 거 아니냐며 폭력을 쓰며
때렸어요. 그 때 배를 맞았는데 숨을 못 쉬었는데요. 숨을 또 쉴만하면 때리고 또
때리고 그랬어요. 또 비디오 동영상도 찍기도 했구요. 폭력을 당하다가 나중에는
전화 받으러 나간다면서 10만원 주고는 제 핸드폰 가져가서 제 카톡 들어와서 자기랑
대화한 내용 모두 삭제하고 제 폰에 저장되어 있던 전화번호까지 삭제해 버리고
그냥 갔어요. 어이가 없어서 바로 따라 나갔는데 없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몸살
났어요.

참여학생5: 애는 비디오도 찍었대요

진행자: 또 다른 사람은?

참여학생6: 제가 폭력을 당한 거는 아니고 저랑 같이 가출한 애가 있었는데 인터넷으로 알아보고
만났어요. 그 아저씨가 처음엔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간다고 해서 차를 타고 갔는데
이상한 공원 같은 곳으로 갔어요. 사람, 차도 없는 그런 곳으로요. 친구가 여기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그 아저씨가 친구 목에 갑자기 칼을 대는 거예요. 칼을 대고

말 안 들으면 죽는다며 협박하고 눈을 테이프를 둘 다 다 가리고 제 옆에 친구는 뭐라고 하다가 머리 한 번 맞았어요. 저는 생리중이여서 넘어갔고 그 아저씨랑 친구가 하고 풀러났어요.

진행자: 신고 했어요?

참여학생6: 아니요.

진행자: 왜?

참여학생6: 핸드폰번호도 모르고 눈을 가리고 있었고 차번호도 몰라서요.

진행자: 그런 경험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참여학생1: 경찰에 신고하는 건 같이 있으니까 신고를 못하죠.

참여학생5: 같이 있으니까 신고를 못하죠. 불법인데

진행자: 또 다른 사람은?

참여학생2: 저는 그때 성매매를 안했거든요. 저쪽에 앉아있었고 친구가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절 쳐다보는 거예요. 저더러 옷을 벗으래서 싫다고 하다가 위에만 벗는다고 했더니 속옷까지 벗으래요. 안한다고 했다가 그 사람이 욕했어요.

참여학생4: 나는 욕하고 싸우다가 그 사람이 날 때렸어요.

참여학생6: 우리는 돈도 훔쳐갔어요. 화장실 간 사이에 도망갔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뭘 줌 사러 밖에 나간다고 해서 이 친구랑 제가 옷도 안 입고 옥상으로 달려 올라갔는데 나중에 우리 지갑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었고 그렇게 도망쳤어요.

진행자: 도움을 받은 기관이나 성매매 전문으로 하는 기관 두 군데가 있어요. 성매매 상담소와 성매매 피해쉼터가 있어요. 이 두 기관 중 한 기관을 이용해본 적이 있는 사람?

참여학생2: 청소년 쉼터요

진행자: 청소년쉼터의 장점이 뭐예요?

참여학생2: 밥도 주고 재워줘요.

진행자: 단점은요? 부모님께 연락하는 거예요

참여학생2: 그거랑 외박도 안 되고 모르는 애들이 모이다 보니 다 싸워요.

참여학생4: 네. 들어온 애들끼리 싸워요.

진행자: 그러면 가장 절실한 도움이 뭐예요? 가출하거나 이러한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면 좋을까요 성매매를 안 할 수 있을까?

참여학생3: 우리끼리 살 수 있는 집

참여학생1: 생활비요.

참여학생3: 생활비 같은 거.

진행자: 생활비나 용돈은 너무 광범위해요.

참여학생3: 방이 많아서 우리가 들어온 만큼 넣었으면 좋겠어요.

진행자: 방이 많아서 이런 친구들만 한 방에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참여학생2: 네. 밥도 따로 먹구요.

진행자: 사실 컴퓨터에서 학교도 다닐 수 있는 곳이 있대요.

참여학생2: 컴퓨터에서 학교 다니면 정말 힘들어요.

진행자: 왜요?

참여학생2: 너무 멀어서 힘들어요.

진행자: 컴퓨터에서 데려다 주지 않아요?

참여학생3: 컴퓨터에서 안 데려다줘요.

참여학생2: 그 곳에서 버스도 다 대준다 해놓고..

참여학생1: 부모님에게 받은 돈으로 우리 보내 주는 거면서..

참여학생2: 학교 안가면 강제로 퇴소당해요. 내 친구 퇴소 당했어요.

진행자: 가장 절실한 건 주거시설이란 말이네요? 가장 나이가 어린 친구는 가장 절실한 게 뭐예요? 가출해봤어요?

참여학생: 네

진행자: 가장 절실한 게 주거시설인가요?

참여학생4: 저는 씻는 거요.

진행자: 저는 솔직하게 가장 절실한 게 먹는 거에 대한 내용인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용돈이 없으니까 못 먹잖아. 그래서 가장 절실한 건 먹는 것일 꺼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주거는 친구 집으로 가는 것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주거시설이라는 거네요?

참여학생4: 먹는 것보다는 씻고 잠잘 자리가 필요해요.

진행자: 근데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했는데 성매매 경험자로서 가장 절실한 도움은 뭐예요? 주거나 그런 것을 빼고 어떠한 도움을 줬으면 좋겠어요?

참여학생1: 성매매를 하면 돈 받고 안하면 돈 못 받자나요. 돈인거죠.

참여학생6: 돈 때문에 저희가 이거 하는 거잖아요

진행자: 왜 돈이 필요해요?

참여학생5: 옷도 사구요. 부모님이랑 가족들이 용돈 잘 안주잖아요.

진행자: 용돈은 안 쓰면 되자나요.

참여학생2: 용돈을 안 쓸 수가 없죠. 나가면 다 돈인데요.

참여학생4: 그냥 집에 있기 싫으니까 나가는데 돈을 안 쓸 수가 없죠. 어디 갈 때 버스비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들이 먹으면 나도 먹고 싶으니까 먹고 그러느라 돈이 필요한 거죠. 밖에 나가면 다 돈이 드니까.. 또 옷보면 옷 사고 싶고 화장품 보면 화장품도 사고 싶고..

진행자: 옷이나 화장품은 안사도 되는데 버스비 같은 거는 필요하기는 하겠네요. 집에서 부모님이 한 분만 계시는 사람은?

참여학생: 다섯 명 손들었음.

진행자: 그러면 제일 막내만 부모님만 모두 계시는 거네요?

참여학생: 네.

진행자: 그러면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안전책이나 부모님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참여학생1: 전 부모님에게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관심을 안 가져주는 게 좋아요. 관심이 너무 심하니까 동생보다 저에게 집착이 엄청 심해요.

참여학생2: 나는 아빠까지도 예전보다 더 그런다.

진행자: 집착이 심해서 그렇다는 건가요?

참여학생5: 같이 있어도 계속 말하니까 더 짜증나요.

참여학생2: 저도 말시키면 짜증나요.

참여학생5: 계속 그러니까 말시켜도 짜증나고 말 안 시켜도 짜증나고 엄마만 보면 계속 짜증나요

진행자: 옆 학생은 엄마랑 같이 안 살아요? 엄마가 옆에 있으면 짜증나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참여학생2: 엄마랑 살다가 나가라서 아빠가 저를 키워줬어요. 등본상에는 엄마가 되어있는데..
원룸에서 아빠가 절 키워줘요

진행자: 그러면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것 말고 우리 4번 학생은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안전책 중 바라는 것 있어요?

참여학생4: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 집착이 너무 심해서..

진행자: 부모님이 신경만 덜 써준다면 학교 잘 다니고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여학생1: 네.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엄마 아빠는 계속 그래요.

진행자: 근데 부모님이 집착을 안 한다고 여태까지 만나던 친구들 안 만나고 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니죠?

참여학생2: 네.

참여학생1: 그래도 엄마가 집착하니까 만나다 걸리면 만난다고 뭐라고 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래요.

참여학생2: 근데 그게 당연한 거잖아.

참여학생1: 당연하긴 당연한 건데 엄마 아빠는 애(친구)는 안 좋은 아이구나 너가 그런 건
개를 만나서 내 딸이 그런 거라고 생각한다고.

참여학생2: 자기 딸이 그 친구를 흘트려 놓는다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참여학생4: 다 자기 딸이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참여학생1: 우리 엄마는 이제야 내가 나쁜 애라고 한다.

진행자: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또래 포주를 만나본 사람? 성매매 하면 포주를 접해 본 사람? 나한테 성매매를 시키는 사람?

참여학생: 없어요.

진행자: 그러면 현재 성매수하는 행위를 유인하는 인터넷 사이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용해본 적 있는 사람?

참여학생: 두 사람

진행자: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본 적 있어요?

참여학생2: 채팅으로요.

진행자: 사이트 가입을 해서 채팅을 했어요?

참여학생5: 아니요. 가입보다는 이거하는 사람한테 아이디 비밀번호를 빌려서 했어요.

참여학생1: 큰 언니 꺼 몰래 사용했어요.

참여학생2: 미성년자 주민등록번호를 치면 안돼서요. 성인 것으로 빌려서 꼭 해야 해요.

진행자: 성인 것을 빌려서 채팅을 해봤다는 거죠?

참여학생: 네.

진행자: 채팅을 해서 만난 사람하고 성매매가 이루어졌다는 거지? 그러면 그게 불법이잖아요. 그런 불법에 대해서 누가 위협적이거나 그런 걸 하는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너희가 하는 게 지금 불법이니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신고를 당했다든지 하는 것?

참여학생4: 조건만남을 할 때요. 만나기로 했는데 저희가 좀 늦으면 신고한다고 하고 제 사진 캡처했다고 협박해요.

참여학생6: 신고한다고 해서 만났는데요. 그 때도 칼 사건 그 아이랑 같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스무 한 살짜리를 구했어요. 처음에 혼자 온다더니 둘이 온 거예요. 저는 그냥 따라 간 건데요 갑자기 노래방 데리고 가서 니들 우리 누군지 아냐고? 이러면서 삼촌이 이런 거 잡는 경찰인데 너네 경찰에 신고해도 되냐고? 협박했어요. 아직 개네들이랑 안했으니까 신고하려면 해보라고는 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신고 안 할 꺼냐고 물으니

일단 노래방 가면 된다고 해서 갔어요. 친구랑 그 사람이랑 노래방 계단에서 했고 그 사람은 도망갔어요.

참여학생5: 노래방 안에서?

참여학생6: 아니 계단에서 둘이..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

진행자: 거의 마지막이에요.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지원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의사항 있으면 이야기 하세요. 가정에 바라는 건 아까 충분히 이야기 했고 학교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참여학생: 대답 없음

진행자: 학교에 바라는 건 없고 사회나 국가에 바라는 점은?

참여학생: 아픈데 있으면 병원도 데려다 줬으면 좋겠어요.

참여학생: 저도 그래요.

참여학생: 성병, 병을 치료해 주면 좋겠어요.

진행자: 컴퓨터 가면 병원에 데리고 가죠? 그러면 무료예요.

참여학생: 그런 건 몰랐어요.

진행자: 컴퓨터 가지 않거나 신고도 안했는데 무조건 병원이 무료라면 병원도 운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사유가 있으면 무료로 해주는 시스템으로 우리나라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가면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요. 병원 갈일이 있는 사람?

참여학생2: 저요.

진행자: 병원 갈 일이 있으면 일상생활에서 병원을 갈 수가 없을 때에 상담소나 컴퓨터가면 무료로 연결해줘요.

참여학생1: 컴퓨터에 가봤자 부모님께 연락하게 되는 거 싫어요.

진행자: 그런 걸 익명처리로 해달라는 거네요? 그 다음에 이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예요?

참여학생6: 나쁜 사람 만날까봐 두려웠어요.

참여학생1: 임신할까봐.

참여학생2: 성병 옮을까봐.

참여학생4: 임신이 가장 두려운 것 같아요.

참여학생5: 맞아요. 모르는 사람이랑 한 거니까 바로 임신해도 확인도 늦게 되고 그 사람이랑 연락할 방법도 없구요.

진행자: 그러면 그런 게 두려운데 지금은 다들 그만됐어요?

참여학생: 모두들 네.

진행자: 엄마에게 너무 혼나서 그만됐어요?

참여학생2: 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무서워서요.

참여학생1: 그때 너무 아파서요.

참여학생2: 수술까지 했어요.

참여학생1: 꿰맸어요. 실밥은 다 풀었는데 흉터는 남았어요.

진행자: 아직도 하고 있는 사람은?

참여학생: 없어요.

진행자: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야기 한 거는 잘 듣고 좋은 정책에 제안 자료로 쓸 겁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 Group 2 : 성매매를 경험한 아동·청소년 그룹 2 (쉼터 거주 그룹)

진행자: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세요. 처음 성매매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참여학생1: 가출 후에 생활비와 유흥비가 필요해서요.

참여학생2: 저는 춘천이 싫어서 가출을 하게 되면서

참여학생3: 생활비, 유흥비 때문이에요.

참여학생4: 임신중절비용이 필요해서요.

참여학생5: 가출 후 용돈이랑 생활비가 필요해서요.

참여학생6: 저는 가출팸에 있었는데 생활비 마련 때문에 하게 됐어요.

참여학생7: 가출 후 잘 곳 없고 먹을 것이 없다보니

참여학생8: 가출 후 생활비 마련 때문이에요

진행자: 그 당시 나이가?

참여학생1: 18살

참여학생2: 16살

참여학생3: 15살

참여학생4: 19살

참여학생5: 17살

참여학생6: 17살

참여학생7: 17살

참여학생8: 17살

진행자: 성매매를 하게 되는 주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참여학생1: 저는 보도방을 통해서 했어요.

참여학생2: 어떤 아저씨가 잡아와서 하게 됐어요.

참여학생3: 저는 인터넷이요.

참여학생4: 스마트폰이요.

참여학생5: 친구소개로 했어요.

참여학생6: 인터넷으로 사람을 구해서 했어요.

참여학생7: 모바일로 채팅해서 만났어요.

참여학생8: 친구 통해서 소개받았어요.

진행자: 본인이 원해서 한 거였나요? 아니면 타인에 의해 강제로 하게 된 건가요?

참여학생1: 돈이 없어서 했어요.

참여학생2: 무서워서 억지로 했어요.

참여학생3: 엄마, 아빠가 옷, 화장품을 살 용돈을 주지 않아서 했어요

참여학생4: 임신중절수술에 필요한 돈이 절박해서 했거든요.

참여학생5: 돈이 필요해서.

참여학생6: 돈을 벌고 싶어서요.

참여학생7: 잘 곳도 없고 친한 친구 소개라..

참여학생8: 친구에게 소개를 받고 했어요.

진행자: 성매매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참여학생2: 성병, 임신에 대한 불안함

참여학생3: 성매매를 안 하면 옷, 화장품, 유희비가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요.
그래서 끊을 수도 없고 다시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싫었어요. 성병으로 몸이
망가져도 성매매를 해야 할 것만 같아서 슬펐어요.

참여학생4: 성매매 후 고통, 절망감

참여학생5: 성병, 임신에 대한 불안

참여학생6: 몸이 지치고 힘들고, 무서웠어요.

참여학생8: 두려움, 무서움, 즐거움, 싫음, 죽고 싶음의 다양한 감정들

진행자: 중단하지 못한다면 계속하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참여학생2: 무섭기도 하고 돈도 없어서요.

참여학생3: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참여학생8: 돈이 너무 필요해서요.

진행자: 그만 두려고 어떤 노력을 해보았나요?

참여학생2: 자해까지 해봤어요

참여학생3: 마음잡고 공부를 세 달 동안 했어요. 그런데 검정고시 끝나고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진행자: 자해까지 해봤다고 했는데 실패한 이유가 뭐였나요?

참여학생2: 죽지 못해서요.

진행자: 중단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스스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참여학생2: 집에 들어가기

참여학생3: 건전한 알바 찾아서 하는 것

참여학생8: 마음 먹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진행자: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뭐가 있나요?

참여학생2: 아빠가 용서해줬으면 좋겠어요.

참여학생3: 건전한 알바 소개나 인턴으로 연계해줬으면 해요.

참여학생8: 상처받은 학생들의 마음을 달래주셨으면 해요.

진행자: 이제 방법에 대해 여쭙볼 게요. 성매매를 하는 주된 방법은 뭐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어플이나 인터넷, 보도방 같은 것

참여학생1: 저는 업소 통해서요.

참여학생2: 스마트 폰이요

참여학생3: 인터넷이나 어플 통해서 조건 만남했어요.

참여학생4: 스마트폰 어플

참여학생5: 친구 소개로 했어요.

참여학생6: 저도, 인터넷 조건만남, 스마트폰 어플이요.

참여학생7: 스마트폰 어플로 조건만남했어요.

참여학생8: 보도실장 통해서요.

진행자: 그럼 처음 경험하게 된 곳은 어디예요?

참여학생1: 보도방에서 했어요.

참여학생5: 모텔

참여학생6: 모텔이랑 노래방이요.

참여학생8: 보도방과 노래방 도우미를 통해서요.

진행자: 그러면 만나는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세요.

참여학생1: 노래방

참여학생2: 안산 S 모텔

참여학생3: 지하철역 출구 앞

참여학생4: 근처지역, 모텔 앞

참여학생5: 수원역, 부평역, 부천역

참여학생6: 인천, 부평역, 부개역

참여학생7: 의정부나 영등포

참여학생8: 노래방

진행자: 성매매 장소는 어디였나요?

참여학생1: 노래방

참여학생2: 모텔

참여학생3: 모텔, 자동차

참여학생4: 모텔, 자동차

참여학생5: 모텔

참여학생6: 모텔

참여학생7: 여관

참여학생8: 노래방

진행자: 가출 경험에 대해 물을 게요. 가출한 경험들이 있나요?

참여학생1~8: 모두 있다.

진행자: 그러면 가출한 뒤로 어디서 생활하나요? 노는 곳은?

참여학생1: pc방이요.

참여학생2: 노래방

참여학생3: pc방이나 노래방

참여학생4: pc방

참여학생5: pc방, 노래방, 당구장

참여학생6: pc방

참여학생8: pc방, 노래방

진행자: 생활하는 곳은? 숙식장소는요?

참여학생1: 찜질방, 모텔에서요.

참여학생2: 저도, 모텔이요

참여학생3: 모텔이나 찜질방에서요.

참여학생4: 원룸, 고시텔

참여학생5: 친구집, 원룸

참여학생6: 모텔, 친구집, 찜질방

참여학생7: 여관이나 돈이 없으면 노숙도 했어요.

참여학생8: 모텔, 원룸, 찜질방 같은 곳이요.

진행자: 그러면, 여러분은 생각하시기에 가출이 성매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나요?

참여학생1: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참여학생3: 돈이 없으면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자지도 못하니까요. 성매매는 선택이 아닌
성매매를 하지 못하면 잘 수도 먹을 수도 없다는 두려움 때문에 악순환인 것 같아요.

참여학생4: 영향 있어요.

참여학생5: 저두요. 그렇게 생각해요.

참여학생6: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일단 몸이 안 좋아지고 바람직하지 못하니까요.

참여학생8: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진행자: 혹시, 가출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가출팸과 생활한 경험은?

참여학생1~8: 모두 있어요.

진행자: 있었다는 학생들은 어떤 방법으로 가출팸을 모았나요?

참여학생1: 인터넷사이트에서 구했어요.

참여학생5: 그냥 친구끼리 모여서요.

참여학생6: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많아요.

진행자: 몇 명 정도 되나요?

참여학생1: 2명

참여학생2: 2명

참여학생5: 5명

참여학생6: 10명

진행자: 남녀가 함께 생활했어요?

참여학생1: 네, 남녀 함께 생활했어요.

참여학생2: 저도, 같이 살았어요.

참여학생5: 네. 같이 살았어요.

참여학생6: 남자랑 여자랑 같이 있었어요.

진행자: 가출팸 생활 거주지는 어디였나요?

참여학생1: 모텔

참여학생2: 모텔

참여학생5: 원룸, 고시원

참여학생6: 원룸

참여학생8: 원룸, 모텔, pc방, 노래방

진행자: 가출팸 생활이 성매매에 영향이 있다고 보나요?

참여학생1: 아뇨. 관계없는 것 같아요.

참여학생3: 네. 강압적으로 시켜요.

참여학생4: 영향이 없어요.

참여학생6: 영향이 없어요.

참여학생8: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진행자: 살면서 내가 원치 않았던 신체적 폭력이나 성적인 폭력을 당한 적 있는지?

참여학생1: 없어요.

참여학생2: 전 있어요.

참여학생3: 저도 있어요.

참여학생4: 있어요.

참여학생6: 있어요.

참여학생7: 있어요.

참여학생8: 있어요.

진행자: 폭력을 당했던 적이 있는 친구들은 그 이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참여학생2: 자해를 시작하게 됐어요.

참여학생3: 맞은 걸 참다가 판 사람에게 욕하고 때리게 되었어요. 감정조절이 안되요.

참여학생4: 사람과의 거리 두고 피하게 되요.

참여학생7: 좀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래도 당했을 때에 대처법을 알게 되었어요.

참여학생8: 두려고 무섭고 겁이 많아졌어요.

진행자: 이러한 폭력들이 성매매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참여학생2: 네. 영향 미쳐요. 예민해지기 때문이에요.

참여학생3: 아빠가 때리기만 하고 안 챙겨 주니까 갈 곳이 없어서요.

참여학생7: 영향 미친다고 생각해요. 가출 하면 아무래도 범죄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이에요.

참여학생8: 영향을 미쳐요.

진행자: 그러면 이러한 폭력들에 대해 어떤 도움이나 대책이 주어진다면 가출과 성매매의 연결 고리를 차단할 수 있을까요?

참여학생2: 금전적, 옷, 화장품, 용돈 지원하면..

진행자: 이제 피해자 지원에 대해 여쭙볼 게요. 성매매 경험하고 도움을 받은 사람이나 기관이 있나요?

참여학생1: 새날을 여는 청소년 쉼터

참여학생2: 저두요.

참여학생3: 성매매 때문에 성병 걸려서 산부인과에서 도움 받았어요.

참여학생4: 1388

참여학생5: 새날을 여는 청소년 쉼터

참여학생6: 쉼터에서 도움 받았어요.

참여학생7: 기관은 아니고, 지인으로부터 쉼터로 도움을 받았어요.

참여학생8: 사또에서요.

진행자: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위해 각 지역에 성매매보호시설 등이 운영되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나요?

참여학생1: 몰랐어요.

참여학생2: 저도 몰랐어요.

참여학생3: 전 알고 있었어요.

참여학생4: 알고 있어요.

참여학생5: 알고 있어요.

참여학생6: 알아요.

참여학생7: 알아요.

참여학생8: 몰랐어요.

진행자: 기관이 있는 걸 몰랐다는 학생만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이러한 기관들이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을까요?

참여학생1: 인터넷 사이트나 길거리 홍보가 좋을 것 같아요.

참여학생2: 사이버 또래 상담을 통해서요.

참여학생7: 길거리에서 홍보 하는 거요.

참여학생8: 친구나 네이버 등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자: 기관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던 학생들 얘기하세요. 바로 도움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는?

참여학생1: 자유롭지 못해서

참여학생2: 답답하고 싫어서 안 갔어요.

참여학생3: 성매매한 걸 뒤에서 욕할까봐 두려워서요.

참여학생4: 창피해서요.

참여학생6: 낯설어서 안 갔어요.

참여학생7: 규칙에 틀어박혀 살고 싶지 않아서요.

진행자: 기관에서 담당선생님을 통해 사생활 보호나 익명성 보장에 대한 안내 또는 동의서를 작성한 적이 있어요?

참여학생1~8: 모두 있어요.

진행자: 도움을 주는 기관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참여학생2: 심리치료와 상담을 함께 해주세요.

참여학생3: 용돈 좀 많이 주세요.

참여학생8: 많은 위로가 필요해요.

진행자: 이러한 기관에서 성인 피해여성과 함께 지냈던 적이 있어요?

참여학생1: 그런 적 없어요.

참여학생2: 네. 좀 예민한 거 같아서 불편 했어요

참여학생4: 저는 함께 지낸 적 없어요.

참여학생8: 저도요.

진행자: 도움 받은 기관이 성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었나요? 청소년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었나요? 어디였는지 말씀해 주세요? 장단점도 이야기 해본다면?

참여학생4: 쉽터였어요.

참여학생5: 저도 쉽터였어요.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게 장점이구요. 여러 사람끼리의 싸우고 갈등생기는 게 단점이에요.

참여학생7: 청소년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서 받았어요.

참여학생8: 사또

진행자: 두 곳을 모두 이용해봤다면 장단점은?

참여학생1: 집 같이 편안하고 안전적이다

참여학생2: 마음을 추스를 수 있어요.

참여학생3: 장점은 병원이 무료라서. 단점은 모르겠어요.

참여학생4: 안정감을 찾을 수 있어요.

진행자: 성매매 경험하고 가장 괴로웠거나 현재도 괴로운 점을 이야기 해본다면?

참여학생2: 낙태 했던 것. 폭행당했던 것

참여학생3: 한순간 돈이 필요해서 살 수 없어서 했던 일이 평생 성병으로 남은 것

참여학생4: 남성에 대한 거리감

참여학생5: 후회

참여학생6: 그냥 했다는 것에 후회스럽고 괴로웠어요.

참여학생7: 자꾸 기억나고 잊혀지지 않아요.

참여학생8: 두려움

진행자: 그 밖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먼저 신변안전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 해보세요.

참여학생6: 도움이 필요해요.

참여학생7: 도움이 필요해요.

참여학생8: 토닥여 주셨으면 해요.

진행자: 주거에 대한 생각은?

참여학생4: 원룸이 필요해요.

참여학생5: 청소년도 자유롭게 집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래요.

참여학생6: 주거에 대해 도움 좀 주셨으면..

참여학생7: 도움 필요해요.

참여학생8: 보호가 필요해요.

진행자: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에 대한 치료에 대한 생각은?

참여학생6: 전 치료 필요해요.

참여학생7: 저도 필요해요.

참여학생8: 필요해요.

진행자: 부모님이나 보호자와의 관계에 대한 생각은?

참여학생2: 도움 주셨으면 좋겠어요.

참여학생6: 관계 개선에 대한 도움이 필요해요.

참여학생7: 저도 필요합니다.

진행자: 그 밖의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보세요.

참여학생8: 편안함이 필요해요.

진행자: 성매수자 관련 질문을 할 게요. 또래 포주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참여학생1: 네. 할 것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참여학생2: 생각만 해도 짜증나요.

참여학생4: 좋지 않게 봐요.

참여학생5: 범죄예요.

참여학생6: 좋지 않아요.

참여학생7: 정말 사람이 할 짓은 아닌 것 같아요.

진행자: 또래 포주를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제안을 거절 못한 이유는?

참여학생4: 무서워서 강요감 때문이에요

진행자: 또래 포주 근절 방안은?

참여학생1: 두렵더라도 의사표현을 확실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학생3: 제가 더 강해져야죠.

참여학생5: 신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참여학생6: 안 만나면 되지요

참여학생7: 가출하지 않으면 되요.

진행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하는 성인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참여학생1: 감옥에 넣어야 한다.

참여학생2: 급히 잡아서 구치소에 넣어야 해요.

참여학생4: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예요.

참여학생6: 체포해요.

참여학생7: 신고해야 해요.

참여학생8: 정신 차려야 하는데.

진행자: 인터넷에 성매매 신고 체계가 있어요. 경찰청 안전드림사이트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거나 이용해본 적이 있나요?

참여학생1~8: 모두 이용한 적 없어요.

진행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성매매 예방, 피해지원을 위해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야기해주세요. 먼저 가정에서는?

참여학생3: 부모가 해야 하는 의무는 제대로 할 것

참여학생6: 아빠를 체포해요.

참여학생7: 아빠나 오빠가 성폭력을 했을 시 격리시켰으면 해요.

참여학생8: 부모님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자식들을 생각해줬으면..

진행자: 학교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참여학생7: 신변 보호해 주셨으면...

참여학생8: 저에게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진행자: 사회와 국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참여학생1: 이런 시설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참여학생3: 지원이 많았으면

참여학생4: 청소년을 위한 알바가 다시 많았으면 좋겠어요.

참여학생7: 성폭력에 대한 법을 더 강화해주세요

참여학생8: 돈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현실

진행자: 네 끝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야기 해주신 건 좋은 정책에 대한 제안 자료로 활용할 게요.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았어요.

Abstract

A Study on Comprehensive Plan to Protect Children and Youths from Sexual Harassment II : How to Protect Children and Youths from Prostitution and Support Victims

This study aims to suggest measures for Children and Youths prostitution prevention and support for victims by seeking measures for preventing Children and Youths prostitution from occurring and recurring drawn through analysis of the environments surrounding Children and Youths who had run away from home and experienced prostitution and their needs; measures for reinforcing support for Children and Youths victims through differentiation of the infrastructure required to support Children and Youths victims of prostitution and planning of linking with the infrastructure for support for adolescents in crisis; and measures for clients of Children and Youths prostitution drawn through analysis of policies on prevention of recidivism of prostitution clients. The methodologies employed to attain the above purposes include expert survey (preliminary survey with nine respondents and main survey with 505 respondents) and interviews (in-depth interviews with 40 interviewees and group interview with 14 interviewees).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The results of the expert survey show that Children and Youths prostitution is much related with the experience of damage from domestic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In particular, Children and Youths with such experiences tend to have lower self-esteem than those without, require longer time until they recover from damage, and have a poorer supportive system required to return to society. The most common path to their prostitution is to run away from home and quit school and start prostitution for survival. More

recently, prostitution via smartphone applications is spreading. The recent prostitution is characterized by the younger age of Children and Youths prostitutes and less sense of guilt, systematization of prostitution, and the appearance of runaway Children and Youths families and “peer” pimps. There is also demand for tightening penalties against prostitution clients, reinforcing education and conducting continual proba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interviews, the biggest motive of Children and Youths prostitution is the poverty resulting from leaving home and the need to earn living expenses. As to the path to prostitution, prostitution via the Internet or smartphone applications represented the highest proportion. In many cases, these young prostitutes decided to engage in prostitution involuntarily due to threats or violence by peer pimps or male adults, and even when there was no such threat or violence when they decided to engage in prostitution, their prostitution is deemed as “prostitution for living” unavoidable to get food after they have run away from home without any preparation to earn money. In many cases, therefore, these Children and Youths are performing “involuntary” prostitution even when they think they are doing it voluntarily. As to physical and psychological problems after prostitution, they turned out to have fears of pregnancy or STD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following policy has been suggested. First, the suggested measures for preventing Children and Youths prostitution from occurring and recurring include the differentiation of prostitution prevention strategies by cause; conducting of parental education such as education on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expansion of sex education and gender equality education; establishment of measures for prostitution via smartphone applications; improvement of recognition of the seriousness of Children and Youths prostitution; vitalization of the role of counselors and social workers in school; reinforcement of the supervision and control of runaway Children and Youths families; and reinforcement of primary prevention before

prostitution (prevention of Children and Youths from running away from home and improvement of distorted perception of sex), reinforcement of secondary prevention before and after prostitution (reinforcement of early screening and evaluation of prostitution), and tertiary prevention after prostitution (reinforcement of measures for keeping prostitution from recurring).

Second, the suggested measures for reinforcing support for Children and Youths victims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victim support systems considering diverse characteristics of Children and Youths victims of prostitution; vitalization of job training and humanities education for Children and Youths victims of prostitution; improvement of the problem of recognizing Children and Youths prostitutes as victims; establishment of measures for protecting runaway Children and Youths from being victimized by crimes; case investigation analysis and support; reinforcement of cooperative activities with commercial premises used by runaway Children and Youths; diversification of shelters for runaway Children and Youths;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systems with institutions supporting victims of Children and Youths prostitution; reinforcement of the identity of Children and Youths as a Children and Youths protection policy; unification of the work system for addressing the problem of Children and Youths prostitution; establishment of an exclusive police investigation team for investigation of prostitution via the Internet; establishment of statistical data on Children and Youths prostitution; and systematic case management.

Third, the suggested measures for clients of Children and Youths prostitution include the reinforcement of education to prevent them from using prostitution; establishment of measures to encourage a report to involuntary Children and Youths prostitution clients; tightening of penalties against clients of involuntary Children and Youths prostitutes; ordering of certain community services; and punishing and cracking down on prostitution clients.

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3-R01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I : 미래 청소년 환경변화에 대한 전망 / 이경상·최항섭·그레이스정
- 13-R02 후기 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I :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중심으로 / 김지경·이광호
- 13-R03 국가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연구 / 김현철·임희진·정효진·민경석
- 13-R04 청소년 자살예방 정책 연구 / 김기현
- 13-R05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 맹영임·길은배
- 13-R06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 I / 안선영·김희진·강영배·배경내
- 13-R07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김영한·조아미·이승하
- 13-R08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 보호방안 연구 / 이창호·김경희
- 13-R09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연구 / 최창욱·전명기
- 13-R10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 II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 이유진·윤옥경·조윤오
- 13-R11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장근영·배상률·성은모·이혜연·김균희·이용교·홍승혜
- 13-R11-1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이혜연·배상률·성은모·김균희
- 13-R11-2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행복에 대한 부모와 자녀(청소년)의 상호기대 차이 연구 / 성은모·오현석·최윤미
- 13-R1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양계민·박주희
- 13-R12-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 김승경
- 13-R12-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질적연구보고서 / 이창호
- 13-R12-3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김승경·박주희
- 13-R1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 김영지·김경준·김지혜·이민희
- 13-R13-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데이터분석보고서 :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태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유성렬·김신영
- 13-R13-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 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김경준
- 13-R14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 사업보고서 / 이종원·서정아·황진구
- 13-R14-1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1 : 청소년의 학업성과 비행, 비행친구의 관계에 대한 종단 연구 / 이종원
- 13-R14-2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2 : 초기 청소년 생활만족도 변화와 영향 요인: 가족구조와 가족기능을 중심으로 / 서정아
- 13-R14-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3 :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변화와 자아인식·사회적 발달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가지 종단부석 - / 황진구

협동연구과제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1 아동 ·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정책적 지원체계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1 아동 ·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정책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 / 오해섭 · 박정배 (자체번호 13-R1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2 아동 ·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2013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 오해섭 · 박정배 (자체번호 13-R15-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3 아동 ·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교육분야 지원체계 구축 / 홍영란 · 현영섭 (자체번호 13-R15-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1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총괄보고서 / 모상현 · 김형주 · 이선영 (자체번호 13-R16)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2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아동 · 청소년정신건강지표 개발을 통한 정신건강지원체계구축연구 / 최은진 · 김미숙 · 전진아 (자체번호 13-R16-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3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현장적용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이창호 · 강석영 · 이동훈 (자체번호 13-R16-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1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청소년 한부모 유형 및 생활주기별 대응방안 / 김지연 · 황여정 · 이준일 · 방은령 · 강현철 (자체번호 13-R17)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형 개발 / 김은지 · 김동식 · 최인희 · 선보영 · 김나연 · 정다은 (자체번호 13-R17-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국내 입양 제도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원 방안 / 신윤정 · 이상림 · 김윤희 (자체번호 13-R17-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7-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Ⅰ / 윤철경 · 유성렬 · 김신영 · 임지연 (자체번호 13-R18)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7-02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Ⅰ / 전영실 · 김지영 · 박성훈 (자체번호 13-R18-1)

수 시 과 제

- 13-R19 자유학기제 도입과 청소년 체험활동연계 방안 / 성은모
- 13-R20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 전략 연구 / 최창욱
- 13-R21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만족도 변화에 관한 연구 / 황진구 · 김희진
- 13-R22 전국 청소년단체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 김영한
- 13-R23 청소년영향평가제 도입방안 기초연구 / 윤철경 · 김윤나
- 13-R24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방안 연구 (이슈페이퍼 발간) / 임희진
- 13-R25 청소년이 제안하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이슈페이퍼 발간) / 장근영
- 13-R26 인터넷게임중독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 (이슈페이퍼 발간) / 이창호

수 탁 과 제

- 13-R27 영천시 청소년수련원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 / 김영한 · 서정아 · 김상연

- 13-R28 2013년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 배상률 · 김형주 · 성은모
- 13-R29 2013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황진구
- 13-R30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3 / 황진구 · 유성렬
- 13-R31 도전정신 중심의 청소년 청년문화 조성방안 연구 / 김승경
- 13-R32 제9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 / 최창욱
- 13-R33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3 / 황진구 · 유성렬
- 13-R34 국립대구청소년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세부사업계획 수립연구 / 김영한 · 이유진 · 한상철 · 추승연 · 김상연
- 13-R35 2013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 양계민
- 13-R36 2013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평가 / 김지연 · 이경상
- 13-R37 한중청소년 특별교류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 윤철경 · 이창호 · 최금해 · 오해섭
- 13-R38 청소년국제활동 효과성 및 만족도 연구사업 / 양계민
- 13-R39 청소년가족연계서비스 구축모형 개발연구 / 서정아 · 황진구 · 조성은
- 13-R40 청소년 희망카드(가칭) 도입방안 연구 / 김경준 · 모상현
- 13-R41 2013년 성남시 청소년실태조사 연구 / 최창욱 · 황진구 · 이종원
- 13-R42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BSG매니저 전문가 과정 연구용역 / 김승경 · 맹영임
- 13-R43 자유학기제 학생자율선택프로그램(농림수산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최창욱 · 송병국
- 13-R44 RCY 미래전략 개발 및 참여청소년 효과성 연구 / 장근영 · 맹영임
- 13-R45 2013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 배상률 · 황여정
- 13-R46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모델 개발 / 안선영
- 13-R47 유소년스포츠포국제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강화 / 임지연 · 장덕선
- 13-R48 휴먼네트워크 멘토링의 효과성 및 사회경제적 가치분석 연구 / 성은모 · 이주석
- 13-R49 2013년 또래조정사업 (2014년 1월 발간예정) / 양계민 · 김지경 · 김지연 · 이종원
- 13-R50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연구 (2014년 1월 발간예정) / 성은모 · 최창욱
- 13-R51 대구광역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 (2014년 1월 발간예정) / 김형주 · 배상률 · 강영배 · 김정주 · 김혁진 · 이은미
- 13-R52 학생모니터단 운영 (2014년 2월 발간예정) / 오해섭 · 김경준 · 김영지
- 13-R53 학교문화개선연구선도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경준 · 오해섭 · 김영지
- 13-R54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초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 · 김경준 · 모상현 · 이혜연
- 13-R54-1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중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 · 김경준 · 모상현 · 이혜연
- 13-R54-2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워크북] (초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허종렬 · 이지혜 · 박형근 · 이수경 · 전진현
- 13-R54-3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워크북] (중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허종렬 · 이지혜 · 박형근 · 이수경 · 전진현
- 13-R54-4 외국의 학생인권 법령집 (2014년 2월 발간예정) / 이양희 · 김인숙 · 정병수 · 황소영 · 신혜원
- 13-R54-5 교사용 인권교육자료집 (2014년 2월 발간예정) / 이양희 · 김인숙 · 정병수 · 황소영 · 신혜원
- 13-R55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초등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 · 김현철 · 김희진 · 김인아 · 김재근 · 김정희
- 13-R55-1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중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현철 · 김영지 · 김희진 · 송인숙 · 표혜영
- 13-R55-2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고등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희진 · 김영지 · 김현철 · 박정수 · 박지만 · 오수정
- 13-R56 디지털교과서 · 스마트교육 연구학교 시계열효과 분석연구 (2014년 2월 발간예정) / 장근영 · 김형주
- 13-R57 학업중단 학생 교육 지원 (2014년 6월 발간예정) / 김영지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3-S01 인성교육실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 학교규칙 및 학생자치활동을 중심으로 (1/28~29)
- 13-S02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동계연수 I (1/7~8)
- 13-S03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동계연수 II (1/7~8)
- 13-S04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 설문지 제작 워크숍 (2/5)
- 13-S05 NYPI 기획세미나 - 자유학기제와 청소년체험활동 : 외국 사례와 방향성 모색 (2/21)
- 13-S06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 전문가 워크숍 (2/21)
- 13-S07 NYPI 기획세미나 방송과 청소년보호 (2/28)
- 13-S08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과 법제 (2/13)
- 13-S09 2012년도 고요과제 연구성과 발표회 청소년의 행복을 묻는다 : 성장 환경과 발달 모습 (3/20)
- 13-S10 후기청소년세대 현황과 정책과제 세미나 (4/10)
- 13-S11 제2차 2012년도 고요과제 연구성과 발표회 - 청소년 역량 개발 방향성 모색 : 체험활동과 인프라 조성 - (4/18)
- 13-S12 탈북청소년 연구동향 및 사회통합정책에의 시사점 (4/9)
- 13-S13 학교문화 개선(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연구·선도학교 워크숍 (4/29, 30)
- 13-S14 학교문화 개선(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연구·선도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4/29)
- 13-S15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과 입법과제 (5/21)
- 13-S16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어떻게 볼 것인가(6/1)
- 13-S17 도전정신 중심의 청소년문화 조성 방안 세민 (5/22)
- 13-S18 대안교육 현황 및 발전방안 (5/24)
- 13-S19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 (6/1)
- 13-S20 해외 이슈배경 청소년정책과 한국사회에의 함의 (6/3)
- 13-S21 2013년 미래환경변화전망에 따른 청소년 정책의과제 I 콜로키움 자료집 : 미래에 대한 접근 (6/4)
- 13-S2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개선방안 모색 워크숍 (6/11)
- 13-S23 2013년 아동청소년패널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사건가 분석 (6/21)
- 13-S24 NYPI 개원 24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7/3)
- 13-S25 2013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잠재성장모형 분석 (7/14)
- 13-S26 자유학기제의 성공을 위한 청소년체험활동의 연계방안 (7/5)
- 13-S27 청소년상담의 이해와 상담기법 (8/5~7)
- 13-S28 입양제도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색 (6/18)
- 13-S29 독일·프랑스·덴마크의 청소년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7/5)
- 13-S30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 및 프로그램개발 연구 시범운영 센터 관계자 간담회 (7/17, 19)
- 13-S31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 및 프로그램개발 연구 시범운영 모니터링 위원 간담회 (7/22)
- 13-S32 고졸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책 평가와 논의 1 : 교육단계 (7/23)
- 13-S33 고졸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책 평가와 논의 2 : 직훈단계 (7/24)
- 13-S34 2013년도 진로교사 심화연수 - 청소년상담 기법(C-4) (7/29~31)
- 13-S35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하계연수 (7/22~25)
- 13-S36 탈북청소년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탐색 (8/29)
- 13-S37 제2차 학교문화개선 연구선도학교 워크숍 (9/9~10)
- 13-S38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함양 지원체계 구축 전문가 워크숍 (9.13~14)

- 13-S39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개발 워크숍 (9/27)
- 13-S40 영국·핀란드·스웨덴·일본의 청소년 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 13-S41 유소년 스포츠 국제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강화의 현황과 정책과제 (10/15)
- 13-S42 STATA를 이용한 패널데이터 분석방법 (10/16)
- 13-S43 스티그마의 이해와 대응전략 (10/24)
- 13-S44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 (11/18)
- 13-S45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초안) 시범운영 결과 검토 워크숍 (10/25)
- 13-S46 제3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 (11/14)
- 13-S47 한-중 국제세미나 (11/19)
- 13-S48 2013 아동·청소년 권리 학술대회 (11/27)
- 13-S49 청소년 활동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방안 모색 (11/26)
- 13-S50 RCY 미래전략 및 발전방향 탐색 (11/29)
- 13-S51 자유학기제, 지역사회에서 길을 찾다 (11/28)
- 13-S52 2103년 아동청소년패널 제3차 콜로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패널 데이터의 가중치 산출 및 활용 (12/17)
- 13-S53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Ⅱ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정책협의회 및 전문가 워크숍 (12/16)
- 13-S54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12/13)

학 슬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1호(통권 제6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2호(통권 제69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3호(통권 제7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4호(통권 제71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기타 발간물

-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2호 : 부모 비동거 대학재학생의 주거유형 및 주거비부담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3호 : 스마트폰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4호 : 청소년참여활동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5호 :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6호 :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7호 : 청소년활동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8호 :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9호 : 청소년이 제안하는 자유학기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0호 : 인터넷게임중독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7호 : 201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8호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 2012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9호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중단연구Ⅲ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0호 :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2012년 청소년 민주 시민역량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1호 :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2호 :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실태와 체험활동의 효과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집필진 ◆

- 김정환 (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강경래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교수)
장지명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연구원)
박찬걸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교수)

◆ 자문진 ◆

- 권해수 (조선대 상담심리학부·교수)
김선옥 (새날을여는청소년쉼터·대표)
김태희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사무관)
류기욱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과장)
박현동 (의정부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백수현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사무관)
서영학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과장)
오민영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사무관)
정미정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전문위원)
정혜원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연구위원)

◆ 윤문 / 감수 ◆

- 조아미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교수)

연구보고 13-R10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 II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인 쇄 2013년 12월 24일

발 행 2013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재연

등 록 2009. 3. 18. 제385-2009-00005호

인쇄처 동진문화사 전화 02)2269-4783 대표 이병무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정보자료·전산보안팀)

ISBN 978-89-7816-720-8 93330

